

환 경 법 전

(하)

2020. 12.



환경부

일 러 두 기

1. 수록 법령의 범위

가. 이 법령집은 2020년 12월 현재 주요 시행중인 환경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수록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개정·공포되어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의 일부 조항은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2. 수록순서

법령 수록은 분야별로 배열하였으나 일부 관련이 있는 법령인 경우에는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연혁의 표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을 본문 법령제명 아래에 법령의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제·개정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4. 본 법령집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에 게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개정 되는 법령도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에 게재하겠습니다.

전 체 목 차

제1편 녹색전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02.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	71
03.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93
0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3
0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155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01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335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1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1
10.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589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611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627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643

제2편 환경일반

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663
02.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705
0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759

0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765
0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771

제3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779
0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793
0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815
0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33
0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875
0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01
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921
08. 백두대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937
0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65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5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75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1305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42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1543

제4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5
0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853
03.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869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37
0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07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19
0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217
0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599
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647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701

제5편 대기·기후

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2715
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193
0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235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241
05.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311
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379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3439

제6편 환경보전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46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25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635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3727
05.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793
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921
07.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931
0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997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033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03
11.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4221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97
1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355

제7편 물통합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31
02.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643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51
04.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771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779
06.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817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969
08.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4983
09. 상수원 관리규칙	5187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5207
11.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5223
12.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5275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303
14.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413
15.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5421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5569
17.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587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5709
19.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821

제8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831
0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961
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311
04.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6365

제9편 수자원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6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6665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6681
0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709
0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777
06.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6825
0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005
0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7011

제10편 부 록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7051
--------------------------	------

제6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46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25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635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3727
05.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793
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921
07.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931
0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997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033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03
11.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4221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97
1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355

제6편
환경보건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469	제1조(목적) 3469	제1조(목적) 3469
제2조(정의) 3469		
제3조(국가의 책무) 3470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3470
제4조(손해배상책임) 3470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3470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3471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3471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3471
제6조(정보청구권) 3471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3472	제3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3472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3473		
제2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등) 3474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3474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3475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3475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476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3477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3477	
	제11조(간사) 3477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3477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478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3479	제13조(수당과 여비) 3479	
제9조(피해자단체) 3480	제14조(피해자단체) 3480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348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3482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3480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3480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3482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3482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3482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3482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3482
	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484	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3484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3485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3485	
제10조의2(의견진술권) 3486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3486 3486
..... 3486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3486	 3486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3488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3487		
제13조(요양급여) 3488	제20조(장의비) 3489	
제14조(요양생활수당) 3489	제21조(간병비) 3489	
제15조(장의비) 3489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3490	
제16조(간병비) 3489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3490	
제16조의2(장해급여) 3490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490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3491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3491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24조 삭제 3493	제9조 삭제 3493
..... 3491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3493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3493
제19조(특별유족인정) 3491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3494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3492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3495	
제21조 삭제 3493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3495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3493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3494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3494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3495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349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급권의 보호) 3496 제28조(공과금의 면제) 3496 제29조(재심사 청구) 3496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3496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3496	제10조(재심사 청구) 3496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3. 24.)</p>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 3497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3499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3500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3501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3502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3506 제36조(이의신청) 3507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9. 22.)</p>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 3497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497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3499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3501 제34조(분담금의 산정) 3502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3503 제36조(가산금) 3505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3505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p>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3499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3501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3503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3506 제15조(이의신청) 3507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제37조(조사, 보고 등) 3507 제38조(진찰요구 등) 3508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3509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3509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제38조(조사, 보고 등) 3507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3508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3509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 3509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3508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351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3511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3512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14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13	
제44조(비밀유지 의무) 3514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3514		
제46조(양벌규정) 3515		
제47조(과태료 등) 3515		
	제44조(이행강제금) 3516	
부칙 3516	부칙 3516	부칙 351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정 2017. 2. 8 법률 제14566호 개정 2018. 8.14 법률 제15717호 2020. 3.24 법률 제1710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20. 3. 24.) 나. 삭제 (2020. 3. 24.) 	<p>제정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9호 2019. 2.12 대통령령 제2954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 3 대통령령 제30221호 (미한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22 대통령령 제3102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7. 8. 9 환경부령 제710호 개정 2019. 2.14 환경부령 제800호 2020. 9.25 환경부령 제88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p> <p>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p> <p>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p> <p>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제4조(손해배상책임)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p>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p>		<p>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p>제6조(정보청구권)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p>	<p>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20. 9. 22.]</p> <p>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p>	<p>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 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	<p>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 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p>	<p>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p> <p>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p> <p>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3. 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p> <p>제3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p> <p>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p>	<p>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p> <p>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 8. 14.></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p>	<p>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p> <p>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p> <p>1. 보건복지부장관</p> <p>2. 환경부장관</p>	<p>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p> <p>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p> <p>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p>	<p>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p> <p>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p> <p>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p> <p>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p> <p>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② 삭제 <2019. 2. 12.></p> <p>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 9. 22.></p> <p>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학 등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p> <p>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p> <p>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사망 원인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p> <p>4. 삭제 <2020. 9. 22.></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9. 22.></p> <p>[제목개정 2019. 2. 12.]</p> <p>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p>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p> <p>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9. 22.]</p> <p>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9. 22.></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p> <p>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p> <p>6. 삭제 (2020. 3. 24.)</p> <p>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p> <p>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9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p>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p>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p>	<p>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p> <p>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p>	<p>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p> <p>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2018. 8. 14., 2020. 3. 24.)</p>	<p>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p> <p>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p> <p>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p> <p>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의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p> <p>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p> <p>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p>	<p>1. 사업계획서</p> <p>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p> <p>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및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p> <p>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p> <p>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 2. 12.]</p> <p>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p> <p>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p> <p>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19. 2. 12.]</p> <p>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p>	<p>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p> <p>2. 단체 구성원 명부</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4.]</p> <p>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p> <p>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p>	<p>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p> <p>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p> <p>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2.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p> <p>3.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요양급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p>나. 장의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다. 간병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 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p>	<p>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장애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마. 구제급여조정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20. 9. 25.]</p> <p>제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p> <p>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과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2. 12.>]</p> <p>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과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p>[제목개정 2020. 9. 2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2. 12.>]</p> <p>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p>	<p>및 진료비 세부내역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p> <p>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p>	<p>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9. 22.]</p> <p>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p>	<p>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9. 25.]</p> <p>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만료 전에 나올 가량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p> <p>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p>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p> <p>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9. 22.]</p>	<p>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4., 2020.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9. 2. 14.> 2. 삭제 <2019. 2. 14.>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4.></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목개정 2020. 9. 25.]</p>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 3. 24.></p> <p>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p>	<p>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1.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 3. 24.></p> <p>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p> <p>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p> <p>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p> <p>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p>	<p>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p> <p>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p> <p>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p> <p>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p> <p>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 3. 24.></p> <p>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3. 24.]</p> <p>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p> <p>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p> <p>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p>	<p>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9. 22.]</p> <p>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p> <p>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p> <p>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p>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p>	<p>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나. 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p>	<p>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p>	<p>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로기록부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 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p> <p>제21조 삭제 <2020. 3. 24.></p> <p>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p> <p>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p>	<p>제24조 삭제 <2020. 9. 22.></p> <p>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p>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p>	<p>제9조 삭제 <2020. 9. 25.></p> <p>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24.)</p> <p>②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p> <p>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19. 2. 12.]</p> <p>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②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p> <p>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p>②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p>	<p>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 7. 2.)</p> <p>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p> <p>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p> <p>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정한다.</p> <p>제27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제28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 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3. 24.>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p> <p>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p>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p>	<p>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p>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14.></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8. 14.></p> <p>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3. 24.)</p> <p>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p>[제목개정 2020. 3. 24.]</p>	<p>4. 결정 연월일</p> <p>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 9. 22.)</p> <p>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구제급여·경비·비용·지원금의 지급 및 차입금·이자 상환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영 <p>[전문개정 2020. 9. 22.]</p> <p>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p>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제정</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p> <p>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삭제 <2019. 2. 12.></p> <p>4. 삭제 <2019. 2. 12.></p> <p>5. 삭제 <2019. 2. 12.></p> <p>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p>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 사유, 제척·기피·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2020. 3. 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p>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히 차이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p> <p>[제목개정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9. 22.]</p> <p>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20. 9. 22.]</p>	<p>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4.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위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p>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0. 3. 24.></p> <p>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20. 9. 25.]</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⑥ 삭제 <2020. 3. 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 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영, 구제자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p>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분담금} = 1\text{천억원} \times \frac{(\text{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times 2.5 + \text{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 \times 1)}{3.5}$ </div> <p>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p>	<p>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p>제34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p> <p>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p>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p> <p>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p>	<p>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p> <p>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p> <p>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p> <p>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p>	<p>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청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p>	<p>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p> <p>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p> <p>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을 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융위원회의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37조(조사, 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p> <p>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5. 19.,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청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p>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p> <p>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p> <p>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p> <p>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p>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p>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p> <p>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4.></p> <p>[제목개정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8. 14.></p>	<p>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p> <p>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p> <p>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p> <p>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슴기살균제,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4.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p>	<p>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p>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제17조(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p>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p> <p>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p>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p>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p>	<p>"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 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연구 실적 4.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참여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 3. 24.)</p> <p>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 8. 14.)</p> <p>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확인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통지</p> <p>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p> <p>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 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확인</p> <p>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확인</p> <p>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p> <p>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확인</p> <p>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p> <p>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p> <p>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 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p> <p>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제4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사람</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p> <p>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2020. 3. 24.)</p> <p>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p> <p>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p> <p>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p> <p>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p> <p>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66호, 2017. 2. 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제44조(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39호, 2017. 8.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지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0호, 2017. 8. 9.></p> <p>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0호, 2019. 2. 14.></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부칙 〈제15717호, 2018. 8. 1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102호, 2020.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자금이 이를 승계한다.</p> <p>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p>	<p>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9546호, 2019. 2. 12.〉</p> <p>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221호, 2019. 12. 3.〉 (피한정후건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683호, 2020. 5.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p> <p>부칙 〈제31027호, 2020. 9.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특별유족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82호, 2020. 9.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p>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p>	<p>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특별유족조위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은 받았으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한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장외비의 100분의 2천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p> <p>제4조(구제급여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로 한다.</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3521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3522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3523
[별표 4]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3523

[별표 1] <개정 2020. 9. 2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1.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가.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슴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슴기살균제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 정도 등 노출 양상,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상태 및 진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자료 등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진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을 한 날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노력성 폐활량(FVC)
- 2) 1초량(FEV1)
- 3) 폐확산능(DLco)

나. 가목 1)부터 3)까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가장 높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검사방법 피해등급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초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고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 피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 피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0. 9. 2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1. 초고도 피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본인 부담하는 금액 나.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 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411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 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3) 응급상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 처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4. 경도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5. 경미한 피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6. 등급 외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간병비(제21조 관련)

간병 필요등급 \ 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
전문 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 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비고

- 간병 필요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다.
- 전문 간병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4] <산설 2020. 9. 22.>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제21조의2 관련)

장해등급	장해내용	노동력 상실률	급여금액
1.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7,600에 해당하는 금액
2. 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560에 해당하는 금액
3.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3,040에 해당하는 금액
4. 경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은 사람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52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6편
환경보건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533	제1조(목적) 3533	제1조(목적) 3533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 3533		
제3조(정의) 3533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535		
제5조(적용 범위) 3536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3537	제1조의2(적용범위) 3537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3537	
	제3조(위원의 해임·해촉) 3539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3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540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3540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543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3540
제8조(위해성평가 등) 3541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3546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541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3543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3547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543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3543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546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3548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3551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3551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355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3552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3553	제8조 삭제 3553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3554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3554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3554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3555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3555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3557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3558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3556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3558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3558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3558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3559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3559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3559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3561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3563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3559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3562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3565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3562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3564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3564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3565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3567	제16조 삭제 3567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3565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356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3569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3570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3572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3573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3575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3577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3578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3578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3568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3569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3572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3572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3574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3575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3578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3567 제20조 삭제 3569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3570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3572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3573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3574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3575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3578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3579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3579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3581 제31조(자료의 보호) 3582 제32조(자료 사용동의) 3583 제32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3583 제33조(취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3584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3581 제25조(자료의 보호) 3582 제25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3583 제26조(취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3585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 3580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3581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3581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3582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3583 제33조(취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3584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3586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3586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3587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3586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3588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3588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3589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3588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3588
제37조(회수명령 등) 3589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3589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3589
제38조(과징금의 부과) 3590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3590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3589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593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3591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3590
제40조(위반사실 공표) 3594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3593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3594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3594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3594	제39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3595
	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3595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3596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3597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3598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3598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3598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3598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599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599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3599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3599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3600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3600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3600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3600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602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36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3602	제37조의2(포상금) 3602	제46조(기록 및 보고) 3603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3603	제38조(권한의 위임) 3607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3603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3604	제39조(업무의 위탁) 3610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3604
제52조(수수료) 3606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3612	제49조(수수료) 3606
제52조의2(포상금) 3606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3607
제53조(청문) 3606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3611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607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3611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612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3613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617	
제57조(벌칙) 3615	부칙 3618	부칙 3618
제58조(벌칙) 3616		
제59조(양벌규정) 3617		
제60조(과태료) 3617		
부칙 36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8. 3.20 법률 제15511호 2020. 3.24 법률 제17103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p>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2호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8.12.28 환경부령 제794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친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0.12.31 환경부령 제90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p> <p>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p> <p>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p> <p>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p> <p>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p> <p>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p> <p>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p> <p>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p> <p>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p> <p>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p> <p>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p> <p>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p> <p>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른 의약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품</p> <p>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p> <p>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p> <p>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p> <p>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p>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24.></p>	<p>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p>[본조신설 2020. 12. 29.]</p> <p>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p> <p>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p> <p>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p> <p>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p> <p>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p> <p>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p>	<p>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p> <p>1. 정기회의: 연 1회</p> <p>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1. 회의 일시 및 장소</p> <p>2. 회의 목적과 안건</p> <p>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⑤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사람</p> <p>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위원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p>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 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 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 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 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p> <p>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p>	<p>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p> <p>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p>	<p>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p> <p>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의에서 제기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24.)</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p>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성이 매우 커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p>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유해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나. 중점관리물질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p>	<p>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p> <p>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p> <p>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p> <p>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p>	<p>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p>	<p>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p> <p>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p>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p>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p>	<p>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p>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도·검사기관(이하 “시·도·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p>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p> <p>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패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p>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시행일 : 2021. 7. 1.] 제5조제3항제6호,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시의 응급조치사항 <p>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재지</p> <p>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p>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p> <p>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p> <p>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p> <p>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4. 중량 또는 용량</p> <p>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p> <p>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p> <p>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p> <p>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p> <p>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p>		<p>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p> <p>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20. 12. 31.]</p> <p>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p>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p>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の方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p>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p> <p>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p> <p>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4. 삭제 <2020. 3. 24.>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p> <p>제8조 삭제 <2020.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p> <p>③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p>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p>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p> <p>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p>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p>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p> <p>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p> <p>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라. 효과·효능 마. 분류 및 표시</p> <p>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p> <p>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p> <p>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p> <p>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p>	<p>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러</p>	<p>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p>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범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그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p> <p>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p> <p>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물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p>	<p>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p>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p>	<p>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p>	<p>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p>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p>	<p>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p>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p>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증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 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증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18조(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준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준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준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준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4조(기준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p>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 12. 31.> <p>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품유형</p> <p>3. 승인유예기간</p> <p>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 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p>		<p>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p>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다.</p> <p>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물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3. 그 밖에 개별제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p> <p>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p>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료부터 받을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p> <p>2. 살생물물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p> <p>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p> <p>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3. 24.> 2. 삭제 <2020. 3. 24.> 3. 삭제 <2020. 3. 24.>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p> <p>제16조 삭제 <2020.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p>④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p>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위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 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p>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p>	<p>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p> <p>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 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p>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삭제 (2020. 3. 24.)</p> <p>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p>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제20조 삭제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p> <p>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p> <p>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p>	<p>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p> <p>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p>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p> <p>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p> <p>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자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p> <p>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은 시험·검사기관이 그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p>		<p>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p> <p>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p> <p>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p> <p>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된 경</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p>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p>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①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p>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p> <p>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p>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별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나노물질</p> <p>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p> <p>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p> <p>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p> <p>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p> <p>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p> <p>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p> <p>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2020. 5. 26.></p> <p>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p> <p>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p>	<p>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p> <p>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p>	<p>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p> <p>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p> <p>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효능</p> <p>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p> <p>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p> <p>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p> <p>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p> <p>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기준살생물제품이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들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p>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p>	<p>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p> <p>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 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p>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효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 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p>	<p>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 품과 대동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 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p> <p>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 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p>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p> <p>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p>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p>	<p>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p>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치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p> <p>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를 말한다.</p> <p>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p> <p>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p>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p> <p>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열람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p> <p>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취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취추동물대체시험(이하 “취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p>	<p>제25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위 	<p>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p>	<p>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p> <p>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p> <p>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p> <p>4. 국내의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p> <p>[본조신설 2020. 12. 29.]</p>	<p>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p> <p>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p>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p> <p>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p> <p>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p> <p>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p>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p> <p>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독성 2. 환경·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동물친화적 <p>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p> <p>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독성 2. 환경·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동물친화적 <p>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p> <p>〈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p>3. 제품의 효과·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p> <p>[시행일 : 2021. 7. 1.] 제34조제2항제3호</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증가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증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증가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p>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p>	<p>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p> <p>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p> <p>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p> <p>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p> <p>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p> <p>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p> <p>3. 권고의 수용 여부</p> <p>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p> <p>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p> <p>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p> <p>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p> <p>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p> <p>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p> <p>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2. 31.]</p> <p>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1. 제10조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p> <p>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p> <p>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p>	<p>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p> <p>2. 조치 계획표(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p> <p>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p> <p>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p> <p>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p> <p>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p> <p>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p>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않은 경우</p> <p>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p> <p>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p> <p>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 	<p>이자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 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p> <p>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추는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p> <p>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업무의 대행</p>	<p>기기를 갖추 것</p> <p>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 것</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p> <p>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p> <p>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p> <p>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업무의 대행</p> <p>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29.)</p> <p>제3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시험·검사기관 운영계획서</p> <p>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p>	<p>제39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p>	<p>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시험·검사 분야 <p>④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록 해야 한다.</p> <p>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p> <p>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p> <p>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대한 평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p> <p>2. 수시평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내용 및 시험·검사결과와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p>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p> <p>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p>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p> <p>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p> <p>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p> <p>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p> <p>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p> <p>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p> <p>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p> <p>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24.></p>	<p>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p> <p>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변경신고,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업무</p> <p>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p> <p>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p> <p>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p> <p>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p> <p>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p>	<p>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p>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p> <p>2. 삭제 <2020. 12. 31.></p> <p>3. 삭제 <2020. 12. 31.></p> <p>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p> <p>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p> <p>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p>	<p>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용량, 효과·효능 다.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p>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p> <p>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군·자치단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p>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p>	<p>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p> <p>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군·자치단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과 수량</p> <p>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p> <p>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p> <p>4. 살생물제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p> <p>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p> <p>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p> <p>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p> <p>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p> <p>③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p>		<p>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p> <p>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p> <p>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정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또는 시험·검사업무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p>		<p>경우는 제외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험·검사기관 <p>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 3. 24.></p> <p>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목개정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p>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53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p>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p> <p>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6항·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p>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질의 지정·고시</p> <p>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p> <p>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p> <p>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p> <p>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p> <p>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p> <p>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p> <p>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p> <p>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 공개</p> <p>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p> <p>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p> <p>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평가</p> <p>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p> <p>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p> <p>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p> <p>19. 법 제5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p> <p>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신고 접수</p> <p>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p> <p>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p> <p>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p> <p>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p> <p>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p> <p>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p> <p>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9.)</p> <p>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p> <p>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p> <p>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p> <p>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p> <p>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p> <p>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p> <p>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p> <p>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p>위탁한다. <개정 2020. 12. 29.></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p>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p>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p> <p>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p> <p>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p>	<p>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 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위해성·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20. 12. 29.]</p>	<p>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p>제7장 벌칙</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같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설 2020. 3. 24.></p> <p>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p> <p>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자</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 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설 2020. 3. 24.></p> <p>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11호, 2018.3.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12호, 2018. 12. 24.></p> <p>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323호, 2020.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4호, 2018. 12. 28.></p> <p>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p> <p>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p> <p>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1호, 2020.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4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p> <p>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부칙 〈제17103호, 2020. 3. 24.〉</p> <p>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3625
[별표 1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362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3626

[별표 1] <개정 2020. 12. 29.>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蟻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성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위해성, 국내의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2] <신설 2020. 12. 29.>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별표 2] <개정 2020. 12.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2호	3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3호	300	500	1,000
라.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법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법 제60조제1항 제4호	300	500	1,000
마.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7호	600	800	1,000
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8호	600	800	1000
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9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0호	600	800	1,000
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1호	300	500	1,000
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12호	300	500	1,00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3631
[별표 2]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제36조의2제1항 관련)	3632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3633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3634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1. 살균제류 (소독제류)	가.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향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殺藻劑)	수영장 등 실내·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여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殺鼠劑)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 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3. 보존제류 (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 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다음의 재료·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4. 기타	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별표 2] <개정 2020. 12. 31.>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제36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시설 기준

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 장비 및 멸균시설(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 라.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춘 것
 - 마.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춘 것
 - 바.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보관시설 기준

- 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 다.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할 것
- 라.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3. 안전관리 기준

가. 시험·검사시설 기준

- 1)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를 갖춘 것
- 2)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되어 있을 것
- 3)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전성 시험용 시료를 별도의 구획을 설정하여 보관할 것

* 비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인력 기준

- 1)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2)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3)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문서 및 기록관리 기준

-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 2)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보존기간 등을 설정하여 보관·관리할 것
- 3)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로 하되,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존할 것
- 4) 제품표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명, 제형 및 성상
 - 나) 제품승인 연월일 및 승인사항 변경 연월일
 - 다) 제품의 효과·효능,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라) 승인받은 원료의 양 및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양
 - 마) 제조공정흐름도, 상세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를 포함한다)
 - 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 사)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 아) 제품의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 자) 제품 및 제품표준서의 이력 관리
- 5)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의 제조기록에 관한 사항
 - 나)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 방법
 - 다)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라) 원료, 자재 및 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 6)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의 시험 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 나)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명세 및 점검방법
 - 다)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 라)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 마) 제조를 위탁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송부 및 시험결과 판정 방법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년	지정 취소		
사.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나.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마.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50,000원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2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를 감면한다.

제6편
환경보건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643	제1조(목적) 3643	제1조(목적) 3643
제2조(정의) 3643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3643	제2조(석면의 종류) 364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645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364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645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3645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3645	
	제4조 삭제 3646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3646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3646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646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3646
제7조(실태조사) 3647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3646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3647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3648
제3장 석면 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3장 석면 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3장 석면 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3648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3648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3649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3649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3649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3650
제9조(자가 측정) 3650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3650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3650	제8조(석면 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3651
제11조(석면 함유가능물질의 관리) 3651	제13조(석면 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3651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p>제12조(지질도 작성) 3654</p> <p>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3655</p> <p>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3656</p> <p>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657</p> <p>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3658</p> <p>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3658</p> <p>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3660</p> <p>제19조(지정 해제 등) 366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p>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3652</p> <p>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3653</p> <p>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3653</p> <p>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3654</p> <p>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3654</p> <p>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3655</p> <p>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3656</p> <p>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 3656</p> <p>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3656</p> <p>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3657</p> <p>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3657</p> <p>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3658</p> <p>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3658</p> <p>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 3659</p>	<p>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3651</p> <p>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3652</p> <p>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3653</p> <p>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3654</p> <p>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365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p>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3655</p> <p>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3655</p> <p>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3657</p> <p>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3658</p> <p>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3659</p> <p>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3659</p> <p>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3659</p> <p>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3659</p> <p>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3660</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3660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 3661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3661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3661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3661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3663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3662	제24조(석면건축자재) ····················· 3663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3662	제25조 삭제 ······························· 3663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 3663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 3663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 3663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3664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3664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3664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3665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3666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 3666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3666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 3667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 3667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3668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 3668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3669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 3668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 3669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3669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 3669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 3669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3669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3670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3670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 3670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3671 제29조(작업중지 등) ············ 3674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3675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3677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 3678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3679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 3681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3681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3682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3671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3671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 3673 제41조(특별자치시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3674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3677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 3680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3681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3671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 3672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3673 제41조(특별자치시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3674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3675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 3677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 3677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3679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 3680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3680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 3681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 3682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3683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 3683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 3684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 3684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3683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 368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3685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3685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3685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3685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3685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686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3686 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3686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3686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687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3687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688		
제39조(대집행) 3688		
제40조(보고 및 검사) 3689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3689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3689
제41조(청문) 3689		
제42조(위임 및 위탁) 3690	제5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3690	
제4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690		
제8장 별칙	제8장 별칙	
제44조(별칙) 3691		
제45조(별칙) 3691		
제46조(별칙) 3691		
제47조(별칙) 3691		
제47조의2(별칙) 3692		
제48조(양벌규정) 3692		
제49조(과태료) 3692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692	
부칙 3694	부칙 3694	부칙 369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11. 4. 28 법률 제10613호 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3. 18 법률 제12460호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13877호 2016. 5. 29 법률 제1423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1.28 법률 제15097호 2018.12.24 법률 제16081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26 법률 제16606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4호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6. 7.19 대통령령 제27348호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2.28 대통령령 제27919호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 5.21 대통령령 제28897호 2019.12. 3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2012. 4. 27 환경부령 제452호 개정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29 환경부령 제736호 2018. 5.29 환경부령 제761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4 환경부령 제83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珪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p> <p>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p> <p>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p> <p>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p> <p>1.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p> <p>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p> <p>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 7. 24.></p> <p>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p>	<p>9. 칸막이</p> <p>10. 배관재(가스킷, 패킹, 실링 등)</p> <p>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p> <p>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 삭제 (2015. 7. 24.)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계획</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p> <p>2. 시·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p> <p>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p> <p>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p> <p>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p> <p>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p>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p> <p>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p> <p>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9.></p> <p>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2018. 5.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p> <p>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p>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목개정 2020. 5. 26.]</p>	<p>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p> <p>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p> <p>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p> <p>2. 해당 광물질의 수입·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p>	<p>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p> <p>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p> <p>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p> <p>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p> <p>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p>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p>	<p>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를 말한다.</p> <p>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p> <p>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p>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증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기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기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기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기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작업증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증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증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증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기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p> <p>제11조(작업증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증지 명령서에 따른다.</p> <p>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증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기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증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기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p>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p>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p>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기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기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기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p> <p>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p> <p>2. 국립환경과학원</p>	<p>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조사 목적</p> <p>2. 조사 기관 및 내용</p> <p>3. 조사 기간 및 지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 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 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p>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p>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p> <p>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p>수 있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p>	<p>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p>수 있다.</p> <p>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저감(低減) 방안</p>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p>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p>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p> <p>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지정 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p>한다.</p> <p>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도지사”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p> <p>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 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p>	<p>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p> <p>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9., 2016.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p> <p>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2. 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p> <p>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각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p>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p> <p>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 건축물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p>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p> <p>제25조 [종전 제25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8. 5. 29.>]</p> <p>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p>	<p>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p>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p> <p>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5. 29.> [제25조에서 이동 <2018. 5. 29.>]</p> <p>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p> <p>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p> <p>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p> <p>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p>	<p><신설 2017. 12. 29., 2018. 5. 29.></p> <p>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p> <p>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증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⑦ 제5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p>	<p>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p>	<p>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증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증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증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증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p>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사용증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러</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p>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 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 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업자 <p>[제목개정 2018. 5. 29.]</p> <p>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9. 1.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p>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8. 5. 29.]</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p> <p>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p> <p>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p>	<p>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p>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p> <p>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p>	<p>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p> <p>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p> <p>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p> <p>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p> <p>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p> <p>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p>	<p>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p> <p>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을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p> <p>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②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7. 19.></p> <p>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p>	<p>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p>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p> <p>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p> <p>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p> <p>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p> <p>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에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7. 11. 28.></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와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p>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5. 29.]</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된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p> <p>[제목개정 2018. 5. 21.]</p>	<p>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 제1항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p> <p>[제목개정 2018. 5. 29.]</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8. 12. 24.></p>		<p>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나. 석면해체·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p> <p>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p> <p>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p> <p>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18. 12. 24.)]</p>	<p>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p> <p>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42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9. 12. 3.)]</p>	<p>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9.]</p> <p>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p>[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 12. 24.)]</p> <p>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 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p>[본조신설 2019. 12. 24.]</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완료 보고 <p>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p> <p>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증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면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8. 12. 24.)]</p>	<p>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증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p>[본조신설 2018. 5. 29.] [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 12. 24.)]</p> <p>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증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증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p>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증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p>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 5. 21.></p> <p>[제42조에서 이동 <2019. 12. 3.>]</p> <p>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p>	<p>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p> <p>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24.]</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p>	<p>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별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삭제 (2018. 5. 29.)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삭제 (2019. 12. 24.)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p> <p>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p>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⑤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p> <p>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p>	<p>호서식에 따른다.</p> <p>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p>제49조(정보망의 구축·운영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p>	<p>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p>	<p>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41조(청문)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p>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받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자 	<p>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4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p>	<p>제5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기능물질의 수입·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의2.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p>[제목개정 2019. 12. 3.]</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8장 벌칙</p> <p>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 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p>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p> <p>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11. 28.,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p>제8장 벌칙</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증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증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p> <p>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p> <p>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증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p>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p> <p>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p> <p>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p>	<p>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부칙 <제10613호, 2011. 4.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p>	<p>부칙 <제23754호, 2012. 4.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p>	<p>부칙 <제452호, 2012. 4.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출고하는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기능물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시설물 등은 그 제품·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건의 예에 따른다.</p> <p>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p>	<p>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과 유사한 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p>	<p>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p>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p> <p>④부터 ⑬까지 생략</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2460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59호, 2016. 1.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p> <p>부칙 (제1387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4232호,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6435호, 2015. 7.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p>	<p>부칙 (제736호, 2017. 12.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측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부칙 (제761호, 2018. 5.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측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측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측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측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p> <p>② 생략</p> <p>부칙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p> <p>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p> <p>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p> <p>⑬부터 ⑳까지 생략</p> <p>제40조 생략</p> <p>부칙 <제15097호, 2017. 11. 28.></p>	<p>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7348호, 2016. 7. 19.></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p> <p>④부터 <75>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p> <p>3.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p> <p>③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p> <p>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p> <p>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p> <p>2.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919호, 2017. 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머,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834호, 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081호, 201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부칙 <제28897호, 2018. 5.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시행일:2019. 12. 25.] 제2조</p> <p>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p> <p>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p> <p>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p> <p>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p> <p>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p>	<p>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230호, 2019. 12. 3.></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p> <p>부칙 <제16606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p> <p>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②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p> <p>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p>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p>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p> <p>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33조 생략</p> <p>부칙 <제30313호, 2019. 12.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별표

[별표]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3705
---	------

[별표] <개정 2017. 11. 28.>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기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법령명	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등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삭제 <2017. 11. 28.>
2. 「식품위생법」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4. 「의료기기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규정내용
5.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제받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검사를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8. 「화장품법」	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효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제21조 관련)	3709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3709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3711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3711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3713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3714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3715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3716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제21조 관련)

지정·고시 기준	세부 고려사항
1. 환경매체 중 석면 농도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가능성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 시료채취법(ABS: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경작지, 주거지역 분포) 현황 나. 해당 지역의 인구 분포(나이, 거주기간) 현황 다. 해당 지역의 기상(풍향, 풍속)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라. 과거에 광물이 채취되었거나 현재 광물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 석면 광산,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또는 채석장이 주변지역에 존재하는지 여부

[별표 1의2] <개정 2018. 5. 2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산업위생·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가목과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홀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경의실(更衣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μ m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라목의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0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
 -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의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의 경우
-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슬레이트 해체·제거 후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외에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아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5) 4)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처리의 경우
-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2)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4)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5)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6)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방법·주기 등과 측정 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설신고를 한 자
 -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추 것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공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0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일반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시설·장비 기준

-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
- 나. 장비기준

종류	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비고

-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모양·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3] <신설 2019. 12.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뀌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 1) 편광현미경(PLM)
- 2) X선 회절분석기(XRD)
-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별표 5] <개정 2019. 1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1호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1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3호	50	100	150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4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4호	50	100	15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6호	200	300	500
거.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5호	50	150	200
너.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6호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더.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7호	50	100	150
러.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500	700	1,500
머.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7호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3721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3722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3723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3725
[별표 5]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3725
[별표 5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3726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3726

[별표 1] (개정 2018. 5. 29.)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概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 1) 관할 행정구역(특별시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지리적·지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제시
-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시
-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별표 2] <개정 2019. 12. 20.>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1) 살수(撒水) 시설 2) 저수(貯水) 시설 3)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재질을 사용한다)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가. 굴착(掘鑿)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관리할 것
나. 토양의 제거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다. 야적(野積)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粉體狀) 물질(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구 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라. 가공·변형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마. 신고 내리기	1) 신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신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바. 수송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신고, 적재물이 적재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자동식 세륜 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6) 통행 차량의 운행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사. 야외 절단, 야외 연마, 야외 도장(塗裝),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건물 해체 작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를 것. 다만, 승인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 5. 29.>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1. 석면지도 그리기

- 가.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 다.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3호에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시료 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 자재	동일 물질 구역	길이(m)/ 면적(m ²)/ 부피(m ³)	석면 종류	석면 함유량 (%)	위해성 평가 점수	위해성 등급	관리 방안

비고

- 1. “시료 채취 위치”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 가. 지붕
 - 나. 천장
 - 다. 벽
 - 라. 바닥
 - 마. 배관
 - 바. 칸막이
 - 사. 문(출입, 창)

0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아. 건물 외부
- 자. 그 밖의 위치

2. “건축자재”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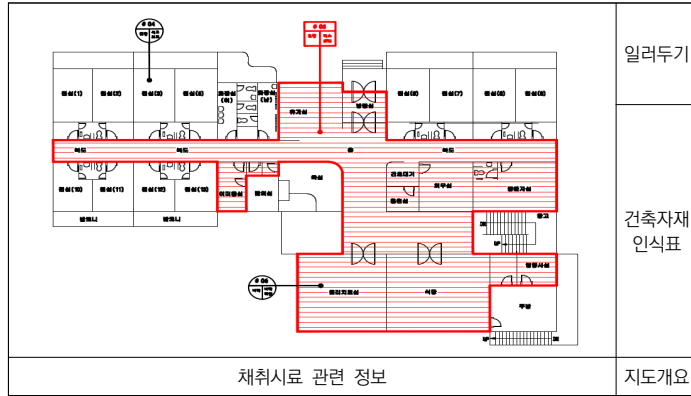
- 가. 슬레이트
- 나. 아스팔트 싱글
- 다. 타르
- 라. 분무재
- 마. 내화피복재
- 바. 텍스
- 사. 밤라이트
- 아. 큐비클
- 자. 단열재
- 차. 보온재
- 카. 바닥타일
- 타. 비닐장판
- 파. 파이프
- 하. 덕트
- 거. 개스킷
- 너. 유리섬유
- 더. 회반죽
- 러. 석면사·석면포
- 머. 이음재
- 버. 접착제
- 서. 실링제
- 어. 페인트
- 저. 콘크리트
- 쳐. 석고보드
- 커. 그 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0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가. 물리적 평가
- 나. 진동, 기류(氣流), 누수(漏水)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다.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지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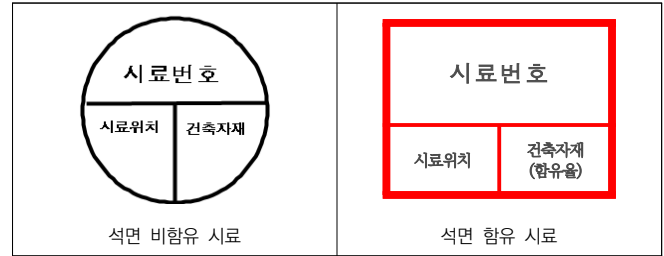
비고

1.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는 제2호에 따른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적는다.
2.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그림	건축자재명	그림	건축자재명	그림	건축자재명	그림	건축자재명
	지붕재		바닥재		배관재 (보온)		칸막이
	천장재		분무재 (뿜칠재)		배관재 (연결)		비석면
	벽재		내외피복재		기타물질		

<건축자재 인식표>



3.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별표 4] <개정 2018. 5. 29.>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用に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페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페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식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업체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000-000-0000

-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규 격
300cm(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별표 5의2] <신설 2019. 12. 2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제43조의2 관련)

1. 평가의 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나. 업무수행 체계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다. 업무수행 성과	1) 감리실적 2) 행정처분이력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되도록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	점수구간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89점 이하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79점 이하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69점 이하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2. 평가 방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3)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다.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제6편
환경보전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735	제1조(목적) 3735	제1조(목적) 3735
제2조(정의) 3735	제2조(정의) 3735	제2조(석면의 종류) 3735
제3조(적용범위) 3736	제3조(적용범위) 373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736		
제2장 구제급여 등	제2장 구제급여 등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3736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3737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3737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3738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3737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3738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3739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3739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3739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관리) 3740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3740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741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3741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3741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3741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3741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3742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3743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3743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3743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3744
제9조(요양급여) 3744		
제9조(요양급여) 3745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생활수당) 3745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3746	제15조 삭제 3746
제11조(장의비) 3746	제8조(장의비의 금액) 3746	
제11조(장례비) 3746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747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3747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3747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3748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3748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3748
제14조(특별유족인정) 3748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3749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3750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3750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3750
		제19조(장의비 지급 신청) 3750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 3751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3751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3751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3752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용 등) 3752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3752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3753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3753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3753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3753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3754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3754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3754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3754
제22조(수급권의 보호) 3755		
제23조(공과금의 면제) 3755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3755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3755	
제25조(기금의 용도) 3755		
제25조(기금의 용도) 3756	제16조(기금의 용도) 3756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3756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3757	제17조(기금의 운용) 3757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3757	제18조(기금운용계획) 3757	
제29조(차입금) 3757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3757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3758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3757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3758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3759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3759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3759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3759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3759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3760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3760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3761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3761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 3761	
제34조(준용) 3761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3762	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3762	제25조(심사청구) 3762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3763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3763	
	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3763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3764	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3764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3764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3764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3764	제26조(재심사청구) 3764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3765	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765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3765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3766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3766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766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3767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3767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767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43조(보고 등) 3768</p> <p>제44조(진찰요구 등) 3769</p> <p>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3771</p> <p>제46조(비밀의 유지) 3772</p> <p>제47조(조사 및 연구) 3772</p> <p>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3773</p> <p>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3774</p> <p>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3775</p> <p>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3776</p> <p>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3776</p> <p>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778</p> <p>제50조(기간의 계산) 3778</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3768</p> <p>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3769</p> <p>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3769</p> <p>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3769</p> <p>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3771</p> <p>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3771</p> <p>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3772</p> <p>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3774</p> <p>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3775</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3768</p> <p>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3770</p> <p>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3770</p> <p>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3772</p> <p>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3772</p> <p>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3773</p> <p>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3774</p> <p>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3776</p> <p>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3776</p> <p>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3776</p> <p>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3777</p> <p>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3777</p> <p>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3777</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정 2010. 3.22 법률 제10155호 개정 2010. 3.31 법률 제10193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4. 3.18 법률 제12461호 2015. 2. 3 법률 제13165호 2016.12.27 법률 제14488호 2017.11.28 법률 제15098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2호</p>	<p>제정 2010.11.19 대통령령 제22500호 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5.22 대통령령 제24541호 2014.12.31 대통령령 제25949호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기존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7.17 대통령령 제28184호 2018. 5.15 대통령령 제28887호 2018. 9.18 대통령령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p>	<p>제정 2010.12. 7 환경부령 제388호 개정 2013. 7.15 환경부령 제512호 2014. 1. 8 환경부령 제536호 2014.12.31 환경부령 제588호 2018. 5.24 환경부령 제758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석면(石棉)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종괴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p> <p>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p> <p>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p> <p>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구제급여 등</p> <p>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요양급여</p>	<p>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p> <p>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p> <p>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구제급여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구제급여 등</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p> <p>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p> <p>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p> <p>[시행일 : 2021. 7. 6.] 제5조</p> <p>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p> <p>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종괴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p> <p>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p>	<p>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애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p> <p>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5. 26.)</p> <p>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환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p>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 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⑩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올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p>	<p>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p> <p>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 5. 24.></p> <p>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p> <p>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p>	<p>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p>	<p>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후유증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p> <p>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7. 6.] 제7조</p> <p>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p> <p>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환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p>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5. 24.></p> <p>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p> <p>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p>		<p>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p> <p>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5. 24.></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종괴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p> <p>제9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p> <p>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환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9조</p> <p>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p> <p>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환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환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p> <p>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1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p> <p>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제1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p> <p>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p> <p>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1조</p>	<p>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종괴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p> <p>② 원발성 악성종괴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2. 31.></p> <p>제8조(장의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p>	<p>제15조 삭제 (2013. 7. 15.)</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p>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p>[전문개정 2018. 5. 15.]</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p> <p>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2조</p> <p>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p> <p>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p>	<p>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p>	<p>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p>	<p>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5.]</p>	<p>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폐기능 장애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 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p> <p>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19조(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의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 5. 15.)</p> <p>② 기술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p>	<p>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④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다. <개정 2018. 5. 15.></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 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환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5. 15.></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피인정자가 고의</p>		<p>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p> <p>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 5. 24.></p> <p>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p> <p>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p> <p>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p>	<p>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p>	<p>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p> <p>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p> <p>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4.></p> <p>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2018. 5. 24.></p> <p>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④ 삭제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20. 5. 26.></p> <p>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p> <p>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p>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p> <p>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p> <p>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⑤ 기술원의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p> <p>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p> <p>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p> <p>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p> <p>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p> <p>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p> <p>8.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p> <p>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1. 5.></p> <p>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p> <p>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p> <p>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p> <p>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p> <p>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p> <p>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p> <p>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p> <p>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p> <p>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p> <p>[시행일 : 2021. 7. 6.] 제25조</p> <p>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p>	<p>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p> <p>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p> <p>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p> <p>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p> <p>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p> <p>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29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p>	<p>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p>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p>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p> <p>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p> <p>③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p> <p>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p>	<p>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p> <p>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p> <p>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p>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p>	<p>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5.></p> <p>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p> <p>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p>	<p>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p> <p>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 <p>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정수급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 <p>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 <p>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8.></p> <p>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p> <p>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환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5. 15.></p> <p>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p> <p>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② 기술원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p>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注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p>③ 기술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26조(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p>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p>	<p>신청하여야 한다.</p> <p>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p> <p>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p>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⑦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5. 26.></p> <p>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p> <p>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p> <p>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p>	<p>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p>	<p>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2014. 12. 31.></p> <p>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8., 2014. 12. 31.></p> <p>[제목개정 2014. 12. 31.]</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p> <p>② 당사자는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 11. 28.></p> <p>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p> <p>②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p>	<p>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p>③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기술원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④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로 본다.</p> <p>③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② 제1항의 경우에 기술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1.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 기관 3. 삭제 (2016. 12. 2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p>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p>	<p>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p>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별 지역암 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p>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자격·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삭제 <2018. 5. 24.></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기술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p> <p>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p> <p>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p> <p>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p>	<p>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46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 2. 판정위원회의 위원 3.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p>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 	<p>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p> <p>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면·동·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정보</p> <p>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p> <p>[제목개정 2017. 11. 28.]</p> <p>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p> <p>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p> <p>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p> <p>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p> <p>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p> <p>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p> <p>4. 최근 3년간 석면질병 진단 실적 1부</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p>	<p>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18. 5. 24.]</p> <p>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p>[본조신설 2018. 5. 24.]</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p> <p>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p> <p>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p> <p>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8. 5. 15.]</p> <p>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18. 5. 15.]</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47조의5</p> <p>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p>		<p>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p> <p>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4.></p> <p>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5. 24.></p> <p>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p>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p>③ 삭제 <2018. 5. 24.></p> <p>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제5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p>	<p>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4. 12. 31.] <p>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p> <p>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따른다.</p> <p>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p> <p>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기술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7. 7. 17., 2018.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p>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p> <p>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p>[전문개정 2014. 3. 18.]</p> <p>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155호, 2010. 3.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64. 「석면피해구제법」</p>	<p>[본조신설 2012. 1. 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전문개정 2017. 7. 1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00호, 2010. 11.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88호, 2010. 12. 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p> <p>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한다.</p> <p>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p> <p>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p> <p>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p> <p>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인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부칙 (제24541호, 2013. 5.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5949호, 201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폐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폐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폐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p>	<p>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석면폐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폐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애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폐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p> <p>부칙 (제512호, 2013. 7. 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36호, 2014.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8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58호, 2018. 5.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폐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p> <p>부칙 <제10193호, 2010. 3. 31.> (부담금관리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국민건강보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26683호, 2015. 11. 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부칙 <제28184호, 2017. 7.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출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8887호, 2018. 5.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애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22조 생략</p> <p>부칙 <제12461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165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488호, 2016.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장외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외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외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p> <p>부칙 <제15098호, 2017. 11. 28.></p>	<p>㉮부터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p> <p>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p> <p>제33조 생략</p> <p>부칙 <제30760호, 2020. 6. 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③부터 ⑥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제4조(한국환경공단행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p>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p>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6. 석면안전관리 사업</p> <p>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p> <p>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p> <p>⑪부터 ⑰까지 생략</p> <p>제21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42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3789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3791
[별표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379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3792

[별표 1] (개정 2019. 7. 2.)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종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종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歴)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애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병 유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의심형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ies)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肺野, lung field)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형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bronchiolectasis)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es, GGO)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 외측으로부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호흡과 자세, 방사선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구분	촬영기준
조사량 및 조영제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 (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엷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대문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영상 작업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엷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2) 표준연산 사용 (3) 창 중심은 35하우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Unit), 창 간격은 350하우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우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우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 창조절-엷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3) 창 중심은 -700하우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1,500하우스필드 단위(HU)를 사용

다. 폐기능 장애의 판정기준

- 1) 폐기능 장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애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 가) 노력성 폐활량(FVC)
 - 나) 1초량(FEV1)
 - 다) 폐확산능(DLCO)
- 2) 폐기능 장애단계는 정상, 경도장애 및 고도장애로 구분한다.
-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애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폐기능 장애 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정상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경도장애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애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cm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cm 이상, 두께가 3mm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애단계가 고도장애인 경우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1. 원발성 악성종피종 및 원발성 폐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개정 2018. 5. 15.>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나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7조의4 제1항제5호	지정취소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05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802	제1조(목적) 3802	제1조(목적) 3802
제2조(정의) 3802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3802
		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3803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3803
		제4조(자동차의 종류) 3803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3803
		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계의 종류) 3803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804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3804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3804	
제3조(상시 측정) 3805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3805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805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805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3806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380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806		
제6조 삭제 3807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3807		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3807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3807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3808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3808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3808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3810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3809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3811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3810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3811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3812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3812
제13조 삭제 3812		제13조 삭제 3812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3812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3812
제15조(개선명령) 3813		제15조(개선기간) 3813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3813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3814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3814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3814		제17조 삭제 3815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3815
제19조(환경기술인) 3815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3815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815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3816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3816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3817	제3조(충간소음 관리 등) 3817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3817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3817
제22조의2(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3818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3819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3820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3820		제22조의2(생활소음·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3820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3821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3821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3821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3821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3821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3821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3822		제26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3822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3823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3823		제28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3823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3823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824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824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824	제30조(인증의 신청) 3824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3824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3824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3825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3825 제33조(인증서의 교부) 3826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3826 제34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3827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3827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3827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3829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3827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3828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3829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3829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3830 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3830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3828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3829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3831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와 신고절차) 3831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3832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3832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3832
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3828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3829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3829		
제34조(인증의 취소) 3830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3831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3832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3833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3833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3833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3833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3833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3834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3833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3835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3834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3834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3835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3835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3835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3836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3836
<p>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개정 2009. 6. 9.></p>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3836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3836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3836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3837	
<p>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p>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3837		
<p>제7장 확인검사대행자</p>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3837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3837
제42조(결격 사유) 3839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3837
제43조(등록취소 등) 3840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3838
<p>제8장 보칙</p>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3838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3839
		제55조(검사수수료) 3839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3840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3840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3840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3841 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3842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3843 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3845 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3845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3845 제60조의2(저소음표지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3846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3846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3846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3846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3847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3847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3847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3848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3848 제65조(교육 계획) 3848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3849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3849 제68조(지도) 3849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3850 제70조(교육 경비) 3850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3850 제72조(소음·진동 검사기관) 3851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3846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3852	제73조(행정처분기준) 3852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3847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3848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3848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3850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3851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3852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3852		
제51조(청문) 3852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3853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3853
제53조(수수료) 3853		제74조의2 삭제 3853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3854	제12조(권한의 위임) 3854	제75조(수수료) 3853
	제13조(보고) 3855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3855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3855	
제5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857		제76조(규제의 재검토) 3855
제9장 별칙		
제56조(별칙) 3857		
제57조(별칙) 3857		
제58조(별칙) 3858		
제59조(양별규정) 3859		
제60조(과태료) 3859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3859	
제60조(과태료) 3861		
부칙 3862	부칙 3862	부칙 3862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07. 4.11 법률 제8369호 개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6. 9 법률 제9770호 2010. 4.12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3. 3.22 법률 제11669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07호 (대기환경보전법) 2013. 8.13 법률 제12075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18 법률 제12462호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2.12 법률 제15191호 2018.10.16 법률 제15834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범용영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을 위한 법률) 2020.12.22 법률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3호</p>	<p>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2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3호 2009. 2.13 대통령령 제21323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9.17 대통령령 제22387호 (공해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산림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3.18 대통령령 제24407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9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6호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 9.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7 대통령령 제30248호</p>	<p>제정 2007. 9.13 환경부령 제247호 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현·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10 환경부령 제2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69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 1. 5 환경부령 제317호 2009. 1.14 환경부령 제321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2011. 3.31 환경부령 제409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2.30 환경부령 제436호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 4 환경부령 제523호 2014. 1. 6 환경부령 제535호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4. 2.14 환경부령 제54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번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1. 2 환경부령 제587호 2015.10.30 환경부령 제618호 2015.12. 8 환경부령 제625호 2015.12.16 환경부령 제627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8 환경부령 제674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9. 8 환경부령 제711호 2017.12.29 환경부령 제734호</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p>	<p>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4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p> <p>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p> <p>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p> <p>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 2. 14.]</p> <p>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6. 30.) [제2조에서 이동 <2010. 6. 30.>]</p> <p>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p> <p>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p> <p>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p> <p>제5조의2(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의 거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5.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 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p>	<p>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p> <p>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 1.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3조(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2.></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p>	<p>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9.]</p>	<p>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측정망의 설치시기</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騒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14. 1. 14., 2017. 12. 12.></p>		<p>2. 측정망의 배치도</p> <p>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p> <p>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p> <p>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p> <p>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p> <p>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 삭제 (2009.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09. 6. 9.)</p> <p>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p> <p>[전문개정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7조</p> <p>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3. 9. 9.,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사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p>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2011. 12. 8., 2016. 8. 11., 2017. 9.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p>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p>	<p>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p> <p>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p> <p>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p> <p>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p> <p>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4. 2. 11.></p> <p>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p>	<p>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p> <p>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1. 3. 31., 2014. 1. 6., 2016. 12.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10. 6. 28., 2011. 11. 16., 2013. 9.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p>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9. 6. 9.></p> <p>③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9. 6. 9.></p> <p>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가 스스로가 설계·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p>		<p>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p> <p>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p> <p>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p> <p>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p> <p>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p> <p>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2.></p> <p>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삭제 <2009. 6. 9.></p> <p>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p> <p>제13조 삭제 (2010. 6. 30.)</p> <p>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작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제15조(개선기간)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09. 6. 9.>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 <2009. 6. 9.>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p>제18조(위반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증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p>		<p>제16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p> <p>②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p> <p>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p>		<p>제17조 삭제 <2010. 6. 30.></p> <p>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p>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p>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p> <p>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p>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p>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p>	<p>제3조(충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11.]</p>	<p>진동</p> <p>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p> <p>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p> <p>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p>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p>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p> <p>⑤ 삭제 <2009. 6. 9.></p>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p>		<p>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p> <p>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p> <p>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p> <p>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p> <p>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p> <p>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p> <p>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p> <p>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p> <p>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p> <p>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p> <p>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p>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22조</p> <p>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p> <p>[본조신설 2009. 6. 9.]</p>		<p>2007. 12. 31., 2010. 6. 30., 2014. 1. 6.)</p> <p>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p>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p>⑥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p> <p>⑦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p>		<p>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p> <p>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p> <p>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p>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p>제22조의2(생활소음·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제목개정 2009. 6. 9.]</p> <p>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12.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 6. 9.></p> <p>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p>		<p>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09. 6. 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6. 9.>]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p>		<p>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9. 12. 31.>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6. 30.>]</p> <p>제26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9. 12. 31.>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제목개정 2009. 6. 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6. 9.>]</p> <p>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12. 22.></p> <p>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p>		<p>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목개정 2010. 6. 30.]</p> <p>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6. 30.>]</p> <p>제28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p> <p>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2008. 3. 21., 2014. 1. 14.)</p> <p>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p> <p>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p>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p>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p>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서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p>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제30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p>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p>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9. 7.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 그 밖에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p>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p>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2010. 6. 30.)</p> <p>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p>		<p>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5.></p> <p>②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30.></p> <p>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p> <p>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p>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 6. 9.]</p> <p>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p>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30.></p> <p>제34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치예산서 <p>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6. 30.]</p> <p>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9. 6. 9.]</p> <p>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제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p> <p>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p>	<p>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p>	<p>30.)</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p>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와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p> <p>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p> <p>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p>	<p>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p> <p>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제34조(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자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 		<p>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p>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증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증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p> <p>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p> <p>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와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 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p>		<p>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p> <p>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들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p> <p>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은 별표 14의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p> <p>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와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p>	<p>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p>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p> <p>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p> <p>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들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p>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p>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할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떼어지지 아니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p>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2.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p> <p>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p> <p>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4. 2. 14.></p> <p>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차종·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p> <p>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개정 2009. 6. 9.>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CEPNI)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p> <p>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09. 6. 9.]</p> <p>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p> <p>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防音林)·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 6. 9.></p> <p>제7장 확인검사대행자</p> <p>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p>	<p>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p> <p>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_{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_{dB(A)}] 61로 한다. <개정 2017. 9. 19.></p> <p>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p> <p>[시행일 : 2023. 1. 1.] 제9조제1항</p>	<p><개정 2017. 9. 8.></p> <p>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p> <p>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p> <p>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2. 14.></p> <p>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p> <p>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별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별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3. 8. 13., 2017. 1. 17.,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 		<p>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p>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p> <p>제55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3. 31.]</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나지 아니한 자</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제8장 보칙</p> <p>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p>	<p>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p>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4. 28., 2018. 10. 16.></p>	<p>2. 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본조신설 2010. 6. 28.]</p>	<p>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p>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p>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p>[전문개정 2010. 6. 30.]</p> <p>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들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0. 5. 26.></p> <p>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들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p>		<p>6. 30.)</p> <p>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p>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p>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p>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p> <p>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p> <p>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p> <p>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p> <p>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p> <p>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8. 13.></p> <p>⑨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p>		<p>④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2. 14.]</p> <p>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 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평가할 것</p> <p>5. 기계별 가동조건 : 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p> <p>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值)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평가할 것 <p>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值)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평가할 것</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6.></p> <p>제59조(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1. 6., 2014. 2. 14.></p> <p>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4. 1. 6.></p> <p>[제목개정 2014. 1. 6.]</p> <p>제59조의2(확인서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6.]</p> <p>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3. 22.]</p> <p>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p>	<p>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3. 3.</p>	<p>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 6., 2014. 2. 14.></p> <p>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3. 31.]</p> <p>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p>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4. 1. 6.]</p> <p>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p>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p>	<p>18., 2019.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p>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p>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p> <p>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騒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p> <p>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3. 22.]</p> <p>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6.]</p> <p>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65조(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p> <p>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p> <p>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p> <p>5. 교재 편찬계획</p> <p>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p> <p>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1. 환경기술인 과정</p> <p>2. 방지사설기술요원 과정</p> <p>3. 측정기술요원 과정</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p>④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 		<p>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14.,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자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자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의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은 자</p> <p>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p>		<p>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p> <p>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p> <p>7.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등의 지도·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p> <p>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p> <p>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2014. 12. 24.,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p>제72조(소음·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p>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p>	<p>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진동기준의 조정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p>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 14.]</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p> <p>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p> <p>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p> <p>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p> <p>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p> <p>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 6. 9.></p>		<p>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진동 현황 2.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p>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74조의2 삭제 <2012. 12. 31.></p> <p>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5.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p>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9. 2. 13.>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전문개정 2010. 6.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p> <p>제13조(보고) ①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4. 2. 11.></p> <p>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 2. 13., 2009. 12. 24., 2010. 6. 28., 2014. 2. 11., 2019.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p>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2. 13., 2010. 6. 28., 2012. 7. 20.></p> <p>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8.></p> <p>[제목개정 2010. 6. 28.]</p> <p>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p>	<p>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p>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3.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2014년 1월 1일 7. 제25조 및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 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자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p>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30.]</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p> <p>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한 자</p> <p>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금지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p> <p>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p> <p>2. 삭제 (2009. 6. 9.)</p> <p>3. 삭제 (2009. 6. 9.)</p> <p>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p> <p>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60조에서 이등,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 6. 9.)]</p> <p>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6. 9., 2013. 3. 22., 2018. 10.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p>	<p>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9. 12. 17.></p> <p>[전문개정 2009. 1.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4. <p>[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6.</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9., 2018. 10. 1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09. 6. 9.)]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6. 9., 2013. 3. 22., 2018. 10.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p>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p> <p>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p> <p>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p> <p>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 6. 9.)]</p> <p>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p> <p>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p> <p>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p> <p>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09. 6. 9.)] [시행일 : 2021. 7. 6.] 제60조</p> <p>부칙 <제8369호, 2007. 4. 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p>	<p>부칙 <제20242호, 2007. 9.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p>	<p>부칙 <제247호, 2007. 9.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p> <p>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p>	<p>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p> <p>제4조(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제2조(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청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검사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자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p> <p>제7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p> <p>제8조(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9조(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검사대행자로 본다.</p> <p>제10조(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11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p> <p>제12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p>	<p>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p> <p>⑥ 부터 ⑯ 까지 생략</p> <p>부칙 (제21253호, 2009. 1. 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323호, 2009. 2. 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⑪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⑧ 부터 ⑰ 까지 생략</p> <p>부칙 (제261호, 2007. 12. 1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p> <p>부칙 (제269호, 2007. 12. 31.)</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p> <p>제13조(차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p> <p>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④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p> <p>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p>	<p>부칙 <제22224호, 2010. 6.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다목, 제4호사목1) 및 2)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2호차목(6)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5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p> <p>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④ 부터 ⑩ 까지 생략</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p> <p>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⑦부역거레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p> <p>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p> <p>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p> <p>⑪신항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p> <p>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p>	<p>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진동규제법령”을 “소음·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p> <p>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p>	<p>부칙 <제317호, 2009.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21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양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p> <p>⑬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p> <p>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p> <p>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⑯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p> <p>⑰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p> <p>⑱주한미군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사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p> <p>⑳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p>	<p>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⑯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238호, 2010. 9.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p>	<p>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⑥ 광상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p> <p>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③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p>한다.</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p> <p>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p> <p>④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⑭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9770호, 2009. 6. 9.></p>	<p>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p> <p>⑯부터 (54)까지 생략</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⑨부터 ⑲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407호, 2013. 3. 1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⑯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⑰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⑱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⑲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진동관리법”</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p> <p>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㉑부터 ㉒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4719호, 2013. 9. 9.)</p> <p>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66호, 2014. 2.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제작차의 소음검사 권한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나 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409호, 2011. 3.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436호, 2011.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p> <p>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p> <p>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p> <p>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p> <p>⑫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⑬부터 <75>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8319호, 2017. 9. 1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⑤부터 ⑬까지 생략</p> <p>부칙 <제523호, 2013. 11. 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35호, 2014. 1.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4호, 2014. 2.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p> <p>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소음·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회의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p>	<p>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248호, 2019. 12. 17.)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p> <p>부칙 (제546호, 201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배출시설"로 한다.</p> <p>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⑯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p> <p>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p> <p>⑱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⑲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⑩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87호, 2015. 1. 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18호, 2015. 10.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25호, 2015. 12. 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27호, 2015. 12. 1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628호, 2015. 12. 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74호, 2016. 7. 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진동관리법」</p> <p>㉒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㉓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㉔ 신한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㉖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㉗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711호, 2017.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34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p> <p>⑨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4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진동규제”를 “소음·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㉖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㉗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p> <p>㉘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㉙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㉚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p> <p>제3조(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 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들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p> <p>제4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에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㉞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p> <p>㉟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㊱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㊲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0252호, 2010. 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p> <p>⑦ 부터 ⑮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p> <p>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⑦부터 ⑬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69호, 2013. 3. 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07호, 2013. 7. 16.>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075호, 2013. 8. 13.></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2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05호, 2016. 1. 19.〉</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⑭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⑤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91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834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p> <p>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자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자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p> <p>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p> <p>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자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자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p> <p>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p> <p>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자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p>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p>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p> <p>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p> <p>④부터 <53>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17843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388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3886

[별표 1] <개정 2019. 12. 17.>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춘 것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춘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생장치 1대 이상
2.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춘 것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기준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춘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3)과 4)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4)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System) 1대 이상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2] <개정 2019. 1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	100	140	200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140	200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8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카.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500	1,000	2,000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7호	10	10	10
하.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거.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	75	150	300
너.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60	80	100
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9호	60	80	100
러.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3891
[별표 2] 소음·진동방지사설등[제3조관련]	3892
[별표 3]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3893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3895
[별표 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3896
[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3897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3898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3898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3899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3900
[별표 1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3900
[별표 12]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3901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3902
[별표 13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2 관련)	3905

[별표 14]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3906
[별표 14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3906
[별표 14의3]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3907
[별표 14의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제39조의5 관련)	3908
[별표 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3909
[별표 1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3911
[별표 17] 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	3912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3912
[별표 18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3913
[별표 19] 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3914
[별표 19의2] 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3914
[별표 19의3]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3915
[별표 20]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3915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3916

[별표 1] <개정 2019. 12. 3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 2) 7.5kW 이상의 송풍기
-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6) 7.5kW 이상의 탈사기
-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22.5kW 이상의 변속기
- 9) 7.5kW 이상의 기계체
-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렌트 및 아스팔트프렌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 14) 15kW 이상의 제재기
-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옴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캐스팅기를 포함한다)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선전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옴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옴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옴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3) 자동제병기
 - 4) 제관기계
 -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 7) 방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위 기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위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위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위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운전기
 -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 가. 소음방지시설
 - 1) 소음기
 - 2) 방음덮개시설
 -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4) 방음외피시설
 - 5) 방음벽시설
 - 6) 방음터널시설
 -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 8) 흡음장치 및 시설
 -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나. 진동방지시설
 -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2) 방진구시설
 -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 가. 소음기
 - 나. 방음덮개시설
 - 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라. 방음외피시설
 - 마. 방음벽시설
 - 바. 방음터널시설
 - 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
 - 아. 흡음장치 및 시설

자. 가.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나. 방진구시설

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중량자동차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이상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오토바이가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승용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승용4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화물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화물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하며,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4. 2015년 12월 8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중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엔진배기량이 5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1.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19. 12. 2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kW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별표 5] <개정 2019. 12. 31.>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는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충격을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5.12.22.>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19. 12. 31.>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참고

-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한다.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방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 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 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 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 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제21조제1항 관련)

1.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압입식 향타향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크(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별표 10] <개정 2019. 12.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 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의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인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68	58
	진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73	63
	진동 (dB(V))	70	65

비고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인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70	60
	진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75	65
	진동 (dB(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2] <개정 2019. 12. 3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별표 13] <개정 2016. 7. 28.>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1. 제작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 (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경자동차	가		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나		76 이하	100 이하	
승용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77 이하	100 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	103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 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dB(A) 이하로 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 (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경자동차	가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승용3			77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80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9인승의 자동차는 승용2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한다.
4.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화물2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톤 이상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dB(A)를 가산하고,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1 및 승용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dB(A) 이하로 한다.
-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서에서의 측정 결과에 의한 기준을 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 이륜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나무의 기준을 적용한다.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자동차	승용1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77 이하			
	승용3	77 이하	78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화물자동차	화물1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78 이하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가	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가속주행소음 중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 가속주행소음 중 “가”는 참고 3.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무의 기준을 적용한다.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경자동차	대상자동차			모든 자동차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 소음 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별표 13의2] <신설 2010.6.3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2 관련)

1. 검사장비

장비명	기준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다. 회전속도계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1km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	1개 이상
마. 기상관측장비	1식 이상

2. 기술인력

자격	기준
가. 일반기계기사 1급, 자동차검사기사 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및 대기환경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 격소지자	1인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 전자기능사 2급 이상 및 환경기능사의 기술자격소지자	2인 이상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별표 14]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제36조제1항 관련)

인력	장비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소음·기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 의 「국가기술표준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1명	1.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만,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IEC 60651에서 정한 Type I을 만족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2.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3. 회전속도계 1대 4.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료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 또는 1km 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

참고

1.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검사·인증시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의2] <신설 2019. 12. 3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소음허용기준 [dB(A)]	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 (추가하중 타이어)]
가. 185 이하	70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나. 185 초과 245이하	71	
다. 245 초과 275이하	72	
라. 275 초과	74	

2.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구 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 [dB(A)]	비 고
가.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용 타이어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4	
나.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일반용 타이어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타이어		
	특수용 타이어	75	

비고

1.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타이어의 상세한 종류와 소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2.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란 카카스(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가 표준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3.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4. "특수용 타이어"는 도로 위 또는 밖에서 사용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타이어로서 이를 나타내는 "MPT, ET, ML 등"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5. "견인 타이어"란 끌어서 당기는 기능이 우수한 타이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차축에 주로 장착하는 "Traction"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4의3] <신설 2019. 12. 31.>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

(제39조의2제3항관련)

1. 장비기준

장비	수량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2대 이상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 200Hz 이상 500Hz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2) 1,000Hz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1대 이상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1개 이상
마. 대기 및 노면 온도계, 풍속계, 공기압감지기, 휠하중저울	1식 이상

비고

1. 나목의 1) 및 2)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를 각각 보유하는 경우 나목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라목의 시험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마목 중 대기 및 노면 온도계는 $\pm 1^{\circ}\text{C}$ 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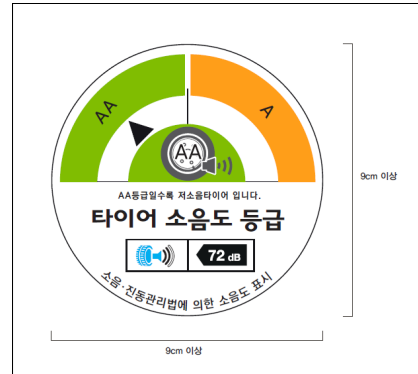
자격 요건	인원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자격 요건	인원
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음·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음·진동기술사, 일반기계기술사, 자동차검사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음·진동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소음·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인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별표 14의4] <신설 2019. 12. 31.>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제39조의5 관련)

1. 자동차용 소음도 표시의 기준 및 내용
 가. 소음도 표시



- 색상
 - AA - 초록색
 - A - 주황색
- 글씨 : 검정색(굵은 글씨체)
- 바탕 : 흰색
- 소음크기 표시 : 청색

비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타이어제작자등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나뭇잎에 따른 소음도 등급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위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소음도의 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 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dB
A 등급	소음허용기준 -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비고

1. "소음도"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를 말한다.
2.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말한다.

2. 소음도의 표시 방법

- 가. 타이어제작자들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품으로 출고되어 해당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에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해야 한다.
- 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타이어제작자등으로부터 직접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등은 타이어 소음도 정보 등을 자동차제작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다. 타이어제작자등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별표 15]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제1항 관련)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소음도 검사 전 확인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가. 소음덮개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다. 경음기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2. 소음도 측정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자동차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자동차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 중량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경적소음측정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측정치의 산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dB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dB 이상 10dB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dB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dB(A), dB(C)								
		<table border="1"> <tr> <td>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td> <td>3</td> <td>4-5</td> <td>6-9</td> </tr> <tr> <td>보정치</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참고

1.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음뎀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6] <개정 2016. 12. 30.>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구분	시설·장비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착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2. 확인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착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8의2] <개정 2019. 12. 31.>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종류	정격출력 (단위: kw)	2014. 2. 14.부터	2018. 10. 1.부터	2020. 10. 1.부터	
1. 굴삭기	19 이상 225 이하	83+[11×log(출력)]	83+[11×log(출력)]	80+[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3+[11×log(출력)]	80+[11×log(출력)]	80+[11×log(출력)]	
2. 다짐 기계	진동형	8 이하	108	105	
		8 초과 70 이하	109	106	
	비진동형	70 초과	89+[11×log(출력)]	86+[11×log(출력)]	86+[11×log(출력)]
		55 이하	104	101	101
3. 로더	바퀴형	55 초과 55 이하	104	101	
		55 초과 225 이하	85+[11×log(출력)]	85+[11×log(출력)]	82+[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5+[11×log(출력)]	82+[11×log(출력)]	82+[11×log(출력)]
	트랙형	19 이상 55 이하	106	103	103
		55 초과 225 이하	87+[11×log(출력)]	87+[11×log(출력)]	84+[11×log(출력)]
		225 초과 500 미만	87+[11×log(출력)]	84+[11×log(출력)]	84+[11×log(출력)]
4. 공기	15 이하	99	97	97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단위: dB(A)]		
압축기	15 초과	95+[11×log(출력)]	90+[11×log(출력)]	90+[11×log(출력)]
5. 발전기	2 이하	-	-	95+[log(출력)]
	2 초과 10 이하	-	-	96+[log(출력)]
	10초과 400미만	-	-	95+[log(출력)]
6. 콘크리트 절단기	휴대용	-	-	115
	바퀴형	-	-	109

[별표 19] <개정 20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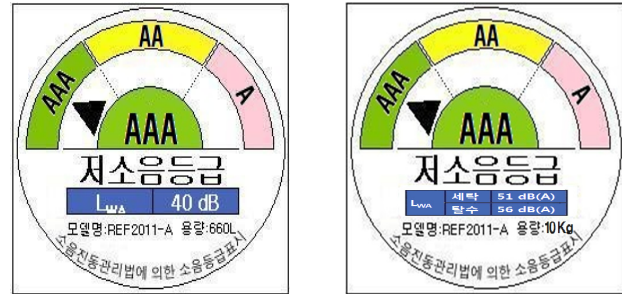
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 크기: 80mm×80mm(기계의 크기와 부착 위치에 따라 조정합니다)
- 색상: 회색판에 검은색 문자를 씁니다.
- 재질: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금속성이나 이와 유사한 강도의 재질이어야 합니다.
- 부착방법: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별표 19의2] <신설 2014.1.6>

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진공청소기>

<세탁기>

- 크기: 60mm×60mm(기계의 크기와 부착 위치에 따라 조정합니다)
- 재질: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는 코팅된 종이 재질이어야 합니다.
- 부착방법: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기계 작동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별표 19의3] <신설 2014.1.6>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종류	저소음기준(dB(A))					
	A		AA		AAA	
진공청소기	73 초과~76 이하		70 초과~73 이하		70 이하	
세탁기	세탁	탈수	세탁	탈수	세탁	탈수
	55 초과 ~ 58 이하	60 초과 ~ 63 이하	52 초과 ~ 55 이하	57 초과 ~ 60 이하	52 이하	57 이하

[별표 20]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제63조 관련)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58조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소음도 검사 신청 서류
 - 나. 소음도 검사기록부
 - 다. 소음도 검사 관련 서류

[별표 21] <개정 2019. 12. 3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15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7)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7)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6)은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3)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 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 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 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 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준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2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 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4)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 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5)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6)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7)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의3 제4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3)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 제1항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마. 타이어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4조의3 제1항	시정명령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3 제3항	제작·수입·판매·사용금지 명령			

바.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3조제2호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43조제3호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4호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제5호	업무정지 6일	등록취소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제7호				
가)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나)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사.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1호	지정취소		
2) 소음도 검사기관이 시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0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3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3925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3925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3925
부칙	392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59호, 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3929
-----------------------------	------

[별표]

충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충간소음의 구분		충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 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 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충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제6편
환경보건

07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3937	제1조(목적) 3937	제1조(목적) 3937
제2조(정의) 3937		제2조(오염물질) 3938
제3조(적용대상) 3938	제2조(적용대상) 393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94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3940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941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3941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3941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3942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3942	
제4조의6(측정망 설치) 3943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3943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3943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3944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3944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3944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3944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944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3945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3945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945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946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946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3946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3947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3946
제8조 삭제 3947		제6조 삭제 3947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3947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947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948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949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949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3950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영 권고 기준 등) 3950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950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950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3951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명령) 3951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3951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3952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3952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952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3952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 3953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3953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3954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3954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3954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3955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3955
	제8조 삭제 3955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3955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3956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956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3957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958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3958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959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3959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3959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3959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3960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960		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3960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3960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3961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3962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961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3962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3962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3962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963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963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3962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3963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964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965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3965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3965		제12조(보고) 3965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3966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3967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3967
제13조의2(청문) 3967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3968	제13조(권한의 위임) 3968	
	제14조(업무의 위탁) 3968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96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396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3969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3969		
제14조(벌칙) 3970		
제15조(양벌규정) 397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971	
제16조(과태료) 3971		
부칙 3973	부칙 3973	부칙 3973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1996.12.30 법률 제5224호 개정 2003. 5.29 법률 제6911호 2005. 5.31 법률 제7562호 2006. 9.27 법률 제8011호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2.30 법률 제8155호 2007.10.17 법률 제8654호 (영유아보육법) 2010. 5.25 법률 제10312호 2011. 6. 7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3. 3.22 법률 제11665호 2013. 6.12 법률 제11881호 2014. 1. 7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5.12.22 법률 제13601호 2016. 3.29 법률 제14113호 (공항공시법) 2016.12.27 법률 제14486호 2017.12.12 법률 제15195호 2018. 4.17 법률 제15583호 2019. 4. 2 법률 제16307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정 법률)</p>	<p>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4호 개정 2004. 5.25 대통령령 제18402호 2007. 3.23 대통령령 제1995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5호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 3.18 대통령령 제25262호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2017. 6.27 대통령령 제28158호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1호 2020. 3.31 대통령령 제30592호</p>	<p>제정 1998. 1.26 환경부령 제36호 개정 2004. 5.28 환경부령 제156호 2005. 7. 1 환경부령 제17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12.30 환경부령 제189호 2006. 3.13 환경부령 제201호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64호 2008. 2.27 환경부령 제279호 2008.10.10 환경부령 제302호 2011.12.19 환경부령 제435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3.20 환경부령 제550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18 환경부령 제620호 2016.12.22 환경부령 제681호 2018.10.18 환경부령 제773호 2019. 2.13 환경부령 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p> <p>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12. 2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설을 말한다.</p> <p>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p> <p>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p> <p>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p> <p>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p>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 	<p>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p> <p>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p> <p>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p> <p>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p> <p>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p> <p>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p> <p>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p> <p>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p> <p>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학원</p> <p>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 내시설로 한정한다)</p> <p>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 <p>19. 실내주차장</p> <p>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p> <p>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p> <p>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p> <p>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 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p> <p>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p> <p>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p>	<p>미널</p> <p>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p> <p>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p> <p>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p> <p>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p> <p>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p> <p>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p> <p>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p> <p>13. 모든 대규모점포</p> <p>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p> <p>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p> <p>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p> <p>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p> <p>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p> <p>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 장은 제외한다)</p> <p>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p> <p>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p> <p>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p> <p>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p> <p>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p> <p>② 삭제 <2016. 12. 20.></p> <p>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p> <p>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p>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p> <p>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p> <p>[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5. 12. 22.]</p> <p>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 [중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p>	<p>"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5. 12. 22.>]</p> <p>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p>	<p>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p> <p>[본조신설 2014. 3.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5. 12. 22.>]</p> <p>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p>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p> <p>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6. 12. 20.]</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4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2.>]</p> <p>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p> <p>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 [본조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19. 4. 2.] [시행일 : 2021. 4. 1.] 제4조의7제3항</p>		<p>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① 법 제4조의7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p> <p>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본조신설 2016. 12. 22.]</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7.]</p>	<p>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p>[본조신설 2016. 12. 20.] [중건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 12. 20.)]</p> <p>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2. 산업통상자원부 	<p>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2.]</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p> <p>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p>	<p>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p> <p>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p> <p>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조정할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7.]</p> <p>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p>	<p>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0. 5. 26.></p> <p>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p> <p>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들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15. 12. 22., 2017. 12. 12.></p> <p>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p>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p>[본조산설 2020. 3. 31.]</p>	<p>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p> <p>제8조 삭제 <2006. 12. 30.>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2. 2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p>	<p>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본조신설 2016. 12. 20.></p>	<p>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20.></p> <p>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p> <p>제6조 삭제 <2007. 12. 31.>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p> <p>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와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5. 26.></p> <p>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5. 31., 2016. 12. 27.></p>		<p>2016.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악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p>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p> <p>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p> <p>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6. 12. 27.></p> <p>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2.]</p>		<p>[본조신설 2005. 12. 30.]</p> <p>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미세먼지(PM-2.5) 2. 이산화탄소 <p>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p>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p>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p> <p>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영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p>[본조신설 2020. 4. 3.]</p> <p>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p> <p>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p> <p>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6. 12. 30.]</p>		<p>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p> <p>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2020. 4. 3.]</p> <p>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0., 2016. 12. 22.></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착제 2. 페인트 	<p>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p>	<p>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p> <p>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 12. 22.></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0., 2016. 12. 22.></p> <p>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p> <p>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 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p>	<p>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p> <p>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6.></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p>	<p>[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p> <p>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2020. 5. 26.></p> <p>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 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0.]</p> <p>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p>	<p>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p> <p>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개정 2018. 4. 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p>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8. 4. 17.]</p>	<p>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4.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8조 삭제 (2018. 10. 16.)</p>	<p>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 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p> <p>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본조신설 2016. 12. 22.] [제목개정 2018. 10. 18.]</p> <p>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p> <p>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속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4. 17.]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8. 4. 17.)]</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8.] [중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10으로 이동 (2018. 10. 18.)]</p> <p>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p>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8.] [중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11로 이동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18. 4. 17.]</p> <p>[중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8로 이동 (2018. 4. 17.)]</p> <p>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1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p> <p>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9로 이동 (2018. 4. 17.)]</p> <p>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와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18. 4. 17.)]</p> <p>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p>		<p>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p> <p>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본조신설 2018. 10. 18.]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18. 10. 18.)]</p> <p>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p> <p>[본조신설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불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8. 4. 17.]</p> <p>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대상·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1조의2에서 이동 <2018. 4. 17.>]</p> <p>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p> <p>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6. 12. 22.]</p> <p>[제10조의6에서 이동 <2018. 10. 18.>]</p> <p>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 10. 1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의3에서 이동 <2018. 4. 17.>]</p> <p>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8. 4. 17.>]</p>	<p>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9 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0.]</p>	<p>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 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들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5에서 이동 (2018. 4. 17.)]</p> <p>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18. 4. 17.,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p>	<p>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 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p>[본조신설 2016. 12. 20.]</p>	<p>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 기준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벵크렐 이하 <p>[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p> <p>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4. 3.></p> <p>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10. 18.></p> <p>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p> <p>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2., 2018. 10. 18.></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2020. 5. 26.></p> <p>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p>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3.></p> <p>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p>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경우</p> <p>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④ 삭제 (2018. 4. 17.)</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속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속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p>	<p>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본조신설 2016. 12. 20.]</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2.]</p> <p>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p> <p>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p> <p>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정 2015. 12. 22., 2018. 4.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2015. 12. 22., 2019. 4. 2.></p> <p>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2015. 12. 22., 2019. 4. 2.></p> <p>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p> <p>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3.></p> <p>[전문개정 2016. 12. 22.]</p> <p>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2., 2018. 4. 17., 2019. 4. 2., 2020. 5. 26.></p> <p>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2018. 4. 17., 2019. 4. 2.></p> <p>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6. 12., 2018. 4. 17., 2019. 4. 2.></p> <p>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p>한다. <개정 2005. 7. 22., 2005. 12. 30., 2014. 3. 20., 2016. 12. 22., 2018. 10. 18.,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p>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0. 18.,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0.]</p> <p>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10. 18.></p> <p>[본조신설 2016. 12. 22.]</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18. 4. 17.] [중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8. 4. 17.)]</p> <p>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검사 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p>[본조신설 2016. 12. 20.]</p> <p>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8. 4. 17.)]</p> <p>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4. 17.></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8. 4. 17.)]</p> <p>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13조의4에서 이동 (2018. 4. 17.)]</p>	<p>해당한다)의 설치 및 측정</p> <p>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p> <p>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p> <p>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p> <p>[본조신설 2016. 12. 20.]</p> <p>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1.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p>	<p>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2018. 10. 18., 2020. 4. 3.></p> <p>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p>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p> <p>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p> <p>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6.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영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9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30.]</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p> <p>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p> <p>② 삭제 <2010. 5. 25.></p> <p>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5. 25.]</p> <p>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2020. 5. 26.></p> <p>1. 삭제 <2016. 12. 27.></p> <p>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p> <p>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p> <p>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2019. 4. 2.></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4조에서 이동 <2016. 12. 20.>]</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p> <p>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자</p> <p>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p>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속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p> <p>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p> <p>7. 삭제 (2018. 4. 17.)</p> <p>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p> <p>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p> <p>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p> <p>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시행일 : 2021. 4. 1.] 제16조제3항제1호, 제16조제3항제2호</p> <p>부칙 <제6911호, 2003. 5. 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목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며,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8402호, 2004. 5. 2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p> <p>부칙 <제19954호, 2007. 3.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③및 ④생략</p>	<p>부칙 <제156호, 2004. 5.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이 된 날”로 본다.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p> <p>부칙 <제177호, 2005. 7.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7562호, 2005. 5. 31.></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011호, 2006. 9. 27.></p> <p>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③내지 ⑩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155호, 2006. 12. 30.></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475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2888호, 2011. 4.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p> <p>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⑥내지 ⑩생략</p> <p>부칙 <제189호, 2005. 12. 30.></p> <p>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1호, 2006. 3. 13.></p> <p>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654호, 2007. 10. 17.〉 (영유아보육법)</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p> <p>부칙 〈제10312호, 2010. 5. 2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p>	<p>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⑱부터 <54>까지 생략</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4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 계서만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1665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881호, 2013.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2216호, 2014. 1. 7.> (도시철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3601호, 2015.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자료제</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5262호, 2014. 3.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p> <p>제3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675호, 2016. 12.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p>	<p>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p> <p>부칙 <제279호, 2008. 2.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p> <p>부칙 <제302호, 2008. 10. 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35호, 2011. 12. 19.></p> <p>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0호, 2014. 3.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p> <p>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p> <p>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 기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58호, 2017. 6. 27.〉</p> <p>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231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p> <p>(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간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0호, 2015. 11.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1호, 2016.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p> <p>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113호, 2016. 3. 29.) (공항시설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p> <p>부칙 (제30592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p>	<p>터 적용한다.</p> <p>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⑩부터 ㉞까지 생략</p> <p>제18조 생략</p> <p>부칙 (제14486호, 2016.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5195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583호, 2018. 4.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p>		<p>부칙 (제773호, 2018. 10.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p> <p>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799호, 2019. 2.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p>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p>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p> <p>부칙 <제16307호, 2019. 4. 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8호, 2020. 4. 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p>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3983
-------------------------------	------

[별표]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호가목, 제2호나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호	200	350	500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의	법 제16조 제3항제2호	200	3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 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4호	50	70	100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속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3호	200	35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3)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500	1,000	2,000
아.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6호	100	150	200
자.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7호의2	250	370	500
차.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500	1,000	2,000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8호	200	350	500
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8호의2	250	37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200	300	400
파.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9호	100	150	200
하.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0호	250	370	500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오염물질(제2조 관련)	3987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3987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3989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3991
[별표 4] 삭제 <2006.3.13.>	3991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3991
[별표 4의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영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3992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3992
[별표 6]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3993
[별표 6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3994
[별표 7]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3994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3995

[별표 1] <개정 2019. 2. 13.>

오염물질(제2조 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₂: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₃: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별표 1의2] <개정 2020. 4. 3.>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 1) 미세먼지(PM-10)
 - 2) 초미세먼지(PM-2.5)
 - 3) 이산화탄소(CO₂)
 - 4) 일산화탄소(CO)
 - 5) 이산화질소(NO₂)
2.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관리해야 한다.
 -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또는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또는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상상영관(실내 영상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육내시설로 한정한다)	○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	○	
20) 실내주차장	○	○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또는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	○	

[별표 2]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호	200	350	500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2호	200	350	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 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4호	50	70	100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속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5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바. 법 제9조제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3호	200	350	500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아.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6호	100	150	200
자.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7호의2	250	37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제16조 제1항 제3호	500	1,000	2,000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8호	200	350	500
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법제16조 제3항제8호의2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250	370	500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200	300	400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100	150	200
파.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9호	100	150	200
하.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0호	250	370	500

[별표 3]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 ³)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 ³)	곰팡이 (CFU/m ³)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별표 4] 삭제 <2006.3.13>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μg/m³ 이하
2. 벤젠 30μg/m³ 이하
3. 톨루엔 1,000μg/m³ 이하
4. 에틸벤젠 360μg/m³ 이하
5. 자일렌 700μg/m³ 이하
6. 스티렌 300μg/m³ 이하
7. 라돈 148Bq/m³ 이하

[별표 4의3] <신설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영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μ g/m ³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 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2. 유지·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7. 12. 2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³·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³·h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추는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험(試片) 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추는 것

장비	수량 (단위: 대)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치, 온도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1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	4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	4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1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1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기상분석검출기(HPLC/자외선-VIS)	1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	1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	1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1
차. 초음파세척기	1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	1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	1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추는 것

기술인력	해당 분야·전공
가.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기사 다. 산업기사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비고

-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6의2] <신설 2018. 10. 1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는 경우
 - 나.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
 -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조작 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 다. 시약소모대장
 -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것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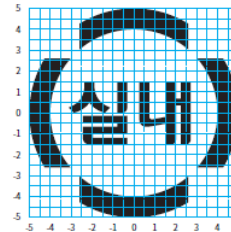
[별표 7] <개정 2018. 10. 18.>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별표 8] <개정 2018. 10. 1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1조의4제1항제7호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1항제8호	지정 취소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9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3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3 제3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의3 제3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3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3 제3항제4호, 영 제12조제2호	지정 취소			

제6편
환경보건

0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01	제1조(목적) 4001	제1조(목적) 4001
제2조(정의) 4001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40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002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4003		
제5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4003		제2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4003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4004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4004	
	제4조(위원회의 운영) 4005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4005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4005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4006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4006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4008	제4조(의견수렴) 4007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4008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4008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4009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4009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4009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4009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4009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4010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4010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4010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40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4011	제7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4011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 4012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4012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4012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4013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4013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4013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4014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015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4015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4015		
제16조의4(청문) 4016		
제17조(보고 및 검사) 4016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4016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016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17		
제5장 벌칙		
제18조(과태료) 4017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017	
부칙 4018	부칙 4018	부칙 401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제정 2013. 1.31 대통령령 제24343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2016. 7. 6 대통령령 제2732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7.19 대통령령 제27349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5 대통령령 제28936호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5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p>제정 2013. 1.31 환경부령 제498호 개정 2016. 7.27 환경부령 제669호 2020. 5.26 환경부령 제864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p> <p>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p> <p>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공간</p> <p>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p> <p>다. 교량</p> <p>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p> <p>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p>	<p>재원 조달방안</p> <p>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p>	<p>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p> <p>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p>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 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p> <p>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제4조(의견수렴)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9. 11. 26.]</p> <p>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 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②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p>	<p>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변경 계획서"로 본다.</p> <p>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26.></p> <p>② 삭제 <2016. 7. 27.></p> <p>③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7.></p> <p>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한다. 다만, 국내의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③ 시·도지사는 소유자들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들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p> <p>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p> <p>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p>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p>[본조신설 2016. 7. 27.]</p> <p>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② 소유자들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p>	<p>제7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p>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p> <p>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p> <p>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p>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p> <p>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 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한다.</p> <p>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주소 2. 검사기관의 지정번호·지정연월일 <p>⑤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 및 장비 2.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주소 <p>⑥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p> <p>⑧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5. 26.]</p> <p>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이라 한</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⑤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⑥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p>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p> <p>②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p> <p>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p> <p>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주소·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p>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0. 5. 26.]</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1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②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p>	<p>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0. 5. 19.]</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p> <p>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p> <p>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p> <p>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p> <p>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261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p> <p>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343호, 2013. 1. 31.></p> <p>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안전행정부차관</p> <p>4. 농림축산식품부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98호, 2013. 1. 31.></p> <p>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9호, 2016. 7. 27.></p> <p>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4호, 2020. 5. 26.></p> <p>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88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197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837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610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㉓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328>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5786호, 2014. 11. 28.> (건축법 시행령)</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23호, 2016. 7.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49호, 2016. 7.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와 보고·확인 또는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⑤부터 ⑪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p> <p><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행정안전부차관</p> <p><252>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36호, 2018. 6. 5.></p> <p>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685호, 2020. 5.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p>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제2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4025
------------------------------	------

[별표] <개정 2020. 5.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최근 1년간의 여러 위반행위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횟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30	50	100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60	100	200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90	150	3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영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제2호	150	210	300
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8조 제3항제1호	100	140	200
마.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3항제2호	100	140	200

0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4029
[별표 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4030
[별표 3]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4031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4031

[별표 1] <개정 2020. 5. 26.>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 ²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²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 ²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영양공정 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1. 장비 요건

내용	수량
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1) 조도계	1대 이상
2) 점휘도계	1대 이상
3) 면휘도계	1대 이상
4) 삼각대	1대 이상
5) 분석컴퓨터	1대 이상
나. 측정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이상

2. 기술인력 요건

내용	인원
가.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빛공해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비고

가목의 "빛공해 관련 분야"란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빛공해와 빛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3. 시설 요건

검사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빛공해의 측정·분석용 검사 장비의 관리 등을 위하여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그 밖의 요건: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비치 할 것

가.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 업무의 사후관리

다.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별표 3]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빛공해 검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검사 항목, 일시, 조명기구의 위치 및 형태, 검사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검사실적 기록부를 원장 및 조명기구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검사실적이란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실적을 말한다.
3. 빛공해 검사기관은 측정기기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빛공해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측정능력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검사 신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4] <신설 2020. 5. 26.>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지정 요건 중 정비나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2) 지정 요건 중 정비나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경우 3)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지정 요건 중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039	제1조(목적) 4039	제1조(목적) 4039
제2조(정의) 4039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4039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4039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종류) 4040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4040
제3조(적용범위) 4040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404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040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041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404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4041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404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4042	
제7조 삭제 4042	제7조 삭제 4042	
제8조 삭제 4042	제8조 삭제 4042	
	제9조 삭제 4042	
	제10조 삭제 4042	
	제11조 삭제 4042	
	제12조 삭제 4042	
	제13조 삭제 4042	
	제14조 삭제 4042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4042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4042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4043	제16조(환경기준) 4043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4043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4043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404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 1. 27.></p> <p>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4044</p> <p>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 1. 27.></p> <p>제14조(배출허용기준) 4049</p> <p>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4050</p> <p>제16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4050</p> <p>제17조(과징금처분) 4053</p> <p>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4054</p> <p>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4055</p>	<p>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 3. 27.></p> <p>제17조 삭제 4044</p> <p>제18조(관리기준) 4044</p> <p>제18조(관리기준) 4046</p> <p>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 3. 27.></p> <p>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4053</p> <p>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4054</p> <p>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4055</p> <p>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4056</p>	<p>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p> <p>제5조(관리기준) 4045</p> <p>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4048</p> <p>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 4. 17.></p> <p>제7조(배출허용기준) 4049</p> <p>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4050</p> <p>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4051</p> <p>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4052</p> <p>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4052</p> <p>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4053</p> <p>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4053</p> <p>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4053</p> <p>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4053</p> <p>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4054</p> <p>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4055</p> <p>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범위 등) 4055</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4057</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 1. 27.></p> <p>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 4058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4058 제23조(재활용의 제한) 4058</p> <p>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 1. 27.></p> <p>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4059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4059</p> <p>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4061</p> <p>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4061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4061</p> <p>제6장 보칙</p> <p>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4062 제28조(국제협력) 4062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4062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4064 제30조(청문) 4064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4064</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 3. 27.></p> <p>제22조(오염기기등) 4059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4059</p> <p>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4061</p> <p>제5장 보칙</p> <p>제24조(권한의 위임) 4064</p>	<p>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4057 제17조(사고처리기준) 4057</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 4. 17.></p> <p>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4058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4058 제20조(행정처분기준) 4059</p> <p>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 4. 17.></p> <p>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4059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4060</p> <p>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4061</p> <p>제6장 보칙</p> <p>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4062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4064</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066	제25조(보고) 4065 제26조(위탁) 4065 제26조의2 삭제 4066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4065 제24조(규제의 재검토) 4066
제7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4066		
제32조의2(벌칙) 4067		
제33조(벌칙) 4067		
제33조의2(벌칙) 4067		
제34조(벌칙) 4068		
제35조(벌칙) 4068		
제36조(양벌규정) 4068		
제37조(과태료) 406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069	
부칙 4070	부칙 4070	부칙 407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07. 1.26 법률 제8292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4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3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3.18 법률 제12464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10.16 법률 제15841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p>	<p>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1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육육양 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8.25 대통령령 제21705호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7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8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5호 2018. 1.22 대통령령 제2859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4. 9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14 대통령령 제30847호</p>	<p>제정 2008. 1.28 환경부령 제275호 개정 2009.11.30 환경부령 제352호 2011. 4.18 환경부령 제412호 2012. 8. 2 환경부령 제472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2. 2 환경부령 제59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13 환경부령 제785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17 환경부령 제89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문에 관한 미나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1.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문에 관한 미나타협약」(이하 "미나타협약"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p> <p>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3. 27.]</p> <p>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6. 4., 2016. 1. 27., 2020. 5. 26.></p> <p>②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p> <p>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p> <p>[전문개정 2020. 7. 14.] [시행일 미지정] 제2조</p> <p>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p>	<p>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p> <p>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6. 1. 27., 2018. 10. 16.></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6. 1. 27.]</p> <p>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p>	<p>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p> <p>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7. 3. 27.]</p> <p>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6. 1. 27.]</p> <p>제7조 삭제 (2010. 2. 4.)</p> <p>제8조 삭제 (2010. 2. 4.)</p> <p>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p> <p>제7조 삭제 (2011. 4. 5.)</p> <p>제8조 삭제 (2011. 4. 5.)</p> <p>제9조 삭제 (2011. 4. 5.)</p> <p>제10조 삭제 (2011. 4. 5.)</p> <p>제11조 삭제 (2011. 4. 5.)</p> <p>제12조 삭제 (2011. 4. 5.)</p> <p>제13조 삭제 (2011. 4. 5.)</p> <p>제14조 삭제 (2011. 4. 5.)</p> <p>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일허용노</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물·토양·하천퇴적물·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측정항목·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상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p>	<p>출량은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p> <p>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6. 1. 27.)</p> <p>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7. 3. 27.)</p> <p>제17조 삭제 (2017. 3. 27.)</p> <p>제18조(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p> <p>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하는 경우</p>	<p>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p>	<p>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p>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p> <p>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시도록 할 것</p> <p>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p> <p>나. 운행 예정 노선</p> <p>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④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p>	<p>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p>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 3. 27.></p> <p>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 3. 27.></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8조(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p> <p>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p> <p>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 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p> <p>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p> <p>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0. 7. 14.></p> <p>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p> <p>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p>[제목개정 2016. 1. 27.]</p>	<p>한다. <신설 2017. 3. 27.></p> <p>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 3. 27.></p> <p>[전문개정 2012. 7. 31.]</p> <p>[시행일 미지정] 제18조</p>	<p>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 4. 17.></p> <p>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 1. 27.)</p> <p>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 3. 27.)</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p>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p>⑦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p>[제목개정 2019. 4.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 4. 17.)</p> <p>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4.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 1. 17.></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12. 2. 1.,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변경신고 <p>제16조(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p>		<p>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p> <p>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능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p>		<p>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8. 12. 13.></p> <p>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p> <p>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p> <p>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8. 1. 17., 2018. 12. 13., 2019. 4. 17.></p> <p>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p> <p>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나,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p> <p>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p> <p>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p> <p>가.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p> <p>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p> <p>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p> <p>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1. 4. 18.> <p>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2. 2., 2018. 12. 13.,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17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p>	<p>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4. 9.></p> <p>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p>	<p>2. 단전·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p> <p>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p> <p>[본조신설 2011. 4. 18.] [제목개정 2018. 12. 13.]</p> <p>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8. 2.></p> <p>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4. 17.]</p> <p>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p> <p>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는 사용중지명령을 같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p> <p>②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p> <p>⑤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p>	<p>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계수는 별표 5와 같다.</p> <p>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6. 1. 27.> [제목개정 2012. 2. 1.]</p> <p>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p> <p>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 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p>	<p>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p>	<p>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 4. 17.> [본조신설 2012. 8. 2.]</p> <p>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1. 30.)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할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p> <p>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p>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p> <p>⑤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30.> [제목개정 2019. 4. 17.]</p> <p>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p> <p>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7. 2., 2020.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p> <p>[시행령 미지정] 제21조</p>	<p>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8. 10. 16.> [제목개정 2016. 1. 27.]</p> <p>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p> <p>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17. 1. 17.></p> <p>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p>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p>[제목개정 2019. 4. 17.]</p> <p>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 1. 27.)</p> <p>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p> <p>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p> <p>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삭제 (2016. 1. 27.)</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 4. 17.)</p> <p>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p> <p>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p> <p>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 1. 27.></p> <p>제24조(오염기기의 목적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설비·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전문개정 2012. 2. 1.]</p> <p>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 3. 27.></p> <p>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7. 3. 27.></p> <p>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 	<p>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p> <p>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전문개정 2019. 4. 17.]</p> <p>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p> <p>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 4. 17.></p> <p>제21조(관리대상기기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 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p>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p> <p>③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p>④ 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p> <p>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1. 30.)</p> <p>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본조신설 2012. 2. 1.]</p> <p>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2. 7. 31.] [제목개정 2017. 3. 27.]</p>	<p>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② 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p> <p>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p>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2. 배출사업자</p> <p>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합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p> <p>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합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p> <p>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p> <p>6.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7.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p> <p>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p> <p>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 2014. 12. 24., 2018. 1. 17.></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p> <p>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합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8. 6. 12.></p>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2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p>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p> <p>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증지나 폐쇄명령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거 등에 관한 신고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p> <p>[중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2. 8. 2.>]</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p>접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하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p> <p>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전문개정 2009. 8. 25.]</p>	<p>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 8. 2.)</p> <p>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 11. 30.]</p> <p>[제2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조의2 삭제 <2020. 7. 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2. 2., 2019.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12. 17.>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12. 17.> 5.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기간: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30.]</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16. 1. 27.>]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6. 12.> [제32조에서 이동 <2016. 1. 27.>]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 1. 27.>]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16. 1. 27., 2018. 6. 12., 2020. 5. 26.> 1. 삭제 <2016. 1. 27.>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에서 이동 <2016. 1. 2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p>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 27.>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p>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삭제 <2012. 2. 1.> ⑥ 삭제 <2012. 2. 1.> ⑦ 삭제 <2012. 2. 1.>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p> <p>[본조신설 2011. 4. 5.]</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92호, 2007. 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3조(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p> <p>②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행·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81호, 2007. 12. 28.></p> <p>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p>⑫ 부터 ⑮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705호, 2009. 8. 2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877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5호, 2008. 1.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변압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전용 변압기 및 송·배전용 변압기 : 2008년 7월 27일까지 나. 주상용 변압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 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기 : 2008년 4월 27일까지 <p>제3조(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오염기기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오염기기등에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7월 27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52호, 2009. 11.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조의2</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 제3항”으로 한다. ㉓내지 ㉕생략 제10조 생략</p> <p>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생략 ⑲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㉒부터 ㉔생략 제14조 생략</p> <p>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p>	<p>규정도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24000호, 2012. 7. 31.></p> <p>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878호, 2014. 12. 23.></p>	<p>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연유 재할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할용하는 폐절연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부칙 <제412호, 2011. 4.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72호, 2012. 8. 2.></p> <p>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4, 별표 5의 2, 별표 12,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보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③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10034호, 2010. 2. 4.></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⑧부터 ⑳까지 생략</p>	<p>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965호, 2017. 3.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타현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p>② 삭제 <2018.1.22.></p> <p>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p>	<p>(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⑫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93호, 2015. 2. 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운반·보관·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1263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p> <p>⑨부터 ⑫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8596호, 2018. 1.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p> <p>부칙 <제29682호, 2019. 4. 9.></p> <p>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847호, 2020. 7. 14.></p> <p>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부칙 <제785호, 2018. 1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05호, 2019. 4.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다목1)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246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841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p>		<p>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p> <p>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p> <p>제2조(행정처분의 공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95호, 2020. 12. 17.></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제2조 관련)	4079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4080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4080
[별표 4]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408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4082

[별표 1] (개정 2019. 4. 9.)

잔류성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독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0.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11.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2. 퓨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13. 클로르데콘(Chlordecone)
14. 린덴(Lindane)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9.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20.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21. 과불화옥탄술포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22.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
2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4.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25.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26. 폴리클로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27. 수은 및 수은화합물(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28.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29.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30.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개정 2019. 4.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 가. 분진
 - 나. 폐촉매
 -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3. 폐농약(별표 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농약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개정 2019. 4. 9.>

환경기준(제16조 관련)

분야	항목	기준
대기	다이옥신	연간 평균치 0.6pg-TEQ/Sm ³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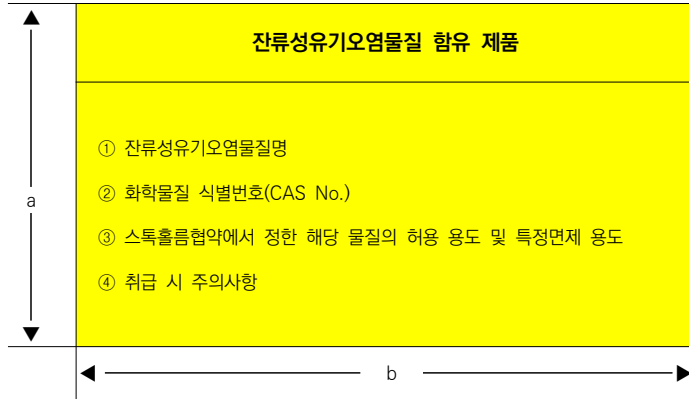
1. 환경기준이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9. 7.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크기: a : b ≒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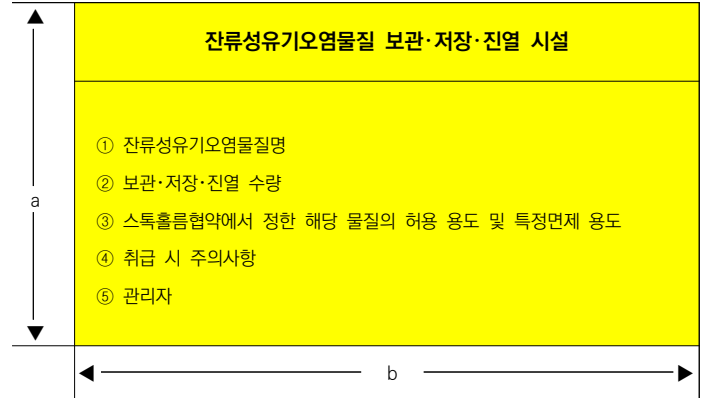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a×b)
5ℓ 미만	용기·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cm ²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cm ²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cm ² 이상
500ℓ 이상	450cm ²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크기: a=40cm , b=60cm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별표 5] <개정 2017. 3.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 500	700 700	1,000 1,000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100	200	300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1)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의 물질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별표 1 제27호에 따른 물질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바. 삭제 <2017. 3. 27.>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배출시설(제2조 관련)	4087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4088
[별표 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4088
[별표 3의2]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4090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4090
[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4091
[별표 5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13조의2 관련)	4092
[별표 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4092
[별표 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4094
[별표 8]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제18조 관련)	4095
[별표 9] 삭제 <2019. 4. 17.>	4100
[별표 10] 삭제 <2015.2.2.>	4100
[별표 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4100
[별표 12]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4101

[별표 1] (개정 2019. 12. 20.)

배출시설(제2조 관련)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능케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시설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용해로(鎔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 소각 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비고

1.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무연탄	kg	1.00	수소	Sm ³	0.62	경유	L	1.9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kg	1.32	메탄	Sm ³	3.36	휘발유	L	1.68
이탄	kg	0.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엘피지	kg	2.40
목재	kg	0.70	발생가스	Sm ³	0.2	석탄타르	kg	1.88
중유(C)	L	2.00	혼성가스	Sm ³	0.60	메탄올	kg	1.44
원유	L	1.90	전기	kW	0.17	톨루엔	kg	2.06
등유	L	1.80	유연탄	kg	1.34	메탄	Sm ³	1.86
나프타	L	1.80	갈탄	kg	0.90	아세틸렌	Sm ³	2.80
액화 천연가스	Sm ³	1.56	목탄	kg	1.42	석탄가스	Sm ³	0.80
메탄올	kg	1.08	유황	kg	0.46	수성가스	Sm ³	0.54
벤젠	kg	2.02	중유(A, B)	L	1.86	도시가스	Sm ³	1.42

2. 제1호에 따른 환산계수가 없는 연료 또는 원료의 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 또는 원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9. 4.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3조 관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리터당 0.1n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0.05밀리그램 나. 액체상태 외의 물질 1) 금속판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물질: 100제곱센티미터당 0.05마이크로그램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물질: 킬로그램당 0.005밀리그램 3) 그 밖의 물질: 용출액 리터당 0.0005밀리그램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가. 액체상태의 물질: 리터당 100피코그램 티이큐 (pg-TEQ) 나. 고체상태의 물질: 그램당 3나노그램 티이큐 (ng-TEQ)

비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영 별표 1 제13호에 따라 고시된 물질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 함유량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4.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³)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10. 12. 31.까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 이후
철강 소결로	0.5	1.0	0.5	0.5
철강 전기아크로	0.5	1.0	0.7	0.5
알루미늄 제조시설	0.5	1.0	0.5	0.5

비고

- 철강 소결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5퍼센트를 적용한다.
- “신설시설”이란 2008년 1월 27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증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³)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시멘트 소성로	0.1	0.1	0.1
동 제조시설	1	10	1.0

비고: 시멘트 소성로의 표준산소농도는 13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L)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이후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50	300	50

4. 소각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m³)

구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5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9. 4. 17.>
-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ng-TEQ/Sm³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단위: ng-TEQ/Sm³)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 시설	2001. 1. 1.이후 2004. 7. 20.전에 설치된 시설	2001. 1. 1.전에 설치된 시설
4톤 이상	0.1	0.1	1
2톤 이상 4톤 미만	1	1	5
1톤 이상 2톤 미만	1	1	5
200kg 이상 1톤 미만	5	5	5
25kg 이상 200kg 미만	5	10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0pg-TEQ/L

5. 공통사항

-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 × 실측농도)
다.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8. 12. 13.>

개선명령 대상 배출시설(제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로서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배출시설
 - 가. 활성탄 흡착 공급설비의 외부공기 유입 차단을 위한 단순 공사 또는 분사노즐의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한 경우
 - 나. 여과집진기의 여과포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세정탑의 세정수·충전물(접촉면적을 넓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세정탑에 채워 넣는 인공물을 말한다)의 청소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라. 건식 또는 반건식 반응 설비의 노즐 및 분사장치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마. 소각로의 연소공기 공급 노즐 및 밸브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바. 그 밖에 배출시설 운전원의 시설·장비운전이 미숙한 경우 등 단순 정비 또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배출시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 = \frac{(\text{실제 측정된 수치} - \text{배출허용기준 수치})}{\text{배출허용기준 수치}} \times 100$$

[별표 4] <개정 2019. 4. 17.>

행정처분기준(제11조 및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용중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출시설	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개선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2) 1) 외의 배출시설	법 제16조 제1항 본문	사용중지	사용중지	사용중지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	폐쇄		
다.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	폐쇄		
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4항	사용중지 10일	사용중지 20일	폐쇄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3항	사용중지 30일	사용중지 60일	폐쇄

비고

- 가목1)의 개선명령 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목2)의 사용중지 기간은 사용중지 처분에 명시된 사용중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구분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0.5

[별표 5의2] <개정 2019. 4. 17.>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13조의2 관련)

1. 배출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가. 조사횟수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나. 조사대상 : 별표 1의 배출시설
- 다. 조사대상 물질 : 다이옥신, 퓨란 및 환경부장관이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라. 조사내용 :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구 현황, 측정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농도를 포함한다), 측정당시의 활동도 자료 등
- 마. 조사방법 :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바. 제출된 배출원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취합·검토 후 확정한다.
- 사.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량 산정방법

-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나. 부문별 배출계수는 배출원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
- 다. 활동도 자료는 배출원 조사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라. 그 밖에 배출량 산정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19. 12. 20.>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제14조제3항 관련)

- 1. 측정대상 :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
- 2. 측정물질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측정매체 : 배기가스, 폐수
- 4. 측정의 주기 및 횟수
 - 가. 공통사항
 - 1)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로부터 나뭇 및 다목적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기간(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측정해야 한다.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측정일을 기산일로 본다.
 - 2) 조업물량 감소,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 나. 배기가스
 - 1) 소각시설
 -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2)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구분	측정주기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6개월 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1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이상

비고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과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g/년) = 다이옥신 배출계수($\mu\text{g-TEQ/톤}$) / [1- (방지시설 설계효율(%)/100)] × 최대 연간활동도×10⁻⁶
 - 가목의 최대 연간활동도는 일일활동도에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다이옥신 배출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실측값이 있는 경우
다이옥신 배출계수=A×B/C
A: 다이옥신 농도(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실측한 값 중 최대값, ng-TEQ/Sm³)
B: 최대 일일유량(시설용량, Sm³/일)
C: 최대 일일활동도(톤/일 또는 kw/일)
 - 나. 삭제 <2019. 4. 17.>
 - 최근 2년 이내 실측 횟수가 4회 미만이거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종별 평균배출계수를 적용한다.

〈업종별 평균 다이옥신 배출계수〉

배출시설		배출계수 ($\mu\text{g-TEQ/톤}$)
제철 및 제강시설	소결로	0.9
	전기아크로	1.0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전기아크로	1.5
	용융/용해로	1.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전기아크로	1.0
	용융/용해로	2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6.0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용융/용해로	1.5
	반사로, 전로, 정련로, 배소로, 전해로, 건조로, 도가니로	0.5
시멘트 제조시설	소성로	0.1

3. "방지시설 설계효율"이란 해당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 대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한다.
 - 가. 처리효율은 해당 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지시설 효율 값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먼지 제거 효율 값을 적용한다.
 - 나. 배출시설에 2기 이상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계효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ta_t = \eta_1 + \eta_2 \left(1 - \frac{\eta_1}{100}\right) + \eta_3 \left\{1 - \frac{\eta_1 + \eta_2 \left(1 - \frac{\eta_1}{100}\right)}{100}\right\} + \dots$$

η_t :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
 $\eta_1, \eta_2, \eta_3, \dots$: 개별 방지시설의 설계효율

다. 폐수 부문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만, 이연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비고

-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g/년) = 실측농도($\mu\text{g-TEQ/L}$) × 일일유량(L/일) × 연간 조업일수 × 10⁻¹²
1. 일일유량은 측정유량(L/hr)에 조업시간을 곱한 값을 말한다.
 2.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가.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산정한 유량
 - 나.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 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용수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제외한 양

[별표 기] (개정 2020. 12. 1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제15조제1항 관련)

1. 조사횟수 : 3년마다 겨울철(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에 1회 이상
2. 조사지점

가. 토양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 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 Γ
-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 L
-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C
- 라)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농도 발생거리의 3배가 되는 지점 : R

2)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원상에서 최대착지지점 근방의 지점(2지점) : \square, \f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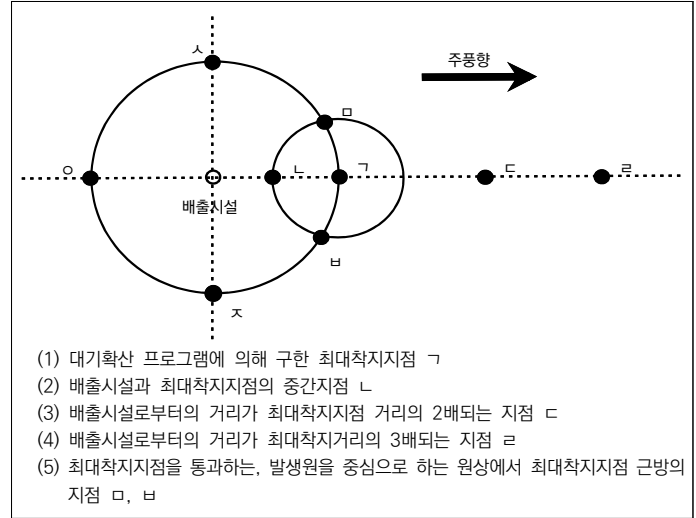
3)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발생원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2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Δ, \circ, \times

나. 대기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3지점

- 가) 대기 확산 프로그램에 의해 구한 최대착지지점 : Γ
-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지점의 중간지점 : L
- 다)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의 2배가 되는 지점 : C

2) 배출시설 및 최대착지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 직선과 배출시설과 직교하는 직선상에 있는 지점 및 배출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착지지점 거리에 있는 지점 : Δ, \circ



비고

1. “배출시설”이란 의무측정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결과와 다이옥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설을 말하며, 최대착지지점은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잔류성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착지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을 말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지점 위치가 하천 등 대기 또는 토양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곳인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9. 12. 20.>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18조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의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 가. 수집·운반의 경우
 -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방법 및 운반 경로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상차·하차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 및 수집·운반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자가 누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상차·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분의 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누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본체로부터 분리된 부싱의 접속 부분, 방열판의 용접부, 본체와 고정판의 접합부, 온도계, 밸브 등의 돌출부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납 용기의 경우: 용접부, 외부의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

- 4) 수집·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의 것으로 밀폐가 가능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폐변압기·폐축전기·폐안정기 등을 운반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바닥과 측면이 밀폐구조이어야 하고, 뚜껑을 닫았을 때 빗물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 (2) 뚜껑은 완전밀폐가 가능하여 내용물이 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용기 내면은 쉽게 닦을 수 있도록 복잡한 형상이나 요철이 아니어야 한다.
 - 라) 사용한 운반용기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동일한 용도를 위해 재사용할 수 있다.
- 5) 수집·운반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수집·운반차량"이라 한다)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수집·운반차량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계획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차량적재함에 U자형 방유판(모형 ㄴ)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유판의 용량은 변압기 전체 용량의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은 형질, 종이 등으로 닦아내고, 물 세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 (4) 용기는 운반 시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 짐받이에 고정하여야 한다.
-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고정된 상태로 운반 중 급제동·급커브 시에 용기 형상이 유지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집·운반 중 비상대책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 중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 화재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차량 및 수집·보관시설에는 소화기, 흡수재, 걸레 및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2) 운반차량에는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 다목(3) 비고 제2호에 따른 레벨 2 이상의 보호장구를 2인용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수집·운반 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투입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 시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쉽게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울타리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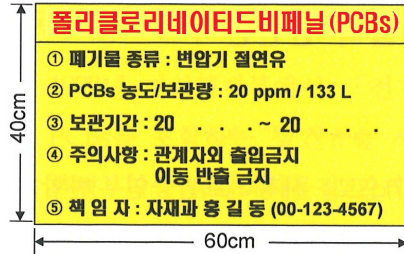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장소에는 기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또는 오일 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나 눈의 접촉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옥외에 보관할 수 있다.

- (1) 드럼 등 밀폐형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변압기, 축전지도 외부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창고 및 보관용기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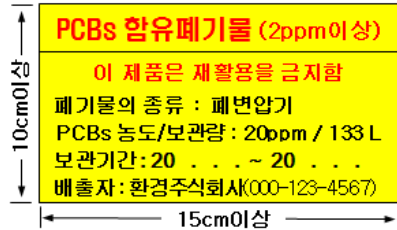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시설에 표시하는 경우



※ 비고

1. 색상: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선과 글씨로 한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글씨는 빨간색으로 한다.
2. PCBs 농도는 보관하는 함유폐기물 중 최고 농도를 적는다.

나)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보관용기에 표시하는 경우



※ 비고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선과 글씨로 한다. 다만, "PCBs 함유폐기물(2ppm이상)" 및 "이 제품은 재활용을 금지함" 글씨는 빨간색으로 한다.

다. 처분의 경우

-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방법
 - 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나) 화학처리(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만 해당한다)

다) 세척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한다)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작업복·장갑 등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기준(1)나)부터 라)까지의 처분방법에 한정한다)

가) 액체상태인 경우

(1)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이어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 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수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및 수소이온 농도 등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배출수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처분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는 0.1 ng-TEQ/Sm³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고체상태인 경우

처리된 물질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은 다음과 같아야 하며, 함유량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금속판 등 기기를 흡수하지 않는 평면형태의 내부 부재(部材): 100제곱센티미터당 0.4마이크로그램 미만

- (2)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비평면형태의 내부 부재: 길로그램당 0.04밀리그램 미만
- (3) 종이, 목재 등 기름을 흡수하는 내부 부재(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용출액 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만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때 부과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 기준
 -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은 외부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처분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과 그 밖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고 시를 대비하여 보관탱크, 반입설비, 반출설비 등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방지턱이나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처분시설 작업장은 외부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벽 또는 유출 방지 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처분시설의 바닥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리약품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축조하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휘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시설의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처분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공기는 이중필터를 갖춘 환기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세척액 분리시설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처분시설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 가능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구역을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구역		관련공정	관리 내용
일반 관리 구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오염우려가 없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를 취급구역	·반입 및 보관공정 (용기 등 외부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공정)	·일반 환기 ·일반 작업복 착용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국소박이 장치 설치
관리 구역 1	일반적인 공정의 작업에서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이 없고 최소한의 관리로 대응할 수 있는 구역	·세척처리 공정 ·절연유처리 공정 ·기타 작업 공간	·강제배기처리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건학자 출입가능 ·레벨 1 보호구 착용
관리 구역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한 오염은 없으나, 작업 중 간접적으로 고농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	·용기에서 절연유 발유 구역 ·진공 가열분리 구역 ·1차 세척 후 해체 및 분별 공정	·강제배기처리, 음압유지 ·방유판 또는 유출 방지턱 설치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및 모니터링 ·관계자 외 출입금지 ·레벨 2 보호구 착용
관리 구역 3	일반적인 공정의 작업에서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구역	·변압기의 해체 공정 ·콘덴서 등의 해체 공정 ·해체 및 분별공정의 일부 ·용기, 펌프, 배관에서 누출	·강제배기처리, 음압유지 ·방유판 또는 유출 방지턱 설치 ·독립구역 밀폐작업 또는 국소배기로 작업환경 유지 및 모니터링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레벨 3 보호구 착용

※ 비교

1. 국소배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용기, 작업조건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그 발생원 가까이에 공기흡입구(후드)로 포집하며 덕트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취급자 개인보호구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호구 착용 사례	보호장구
레벨1		보호안경(필요시) 안전모 일반작업복 장갑(고무 또는 가죽) 일반작업화
레벨2		화학 방호 앞치마 보호안경(필요시) 안전모 일반작업복 간이 활성탄마스크 내용제성 장갑(고무 또는 가죽) 전용작업화
레벨3		등면개방형 화학방호복 보호안경 안전모 일반작업복 방독마스크 또는 간이 활성탄 마스크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내투과 성 결장갑(고무 또는 가죽) 속장갑(고무, 1회용) 화학방호장화

4) 취급자 안전관리

가)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업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취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시설은 적합한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작업장 내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한다.
-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차단후드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취급자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노출을 최소화한다.
- (3) 작업장 내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농도는 1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4)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작업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흡연을 철저히 금지한다. 휴식 시 음식물 섭취, 흡연 전에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된 손과 피부를 씻어야 한다.
- (5) 보호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제거를 위하여 세탁설비를 구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처분업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취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취급자가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된 경우 긴급히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되어 의학적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취급자는 건강상의 장애에 대해 상담받도록 한다.
- (2) 작업 개시 전 취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취급자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분업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에 노출되는 모든 취급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작업의 위험성, 청소, 보호구, 장비의 사용방법 등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1)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과 훈련
- (2) 누출 및 유출시 대처방법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3) 오염물질의 제거 절차
 - (4)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방법
 - (5) 응급처치 절차 및 응급함의 위치와 사용방법
4. 유입식 콘덴서 등 밀폐식 관리대상기기를 농도분석성적서 없이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3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9] 삭제 <2019. 4. 17.>

[별표 10] 삭제 <2015.2.2.>

[별표 11] <개정 2019. 4. 17.>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제22조제1항 관련)

1. 오염기기등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 기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① 농도 : mg/L	② 총중량 :
③ 분석일자(기관) :	
④ 점검일자 :	
⑤ 비상연락처 :	
⑥ 관리책임자 :	

2.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

주의사항	
○ 이 곳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보관창고로 관계자 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보관현황 :	
② 점검일자 :	
③ 보관개시일자 :	
④ 비상연락처 :	
⑤ 관리책임자 :	

비고

1. 오염기기등의 외면에는 주의사항 표지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창고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바람 등에 의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로 표지를 제작하고, 표지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주의사항 등 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주상 변압기 등 소형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빨강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한다.

[별표 12] <개정 2020. 12. 1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3조의3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현황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현황	연 1회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수 시	사고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6. 배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7.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6편
환경보건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111	제1조(목적) 4111	제1조(목적) 4111
제2조(정의) 4111	제2조(정의) 4111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4112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4113	
제3조(적용범위) 4114		제2조 삭제 4115
제4조(국가의 책무) 4115		
제5조(사업자의 책무) 4116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4116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4117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4118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4118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118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4119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4120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20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4121	제8조 삭제 4121	제3조 삭제 4121
제9조 삭제 4121	제9조 삭제 4121	제4조 삭제 4121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4121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4122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4121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4122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4123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4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4128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4128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4125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4127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4128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인 변경신청 등) 4130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4131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4132 제10조(변경등록 사유) 4133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4134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4134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4132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4136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4136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4136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4136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4141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4141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4138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4138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4139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4139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4140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4140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4141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4141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4143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4144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4144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4144		
제16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4145	제14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4145	
제17조(취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4146		제21조(취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4146 제22조(취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4146
	제15조(취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41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4147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4147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4147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4149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4147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4151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4152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4150
제19조(유해성평가 등) 4152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4151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4153	제17조(연구기관) 4154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4151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153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4152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4154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4153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4156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4159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4153
제24조(위해성평가) 4157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4154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4155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4159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4159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4155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4161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4161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4156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4161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4157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4158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41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4162</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4162</p> <p>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4166</p> <p>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 4167</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p> <p>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4168</p> <p>제33조 삭제 …………… 4170</p> <p>제34조 삭제 …………… 4170</p> <p>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4170</p> <p>제36조 삭제 …………… 4171</p> <p>제37조 삭제 …………… 41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4171</p> <p>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4172</p>	<p>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4162</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 4171</p> <p>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 4172</p> <p>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417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4162</p> <p>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 4164</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 4165</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 4165</p> <p>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4166</p> <p>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 4167</p> <p>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 416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p> <p>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 4168</p> <p>제42조 삭제 …………… 4169</p> <p>제43조 삭제 …………… 4170</p> <p>제44조 삭제 …………… 4170</p> <p>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4170</p> <p>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4170</p> <p>제47조 삭제 …………… 4171</p> <p>제48조 삭제 …………… 41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 4171</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4173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4173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4173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4174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4174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4174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4174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4175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4175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4175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4175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4175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4176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4177	제52조(출입·검사) 4177 제53조(검사기관) 4178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4179 제5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4179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4180 제56조(수수료) 4180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4177	제30조(자료의 보호) 4179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4179 제45조(자료의 보호) 4179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181	
제46조(수수료) 4180 제47조(청문) 4181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4181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185		
제8장 벌칙	제6장 벌칙	
제49조 삭제 4185 제50조(벌칙) 4185 제51조(벌칙) 4186 제52조(벌칙) 4187 제53조(양벌규정) 4187 제54조(과태료) 418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187	
부칙 4188	부칙 4188	부칙 418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13. 5.22 법률 제11789호 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1호 2018. 3.20 법률 제15512호 2018. 4.17 법률 제15584호 2018.10.16 법률 제15844호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공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p>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5호 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34호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2호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3호 2019.12. 3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 7.14 대통령령 제3084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 12. 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p>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2호 개정 2015.10.30 환경부령 제615호 2016. 8. 4 환경부령 제672호 2018. 1.15 환경부령 제740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28 환경부령 제790호 2019. 9.16 환경부령 제824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충해 예방을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0호 2020.12.17 환경부령 제89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p> <p>5. 삭제 (2018. 3. 20.)</p> <p>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7. "허가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 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p>	<p>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p> <p>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p> <p>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p> <p>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p> <p>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p> <p>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p>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p> <p>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p> <p>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p> <p>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 <p>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p> <p>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p> <p>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p>	<p>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번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p> <p>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p>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p> <p>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p> <p>16. 삭제 (2018. 3. 20.)</p> <p>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p> <p>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p> <p>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p> <p>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p> <p>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p> <p>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p> <p>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p> <p>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p> <p>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p> <p>9.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p> <p>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p>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p>		<p>제2조 삭제 <2016. 8. 4.></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5. 삭제 <2018. 3. 20.></p> <p>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p> <p>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p> <p>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1. 삭제 <2018. 12. 24.></p> <p>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3.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8. 2.]</p> <p>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2.]</p> <p>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24.></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p>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p>	<p>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8조 삭제 (2018. 12. 24.) 제9조 삭제 (2018. 12.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p> <p>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p> <p>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p>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p>[전문개정 2018. 12. 24.]</p> <p>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별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 	<p>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료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려는 자</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p> <p>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p> <p>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 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p>1.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톤</p> <p>2.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0톤</p> <p>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p> <p>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p> <p>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p> <p>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p> <p>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p> <p>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p>		<p>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p>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p> <p>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p> <p>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p> <p>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p>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p>	<p>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 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p>	<p>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p>	<p>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p> <p>7. 비분리중간체</p> <p>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제목개정 2018. 12. 24.]</p>	<p>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p> <p>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p> <p>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p>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목개정 2018. 12. 28.]</p> <p>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 16.) [제목개정 2018. 3. 20.]</p>		<p>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p> <p>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입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p> <p>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p>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2. 28.]</p> <p>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12. 28.>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p> <p>2.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p>		<p>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p> <p>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1.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p> <p>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p> <p>2.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p> <p>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전문개정 2018. 1. 15.] [제목개정 2018. 12. 28.]</p> <p>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18. 3. 20.]</p> <p>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p>	<p>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p>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단계·관리 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 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p> <p>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p>있는 화학물질</p> <p>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p> <p>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p> <p>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 <2018. 1. 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p>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p>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 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 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p>		<p>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p> <p>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p> <p>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목개정 2018. 3. 20.]</p>	<p>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p> <p>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p>[제목개정 2018. 12. 24.]</p>	<p>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p>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p>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p> <p>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p>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p> <p>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당한다)</p> <p>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 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2(취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취추동물시험은 취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8. 4. 17.]</p>	<p>제14조의2(취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취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취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취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취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의 기존 취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취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p>[본조신설 2018. 12. 24.]</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p> <p>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p>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p> <p>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p>[제목개정 2018. 4. 17.]</p> <p>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p> <p>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p> <p>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p> <p>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p>	<p>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제목개정 2018. 12. 24.]</p> <p>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p>	<p>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p> <p>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3. 20.]</p>	<p>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p>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3. 20.]</p>	<p>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제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p> <p>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p> <p>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12. 28.></p> <p>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p> <p>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p> <p>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p>가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p>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의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료 하역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0. 16.></p> <p>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p>	<p>이 제조하는 화학물질</p> <p>8. 나노물질</p>	<p>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p> <p>④ 삭제 <2016. 8. 4.></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p> <p>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p>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 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p>		<p>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8. 4. 1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p>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p>		<p>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p> <p>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p>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p> <p>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p>	<p>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p>	<p>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3. 20.> 2. 삭제 <2018. 3. 20.> 3. 삭제 <2018. 3. 20.>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삭제 <2018. 12. 24.> ③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서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p>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⑦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시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 3. 허가유예기간 <p>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p> <p>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해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p>	<p>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위해성 및 위해</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p> <p>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p> <p>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p>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p> <p>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p> <p>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p> <p>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p> <p>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p> <p>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p> <p>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p> <p>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p> <p>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p> <p>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p> <p>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p> <p>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p>		<p>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산설 2020. 12. 17.>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p> <p>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p> <p>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p> <p>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p> <p>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p> <p>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p> <p>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p> <p>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p> <p>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p> <p>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p> <p>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p> <p>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p> <p>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p> <p>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p> <p>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p> <p>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합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p> <p>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p> <p>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p>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p> <p>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 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p> <p>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제목개정 2018. 3. 20., 2020. 5. 26.]</p>		<p>당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목개정 2018. 12. 28.]</p> <p>제42조 삭제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 삭제 <2018. 3. 20.></p> <p>제34조 삭제 <2018. 3. 20.></p> <p>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p>[제목개정 2020. 5. 26.]</p>		<p>제43조 삭제 <2018. 12. 28.></p> <p>제44조 삭제 <2018. 12. 28.></p> <p>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p>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8. 12. 24.> 10. 삭제 <2018. 12. 24.> 11. 삭제 <2018. 12. 24.> 	<p>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7조 삭제 <2018. 12. 28.> 제48조 삭제 <2018. 12. 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p>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⑤ 삭제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화학 	<p>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p> <p>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p> <p>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p> <p>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24.></p> <p>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협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p> <p>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p> <p>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p> <p>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p> <p>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p>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p>	<p>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p>	<p>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p> <p>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p>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 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 6.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 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p>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p> <p>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8. 3. 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삭제 (2018. 3. 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p>[본조신설 2016. 8. 2.]</p>	<p>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증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7.,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p>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3. 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8. 3. 20.> 6. 삭제 <2018. 3. 20.> <p>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p>	<p>제30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p>	<p>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p> <p>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 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 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삭제 <2018. 12. 28.> 6. 삭제 <2018. 12. 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제5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p>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p>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p> <p>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p> <p>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p> <p>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p> <p>6. 삭제 <2018. 3. 20.></p> <p>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2.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 확인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p> <p>9.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p> <p>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p> <p>11.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p> <p>12. 삭제 (2018. 12. 24.)</p> <p>13. 삭제 (2018. 12. 24.)</p> <p>1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15. 삭제 (2016. 8. 2.)</p> <p>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p> <p>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술적 지원</p> <p>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p> <p>18의2.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p> <p>19.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p> <p>20.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p> <p>21.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p> <p>22. 대통령령 제000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자료의 접수</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삭제 <2018. 12. 24.>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번호 요청의 접수, 자료번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번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삭제 <2018. 12. 24.></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p> <p>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p> <p>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p> <p>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p> <p>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p> <p>1의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1의7.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p>1의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p> <p>2. 법 제42조의2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p> <p>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2., 2018. 12. 24.></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p>[본조신설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49조 삭제 (2018. 3. 20.)</p>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의2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7. 12. 26.) 6. 삭제 (2018. 12. 24.) 7. 삭제 (2018. 12. 24.)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8. 12. 24.) <p>[제목개정 2016. 8. 2.]</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5. 삭제 <2018. 3. 20.>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3. 20.>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p> <p>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p>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p> <p>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p>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p> <p>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p> <p>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89호, 2013. 5.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p> <p>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p> <p>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p> <p>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p> <p>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p> <p>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35호, 2014. 12.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6. 8. 2.〉</p> <p>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p> <p>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2호, 2014.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p> <p>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p> <p>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p> <p>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p> <p>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91호, 2016. 1. 27.)</p>	<p>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34호, 2016. 8. 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02호, 2017. 12. 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p>	<p>제3조 삭제 <2018.1.15></p> <p>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5호, 2015. 10.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72호, 2016. 8.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12호, 2018. 3.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p>	<p>시행한다.</p> <p>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를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13호, 201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0호, 2018. 1. 1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0호, 2018.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2. 31.></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84호, 2018. 4. 17〉</p> <p>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44호, 2018. 10. 16〉</p> <p>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p> <p>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p> <p>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229호, 2019. 12. 3.〉</p> <p>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p> <p>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3조 생략</p>	<p>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p> <p>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p> <p>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p>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서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p> <p>제21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849호, 2020. 7. 1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24호, 2019. 9. 1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0호, 2019.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96호, 2020. 12.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4195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4196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4197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4200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4200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420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4201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 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 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 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생장물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I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바.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사. 반복노출독성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아.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자.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또는 혼합물 2) 위의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비고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mg/L = (ppm \times 분자량 / 24.45) \times 1 / 1,000$ (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5.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외2] <신설 2018. 12. 24.>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9조제2호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 (變異原性)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1)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구분	고시기준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물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24.>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용도분류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결합제 (Adhesive·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제거함으로써 백색·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공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용(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25.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용도분류	내용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닌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별표 3] <개정 2020. 7. 14.>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

(제13조제1호 관련)

기간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 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별표 4] <개정 2018. 12. 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에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6] <개정 2018. 12.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	800	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0	800	1,000
바.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4205
[별표 2] 유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4207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4210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4210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4211
[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4211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4213
[별표 6]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4214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4215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4217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4217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4218
[별표 11]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4219

[별표 1] <개정 2018. 12. 28.>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용융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용융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분야	시험항목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성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나목4)의 시험동물용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2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흙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흙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 화합물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3) 잔류단량체의 함량(%)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2호1)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라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2호2) 및 3)에 따른 시험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19. 12. 20.>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제8호에 따른 최종 노출시나리오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해성관리대책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으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이 유사하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 간주되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5)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7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및 7)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2)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3)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4)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5) 잔류성·축적성 평가
 - 6) 노출평가(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 7) 안전성 확인
- 사. 바목 6)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바목 1)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바목 2)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환경에서의 분해, 농축 등 거동 특성을 평가한다.
 - 나. 분해성을 고려한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바목 3)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 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 나. 1) 수생(침전물 포함)생물, 2) 육생생물, 3)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바목 4)에 따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을 도출하여야 한다.

- 나. 1) 급성영향(급성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2) 과민성, 3) 반복투여독성, 4) 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바목 5)에 따른 잔류성·축적성 평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8. 바목 6)에 따른 노출 평가
 - 가. 노출 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 2) 노출예측
 -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기 가정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 라.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작업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흡입, 입,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9. 바목 7)에 따른 안전성확인

가. 제8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10. 위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 4. 분류 및 표시
-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폭발성
 - 나. 인화성
 - 다. 산화성
-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가. 수생 환경영역(침전물 포함)
 - 나. 육생 환경영역
 -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
-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급성독성

- 나. 자극성·부식성
- 다. 과민성
- 라. 반복투여독성
- 마. 변이원성
- 바. 발암성
- 사. 생식독성
- 아. 다른 영향
- 자.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노출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11. 안전성 확인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환경
 - 인체 건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유해화학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 1) 적절한 소화제
-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8. 12. 28.>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

(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별표 3의3] <신설 2018. 12. 28.>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19. 9. 16.>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중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물 분배 계수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성장저해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4) 눈 자극성/부식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9) 추가 유전독성 10) 반복투여독성(28일) 11) 반복투여독성(90일)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3) 최기형성 14) 2세대 생식독성 15) 발암성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이분해성 13) 본질적분해성 14) 생물농축성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사) 밀도 아) 입도분석 자) 인화성 차) 폭발성 카) 산화성 타) 점도 파) 해리상수	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 독성 바) 눈자극성/부식성 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아)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자) 반복투여독성(28일) 차)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카)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타) 반복투여 독성(90일) 파) 최기형성 하) 2세대 생식독성 거) 발암성	아) 어류만성독성 자) 물벼룩만성독성 차) 육생식물 급성독성 카)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타)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우) 흡착 및 탈착 하)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거) 육생식물 만성독성 나)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데)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러) 저서생물 만성독성 머) 생물농축성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말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 1)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다만, 등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분배 계수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라) 담수조류 성장저해 마) pH에 따른 가수분해 바) 본질적분해성 사) 분해산물의 확인

2) 그 밖의 경우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19. 9. 16.>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2.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 2) 공정도(임의 제출)
 -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 라)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 마)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고: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용
-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증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3. 삭제 <2015.10.30.>

[별표 6]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 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다. “인화성 에어로졸”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거.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경구·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구분 1, 구분 2 및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환경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번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나. 소비자 용도
2.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1) 가)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부터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마)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설의 형태를 가) 저장보관시설, 나) 이송운반시설, 다) 사용시설, 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마)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나.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인체 노출: 1) 입, 2) 피부, 3) 흡입, 4)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나. 환경 노출: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4) 토양, 5)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돌발적·간헐적, 나. 가끔씩, 다. 지속적·반복한, 라.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5. 제조·사용량 및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가.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을 작성
나.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를 작성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9] <개정 2018. 12. 28.>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마. 영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개정 2018. 12. 28.>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지정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11] <개정 2020. 12. 17.>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0,000원

2. 감면기준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227	제1조(목적) 4227	제1조(목적) 4227
제2조(정의) 4228	제1조의2(정의) 4228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4228
제3조(적용범위) 4229		
제4조(기본이념) 4229		
제5조(국가 등의 책무) 4230		
제6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4230	제2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4230	
제6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4231		
제6조의2(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4232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4233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4234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4234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4234		
제9조(환경보전위원회) 4235	제3조(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23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235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4235	
	제5조(회의) 423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236	제6조(간사) 4235	
제10조의2(지역환경보전위원회) 4236	제7조(전문위원회) 4236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4236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4237	
	제9조(수당과 여비) 4237	
	제10조(운영세칙) 4237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4237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4237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4237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4238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4238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4238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4239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4239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4240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4239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4239
		제6조(조사의 방법) 4240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4240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4240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4242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4242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4243		
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244		
제16조 삭제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삭제 4244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4244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4245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247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4247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4247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4248	제13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4248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4250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4250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4250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4250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 4251	제15조 삭제 4251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4251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4251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4254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4252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4251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4252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4257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4254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4254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4254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4256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256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256
제23조의3(교육) 4259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4259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4260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4260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4259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4264	제18조(판매증지 또는 회수의 권고) 4261	제11조의9(판매증지 또는 회수의 권고) 4261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4264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4262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4265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4263	제11조의10(자가관리계획의 수립) 4264
제5장 보칙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4265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 4265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4265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4266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4267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4266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4268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4266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4267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4267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4268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4268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4269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4269	
..... 4269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269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270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4270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270
제29조의2(수수료) 4271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4270
제29조의3(청문) 4271		제15조(수수료) 4271
제30조(위임 및 위탁) 4271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4271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73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4274		
제31조(벌칙) 4275		
제32조(양벌규정) 4276		
제33조(과태료) 4276		
제33조(과태료) 4277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4276	
	제23조(규제의 재검토) 4277	
부칙 4278	부칙 4278	부칙 4278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2008. 3.21 법률 제8946호 개정 2010. 1.18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1. 5.19 법률 제10655호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5호 2013. 1. 1 법률 제11619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1.14 법률 제12243호 2014. 3.24 법률 제12524호 2016. 1.27 법률 제13893호 2017.10.24 법률 제14931호 2018. 4.17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 6.12 법률 제15661호 2020. 2.18 법률 제17007호 (중양형정연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간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09. 3.12 대통령령 제21347호 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9호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양유아육법 시행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7호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4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49호 2014. 4.10 대통령령 제25301호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1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9.24 대통령령 제25626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8.11 대통령령 제26482호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6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4.24 대통령령 제2882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5호 2020.12.31 대통령령 제31357호</p>	<p>제정 2009. 4.17 환경부령 제330호 개정 2010. 6.30 환경부령 제373호 2011.11.14 환경부령 제429호 2012. 8. 2 환경부령 제471호 2013. 7. 2 환경부령 제511호 2014. 3.13 환경부령 제549호 2014. 9.25 환경부령 제575호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6. 7.27 환경부령 제673호 2016.12.22 환경부령 제68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12.31 환경부령 제90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 	<p>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2. 31.)</p>	<p>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슴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슴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결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차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화인대상어린이제품(안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p>[본조신설 2012. 7. 31.]</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p> <p>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전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6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p>제2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p> <p>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p> <p>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p> <p>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p> <p>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p> <p>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p> <p>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우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p> <p>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 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p> <p>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p> <p>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p> <p>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p> <p>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p> <p>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p> <p>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p> <p>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p> <p>10. 환경보전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p> <p>11. 환경보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환경보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7. 6.] 제6조</p> <p>제6조의2(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6조의2</p>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6.</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27., 2020. 2. 18.)</p> <p>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7조</p> <p>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8조</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p>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p> <p>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p>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7. 6.] 제10조</p> <p>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 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를 해당한다) 4. 관계 공무원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 증진을 위한 시책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p>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 전문가 환경보전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환경보전 관련 산업계 종사자 소속 공무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0조의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위해성평가 등</p> <p>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p>	<p>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p>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p>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p>	<p>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p> <p>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p> <p>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p>		<p>기준에 따라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p>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p> <p>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p> <p>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p> <p>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p> <p>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p> <p>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p> <p>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p> <p>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p> <p>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p> <p>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p> <p>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7. 6.] 제14조</p> <p>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p>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 2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p>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p>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5조</p> <p>제1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p> <p>제16조 삭제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16조</p> <p>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p> <p>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p> <p>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p> <p>1. 환경부장관</p> <p>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p> <p>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p> <p>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p> <p>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판단되는 경우</p> <p>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p> <p>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7조</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7조의2</p> <p>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환경성질원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원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p> <p>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 6. 12.></p> <p>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p>	<p>제13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p>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올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p> <p>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p> <p>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p> <p>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1조(환경보전 지표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전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환경보전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p> <p>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p> <p>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4. 10.]</p> <p>제14조(환경보전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1. 국내의 환경보전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전 기초·정밀조사 자료</p> <p>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p> <p>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p> <p>4. 그 밖에 환경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p>	<p>제9조(환경보전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전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상태를 측정·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p> <p>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p>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p> <p>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0. 2. 18.></p>	<p>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 삭제 <2012. 7. 31.></p> <p>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7. 31.,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p>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p> <p>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 2020. 12. 31.></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 	<p>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p>	<p>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p> <p>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한 때</p> <p>⑦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p> <p>⑧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p>	<p>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로,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p>[본조신설 2014. 9. 24.] [중선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4. 9. 24.)]</p>	<p>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증급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증축·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2. 18.> [제목개정 2012. 2. 1.]</p> <p>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p>	<p>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p>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 9. 25.>]</p> <p>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6. 7. 27.] [중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 7. 27.>]</p> <p>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7. 31.]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 9. 24.>]</p>	<p>에 따른 시험·검사기관</p> <p>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검사기관</p> <p>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p> <p>1.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2. 사업계획서</p>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p> <p>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p> <p>1. 검사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p> <p>2. 지정번호</p> <p>3. 지정 연월일</p> <p>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2. 8. 2.]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7. 2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p> <p>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p>		<p>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23조의2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p>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7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p> <p>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6. 7. 27.></p> <p>[본조신설 2012. 8. 2.]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6. 7. 27.>]</p> <p>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7.] [중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16. 7. 27.>]</p> <p>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p> <p>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p> <p>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p> <p>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p>		<p>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p> <p>2. 검사기관 지정번호</p> <p>3. 기관명 또는 대표자</p> <p>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p> <p>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7. 27.)</p> <p>[본조신설 2012. 8. 2.]</p> <p>[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 7. 2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한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p> <p>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본조신설 2012. 2. 1.] [시행일 : 2021. 7. 6.] 제23조의2</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3조의3(교육)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4.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2.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p>	<p>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p>	<p>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9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어주어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p> <p>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27.]</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4. 3. 24.)</p> <p>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p>	<p>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p> <p>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p>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p>	<p>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서식의 판매중지·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2. 31.] [중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0. 12. 31.)]</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증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증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p> <p>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0. 5. 26.></p>	<p>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p>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4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7. 14.></p> <p>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p> <p>⑩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p> <p>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 14., 2014. 3. 24.></p>	<p>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3. 해당 어린이용품을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4.> [제목개정 2014. 7. 14.]</p> <p>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9.]</p> <p>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p> <p>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p> <p>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9. 24.]</p>	<p>제11조의10(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2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일반현황 2.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3. 7. 2.] [제11조의9에서 이동 <2020. 12. 31.>]</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25조의2</p> <p>제5장 보칙</p> <p>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적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연구인력·조직·시설·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것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p>	<p>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 유효기간동안의 사업계획서 5.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8.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7. 27.></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전센터(이하 “환경보전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6. 1. 27.></p> <p>④ 환경보전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p>	<p>전문가 등으로 환경보전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보전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환경보전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전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p> <p>제20조의2(환경보전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7. 12.>]</p> <p>제20조의3(환경보전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센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7. 12.]</p>	<p>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전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전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 2016. 7. 27.></p>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p> <p>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p> <p>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p> <p>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p>	<p>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p> <p>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p> <p>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p> <p>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p> <p>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6. 7. 12.)]</p>	<p>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한다.</p> <p>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2.]</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정한다. [본조신설 2013. 1. 1.]</p> <p>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p> <p>③ 삭제 <2012. 2. 1.></p>	<p>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 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p> <p>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 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시행일 : 2021. 7. 6.] 제27조의2</p> <p>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p>②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0. 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검사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p>		<p>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의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 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p>[본조신설 2016. 7. 27.]</p> <p>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4., 2016.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2. 18.></p> <p>④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20. 2. 18.></p> <p>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p> <p>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p>[본조신설 2012. 2. 1.]</p> <p>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20. 12. 3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10.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p>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p>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2.]</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p> <p>4.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7. 31., 2020. 12. 31.></p> <p>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p> <p>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p> <p>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p> <p>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p> <p>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p> <p>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p> <p>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p> <p>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p> <p>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4. 9. 24., 2016. 7. 12., 2016. 11. 29., 2018. 4. 24., 2020. 12. 31.></p> <p>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p> <p>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관한 업무</p> <p>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4.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6.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p> <p>1. 환경보건센터</p> <p>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8., 2018. 4. 24.></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2. 31.></p> <p>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전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4. 8. 6.]</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p> <p>③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5. 19.></p> <p>④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4. 3. 24.></p> <p>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p> <p>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 5.></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21. 1. 5.></p> <p>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p> <p>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p> <p>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5. 19., 2021. 1. 5.></p> <p>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31조</p> <p>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p> <p>③ 삭제 <2012. 2. 1.></p> <p>④ 삭제 <2012. 2. 1.></p> <p>⑤ 삭제 <2012. 2. 1.></p> <p>제33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5.></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21. 1. 5.></p> <p>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5.></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33조</p>	<p>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 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8946호, 2008. 3.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3.1.1></p> <p>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0655호, 2011. 5. 19.></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p> <p>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p> <p>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9. 24.]</p> <p>부칙 <제21347호, 2009. 3. 1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3.1.1></p> <p>부칙 <제23269호, 2011. 10. 28.></p> <p>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p> <p>부칙 <제23997호, 2012. 7.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1265호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p>	<p>부칙 <제330호, 2009. 4.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례) 제10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73호, 2010. 6. 30.></p> <p>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9호, 2011. 11. 14.></p> <p>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71호, 2012. 8. 2.></p> <p>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11호, 2013. 7. 2.></p> <p>이 규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9호, 2014. 3.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p> <p>㉟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p> <p>㊱부터 ㊳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p> <p>부칙 <제24294호, 2013. 1. 1.></p> <p>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649호, 2013. 6.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로나 마감재료를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575호, 2014. 9.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 239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p> <p>㉟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p> <p>㊱부터 ㊳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1265호, 2012. 2. 1.></p>	<p>부칙 <제25301호, 2014. 4. 1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451호, 2014. 7. 14.></p> <p>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위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626호, 2014. 9. 24.></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p> <p>㉟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p> <p>㊱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673호, 2016. 7. 27.></p> <p>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1호, 2016.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생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19호, 2013. 1.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p>	<p>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295호, 2015. 6.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p>② 및 ③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p>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p>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2243호, 2014. 1.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12524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0항·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93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6435호, 2015. 7.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6482호, 2015. 8.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행위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p> <p>부칙 <제27336호, 2016. 7. 12.></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00호, 2020. 12. 31.></p> <p>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4931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583호, 2018. 4. 17.> (실내공기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p> <p>부칙 <제15661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p> <p>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④ 및 ⑤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p> <p><256>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p> <p><257>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826호, 2018. 4. 24.></p>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p> <p>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295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p> <p>부칙 <제31357호, 2020. 12. 31.></p> <p>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4287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4287
[별표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4288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4289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4290

[별표 1] <개정 2020. 12. 31.>

건강영양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19. 12. 3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크롬·구리·비스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농도는 80 $\mu\text{g}/\text{m}^3$ 이하일 것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mu\text{g}/\text{m}^3$ 이하일 것

[별표 3] <개정 2019. 7. 9.>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3제2항 관련)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p>「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p> <p>가.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분야(3명 이상)</p> <p>나. 의학, 생물학, 대기, 실내공기 또는 약취 분야(2명 이상)</p>	<p>가. 시설: 실험실</p> <p>나. 장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저울(0.0001g) 1대 2) 정제수 제조장치 1대 3) 가열맨틀 1대 4) 가열훈합기 1대 5)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6) 진공펌프 1대 7) 열탈착장치 1대 8) 튜브클리너 1대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 1대 및 클린룸시스템 1대 나) 공기시료채취 펌프 4대(유량 0.1 ~ 1.5L/min 3대, 유량 0.05 ~ 0.1L/min 1대), 유량제어장치 1대, 유량보정장치 1대 및 흡착관 10개 10) 삭제 <2013.6.28> 1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1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1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14)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ICP) 1대 15)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UV/VIS) 1대 16) 광학현미경 1대 17) 원심분리기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비고: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9)까지 및 11)부터 17)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 7. 12.>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제2호나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환경보건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다.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11.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5] <신설 2016. 7.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4293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4293
[별표 2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4294
[별표 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4295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4296

[별표 1] <개정 2019. 12. 20.>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1. 초과발암위해도(超過發癌危害度)를 적용할 경우 위해성기준은 10^{-6} ~ 10^{-4} 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해성기준은 위험지수 1로 한다.

비고

1. "초과발암위해도"란 독성역치(독성을 보이는 최소한의 수준)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 "위험지수"란 독성역치가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동일 노출기간의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0.6.30>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단위: mg/kg)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납	200 이하
6가크롬	5 이하

비고: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2의2] <신설 2016. 7. 27.>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검사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시험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 2)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3) 신청업체 및 대표자
- 4) 시험의 개시일 및 종료일
- 5) 시험방법 및 시료명
- 6) 분석 기기조건 및 시험·검사 결과
- 7)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 및 고유발급번호
- 8) 시험·검사 결과서 발급의 법적근거 및 사용제한 표기

나.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는 매 시험마다 작성하되, 시료의 전처리, 시험자, 기기 분석 조건, 검정곡선 등 관련 기초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운영관리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 2) 시험분석 장비의 검교정 내역서(성적서 포함)
- 3)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 4) 주요 분석기기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산정 자료
- 5) 품질문서 제·개정본 및 기관의 품질방침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실적

라. 시료채취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신청기관 현황
- 2) 시료채취 대상시설 현황 및 시료채취 지점(시료채취 장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다)
- 3) 중금속 항목의 경우 간이측정결과

2. 검사기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6. 7. 27.>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	지정취소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개정 2016. 7. 27.>

수수료(제15조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한 시험·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도로나 마감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6가크롬	44,200
2. 도로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1,250,000
	나.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톨루엔	124,000 139,000
3. 목재 방부제	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스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CCB)	220,000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4. 모래 등 토양	라. 6가크롬	44,200
	마. 비소	44,2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6가크롬	44,200
	마. 폼알데하이드	45,000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기생충(란)	39,3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인자	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90,00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90,000
	다. 트라이부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90,000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90,0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303	제1조(목적) 4303	제1조(목적) 4303
제2조(정의) 4303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4303	
제3조(적용대상) 4304		제2조(운영기관) 4304
제3조(적용대상) 4305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430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4306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4306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4307	제4조(배상책임한도) 4307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보존) 4307
제7조(배상책임한도) 4307	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4308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4307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4309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4308		
제10조(연대책임) 4309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4310
제11조(구상권) 4309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4312	제6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4311
제12조(책임의 배분) 4309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4312
제13조(배상방법) 4310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4310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5조(정보청구권) 4310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4314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4312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43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험자) 4315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4317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4318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4319 제22조(재보험사업) 4319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 4314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4316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4317 제11조(선지급의 기한) 4318 제12조(재보험사업) 4319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4314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4315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4315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4316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4318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4318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4319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4321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4323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4326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4326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4327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4319 제14조(의료비) 4320 제15조(요양생활수당) 4320 제16조(장의비) 4320 제17조(유족보상비) 4321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4321 제19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구성) 4321 제20조(심의회 운영) 4322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4322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4326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4323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4324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4325
		제17조(심사청구의 제기) 4327 제1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43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4327	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327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4328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329		제1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4329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4329		제2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4329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4330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4330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4331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4331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4332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4332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332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4332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4334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4333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4334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4334		
제41조(재정지원) 4335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4335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4335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4335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4335
제43조(행정처분 등) 4336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4336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4336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336	제30조(권한의 위임) 4336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4337	
	제32조(보고) 4337	제24조(보고) 4337
	제33조(업무의 위탁) 4338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4339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339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40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벌칙) 4340 제48조(양벌규정) 4340 제49조(과태료) 4341 부칙 4341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341 부칙 4341	부칙 434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4.12.31 법률 제12949호 개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2.12 법률 제15201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p>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6호 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26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12 대통령령 제2896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 1 대통령령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p>	<p>제정 2015.12.31 환경부령 제634호 개정 2018. 6.12 환경부령 제763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p> <p>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p> <p>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填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p> <p>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p> <p>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p> <p>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p> <p>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p> <p>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p>		<p>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p> <p>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p> <p>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p> <p>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p> <p>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p> <p>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p> <p>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p> <p>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p> <p>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p>	<p>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p> <p>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p> <p>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p> <p>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p> <p>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p> <p>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시행일 : 2021. 4. 1.] 제3조</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p> <p>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p> <p>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p>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p> <p>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p>	<p>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보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p> <p>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p>	<p>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p>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p> <p>제11조(구상권)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p> <p>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p>	<p>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p> <p>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6조(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서에 따라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p>	<p>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명령 처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7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p>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재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p> <p>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p> <p>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p>⑥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p>	<p>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청구를 하였거나 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p> <p>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p>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정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p> <p>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p>	<p>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장계약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2. 해당 시설의 인·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취급물질 및 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p> <p>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p>④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p> <p>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바에 따른다.</p>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보장계약의 체결·해지 및 종료 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보장금 일부의 선지급, 피해 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및 재보험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p> <p>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p> <p>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증지 증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p>	<p>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증지 증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 6. 정관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 보험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의 보험자가 제출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사업단을 대표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p> <p>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p> <p>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p>	<p>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p>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준이 인정한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p>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p>	<p>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해지 통보서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6. 12.> 2. 삭제 <2018. 6. 12.> <p>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p> <p>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p>	<p>제12조(재보험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p> <p>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p> <p>②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p> <p>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p> <p>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4. 유족보상비</p> <p>5. 재산피해보상비</p> <p>제14조(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p> <p>제16조(장의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17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p> <p>제19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③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6.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6. 12.></p> <p>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 6. 12.></p> <p>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은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8. 6. 12.></p> <p>1. 운영기관의 임직원</p> <p>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p> <p>⑥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1.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p> <p>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p> <p>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단서·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④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⑤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p>		<p>본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 등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장이 정한다.</p> <p>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어난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p> <p>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p> <p>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p> <p>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p> <p>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p> <p>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p> <p>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2.)</p> <p>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p> <p>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제17조(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해보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안전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⑥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8. 6. 12.></p> <p>⑦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p> <p>⑧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p>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p>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p>		<p>제1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2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환경부장관은 법</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p>		<p>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운영기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p> <p>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p>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④ 운영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p> <p>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p> <p>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연</p>	<p>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① 운영기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등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운영기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 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p>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2.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변경·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변경·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p>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p>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p> <p>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용,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p>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p>	<p>진 지원금 수급자</p> <p>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p> <p>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p> <p>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p> <p>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p> <p>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그 밖에 소송지원단의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6. 12.></p> <p>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개정 2018. 6. 12.></p>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선지급의 신청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지급 여부·피해등급 등의 결정·통지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의 통지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제25조제1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p>	<p>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p> <p>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p>	<p>12.)</p> <p>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p> <p>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p> <p>3.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번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p> <p>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p> <p>⑦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12.></p> <p>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p>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p>	<p>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949호, 2014. 12. 31.></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806호, 2015. 12. 30.></p> <p>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4호, 2015. 12. 31.></p> <p>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로 한다. <89>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201호, 2017. 12.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37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10호, 2017. 1.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3호, 2018. 6. 12.></p> <p>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2. 「물환경보전법」</p> <p>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부칙 <제28966호, 2018. 6. 12.></p> <p>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1212호, 2020. 12. 1.></p> <p>(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p> <p>⑧ 생략</p> <p>제3조 생략</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4347
[별표 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4347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4350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4350
[별표 5]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4351
[별표 6]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4351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4352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4352

[별표 1] <개정 2019. 7. 2.>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 처리시설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저장시설, 교반(휘저어 섞음)시설, 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18. 1. 16.>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9호에 따른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포 함된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1중사업장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 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중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 염물질을 배출하 는 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으 로서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2중 또 는 3중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제11호에 따 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폐수무방류배출 시설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3) 「승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 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의 100배 이상인 시설	의 100배 미만인 시설 (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결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18. 1. 16.>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고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 금액
1. 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2. 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00억원
3. 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50억원

비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8. 6. 12.>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요양생활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	지급비율(%)
1급	47.50
2급	42.75
3급	38.00
4급	33.25
5급	28.50
6급	23.75
7급	19.00
8급	14.25
9급	9.50
10급	4.75

비고

1. 피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한 날부터 3년마다 다시 피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별표 6]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	지급비율(%)
1급	1,500.00
2급	1,360.00
3급	1,220.00
4급	1,080.00
5급	940.00
6급	800.00
7급	660.00
8급	520.00
9급	380.00
10급	250.00

비고

1. 피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2.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급으로 본다.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4호	250	350	500
사.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5호	250	350	500

1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365	제1조(목적) 4365	제1조(목적) 4365
제2조(정의) 4365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4365	
제3조(적용범위) 4367		
제3조(적용범위) 436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370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37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370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4371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4372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4373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4373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375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4375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4376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4376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4376		제2조(화학물질확인) 4376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4377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4377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4378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4378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4377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4379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4378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4380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4381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437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4380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4381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4381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 4383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384</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385</p> <p>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4386</p> <p>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4387</p> <p>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4388</p> <p>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4389</p> <p>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4390</p> <p>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4391</p> <p>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4393</p> <p>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4395</p> <p>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4396</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4396</p> <p>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4397</p> <p>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4400</p>	<p>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4389</p> <p>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4391</p> <p>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4394</p> <p>제11조(환각물질) 4396</p>	<p>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383</p> <p>제7조의3(위원의 해촉) 43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p> <p>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385</p> <p>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4386</p> <p>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4387</p> <p>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4387</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4388</p> <p>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4389</p> <p>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4390</p> <p>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4391</p> <p>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4393</p> <p>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4394</p> <p>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439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4396</p> <p>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4400</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4402</p> <p>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4403</p> <p>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4403</p> <p>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404</p> <p>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4405</p> <p>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4406</p>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4411</p>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4412</p>		<p>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4400</p> <p>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4401</p> <p>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402</p> <p>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4403</p> <p>제20조의6(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4404</p> <p>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4406</p> <p>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 4406</p> <p>제22조(검사기관 등) 4408</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4408</p> <p>제24조(안전진단 등) 4410</p>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4411</p>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441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p> <p>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4413</p> <p>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44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p> <p>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4414</p> <p>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4415</p>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4416</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4418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4418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4420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4420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4420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4420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4422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4421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4422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4422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4423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4423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4424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4424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4426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4426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4426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4428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4428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4427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4430		제35조(안전교육기관) 4428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4432		제36조(안전교육계획) 4429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4433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4429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4435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4430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4437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4431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4440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4440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4433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4441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440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4441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4442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등) 4443</p> <p>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p> <p>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p> <p>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4444</p> <p>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444</p> <p>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4444</p> <p>제41조 삭제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삭제 4448</p> <p>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4448</p> <p>제41조의2 삭제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삭제 4450</p> <p>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4450</p> <p>제42조 삭제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삭제 4450</p> <p>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p> <p>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451</p> <p>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451</p> <p>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4452</p> <p>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4452</p>	<p>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4444</p>	<p>승인) 4443</p> <p>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4443</p> <p>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p> <p>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p> <p>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444</p> <p>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4444</p> <p>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4444</p> <p>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4447</p> <p>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4448</p> <p>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4449</p> <p>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p> <p>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451</p> <p>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4452</p> <p>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4452</p> <p>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4454 제46조(조치명령 등) 4455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4455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4454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4455	등) 4453 제51조(조치명령 등) 4455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456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4457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4458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4456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456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4457 제54조(출입·검사) 4458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4459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4459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4459 제51조(청분) 4460 제51조(청분) 4460 제52조(자료의 보호) 4461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4461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4461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4461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4461 제54조(수수료) 4462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4463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463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4467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67	제59조(수수료) 4462 제60조(보고) 4467
제56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467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4467 제58조(벌칙) 4467 제58조(벌칙) 4468 제59조(벌칙) 4469 제60조(벌칙) 4470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벌칙) 4470		
제61조(벌칙) 4471		
제62조(벌칙) 4472		
제63조(양벌규정) 4472		
제64조(과태료) 4473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473	
제64조(과태료) 4474		
	제25조(규제의 재검토) 4476	제61조(규제의 재검토) 4476
부칙 4476	부칙 4476	부칙 4476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개정 2014. 3.18 법률 제1249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15. 1.20 법률 제13035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6. 1.27 법률 제13890호 2016. 5.29 법률 제14231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재정수법) 2016.12.27 법률 제14493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5호 2018. 6.12 법률 제15659호 2018.12.24 법률 제16084호 2020. 3.31 법률 제17182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p>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개정 2016. 7. 6 대통령령 제27317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7. 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 5. 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3호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3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4호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6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6.)</p>	<p>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개정 2016. 4. 7 환경부령 제647호 2016. 7.27 환경부령 제668호 2017. 5.30 환경부령 제701호 2017. 7.31 환경부령 제7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7.12.27 환경부령 제730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0.26 환경부령 제774호 2018.11.29 환경부령 제778호 2019. 3.29 환경부령 제804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11.29 환경부령 제831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2020. 9.29 환경부령 제88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p> <p>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p> <p>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p> <p>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p> <p>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용하는 원료</p> <p>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p> <p>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p> <p>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p> <p>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p> <p>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p> <p>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1. 4. 1.] 제3조</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p>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p>	<p>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p>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시행일 : 2021. 4. 1.] 제4조</p> <p>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p>[본조신설 2016. 7. 6.]</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p> <p>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p> <p>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p> <p>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p> <p>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p> <p>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 <p>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p> <p>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p> <p>1. 정기회의: 연 1회</p> <p>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p>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p>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및 지원</p> <p>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p> <p>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p>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p>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p> <p>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7. 사고대비물질</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p> <p>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p> <p>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p>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p>	<p>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삭제 (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배출저감계획서</p>		<p>시행하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종, 업제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p> <p>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 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 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p>	<p>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p>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p> <p>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p>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p>[본조신설 2019. 11. 29.]</p> <p>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p> <p>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p>	<p>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p>	<p>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p> <p>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p> <p>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p> <p>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p>		<p>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2018. 11. 29.></p> <p>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31., 2019.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p>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p>		<p>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p> <p>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5. 30.]</p> <p>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20. 9.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p>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p> <p>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시행일 : 2021. 4. 1.] 제13조</p> <p>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별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p> <p>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경우</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p>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 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p>		<p>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 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p>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p>	<p>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p> <p>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p> <p>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p>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용·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p>	<p>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4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p>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한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p>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p>	<p>질을 말한다.</p>	<p>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p>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p>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p> <p>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p>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p>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p>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p>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p> <p>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p>	<p>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p>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p> <p>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이하 “검토신청서”라 한다)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p> <p>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p> <p>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p> <p>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p>		<p>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p> <p>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p>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p> <p>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p> <p>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경안전보고서(이하 “공경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경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p> <p>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p> <p>1. 공경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p> <p>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신설 2020. 9.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9. 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p> <p>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p> <p>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3조</p> <p>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6. 7. 27.]</p> <p>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p> <p>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입차하는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9.) [본조신설 2016. 7. 27.]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소속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p>		<p>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교육: 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최초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 각각 16시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필수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2.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 중 교육대상자가 선택하는 과정 <p>[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8. 11. 29.>]</p> <p>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무 인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돌려줘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3조의2</p> <p>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 [중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7. 11. 28.)]</p> <p>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3조의3</p> <p>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p>		<p>제20조의6(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p> <p>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7. 11. 28.] [제23조의30에서 이동 <2017. 11. 28.>]</p> <p>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p>		<p>고,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③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신설 2018. 11. 29.></p> <p>④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대행계약 당사자와의 합의 사실 및 대행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p> <p>⑤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8. 11. 29.></p> <p>⑥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9.></p> <p>[본조신설 2016. 7. 27.]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8. 11.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3조의4</p> <p>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p>		<p>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p> <p>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p> <p>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p> <p>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p> <p>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p> <p>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p> <p>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 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p>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p>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p> <p>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p> <p>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p>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p> <p>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p> <p>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7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p> <p>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p> <p>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p> <p>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p> <p>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p>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 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p> <p>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p>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p> <p>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p> <p>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p>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p> <p>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p> <p>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p> <p>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p> <p>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p>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p> <p>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p>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p> <p>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작성항목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정위험성 분석자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유출·누출 시나리오가 변경된 경우 <p>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正)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경우</p> <p>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p> <p>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p> <p>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p>		<p>에는 제5호에 따른 장의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p> <p>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p> <p>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p> <p>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의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p> <p>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의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4. 7.></p> <p>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p> <p>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p> <p>3. 삭제 <2020. 3. 31.></p> <p>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31.></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8조</p> <p>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p>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p>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p>[본조신설 2017. 12. 27.]</p>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p> <p>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p> <p>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p> <p>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p> <p>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p> <p>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뿐만 아니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p> <p>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p>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p> <p>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p>		<p>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p> <p>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p>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p>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p>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p> <p>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물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p>		<p>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p>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긴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p>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p>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p>	<p>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p>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p>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p>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p> <p>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p> <p>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p> <p>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p> <p>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p> <p>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p> <p>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p> <p>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p> <p>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p> <p>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p> <p>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p> <p>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p> <p>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p> <p>9. 법 제41조에 따른 위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p> <p>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p> <p>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p>	<p>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p> <p>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p> <p>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p> <p>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p> <p>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p>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 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p> <p>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 5. 30.></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30.></p> <p>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p>		<p>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4. 7., 2017. 5. 30.></p> <p>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p> <p>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6. 4. 7., 2017. 5. 30.></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p>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4. 7.></p> <p>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p>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p>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 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p>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p> <p>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 [시행일 : 2021. 4. 1.] 제34조의2</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p> <p>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p> <p>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p> <p>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p> <p>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p> <p>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p> <p>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p> <p>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p> <p>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p> <p>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p> <p>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p> <p>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21. 삭제 (2020. 3. 31.)</p> <p>22. 삭제 (2020. 3. 31.)</p> <p>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4. 1.] 제35조</p> <p>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p>	<p>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1. 납세자의 인적사항</p> <p>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p> <p>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31.></p> <p>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p> <p>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p>	<p>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p>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p> <p>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p> <p>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p> <p>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p> <p>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p>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p> <p>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p> <p>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 30.]</p> <p>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및 유기사항에 관한 사항</p> <p>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책임자, 작업자 현황</p> <p>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p> <p>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p> <p>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p> <p>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p> <p>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p> <p>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p> <p>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p> <p>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p>		<p>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p> <p>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p> <p>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p> <p>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p> <p>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p>		<p>⑥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5. 30.,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의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2.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1. 29.></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개정 2020. 9. 29.></p> <p>④ 삭제 <2020. 9. 29.></p> <p>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7. 5. 30., 2018. 11. 29.,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소산계획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p> <p>제41조 삭제 (2020. 3. 31.)[시행일 : 2021. 4. 1.] 제41조</p> <p>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p> <p>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적고 수정·보완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라 제출자에게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0. 9. 29.)</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 2018. 11. 29.)</p> <p>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점검: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은 직전의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나.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1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p> <p>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용·방법·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통지 시기·방법,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7. 11. 28.] 제41조의2 삭제 <2020. 3. 31.>[시행일 : 2021. 4. 1.] 제41조의2</p> <p>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 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 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p>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제42조 삭제 <2020. 3. 31.>[시행일 : 2021. 4. 1.] 제42조</p>		<p>회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p>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p> <p>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p> <p>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p> <p>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1. 4. 1.] 제43조</p> <p>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p>		<p>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p> <p>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7.]</p>		<p>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p> <p>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p> <p>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27.]</p> <p>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p> <p>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 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 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p> <p>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p>	<p>[본조신설 2017. 12. 27.]</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 1. 17.)</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p>	<p>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p>	<p>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p> <p>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 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의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의 정보 <p>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의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p>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인을 받아야 하는 자</p> <p>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p> <p>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p> <p>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p> <p>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p> <p>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p>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p> <p>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p>		<p>②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 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p> <p>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인력의 교육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4.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받아야 하는 자</p> <p>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p> <p>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p> <p>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p> <p>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p> <p>9의2. 삭제 (2020. 3. 31.)</p> <p>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p> <p>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1. 4. 1.] 제49조</p> <p>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p>		<p>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든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0.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p> <p>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p> <p>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p> <p>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든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인 한 자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같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p>[전문개정 2016. 1. 27.]</p> <p>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20. 3. 31.>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p>[전문개정 2016. 1. 27.] [시행일 : 2021. 4. 1.] 제5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2019. 4. 17.></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p>	<p>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p>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p>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9. 11. 2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30.></p> <p>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p>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p>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검사</p> <p>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진단</p> <p>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p> <p>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p> <p>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p> <p>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p>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p> <p>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p> <p>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p> <p>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p> <p>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p> <p>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p> <p>2의5.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p> <p>2의6.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p> <p>2의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p> <p>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및 적합 여부 통보 등</p> <p>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p> <p>3의3. 법 제23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p> <p>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p> <p>6.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p> <p>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p> <p>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8의2.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p> <p>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p> <p>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p> <p>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p> <p>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p> <p>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p> <p>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p> <p>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p> <p>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p> <p>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p> <p>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수리 등</p> <p>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p> <p>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p> <p>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p> <p>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p> <p>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p> <p>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p> <p>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p> <p>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 명령 등</p> <p>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p> <p>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p> <p>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p> <p>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p> <p>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p> <p>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p> <p>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p> <p>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p> <p>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 5. 8.></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p> <p>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p> <p>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p> <p>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p> <p>[제목개정 2020. 9. 29.]</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p> <p>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7. 3. 27.]</p>	<p>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2. 27.></p> <p>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p> <p>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p> <p>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p> <p>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p> <p>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p> <p>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10.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p> <p>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p> <p>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p> <p>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p> <p>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p> <p>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시행일 : 2021. 4. 1.] 제58조</p>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p> <p>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p> <p>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p> <p>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p> <p>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p> <p>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p> <p>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p> <p>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p> <p>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니한 자</p> <p>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p> <p>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p> <p>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p> <p>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5.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p>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p> <p>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p> <p>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p> <p>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시행일 : 2021. 4. 1.] 제61조</p> <p>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p>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p> <p>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p> <p>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p> <p>4의2. 삭제 (2020. 3. 31.)</p> <p>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p> <p>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p> <p>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p> <p>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21. 4. 1.] 제64조 </p> <p>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p> 부칙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2015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p> 부칙 <제583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p>	<p>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p> <p>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p> <p>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p>	<p>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경안전보고서</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재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금지자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자산 또는 한정자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p> <p>② 환경기상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p>	<p>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p> <p>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율”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율”로 한다.</p> <p>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p> <p>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p> <p>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p> <p>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의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p> <p>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의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p> <p>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p> <p>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p>	<p>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p> <p>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p> <p>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p> <p>⑯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p> <p>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p>	<p>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p> <p>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p> <p>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p> <p>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p> <p>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p>	<p>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시설</p> <p>제22조의7제1호(가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p> <p>⑮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p> <p>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p> <p>⑯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17호, 2016. 7. 6.)</p>	<p>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계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p>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 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⑮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p> <p>⑯ 환경보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p> <p>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28031호, 2017. 5. 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험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1항 각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p> <p>⑳ 산업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p> <p>㉑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㉒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㉓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p> <p>㉔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p> <p>㉕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p> <p>〈255〉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23호, 2017. 8. 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03호, 2017. 12. 26.)</p> <p>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⑩부터 ⑭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4호, 2018. 11. 27.)</p> <p>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216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p>	<p>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p> <p>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p> <p>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㉞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㉟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p> <p>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㊲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90호, 2014. 3.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p>	<p>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2호, 2020. 9. 29.〉</p> <p>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p> <p>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p> <p>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p> <p>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p> <p>부칙 〈제13035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1389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78 195 1490 406"> <tr> <td data-bbox="1078 195 1237 406">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td> <td data-bbox="1237 195 1490 406">「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 시설에 한정한다〕</td> </tr> </table> <p>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⑯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 시설에 한정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 시설에 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423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493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p> <p>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p> <p>㉒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p>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647호, 2016. 4. 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05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5659호, 2018. 6. 12.)</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084호, 2018. 12.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182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제9호·제12호, 제59조제7호·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668호, 2016. 7.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p> <p>부칙 (제701호, 2017. 5.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p> <p>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p>		<p>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p>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의 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p> <p>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급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8호, 2017. 7.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30호, 2017.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p> <p>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⑲부터 ㉞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4호, 2018. 10. 2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8호, 2018. 11.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p>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804호, 2019. 3. 29.></p> <p>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5호, 2019. 4. 17.> (산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1호, 2019. 11. 29.></p> <p>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6호, 2020. 9.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449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4495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게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600	800	1,000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80	240	300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소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3	600	800	1,000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의2	600	800	1,000
차.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180	240	300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300	400	500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600	800	1,000
2) 1)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600	800	1,000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180	240	300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의2	180	240	300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4호	180	240	300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600	800	1,000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9호	600	800	1,000
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600	800	1,000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1호	600	800	1,0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5호	180	240	30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4501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4503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4506
[별표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4507
[별표 4의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0조 관련)	4509
[별표 4의3]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0조의5 관련)	4510
[별표 4의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20조의6제3항 관련)	4510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4512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4514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4515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4516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4517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4520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4521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4521
[별표 11]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46조제3항 관련)	4525
[별표 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4527
[별표 13]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4527

[별표 1]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확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 ####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할 것
-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임),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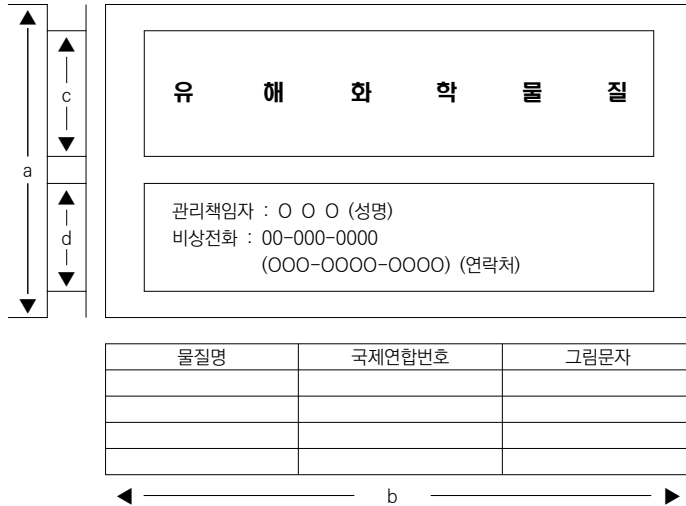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7. 12. 2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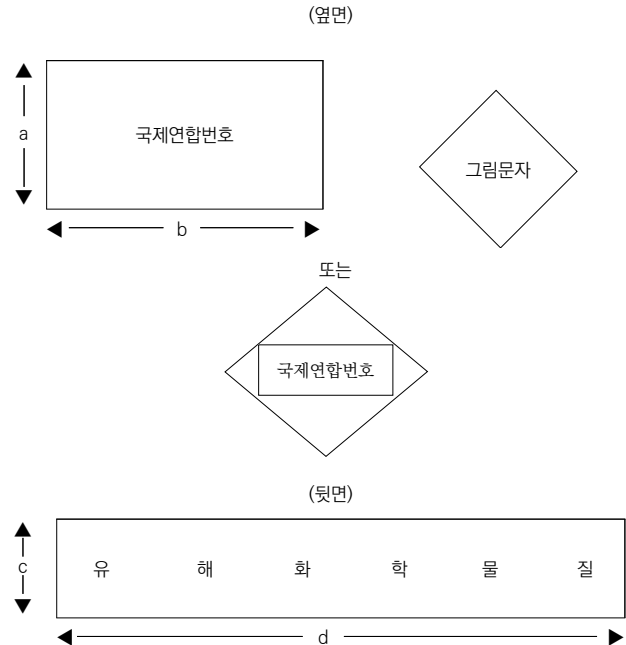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 2) 양식크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10\text{cm}$ 이상, $b=25\text{cm}$ 이상, $c=20\sim 30\text{cm}$, $d=80\sim 100\text{cm}$ 이어야 한다.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c=12\text{cm}$ 이상, $d=50\text{cm}$ 이상으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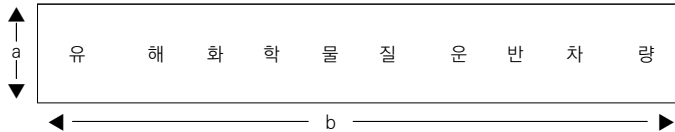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조정하여야 한다.

-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되,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 6) 표시위치: 양 앞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여야 한다.
- 7) 유해·위험성 우선순위
 - 가) 방사성 물질
 -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 다) 가스류
 -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 바) 자연 발화성 물질
 - 사) 유기과산화물
 -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앞면에 가로 b = 30~80cm, 세로 a = 10~20cm 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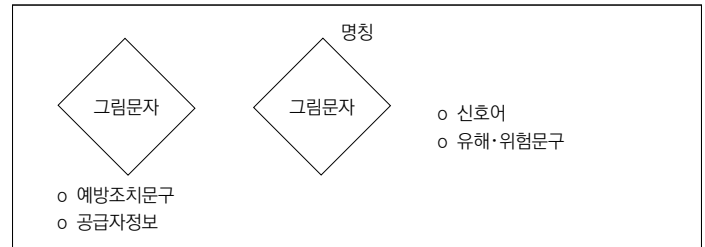
다. 비교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단일 용기·포장

1) 양식



2) 크기

가) 전체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이상
500ℓ 이상	450㎠ 이상

나) 그림문자 크기: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중 용기·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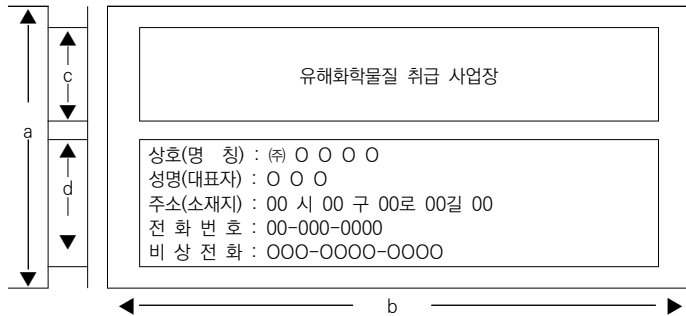
- 1) 외부 용기·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이 아닌 경우 외부 용기·포장과 내부 용기·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용기·포장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외부 용기·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 내부 용기·포장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고, 외부 용기·포장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는 외부 용기·포장의 그림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고

- 1) 단일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용기·포장의 표시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 2) 단일 용기·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상호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2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3 “인화성 에어로졸”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4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5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6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7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9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10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3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4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5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며,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2.16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 건강 유해성

- 3.1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입, 피부 투여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3.5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7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와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3.10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4. 환경 유해성

-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4개의 만성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 4.2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5. 추가적인 유해성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20. 9. 29.>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1)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은 물질안전자료(MSDS), 개별시설 및 장치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일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작성한다.
- 3) 유해성 정보는 일반정보[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조성농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1) 취급시설의 목록은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비, 배관 및 개스킷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의 명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취급량 혹은 처리 능력, 방호장치종류 등 동력기계 정보에 관한 사항
 - 나) 취급 혹은 저장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용접여부 등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다)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사용 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등 배관 및 개스킷에 관한 사항

3)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나)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 밸브 등) 등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의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1) 취급시설 입지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등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에 관한 사항

나) 기기의 설치 높이,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등 설비배치도(Plot-Plan)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기상 정보

기상정보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장의 평가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 상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출·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 중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1) 사고 시나리오는 기본 평가정보, 공정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고 발생 시나리오(안전성 확보 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2) 사고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3) 위험도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사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는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건축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의 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은 다목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작성한다.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 및 규제 내용을 작성한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의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제1호다목·라목, 제2호나목·다목·라목,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제2호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개정 2018. 11. 29.>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0조 관련)

1. 인력 요건

가. 환경·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1) 필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에 따른 지원인력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인력 10명당 1명 이상

가) 환경·안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화학물질 안전, 환경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분야의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환경·안전 분야의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 환경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분야의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지원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환경·안전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나) 환경·안전 분야의 기사자격 소지자

다) 환경·안전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환경·안전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환경·안전 분야의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가목의 인력 중 1명 이상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환경·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및 기술자격 소지자의 세부 전공 및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학위 소지자

가) 환경 분야: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 전공

나) 안전 분야: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 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환경안전, 생명화학, 산업안전 등 관련 전공

2) 기술자격 소지자

가) 환경 분야: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나) 안전 분야: 화학공학,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

2. 시설 요건

사무실은 해당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비 요건: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배포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장비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기기

4. 책임보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4의3] <신설 2018. 11. 29.>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20조의5 관련)

1.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취급량,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명세 또는 같은 표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확보방안을 사업장 밖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나.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상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다.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를 고의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작성과 그에 대한 조정·보완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 가.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도면 등 기초자료
 - 나.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대상 설비의 사고사나리오
 - 다. 그 밖에 별표 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사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사항

[별표 4의4] <신설 2018. 11. 29.>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20조의6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제23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요건 중 시설, 장비, 또는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요건 중 책임보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5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4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그 밖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별표 5] (개정 2020. 9. 2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에 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장외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안전성 확보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2.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증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 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그 밖에 제조·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유해화학물질 종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5)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6)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설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8) 저장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9) 저장·보관시설은 바닥에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나. 관리기준
- 1) 가목2)에 따른 배출설비에서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금속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4)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 8)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9) 그 밖에 저장·보관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가. 설치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 2)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 1) 운반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 2) 운반과정에서 운반시설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 3)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 4) 그 밖에 운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의 시설

- 가. 사업장 밖에 있는 배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하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배관설비는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의 설비는 물리적·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3)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나. 그 밖에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3.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4.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0. 9. 29.> [유효기간:2023년 12월 31일] 제2호가목5)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장비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바.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 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학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 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3)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허가 받은 자
-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6의2] <개정 2020. 9. 2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7. 5. 30.>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시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 개인보호구,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바.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별표 7] (개정 2020. 9. 29.)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 6)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2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5호, 법 제35조 제2항제7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차.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카.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파. 법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7호,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거.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8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9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0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일
서.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화학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1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어.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1호, 법 제35조 제2항제2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2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3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경고 경고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3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6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명세서로 같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독물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별표 9] <개정 2018. 11. 2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 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를 보존해야 한다.
 -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0] <개정 2019. 12. 2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단위: kg)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년간)	보관·저장 수량
1	포름알린 또는 포름알데히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	포름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6	염화 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8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500
9	염화 비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0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1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5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0	4-니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1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26	알릴 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7	m-크레졸[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0	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2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황철염(Potassium ferrocyanide)·적철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6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7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39	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	1,000
42	염화 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50,000	300,000
47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50,000	10,000
50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 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54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55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20,000
56	디보란[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7	산화 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0,000	20,000
59	질산 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1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2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3	질산 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4	과염소산 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5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0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66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7	질산 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69	염화 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0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3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4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7	세렌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8	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79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 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2	오불화 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3	염화 티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6	비닐 에틸 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87	실란[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8	디실란[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9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90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1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별표 11] <개정 2020. 9. 29.>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46조제3항 관련)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가.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CAS 번호, 분자식, 농도, 폭발한계, 독성값, 인화점, 발화점, 끓는점, 증기압, 부식성 및 취급량(연간 취급량, 최대 저장량) 등을 작성한다.

나.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일반정보, 위험·유해성 분류 및 표시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화재·폭발 특성, 안정/반응위험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취급방법, 사고대응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가. 취급시설의 목록은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기계목록 및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방제시설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스크러버(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의 처리용량,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방류벽 및 비상전원 등 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명, 위치 및 성능에 관한 기본사양과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방제장비의 보유 현황은 사업장 내에 있는 개인보호장구, 휴대용 측정기, 유출차단 및 오염물 제거용 장비 등 유사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종류, 수량, 성능 및 보관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가. 공정안전정보는 공정 또는 시설개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비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防爆)기기 선정기준, 철구조물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도, 유틸리티 계통도, 도면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따른 분석기법 또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방법을 채택하여 작성한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다. 공정안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취급설비의 정상 및 비상안전절차, 긴급상황에서의 공장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유틸리티 공급중단에 대한 비상안전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은 화학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가.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화재, 독성가스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 대비 비상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체 종업원과 환경안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자체점검 계획은 취급시설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으로서 체크리스트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가.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자 및 연락처,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통제실 운영, 경보전달 및 사고신고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관리 담당조직은 유사시 실제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조직 및 공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 목록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가. 유출·누출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 최악의 시나리오와 사고사례, 공학적 표준을 고려한 실제 발생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응급조치 계획은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단 혹은 단계별 차단 절차, 내·외부 확산 차단 또는 방지 대책, 방제자원(인원 또는 장비) 투입 등의 방제계획, 비상대피 및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 범위를 작성한다.
나.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의 확인에 관하여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 분포, 공작물·농작물의

위치도 및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환경매체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 기상정보, 상수취수원, 토양 및 지하수, 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매체, 주변위협시설, 운송시설 등 외부위해요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구체적인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자체 방제능력의 확보계획, 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 체계, 방제비용 및 사고복구계획, 사고복구의 방법 및 조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잠재적 사고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유지보수 계획, 비정기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등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비고

1.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자가 아니고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호의 일부만을 작성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사본과 제3호다목, 제4호, 제5호가목,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의 사본과 제1호, 제2호나목·다목, 제3호가목·나목,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2] <개정 2020. 9. 29.>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		
5.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6.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7. 유독물질 수입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8.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1.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2.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9,000원	7,200원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9,000원	7,2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0,000원	27,000원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20,000원	18,0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13,000원	11,7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9,000원	7,2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	13,000원	11,700원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3] <개정 2017. 12. 27.>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장외영향평가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협회의 장

제7편

물통합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31
02.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643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51
04.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771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779
06.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817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969
08.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4983
09. 상수원 관리규칙	5187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5207
11.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5223
12.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5275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303
14.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413
15.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5421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5569
17.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587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09
19.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821

제7편
물통합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540	제1조(목적) 4540	제1조(목적) 4540
제2조(정의) 4540		
제3조(적용 범위) 4541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4541	
		제2조(적용범위) 4542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4542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4542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4543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4543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544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4544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4543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4545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545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4544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546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4547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4544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4547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4546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4548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4547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4547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4548	제7조(수질기준) 4548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4548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4548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548
		제8조(연평균 수질) 454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토지등의 매수) 4549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4552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554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4556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558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4561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4549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4549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4551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4552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4552 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4556 제11조(사업장 관할) 4558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4561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4562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456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4563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4564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4550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4552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4553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4554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4554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4555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4555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556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4556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4557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4557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4558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558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4559 제23조(조치명령 등) 4560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4560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456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 4566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4565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4565
제15조(허가 제한) 4567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4568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566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4567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4568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566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4568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569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4567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4569		
제4장 폐수매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4569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4570	제30조 삭제 4569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4569		제31조 삭제 4569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4570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4570	제32조(관거의 관리) 4569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4571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4569
제21조(주민지원사업) 4570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4573	제34조(수질 유지기간) 4570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575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4574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4573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4575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575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4573
제23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4576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4575	
	제25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4576	제36조(수질오염방지사설에 대한 지원) 457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p> <p>제24조(수질개선사업) 4577</p> <p>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4577</p> <p>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4578</p> <p>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p> <p>제27조(수질개선훈합회계의 설치) 4581</p> <p>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4581</p> <p>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4581</p> <p>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4582</p> <p>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4586</p> <p>제32조(기금의 재원) 4586</p> <p>제33조(기금의 용도) 4586</p> <p>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4588</p> <p>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588</p>	<p>제26조(통보 등) 4578</p> <p>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4582</p> <p>제28조(자료의 제출) 4582</p> <p>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4583</p> <p>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4583</p> <p>제31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4583</p> <p>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4584</p> <p>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4585</p> <p>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4585</p> <p>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4586</p> <p>제35조(기금의 용도) 4587</p> <p>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4588</p>	<p>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4577</p> <p>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4584</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590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4591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4591 제38조(개선 요청 등) 4592 제39조(청문) 4593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4593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595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제41조(벌칙) 4596 제42조(양벌규정) 4596 제43조(과태료) 4596 부칙 4597	 제37조(권한의 위임) 4593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4594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94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4595 제38조(과태료의 부과) 4596 부칙 4597	 제39조(규제의 재검토) 4595 부칙 459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2. 1.14 법률 제6605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직사립을유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2003. 5.29 법률 제6916호 (주역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05.12.29 법률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06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4호 (건축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29 법률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31 법률 제9307호 (식품위생법)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재정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6호</p>	<p>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8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p> <p>2003. 7.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통신위원회위원가석방차 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2004. 8.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30 대통령령 제1906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7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0.12.31 대통령령 제22599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교육시설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역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4. 5. 9 대통령령 제25344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8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율 유한 연속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6. 7.12 대통령령 제27339호</p>	<p>제정 2002. 7.29 환경부령 제125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학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8.12.31 환경부령 제311호 2010. 1.28 환경부령 제360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5. 9 환경부령 제556호 2014. 7.29 환경부령 제570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6. 7.26 환경부령 제666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8. 1.17 환경부령 제742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17 환경부령 제789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3.18 법률 제12454호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력법) 2016. 1.27 법률 제13872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4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p>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6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1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2020.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p> <p>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 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p> <p>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설,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p> <p>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p>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p> <p>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p> <p>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p>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p>	<p>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p>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환경정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p> <p>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p>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p>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p> <p>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p>	<p>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0.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p>[본조신설 2014. 7. 29.]</p> <p>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성을 있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산설 2014. 1. 28.></p> <p>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p> <p>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할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p> <p>[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p> <p>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p> <p>④ 삭제 <2014. 7. 28.></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2018. 12.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결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결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그 밖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p> <p>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 	<p>다를 것</p> <p>나. 연결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p> <p>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p> <p>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p>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p>	<p>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p> <p>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p> <p>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p> <p>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p> <p>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p> <p>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p> <p>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p>	<p>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p>	<p>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p> <p>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p>	<p>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p> <p>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p> <p>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p> <p>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p> <p>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p>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p> <p>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p> <p>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시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 	<p>제10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12.></p>	<p>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p> <p>③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p> <p>④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p>		<p>어 있을 것</p> <p>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p> <p>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p>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p>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p> <p>[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p>		<p>제23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p> <p>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29.></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p>	<p>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p>	<p>[전문개정 2010. 1. 28.]</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p>	<p>다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횡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목개정 2016. 7. 12.]</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목개정 2016. 7. 12.]</p> <p>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p>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p>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p> <p>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목개정 2016. 7. 26.]</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p> <p>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의 징수유예기간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p> <p>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4. 1. 28., 2016. 1. 27., 2020. 3. 24.></p> <p>[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p>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p>[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p>		<p>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p>		<p>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p> <p>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p>[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8조의2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전문개정 2008. 12. 24.] <p>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p> <p>제18조 삭제 <2017. 11. 28.></p> <p>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p> <p>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본조신설 2016. 7. 12.] [중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p>[본조신설 2008. 12. 24.]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6. 7. 12.>]</p>	<p>제30조 삭제 <2018. 1. 17.> 제31조 삭제 <2018. 1. 17.> 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p>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p> <p>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p>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p>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p> <p>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p>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p> <p>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p> <p>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p> <p>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p> <p>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p> <p>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p> <p>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p> <p>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p> <p>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5. 9., 2014. 7. 28.></p> <p>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p> <p>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p> <p>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p> <p>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p> <p>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p> <p>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p> <p>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p> <p>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p> <p>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p> <p>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p>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목개정 2014. 7. 28.]</p> <p>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7. 28.></p> <p>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 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p>	<p>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p> <p>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p> <p>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p> <p>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p> <p>[본조신설 2014. 7. 29.]</p> <p>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p> <p>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p>	<p>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p>	<p>다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p>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p>[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p> <p>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p>		<p>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p>	<p>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p> <p>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p> <p>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17. 삭제 (2010. 4.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p> <p>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p>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p>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p>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금강본류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p>② 시장·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제 또는 지방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금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2.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1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p> <p>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p> <p>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p>	<p>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p> <p>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p>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p> <p>나. 냉각수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할 것</p> <p>[본조신설 2016. 7. 12.]</p> <p>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08. 12. 24.]</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12. 27.] 	<p>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 비점오염저감사업 8.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9. 그 밖에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7. 28.]</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p>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p>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5조</p> <p>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1. 4.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發電用)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p>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8. 1. 23.>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와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p>	<p>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조사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p> <p>[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p> <p>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p>[전문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 7. 12.)]</p> <p>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2017. 12. 12.)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4년 7월 29일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 <p>[전문개정 2014. 7. 28.]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6. 7. 12.)]</p>	<p>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제20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삭제 (2018. 1. 17.) <p>[본조신설 2014. 4. 30.]</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1. 28.>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p>	<p>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삭제 <2017. 11. 28.> 삭제 <2017. 11. 28.>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08. 12. 31.> 삭제 <2008. 12. 31.> 삭제 <2008. 12. 31.> <p>[전문개정 2007. 12. 27.]</p> <p>부칙 <제6605호, 2002. 1.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p>부칙 <제17678호, 2002. 7. 13.></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p>	<p>부칙 <제125호, 2002. 7.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으로 한다.</p> <p>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군(광역시외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p> <p>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p> <p>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p> <p>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p>	<p>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p> <p>③(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⑤내지 ⑦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p>	<p>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p> <p>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3. 군(광역시외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p> <p>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p> <p>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p>	<p>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⑬내지 <73>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p> <p>③내지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차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p> <p>②내지 ⑤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②내지 ⑥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④내지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 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p> <p>㉗내지 ㉙생략</p> <p>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⑫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p>	<p>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④내지 ⑰생략</p> <p>부칙 <제19069호, 2005. 9.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p> <p>②내지 ⑤생략</p> <p>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p> <p>③ 부터 ⑰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함"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부터 ⑯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 5. 9></p> <p>제3조(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60호, 2010. 1.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⑥내지 ⑧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p> <p>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6호, 2014. 5. 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70호, 2014. 7. 29.)</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3 및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6호, 2016. 7. 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내지 <8>생략 제12조 생략</p> <p>부칙 <제7775호,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1187호, 200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하천수 사용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p> <p>③내지 ①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p> <p>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 부터 <64>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742호, 2018. 1. 17.></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④부터 ⑤까지 생략</p> <p>부칙 <제789호, 2018. 12.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 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p>	<p>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보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99호, 2010.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내지 <6>생략 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344호, 2014. 5.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p> <p>⑥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⑦ 내지 ⑯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518호, 2014. 7.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39호, 2016. 7. 12.></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8806호, 2007.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p>	<p>㉔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㉔까지 생략</p> <p>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총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6 353 565 515"> <tr> <td>67의2</td> <td>「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 <td>건축 등 허가제한지역</td> </tr> <tr> <td>67의3</td> <td>「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 <td>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r> <td>67의4</td> <td>「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td> <td>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able>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⑥ 부터 ⑨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p>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p>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⑦부터 ⑯까지 생략</p> <p>부칙 <제28606호, 2018. 1.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471호, 2019. 1. 8.>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4> 까지 생략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67항…(생략)…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부터 <66> 까지 생략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부터 <70>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95항…(생략)…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p> <p>⑯ 부터 <94> 까지 생략</p> <p><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p> <p><96>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276호,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p> <p>② 부터 ⑮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9307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부터 ③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 부터 <53> 까지 생략</p> <p>제23조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p> <p>⑪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⑨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p> <p>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p> <p>⑮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p> <p>⑭부터 <83>까지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3>까지 생략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②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⑭부터 <71>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p>④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66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54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p> <p>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②부터 ⑧까지 생략</p> <p>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부터 ㉞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p> <p>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㉑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2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p> <p>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p> <p>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⑭부터 <65>까지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⑰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094호, 2017. 11. 28.></p> <p>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4627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4627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4628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4630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463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4631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8. 1. 16.>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19. 7.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의 산정방법

- 비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BOD	T-P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성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성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1.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사.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아.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5.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삭제 (2018. 1. 23.)				
바. 삭제 (2018. 1. 23.)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	400	5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4635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10조 관련)	4636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4637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4637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4638
[별표 6] 삭제 <2018. 1. 17.>	4639
[별표 7]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4639
[별표 8]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4640
[별표 9]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	4641

[별표 1] <개정 2016. 7. 26.>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또는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금강수계 내의 지역과 금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금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대전광역시	전 지 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연기면·연동면·부강면·장군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고동리, 대곡리만 해당한다)·조치원읍·동지역(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한솔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어진동·종촌동·고운동·아름동·도담동)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당목리·칠장리·두교리만 해당한다)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사리면(노송리·중흥리·소매리·사담리·방축리만 해당한다)·청안면(효근리·문방리·읍내리·금신리·청용리·조천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아곡리·이월리·하궁리·신궁리·용수리·상궁리·서지리·세촌리·두평리·대안리·범주리만 해당한다)·속리산면(도화리·삼가리·구병리·만수리만 해당한다)·마로면·보은읍·산외면(문암리·구티리·봉계리·아시리·백석리만 해당한다)·삼승면·수한면·장안면·탄부면·회남면·회인면

구 분	범 위
	음성군 금왕읍(삼봉리·봉곡리·유포리·유촌리·신평리·본대리·쌍봉리·행재리·사창리·오선리·용계리·내송리·도청리·내곡리·각회리만 해당한다)·대소면·맹동면·삼성면(선정리·천평리·용성리·상곡리·청용리·양덕리·덕정리·대사리·대야리·대정리에 한한다)·원남면(보룡리·삼용리·덕정리·마송리·보천리·조촌리·문암리·주봉리만 해당한다)·음성읍(삼생리·동음리·초천리·갑우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상당구(낭성면 추정리·관정리·현암리·무성리,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영동, 북문로1가, 북문로2가, 북문로3가, 수동, 남문로1가, 남문로2가,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남주동, 석교동만 해당한다)·서원구·흥덕구·청원구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계룡시
	부여군 구룡면·규암면·남면·내산면·부여읍·석성면·세도면·양화면·옥산면·은산면·임천면·장암면·초촌면·충화면·흥산면
	서천군 기산면·마산면·마서면(도삼리·계동리·봉남리·장선리·신포리·산내리·어리만 해당한다)·문산면·서천읍(군사리·태월리·둔덕리·동산리·삼산리·화금리·두왕리·사곡리·화성리만 해당한다)·시초면·한산면·화양면
	천안시 동면·목천읍(동리·서리·교촌리·서흥리·덕전리·송전리·석천리·동평리·운전리·지산리·교천리·신계리·남화리·천정리·응원리만 해당한다)·병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
	청양군 남양면·대치면·목면·운곡면(위라리·효제리만 해당한다)·장평면·정산면·청남면·청양읍(읍내리·백천리·교월리·벽천리·적누리·정좌리·군량리·장승리·송방리·청수리·학당리만 해당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완주군
	고창군 성내면·신림면(외화리·도림리·무림리·송용리만 해당한다)·흥덕면(하남리·석우리·동사리·제하리·송암리·신송리·용반리·치룡리·흥덕리만 해당한다)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구 분	범 위
	군산시 개정면(아산리·발산리·통사리만 해당한다)·나포면·대야면·서수면·상산면(여방리·대명리·성덕리·산곡리·창오리·둔덕리만 해당한다)·옥구읍·옥산면(금성리·옥산리·당북리만 해당한다)·옥서면·임피면·회현면
	부안군 계화면·동진면·백산면·변산면(중계리·대항리만 해당한다)·보안면(부곡리·상림리·상입석리·하입석리·월천리·남포리·영진리만 해당한다)·부안읍·상서면·주산면·줄포면(남산리·대동리·신리·장동리·파산리만 해당한다)·하선면·행안면
	장수군 계남면·계북면·장계면·장수읍(선창리·노하리·노곡리·송천리·장수리·개정리·동촌리·두산리·수분리·용계리만 해당한다)·천천면
	정읍시 감곡면·고부면·덕천면·북면·산외면·소성면·신태인읍·영원면·용동면·이평면·입암면·정우면·칠보면·태인면·수성동·하북동·장명동·구룡동·상동·금봉동·송산동·부전동·쌍암동·내장동·시기동·연지동·농소동·영파동·흑암동·용계동·공평동·망제동·하모동·상평동·과교동·삼산동·진산동·신월동·용산동·교암동·신정동
	진안군 동향면·부귀면(궁항리, 황곡리, 봉암리, 거석리, 수항리, 두남리, 오룡리, 신정리만 해당한다)·상전면·안천면·용담면·정천면·주천면·진안읍(운산리·군상리·물곡리·구룡리·죽산리·가막리·군하리·단양리·반월리·오천리·가림리만 해당한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신곡리·우하리·효곡리·봉산리만 해당한다)·모동면·모서면·화남면(중눌리·임곡리·평온리·동관리만 해당한다)·화동면(반곡리·모미리·양지리·신촌리·평산리·선교리·이소리·판곡리만 해당한다)·화서면(봉촌리·울림리·사산리·상용리·상현리·금산리·신봉리·달천리·상곡리·지산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bigcirc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bigcirc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bigcirc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 + 0.95 \times (\text{측정횟수} - 1)$ 의 정수부분, b는 $1 + 0.95 \times (\text{측정횟수} - 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dots, X_a, \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로 한다.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text{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 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비고: 나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6] 삭제 <2018. 1. 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정장 또는 지방환경정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N/cm²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규정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3) 수질조사
- 가) 건기 시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별표 8]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 나. II 지역(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4
 - 다. III 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I 지역·II 지역·IV 지역 외의 특별대책 지역): 3
 - 라. IV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5) + (II 지역의 면적 × 4) + (III 지역의 면적 × 3) + (IV 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20을 곱한 금액
 -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 라. IV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08을 곱한 금액
4. 지역별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9]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편
물통합

02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4647
제2조(협의·조정 대상)	4647
제3조(회의)	4647
제4조(자문위원회)	4647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4647
제6조(실무위원회)	4647
제7조(사무국)	4648
제8조(여론의 수집)	4648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4648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4648
제11조(운영세칙)	4648
부칙	4648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7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70호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8. 6 대통령령 제25541호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31.>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및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4. 8. 6.>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 7. 24.>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7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금강환경관리청장”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금강환경관리청”을 각각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⑰ 내지 ⑳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0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79호, 2012. 7.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541호, 201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820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편
물통합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660	제1조(목적) 4660	제1조(목적) 4660
제2조(정의) 4660		
제3조(적용 범위) 4661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4661	
		제2조(적용범위) 4662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4662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4662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4663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4663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4663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664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4664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4664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4665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665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4664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666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4667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4666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4667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4667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4667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4667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4668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4669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4668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46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4670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4669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4669
제8조(토지등의 매수) 4671	제9조(수질기준) 4670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670 제10조(연평균 수질) 4670
제3장 오염총량관리의 실시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4670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4671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4672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4671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675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4672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4676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4672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4673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678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4673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4673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4681	제13조(사업장 관할) 4678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4674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4675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4676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4676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676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4677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4677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4677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4678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678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4679
		제25조(조치명령 등) 4680
		제26조(행정처분기준) 468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 4686 제15조(허가의 제한) 4687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4687 제4장 폐수매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관리) 4689 제19조 삭제 4690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4690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4691 제22조 삭제 4691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4682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4682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4682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4683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4684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4685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4688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688 제20조의3(완충저류시설) 4689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4682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4685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686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686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4687 제32조 삭제 4689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4689 제34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 4690 제35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 4690 제36조 삭제 4690 제37조 삭제 4690 제38조(관거의 관리) 4690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4691 제40조 삭제 4691 제41조 삭제 469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p> <p>제23조(주민지원사업) 4692</p> <p>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697</p> <p>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4697</p> <p>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4697</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p> <p>제26조(수질개선사업) 4698</p> <p>제27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4699</p> <p>제28조(인·허가등의 의제) 470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p> <p>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4702</p> <p>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4702</p> <p>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4703</p> <p>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4703</p>	<p>제21조(맹주변지역의 범위 등) 4692</p> <p>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4693</p> <p>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4695</p> <p>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4695</p> <p>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697</p> <p>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4697</p> <p>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4697</p> <p>제27조(통보 등) 4699</p> <p>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4703</p> <p>제29조(자료의 제출) 4704</p> <p>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4704</p> <p>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4705</p> <p>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4705</p>	<p>제42조 삭제 4691</p> <p>제43조 삭제 4691</p> <p>제44조(수질 유지기간) 4692</p> <p>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4694</p> <p>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4695</p> <p>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4697</p> <p>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4699</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4708</p> <p>제34조(기금의 재원) 4708</p> <p>제35조(기금의 용도) 4708</p> <p>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4710</p> <p>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711</p> <p>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711</p> <p>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47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4714</p> <p>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4714</p> <p>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4712</p> <p>제41조(개선요청 등) 4715</p> <p>제42조(청문) 4716</p> <p>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4716</p> <p>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719</p>	<p>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4706</p> <p>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4706</p> <p>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4707</p> <p>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4707</p> <p>제36조(기금의 용도) 4709</p> <p>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4710</p> <p>제38조(권한의 위임) 4716</p> <p>제38조의2(업무의 위탁) 4717</p> <p>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18</p> <p>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4718</p>	<p>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4706</p> <p>제49조(규제의 재검토) 4718</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44조(벌칙) 4719</p> <p>제45조(양벌규정) 4720</p> <p>제46조(과태료) 4720</p> <p>부칙 4721</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 4720</p> <p>부칙 4721</p>	<p>부칙 472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2. 1. 14 법률 제6606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관리특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4.12.31 법률 제729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 3. 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4. 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 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 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 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07호 (법률 제8807호)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관리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 21 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0호 (법률 제9310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권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기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 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채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 28 법률 제12367호</p>	<p>제정 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6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4호 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정보민원처리및유한가석방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8호 2006.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아한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6호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7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0호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3호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17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p>	<p>제정 2002. 7. 29 환경부령 제123호 개정 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0호 2009. 8. 3 환경부령 제345호 2012. 6. 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5호 2014. 7. 29 환경부령 제569호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31 환경부령 제5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 7 환경부령 제662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 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 17 환경부령 제744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벌령등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3.18 법률 제12457호 2014. 3.24 법률 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1.27 법률 제13873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5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일부개정령)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8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5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2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21 대통령령 제30863호</p>	<p>2020. 7.17 환경부령 제875호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p> <p>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p> <p>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11. 16., 2014. 1. 28.,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p>[전문개정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p> <p>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p>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p>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p> <p>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p> <p>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p> <p>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p>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p>	<p>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 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p>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p>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p> <p>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p> <p>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p> <p>③ 관세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p>	<p>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p> <p>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p> <p>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6조의3(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p>	<p>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p> <p>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p> <p>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말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20. 12. 1.></p> <p>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p>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p> <p>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p> <p>[본조신설 2014. 7. 29.]</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p> <p>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p>	<p>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의 승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개정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p>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관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p> <p>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p>	<p>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0. 11. 2.>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p> <p>④ 삭제 <2014. 7. 28.></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p>	<p>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낙동강분류에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분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나목의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장 오염총량관리의 실시</p> <p>제9조(오염총량관리기분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도 경계지점의 목표</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p>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p> <p>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7. 20.)</p> <p>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p>③ 환경부장관은 구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p>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p>	<p>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p> <p>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p> <p>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 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mall>(신설 2014. 1. 28.)</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small>[전문개정 2008. 12. 31.]</small></p> <p>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p>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small>(신설 2016. 7. 7.)</small></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mall>(신설 2016. 7. 7.)</small></p> <p>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p>		<p>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p> <p>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할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p> <p>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할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p> <p>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p> <p>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에 이</p>		<p>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p>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7.></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7.></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에 이행사항</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시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p>	<p>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하수도법」 제7조</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p>		<p>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p>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p>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를 이를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p> <p>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p> <p>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p> <p>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p> <p>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기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6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p> <p>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의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p>	<p>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p>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p>	<p>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p> <p>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7.></p> <p>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p> <p>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p> <p>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경제·부과금</p>	<p>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p> <p>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또는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또는 채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p>	<p>제28조(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p>[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7.]</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p> <p>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5조(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p>		<p>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p> <p>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p>[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램킨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p>[본조신설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p> <p>제18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삭제 (2014. 3. 24.)</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빗물·오수·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p>③ 삭제 (2014. 3. 24.)</p>	<p>제20조의3(완충저류시설)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분야 또는 수질관리분야로 한정한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 	<p>제32조 삭제 (2014. 12. 31.)</p> <p>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p> <p>제19조 삭제 <2017. 11. 28.></p> <p>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p>	<p>른 환경전문공사업자</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밀측정산업기사 중 1명</p> <p>3.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기기를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14. 7. 28.]</p>	<p>제34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p> <p>제35조(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p> <p>제36조 삭제 <2018. 1. 17.></p> <p>제37조 삭제 <2018. 1. 17.></p> <p>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p> <p>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2조 삭제 <2016. 1. 27.></p> <p>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p>		<p>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p>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0조 삭제 <2016. 7. 7.></p> <p>제41조 삭제 <2016. 7. 7.></p> <p>제42조 삭제 <2016. 7. 7.></p> <p>제43조 삭제 <2016. 7. 7.></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small>(개정 2008. 12. 31., 2014. 1. 28.)</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p>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small>(개정 2020. 7. 21.)</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p>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p>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p>	<p>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small>[전문개정 2008. 12. 31.]</small></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p> <p>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p> <p>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p> <p>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p> <p>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p> <p>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p> <p>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p> <p>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목개정 2014. 7. 28.]</p> <p>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p> <p>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p> <p>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p> <p>1. 농업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p>	<p>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p> <p>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p> <p>6.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p> <p>7.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p> <p>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p> <p>나.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댐건설 및 주변</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p> <p>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p> <p>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p> <p>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p> <p>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p>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목개정 2014. 7. 28.]</p> <p>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p> <p>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p> <p>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30.,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p>	<p>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p> <p>2.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p> <p>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p> <p>[본조신설 2014. 7. 29.]</p> <p>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8. 3., 2014. 7. 29.></p> <p>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8. 3.,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p> <p>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p> <p>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p>	<p>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p>	<p>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p> <p>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 및 협의회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p>센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p>②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p>[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7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제27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p>	<p>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p>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p> <p>2. 광역시장·시장·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2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p> <p>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p> <p>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p>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p> <p>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p> <p>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p>	<p>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p> <p>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p> <p>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p>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p> <p>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p> <p>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17. 삭제 (2010. 4.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p> <p>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p> <p>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p> <p>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p> <p>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p> <p>1. 낙동강본류</p> <p>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p> <p>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p> <p>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p> <p>[전문개정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p> <p>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p> <p>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도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p>② 시장·군수는 제28조에 따른 구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20.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p> <p>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p> <p>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시지역</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p> <p>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p> <p>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p> <p>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p> <p>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p>	<p>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p> <p>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p>	<p>〈개정 2016. 7. 12.〉</p> <p>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p> <p>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 나. 냉각수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할 것 <p>[본조신설 2016. 7. 12.]</p> <p>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 1. 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p>월일</p> <p>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p> <p>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p> <p>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p> <p>16.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8. 1. 16., 2019. 1. 8., 2020.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나.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 원수 중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월평균 농도와 과불화옥탄산(PFOA)의 월평균 농도의 합계가 리터당 0.07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라. 원수 중 과불화해산술폰산(PFHxS)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48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마. 원수의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7. 28.]</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p> <p>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p>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7조</p> <p>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p> <p>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p> <p>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40조</p> <p>제41조(개선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p>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 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6. 7. 12.> 5. 삭제 <2018. 1. 23.>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생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p>	<p>조업정지·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삭제 (2016. 7. 12.)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의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확인 [전문개정 2008. 12. 24.]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 [중선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 [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16. 7. 12.)]</p> <p>제38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따른 수질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7. 12. 12.) 3.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4년 7월 29일 4. 제3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 <p>[전문개정 2014. 7. 28.]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6. 7. 12.)]</p>	<p>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4.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2.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3.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4. 삭제 (2014. 12.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p>[전문개정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1. 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0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35조에 따른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6. 삭제 <2018. 1. 17.> <p>[본조신설 2014. 4. 30.]</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4. 삭제 <2016. 1. 27.>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4. 삭제 <2017. 11. 28.> 5. 삭제 <2017. 11. 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 1. 27.> 	<p>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삭제 <2016. 1. 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06호, 2002. 1.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p>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76호, 2002. 7.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제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건설된 댐의 댐주변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및 "댐건설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p> <p>제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이후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함에 있어서 협의·조정당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낙동강 최하류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지역별 수질과 연동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한다.</p> <p>②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호, 2002. 7.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p> <p>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p>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p> <p>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p> <p>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p> <p>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6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p>	<p>부과율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제21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⑦내지 ⑩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p> <p>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p> <p>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p> <p>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재이용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재이용계획의 제출일로 한다.</p> <p>제8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역시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1년간”으로 하고,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7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산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p> <p>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⑯내지 <7>생략</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17984호, 2003. 5.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p> <p>④내지 ⑥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직단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③내지 ⑤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⑤내지 ②생략</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p> <p>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p> <p>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6호중 “국도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도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p> <p>⑧ 내지 ⑩ 생략</p> <p>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p> <p>⑫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p>	<p>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p> <p>④ 및 ⑤ 생략</p> <p>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p> <p>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3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⑤ 내지 ⑰ 생략</p> <p>부칙 <제19068호, 2005. 9.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p>	<p>④ 부터 ⑰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④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⑬내지 ⑸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p> <p>⑨내지 ⑳생략</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전원</p>	<p>한다.</p> <p>④및 ⑤생략</p> <p>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⑥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0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 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p> <p>제3조(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p> <p>부칙 <제345호, 2009. 8. 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제7292호, 2004. 12.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5호, 201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9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3 및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p> <p>⑧ 내지 ⑩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p> <p>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p>	<p>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⑤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한다.</p> <p>④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186호, 200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6호, 2014. 12.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를 삭제한다.</p> <p>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p> <p>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p> <p>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p> <p>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2호, 2016. 7. 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⑯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p> <p>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분뇨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1587호, 2009. 6. 30.></p> <p>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한다.</p> <p>부칙 <제688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p> <p>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p> <p>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⑫내지 ⑮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p>	<p><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52> 부터 <192> 까지 생략</p> <p>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600호, 2010.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산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을 “산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p> <p>⑧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p>	<p>③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 및 제5조 생략</p> <p>부칙 <제744호, 2018. 1. 17.></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⑤부터 ⑮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㉑내지 ㉒생략 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p>	<p style="text-align: center;">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5호, 2020.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①내지 ⑥생략</p> <p>제20조 생략</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⑯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p> <p>부칙 <제25343호, 2014. 5.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517호, 2014. 7.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338호, 2016. 7. 12.></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 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p> <p>⑧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제21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5호, 제32조제2항, 제34조의2,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제12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⑩부터 ㉔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07호, 2007.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6 656 565 817"> <tr> <td data-bbox="126 656 203 711">70의2</td> <td data-bbox="203 656 414 71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 <td data-bbox="414 656 565 711">건축허가 제한지역</td> </tr> <tr> <td data-bbox="126 711 203 766">70의3</td> <td data-bbox="203 711 414 76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 <td data-bbox="414 711 565 766">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r> <td data-bbox="126 766 203 817">70의4</td> <td data-bbox="203 766 414 817">「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td> <td data-bbox="414 766 565 817">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05호, 2018. 1.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㉓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5> 까지 생략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70호, 2008. 3. 21.> (도시개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부칙 <제29472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863호, 2020.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 제13조제68항…<생략>…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p> <p>⑭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및 <70>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략〉···제96항···〈생략〉···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p> <p>⑱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p> <p>⑲ 부터 〈95〉 까지 생략</p> <p>〈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p> <p>〈97〉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9310호, 2008. 12. 3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기존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 여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状),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부칙 〈제9432호, 2009. 2. 6.〉</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⑥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p> <p>⑪ 부터 <53> 까지 생략</p> <p>제23조 생략</p> <p>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부터 <75> 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p> <p>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p> <p>⑳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p> <p>⑰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③부터 ⑦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⑥부터 ③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④부터 ⑨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③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⑮부터 <71>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㉞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부칙 <제12367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6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p> <p>제7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57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19호, 2014. 3.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 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p> <p>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생략</p> <p>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p> <p>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③부터 ⑧까지 생략</p> <p>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⑩부터 ㉓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p> <p>㉓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㉔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3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p> <p>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㉑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095호, 2017. 11. 28.></p> <p>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⑫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4755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4755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4756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3조제1항 관련)	4758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4759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4759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 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8. 1. 16.>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19. 7.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 - 6 - 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 - 6

비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BOD	T-P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1)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조림·육림 등 수연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산주가 부담하는 자금의 지원

사.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예외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아.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자.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차.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5. 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 상수원관리지역에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을 오염물 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이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3호	300	400	500
사. 삭제 (2018. 1. 23.)				
아. 삭제 (2018. 1. 23.)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7호	300	400	500
카. 삭제 (2016. 7. 12.)				
타. 삭제 (2016. 7. 12.)				
파. 삭제 (2016. 7. 12.)				
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10호	300	400	5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4763
[별표 2]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4764
[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4765
[별표 4]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4765
[별표 5]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4766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4766
[별표 7]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제34조 관련)	4767
[별표 8] 삭제 <2018. 1. 17.>	4768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4768
[별표 10]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4770
[별표 11]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4770

[별표 1] (개정 2016. 7. 7.)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낙동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낙동강 또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과 낙동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식만동·죽동동·봉림동·강동동·대저1동·대저2동·명지동·생곡동·구랑동·범방동·지사동·미음동
	금정구 금성동
	북구 구포동·금곡동·만덕동·덕천동·화명동
대구광역시	사상구 감전동·괘법동·염궁동·오라동·덕포동·삼락동·주례동·학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이천리·소호리만 해당한다)
강 원 도	태백시 금천동·동점동·문곡동·소도동·장성동·철암동·화전동·황지동·통동·백산동·혈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춘양면 중 우구치리는 제외한다),
	청송군(부동면 중 내룡리·라리·항리는 제외한다)
	경주시 산내면(내일리·대현리·신원리·외칠리·내칠리·우라리·감산리·외곡리·일부리만 해당한다), 서면(하화리만 해당한다)
	문경시(동로면 명전리, 가은읍 완창리의 일부는 제외한다)
	포항시 죽장면(가사리·감곡리·두마리·매현리·방흥리·봉계리·석계리·월평리·일광리·입암리·정자리·지동리·침곡리·합덕리·현내리만 해당한다)
영주시(부석면 남대리·단산면 마라리는 제외한다)	

구 분	범 위
영천시	고경면(가수리·고도리·논실리·단포리·대성리·대의리·덕암리·덕정리·도암리·동도리·부리·삼귀리·삼산리·삼포리·상덕리·상리리·석계리·오류리·용천리·전사리·차당리·창상리·창하리·청정리·초일리·칠전리·파계리·학리·해신리만 해당한다)·조교동·망정동·야사동·연하동·신기동·문내동·문외동·창구동·과전동·오미동·녹전동·도림동·매산동·교촌동·성내동·화흥동·오수동·쌍계동·대전동·서산동·도동·금노동·범어동·작산동·봉동·도남동·본촌동·채신동·괴연동·완산동·금호읍·대창면·북안면·신령면·임고면·자양면·청동면·화남면·화북면·화산면
	상주시 냉림동·낙상동·중덕동·화산동·계산동·신봉동·가장동·양촌동·지천동·오대동·흥각동·성하동·성동동·거동동·인평동·서곡동·모서면(대포리만 해당한다)·낙양동·개운동·연원동·남장동·내서면·인봉동·복룡동·서성동·서문동·화개동·외담동·현신동·병성동·도남동·무양동·초산동·부원동·죽전동·만산동·남적동·공검면·낙동면·사벌면·외남면·외서면·은척면·이안면·중동면·청리면·함창읍·화동면(어산리만 해당한다)·공성면(거창리·금계리·도곡리·무곡리·봉산리·산현리·영오리·오광리·옥산리·용신리·용안리·이화리·인창리·장동리·초오리·평천리만 해당한다)·화북면(유유리·장암리·상오리만 해당한다)·화서면(상곡리·하송리만 해당한다)·화남면(동관리만 해당한다)
	영양군 석보면·영양읍·일월면·임암면·청기면·수비면(신암리·계리·송하리·죽파리만 해당한다), 울진군 서면(광회리·전곡리만 해당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동읍·대산면·북면
	마산시 내서읍
	사천시 곤명면(금성리·마곡리·본촌리·상정리·성방리·송림리·신흘리·연평리·은사리·작팔리·청곡리·봉계리만 해당한다)·곤양면(홍사리만 해당한다)
	양산시 교동·유산동·어곡동·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부동·명곡동·상북면·물금읍·신기동·북정동·산막동·호계동·동면(사송리·내송리·석산리·금산리·가산리만 해당한다)·원동면·하북면
	진주시 가좌동·호탄동·강남동·망경동·주악동·철암동·본성동·남성동·인사동·동성동·대안동·평안동·수정동·장대동·중앙동·계동·봉곡동·봉래동·수정동·상대동·상봉동·하대동·상평동·신안동·옥봉동·이현동·유곡동·초전동·장재동·하촌동·판문동·평거동·귀곡동·금곡면·금산면·명석면·문산읍·미천면·내동면·대곡면·대평면·사봉면·수곡면·이반성면·일반성면·지수면·진성면·집현면

구 분	범 위
	고성군 개천면·영오면·영현면·대가면(갈천리·송계리·신전리만 해당한다) 하동군 옥종면
전라북도	남원시(아영면·인월면·윤봉읍·산내면만 해당한다)
전라남도	구례군(산동면 좌사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7. 1. 19.>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 것
2. 빗물 등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는 곳에 설치할 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가. 경사도는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유출수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나. 설치 폭은 각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500미터 초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낙동강분류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비고: 사업장의 지표면에 쌓이는 오염물질이 빗물 등과 함께 유출될 경우 이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갈음하여 사업장에서 유출되는 빗물 등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낼 수 있는 관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4]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text{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1.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right)$$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2.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08.12.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text{○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조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차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	법 제12조 제6항 또는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해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6항	조업정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비고: 나목 및 라목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기 <개정 2014.12.31.>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제34조 관련)

1. 삭제 <2014.12.31.>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유출차단시설 등에 대한 설치·운영기준
 - 가. 일반사항
 - 1)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 내 조업장해 시 수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와 그 조치의 실행 등을 적은 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1) 집수시설은 자연유하식 구조로 하며, 집수시설의 규모는 사업장에 대한 초기 강우량과 소화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규모, 대상 독성물질 종류, 저장·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집수시설은 평상시에는 비워 놓아야 한다.
 - 3)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바닥과 벽은 처분 시점까지 충분히 밀봉하여야 한다.
 - 4) 집수시설은 과충전이 제때에 인지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 5) 다수의 저장소 또는 배출시설에 하나의 공동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용적량은 개별 시설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양 중 최대의 용적량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운영기준
 - 1) 유출차단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의 역류능력은 수질오염물질 종류 및 시설 종류·용량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빈틈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포집공간을 설치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한다.
 -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 삭제 <2018. 1. 17.>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 (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cm²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 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6. 7. 7.>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합류식 하수도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 및 초기강우 오염부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처리구역 또는 처리 분구(分區)에서 발생하는 합류식 하수도월류수와 분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초기 강우 오염부하의 발생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 지점 또는 처리구역 및 처리 분구의 주요 우수토실(토사 등이 관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류식 관거인 경우 우수관의 토구(吐口)에서 측정한다.

3) 유량측정

가)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수로형 유량측정기, 적산유량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계절별(동절기 제외) 2회 이상 우기 시에 측정한다. 이 경우 유량측정일 이전 5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한 날을 선택하여 측정한다.

다) 합류식 하수도월류수 및 분류식 관거의 우수 유출수는 월류 또는 유출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측정하고, 월류 또는 유출 초반부에는 가능하면

짧은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강우 상태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질조사 및 조사횟수

가)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나) 조사횟수: 측정 시마다 시료를 6회(강우 초반부는 4회, 후반부는 2회) 채취한다.

[별표 10]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3

나. II 지역(수변구역): 2

다. III 지역(댐주변지역. I 지역 및 II 지역은 제외한다): 1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3) + (II 지역의 면적 × 2) + (III 지역의 면적 × 1)}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9를 곱한 금액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7을 곱한 금액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4를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1]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10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04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4775
제2조(협의·조정 대상)	4775
제3조(회의)	4775
제4조(자문위원회)	4775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4775
제6조(실무위원회)	4775
제7조(사무국)	4776
제8조(여론의 수집)	4776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4776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4776
제11조(운영세칙)	4776
부칙	4776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6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림부외근로자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69호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1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및 강원도

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남부지방산림청장
4.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관련 상임이사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6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⑯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⑱내지 ⑳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69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19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편
물통합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785	제1조(목적) 4785	제1조(목적) 4785
제2조(기본이념) 4785		
제3조(정의) 4785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4786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786		
제6조(사업자의 책무) 4786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786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물의 공공성) 4786		
제9조(건전한 물순환) 4787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4787		
제11조(유역별 관리) 4787		
제12조(통합 물관리) 4787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4787		
제14조(물의 배분) 4787		
제15조(물수요관리 등) 4788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4788		
제17조(비용부담) 4788		
제18조(기후변화 대응) 4788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4788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4789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4789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4789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789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4791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4790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791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790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4793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4791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4793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792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4794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4793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4794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796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4794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4798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4795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4800	제12조(운영규정) 4796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4800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797	
제31조(공청회의 개최) 4801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4799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15조(공청회의 개최) 4801	
제32조(물분쟁의 조정) 4802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4802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4802
제33조(조정 처리) 4804	제17조(신청대표자) 4803	제3조(신청대표자) 4803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4805	제18조(대리인) 4803	제4조(대리인) 4804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4804	제5조(조정안 등) 4804
	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4805	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4805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p> <p>제35조(물문화 육성 등) 4807</p> <p>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4807</p> <p>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4807</p> <p>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4808</p> <p>제38조(물관리 협정) 4808</p> <p>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4809</p> <p>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4809</p> <p>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4809</p> <p>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4809</p> <p>제43조(단체의 설립) 4811</p> <p>제44조(재정지원) 4811</p> <p>제45조(별칭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811</p> <p>부칙 4811</p>	<p>제21조(조정 비용) 4805</p> <p>제22조(조정의 종료 등) 4805</p> <p>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4806</p> <p>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4806</p> <p>제25조(업무의 위탁) 4809</p> <p>제26조(단체의 설립) 4811</p> <p>부칙 4811</p>	<p>제7조(조정의 종료) 4806</p> <p>부칙 4811</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정 2018. 6.12 법률 제15653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p>제정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1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9. 6.12 환경부령 제809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p> <p>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p> <p>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p> <p>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p> <p>제8조(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p> <p>제12조(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p> <p>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끌고</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5조(물수요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찌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p> <p>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비용부담)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물관리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의 예방·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p> <p>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제3장 물관리위원회</p> <p>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1.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p>	<p>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산림청장 2. 기상청장</p> <p>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p> <p>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p> <p>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p> <p>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p> <p>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p>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에 심의·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p>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안전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p>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 제3호기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 및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p>	<p>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p>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p> <p>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p>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p>	<p>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p> <p>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p>	<p>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p> <p>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회를 둘 수 있다.</p> <p>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p> <p>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p>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p> <p>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p> <p>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p> <p>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증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p>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칙·기준</p> <p>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p> <p>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p> <p>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p> <p>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p>	<p>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p> <p>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p> <p>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p> <p>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p> <p>8. 「수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p> <p>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p> <p>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p> <p>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p> <p>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p> <p>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p> <p>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p> <p>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p> <p>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p> <p>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p> <p>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p> <p>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p> <p>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p> <p>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p> <p>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p> <p>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p>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p> <p>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p> <p>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p> <p>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p> <p>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 계획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9.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1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 목적 2. 일시 및 장소 3. 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p>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p> <p>제32조(물분쟁의 조정) 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성질상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물분쟁의 경과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p>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p> <p>⑤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p> <p>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p> <p>⑦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p> <p>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p>	<p>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33조(조정)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진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p> <p>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p>	<p>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p> <p>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p> <p>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p> <p>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p> <p>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p> <p>④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p>	<p>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p> <p>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p> <p>②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p>제22조(조정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p>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p> <p>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p>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p>제7조(조정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p> <p>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p> <p>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p> <p>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p> <p>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p> <p>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36조의2</p> <p>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8조(물관리 협정) ① 물관리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 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내용·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7.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회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15. 그 밖에 물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제43조(단체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p>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53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가계획 및 유역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p>	<p>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841호, 2019. 6. 11.></p> <p>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9호, 2019. 6. 12.></p> <p>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p>수립한다.</p> <p>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은 제1항의 국가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4815
--	------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 구역
1.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중 한강유역
2.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금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한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강원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 중 낙동강유역
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한강유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한강유역 및 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 중 금강유역
4.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전라북도(낙동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중 섬진강유역,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의 범위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권역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계별 유역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제7편
물통합

06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826	제1조(목적) 4826	제1조(목적) 4826
제2조(책무) 4826		
제3조(정의) 4826		
제4조(적용범위) 4828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4827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4828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4829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4829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4829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4829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4830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4831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4832		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4832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4833		
제3장 샘플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 6. 1.)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4834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4834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4835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4835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4835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4835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4835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4836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4836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4837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4837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4837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4837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4838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4838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4838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4839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4839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 4839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840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4840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4842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4841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4842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4842		
제13조(환경영향조사) 4843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4843	제7조(환경영향조사) 4843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4843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4843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4843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4844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4844
제16조(결격 사유) 4846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4846		
제18조(환경영향심사) 4847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4847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4848		
제20조(시설 기준) 4849		제9조(시설기준) 4849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4849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4849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4853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4853
제2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4854		제1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4854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4855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4855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4856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4856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4856		
제25조(영업의 승계) 4857		
		제15조(영업의 승계) 4858
제26조(수입신고 등) 4858		제16조(수입신고 등) 4858
제26조(수입신고 등) 4859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품질관리인) 4860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4860	제17조(품질관리교육) 4861
제28조(품질관리교육) 4861		제18조(교육과정 등) 4862
		제19조(교육계획) 4862
제29조(건강진단) 4863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4863
제30조(준수 사항) 4863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4863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4864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4863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4864	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4865
	제9조 삭제 4865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4866
	제10조 삭제 4865	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4866
	제11조 삭제 4865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 4866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4869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4866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4870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4867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4867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4870
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4869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4871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4871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4870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 4871	
	제14조 삭제 4871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4872	제28조 삭제 4872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4871	제16조 삭제 4872	제29조 삭제 4872
제34조 삭제 4872		
제35조 삭제 4872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4872		
제37조(표시기준) 4873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4873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4873
제39조(광고의 제한) 4873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4873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4873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4874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4874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4875		
제6장 검사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4875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4875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4876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4876		제34조(수거 등) 4876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4877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4879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4881
		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4884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4884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4887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4885		
제44조(소비자보호) 4887		제38조(개선기간) 4888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4888		
제46조(폐쇄조치 등) 4888		
제46조(폐쇄조치 등) 4889		
제47조(폐기처분 등) 4890		
제47조(폐기처분 등) 4891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4891	제38조의2(회수·폐기 절차 등) 489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공표명령) 4892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4892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4893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4893		제39조(행정처분기준) 4895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4895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4895
		제41조(행정처분대상 등) 4895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4896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4898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4898		
제50조(청분) 4899		
제50조(청분) 4899		
제51조(과징금 처분) 4899	제18조(과징금의 납부) 4899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4899
제51조(과징금 처분) 4900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4900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4900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4901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4901	
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4901		
제52조(국고보조) 4902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02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902		
제54조(자료의 요청) 4902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4903	제20조(위임 및 위탁) 4903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903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4903		제44조(수수료) 4904
제56조(수수료) 4904		
제56조(수수료) 4905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4906	제45조(규제의 재검토) 4906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4907		
제58조(벌칙) 4907		
제58조(벌칙) 4909		
제59조(벌칙) 4910		
제59조(벌칙) 4912		
제60조(양벌규정) 4914		
제61조(과태료) 491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914	
제61조(과태료) 4915		
부칙 4917	부칙 4917	부칙 4917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07. 4.11 법률 제8368호 개정 2007. 8. 3 법률 제862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08. 3.21 법률 제8952호 2010. 3.22 법률 제10154호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6. 1 법률 제11463호 2013. 3.22 법률 제11663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14. 1.21 법률 제12318호 2015. 2. 3 법률 제13164호 2015.12.22 법률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 6.12 법률 제15652호 2018.12.24 법률 제16079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2021. 1. 5 법률 제17840호</p>	<p>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개발소비세법 시행령) 2008. 6.13 대통령령 제20818호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4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간속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09.12.30 대통령령 제21927호 2011. 3.22 대통령령 제22715호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2호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7.21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4호 2016. 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7.10.17 대통령령 제28364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4호 2021. 2.17 대통령령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p>	<p>제정 2008. 1.29 환경부령 제274호 개정 2008. 6.13 환경부령 제288호 2008. 9.25 환경부령 제299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1. 3.23 환경부령 제402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38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3. 2. 1 환경부령 제501호 2013.10.30 환경부령 제522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7.22 환경부령 제566호 2014.11.28 환경부령 제578호 2015. 7. 1 환경부령 제606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류의 관리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6. 1. 8 환경부령 제635호 2017. 6.12 환경부령 제703호 2017. 9. 8 환경부령 제712호 2017.11.20 환경부령 제719호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p> <p>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3. 22., 2013. 3. 22., 2015. 12. 22., 2018. 12. 2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p>제1조(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017.12.29 환경부령 제73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13 환경부령 제788호 2019. 8.28 환경부령 제821호 2019. 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p> <p>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압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p> <p>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p> <p>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p> <p>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p> <p>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p> <p>6의2.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6의3.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p>		<p>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mg/L 이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7의2.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p> <p>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p> <p>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p> <p>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다. <개정 2008. 3. 21., 2012. 6. 1., 2013. 3. 22.></p> <p>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24.></p> <p>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8. 12. 24.></p> <p>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8. 12. 24.></p> <p>[제목개정 2013. 3. 22.]</p> <p>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을 제8368호(2007. 4. 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p> <p>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 3.</p>	<p>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p>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p> <p>[본조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22.)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 무법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 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 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 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9. 18., 2013. 10. 22., 2017. 10. 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 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 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 에 종사한 사람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12. 6. 1.)</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p> <p>⑦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p>		<p>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 2013.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2.)</p> <p>②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2.)</p> <p>③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p>		<p>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3. 2. 1., 2013. 10. 30.></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p>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 10. 30., 2014. 7. 22.></p> <p>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설치·관리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④ 제2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p> <p>[본조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3. 3. 22.]</p> <p>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①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2.></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④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p> <p>⑤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p>		<p>2.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④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0.></p> <p>1.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p> <p>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p> <p>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p> <p>다. 냉·난방기 앞</p> <p>2. 냉·온수기 관리방법</p> <p>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p> <p>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 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p> <p>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p> <p>3. 정수기 관리방법</p> <p>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p> <p>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 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p> <p>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p> <p>⑥ 제4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21. 1. 5.></p> <p>[본조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3. 3. 22.] [시행일 : 2021. 7. 6.] 제8조의2</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 6. 1.></p> <p>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p>[본조신설 2013. 10. 22.]</p>	<p>라. 총대장군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p> <p>[본조신설 2011. 3. 23.] [제목개정 2013. 10. 30.]</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샘플보전구역의 지정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6. 1.]</p> <p>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플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p>	<p>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플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샘플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p>③ 시·도지사는 샘플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플보전구역의 명칭 2. 샘플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플보전구역의 면적 4. 샘플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플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플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p>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플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플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플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p>[본조신설 2013. 10. 22.]</p> <p>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p>	<p>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플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3. 10. 30.]</p> <p>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려면 지정 또는 변경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p> <p>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p>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p>	<p>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p> <p>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滌)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2019. 12. 20.></p> <p>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3. 10. 30.]</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12. 6. 1.]</p> <p>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p>	<p>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2.></p> <p>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9. 18., 2011.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p>[제목개정 2011. 3. 22.]</p>	<p>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p> <p>[제목개정 2011. 3. 23.]</p> <p>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목개정 2010. 3. 22.]</p> <p>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제목개정 2010. 3. 22.]</p> <p>[시행일 : 2021. 7. 6.] 제9조</p> <p>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p>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3. 23.]</p> <p>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0. 3. 22.]</p> <p>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플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플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p>[본조신설 2011. 3. 22.]</p>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플등의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플·연지하수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제목개정 2011. 3. 23.]</p> <p>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제목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0조</p> <p>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5.></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개정 2010. 3. 22.)</p> <p>②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0. 3. 22.]</p>	<p>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p>②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1. 3. 22.]</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p> <p>②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 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p> <p>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3. 22.]</p> <p>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9조 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0. 5. 26.></p> <p>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 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 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p>		<p>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③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 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p> <p>[제목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p> <p>[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0. 3. 22.]</p> <p>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p> <p>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p>	<p>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p>	<p>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p> <p>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p>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p>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p> <p>제16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p> <p>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p>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2. 1.></p> <p>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p> <p>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p> <p>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p> <p>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이 없는 경우</p> <p>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p> <p>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22.></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영업</p> <p>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p>	<p>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산설 2016. 5.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못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 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삭제 <2014. 1. 21.> <p>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p>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증(檢層)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p>		<p>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명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p> <p>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p> <p>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4.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p> <p>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p>④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 3. 22.></p> <p>⑤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 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p>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p>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2. 제조자 3. 보관시설의 소재지 <p>⑥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p>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7. 11. 20.> <p>⑧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p> <p>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p> <p>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p> <p>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p> <p>4.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p> <p>⑨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 2018. 12. 13., 2019. 12. 20.></p> <p>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치 지표)을 포함한다]</p> <p>2. 구조도면</p> <p>3. 제품 안내서</p> <p>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5. 사후관리계획서</p> <p>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p> <p>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p>		<p>3. 23.)</p> <p>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 3. 22., 2021. 1. 5.></p> <p>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 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⑧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⑨ 시·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⑩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21조</p> <p>제2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p>		<p>제12조(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플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p> <p>②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③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④ 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플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8. 12. 24.></p> <p>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p> <p>[제목개정 2013. 3. 22.]</p> <p>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같다. <신설 2013. 10. 30.></p> <p>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3. 10. 30.></p> <p>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④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p> <p>[제목개정 2013. 10. 30.]</p> <p>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p>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p>		<p>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3.></p> <p>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5. 2. 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p>[시행일 : 2021. 7. 6.] 제24조</p> <p>제25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p>		<p>제15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p>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1. 20.]</p> <p>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 2017. 11.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등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③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제2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④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⑤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5.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p> <p>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1. 7. 6.] 제26조</p> <p>제27조(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③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④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7. 10. 17.></p> <p>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p> <p>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6. 12.></p> <p>②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p> <p>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p> <p>1. 신규교육: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1회. 다만,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p> <p>가. 정수기 제조업자가 두는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p> <p>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2년 이내</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p> <p>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 12. 13.></p> <p>③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 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3. 23., 2018. 12. 13.></p> <p>[제목개정 2018. 12. 13.]</p> <p>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2.></p> <p>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건강진단)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p>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목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플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플등 <p>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18.]</p> <p>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p>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3. 10. 30., 2017. 11.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1.)</p> <p>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p> <p>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p> <p>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p> <p>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p> <p>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p> <p>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p> <p>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p> <p>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p> <p>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분의 세출</p> <p>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p> <p>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p>	<p>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p> <p>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p> <p>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p> <p>2. 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p> <p>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p> <p>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p>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9조 삭제 (2008. 9. 18.)</p> <p>제10조 삭제 (2008. 9. 18.)</p> <p>제11조 삭제 (2008. 9. 18.)</p>	<p>제22조(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량·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훈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p>	<p>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p> <p>[전문개정 2008. 9. 18.]</p> <p>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p>	<p>[전문개정 2008. 9. 25.] [제목개정 2011. 3. 23.]</p> <p>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3.></p> <p>[전문개정 2008. 9. 25.] [제목개정 2011. 3. 23.]</p> <p>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25.></p> <p>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6. 1.></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p> <p>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6. 1.></p> <p>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2. 6. 1., 2016. 12. 27.></p> <p>[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3. 22.]</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p>	<p>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p> <p>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을 지정·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도의 샘물보전구역을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수질 특성 <p>[본조신설 2013. 10. 22.]</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6. 1.></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p> <p>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21. 1. 5.></p> <p>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2. 6. 1.,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3. 22.] [시행일 : 2022. 1. 6.] 제31조제10항</p> <p>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p>		<p>제24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3. 22.]</p> <p>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결정서로 한다.</p> <p>[본조신설 2013. 10. 30.]</p> <p>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p> <p>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p> <p>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8. 9. 25.> 2. 삭제 <2008. 9. 25.>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p>	<p>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3. 22.></p> <p>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p> <p>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p> <p>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p> <p>[본조신설 2008. 9. 18.]</p> <p>제14조 삭제 (2008. 9. 18.)</p>	<p>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p> <p>1. 삭제 (2008. 9. 25.)</p> <p>2. 삭제 (2008. 9. 25.)</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p> <p>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p> <p>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p> <p>제34조 삭제 <2014. 1. 21.> 제35조 삭제 <2014. 1.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기준과 표시 등</p> <p>제36조(기준과 규격)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p>	<p>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p>제16조 삭제 <2014. 7. 21.></p>	<p>제28조 삭제 <2014. 7. 22.> 제29조 삭제 <2014. 7. 22.></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p> <p>제37조(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22.></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①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에 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p> <p>[제목개정 2010. 3. 22.]</p> <p>제39조(광고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0. 5. 26.></p> <p>②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p>	<p>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2., 2012. 7. 4.></p> <p>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p> <p>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p>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22.></p> <p>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도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4.></p> <p>③ 삭제 <2012. 7. 4.></p>	<p>2. 삭제 (2014. 11. 28.)</p> <p>3.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1.]</p> <p>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3. 23., 2019. 12. 20.></p> <p>1.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p> <p>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p> <p>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 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2018. 12. 24.> [본조신설 2010. 3. 22.] [제목개정 2014. 1.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검사</p> <p>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②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p>		<p>바.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p> <p>2. 정수기의 경우</p> <p>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p> <p>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p> <p>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p> <p>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p> <p>사.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p> <p>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3. 23., 2012. 6. 15., 2013. 10. 30.></p> <p>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이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 		<p>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p> <p>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7의 검사기준</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5.></p> <p>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p> <p>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p> <p>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두어들이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 3. 21., 2015. 2. 3.,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4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p> <p>⑤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p> <p>⑥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p>		<p>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9. 25., 2017. 6. 12.></p> <p>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7. 1., 2017. 6. 12.,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사유 없이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p> <p>2. 제8항에 따른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p>⑦ 보건소, 시·군·구의 청수관리·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3. 10. 30.,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⑧ 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 품질심의회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p> <p>⑨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p>		<p>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p> <p>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7. 6. 12., 2018. 12. 13.></p> <p>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p>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25., 2018. 12. 13.></p> <p>⑪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3.></p> <p>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회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p>		<p>대하여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사항 분야: 4명 이상 2. 구조·재질 분야: 4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 9. 25., 2011. 3. 23.,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환경·화학·미생물·위생·기계·재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환경·화학·미생물·위생·기계·재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질관리·기계·화학·금속재료·품질관리·산업위생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 인증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5.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 9. 25., 2018. 12. 13.></p> <p>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p> <p>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p> <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p> <p>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13.></p> <p>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2. 13.></p> <p>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⑩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 3. 22.)</p> <p>⑪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p>		<p>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3.)</p> <p>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3.)</p> <p>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13.)</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9. 25., 2018. 12. 13.)</p> <p>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3.]</p> <p>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2., 2018. 12. 1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두어들이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④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 3. 21., 2015. 2. 3., 2018. 12. 24.,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 4.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p>④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나 기관</p> <p>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 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 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p> <p>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 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 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p> <p>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 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2021. 1. 5.></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p> <p>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 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p> <p>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p> <p>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p> <p>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준에 미달된 경우</p> <p>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p> <p>⑩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p> <p>⑪ 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p> <p>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와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p> <p>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43조</p> <p>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p>		<p>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p> <p>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리법 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p> <p>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p>		<p>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추어 놓을 것</p> <p>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p> <p>나.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 부품</p> <p>다.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 기구</p> <p>제38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3.></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p>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p>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p>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1. 7. 6.] 제46조</p> <p>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1.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p> <p>2. 삭제 <2014. 1. 21.></p>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p> <p>⑥ 제5항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p> <p>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p>	<p>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p> <p>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p> <p>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p> <p>[본조신설 2011. 3. 22.]</p>	<p>제38조의2(회수·폐기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p> <p>1. 회수·폐기 대상 제품</p> <p>2. 회수·폐기량</p> <p>3. 이행기간</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p> <p>③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폐기</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p> <p>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21. 1. 5.></p> <p>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p> <p>2. 삭제 <2014. 1. 21.></p>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p> <p>⑥ 제5항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3. 22., 2014. 1. 21.></p> <p>[시행일 : 2021. 7. 6.] 제47조</p> <p>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p>	<p>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별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p>	<p>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회수방법</p> <p>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p> <p>3. 그 밖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회수·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p> <p>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p> <p>[본조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2.]</p> <p>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미리 보</p>	<p>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7. 21.)</p> <p>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1.)</p> <p>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본조신설 2011. 3. 22.]</p>	<p>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 1. 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13.> [본조신설 2014. 7. 22.]</p> <p>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1. 3. 23., 2014. 7. 22.)</p> <p>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p> <p>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p> <p>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p> <p>8의2. 삭제 (2014. 1. 21.)</p> <p>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p> <p>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12. 제45조,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 1. 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의2. 삭제 (2014. 1. 21.)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p> <p>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12. 제45조,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7. 6.] 제48조</p> <p>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의2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 1. 21.) 3의2.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p>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의2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 1. 21.)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p>[시행일 : 2021. 7. 6.] 제50조</p> <p>제51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6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p>	<p>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p>	<p>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p> <p>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20. 3. 24.></p> <p>제51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21. 1. 5.></p> <p>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p> <p>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3. 22.></p> <p>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p> <p>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3. 22.></p>	<p>9. 25.)</p> <p>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개정 2010. 3. 22., 2013. 8. 6., 2020. 3. 24.) [시행일 : 2021. 7. 6.] 제51조</p> <p>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p>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p> <p>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p> <p>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p> <p>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1. 1. 5.></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p> <p>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p> <p>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p> <p>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p> <p>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p> <p>[시행일 : 2021. 7. 6.] 제52조</p> <p>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p> <p>[시행일 : 2021. 7. 6.] 제53조</p> <p>제54조(자료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2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p> <p>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p> <p>제55조(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1. 1. 5.></p> <p>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p> <p>[시행일 : 2021. 7. 6.] 제55조</p>	<p>제20조(위임 및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14.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 <2014. 7. 21.> <p>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 3. 22.> 2. 삭제 <2011. 3. 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 3. 22.> 5. 삭제 <2011. 3. 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p>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 6. 1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p>청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질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p>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p> <p>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p> <p>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p> <p>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p> <p>6.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p> <p>7. 제21조제5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p> <p>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5.></p> <p>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p> <p>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p> <p>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p> <p>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p> <p>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p> <p>5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p> <p>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p> <p>7. 제21조제7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p>		<p>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할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3.></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1. 7. 6.] 제56조</p>	<p>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 금액: 2014년 7월 22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2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4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7. 6. 12.,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7월 22일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샘플등의 취수량 보고 시 제출서류·제출시기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 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2014. 1. 21.> 4. 삭제 <2014. 1. 21.>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22일 1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2019년 1월 1일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p>[본조신설 2014. 4. 30.]</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p> <p>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p> <p>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p> <p>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p> <p>4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5.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p> <p>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p> <p>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p> <p>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p> <p>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p> <p>7의4.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p> <p>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7의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p> <p>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p>[시행일 : 2021. 7. 6.] 제58조</p>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p> <p>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p> <p>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p> <p>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p> <p>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p> <p>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p> <p>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p> <p>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p>6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p> <p>7.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p>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p> <p>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p> <p>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측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p> <p>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p> <p>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p> <p>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p> <p>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16.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p> <p>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p> <p>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p> <p>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p>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2018. 12. 24., 2021. 1. 5.)</p> <p>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p> <p>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p> <p>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자</p> <p>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p> <p>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p> <p>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p> <p>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p>6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p> <p>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p> <p>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p> <p>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p> <p>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p> <p>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p> <p>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p> <p>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p> <p>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16.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p> <p>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p> <p>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p> <p>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p> <p>[시행일 : 2021. 7. 6.] 제59조</p> <p>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2. 6. 1.]</p> <p>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p>	<p>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1. 3. 22.]</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p> <p>2.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자</p> <p>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3.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p> <p>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8.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9.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p> <p>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2.></p> <p>④ 삭제 <2010. 3. 22.></p> <p>⑤ 삭제 <2010. 3. 22.></p> <p>⑥ 삭제 <2010. 3. 22.></p> <p>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p> <p>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2021. 1. 5.)</p> <p>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p> <p>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자</p> <p>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p> <p>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p> <p>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2.> ④ 삭제 <2010. 3. 22.> ⑤ 삭제 <2010. 3. 22.> ⑥ 삭제 <2010. 3. 22.> [시행일 : 2021. 7. 6.] 제61조</p> <p>부칙 <제8368호, 2007. 4. 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본다.</p> <p>제5조(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p>	<p>부칙 <제20241호, 2007. 9.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516호, 2007. 12. 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⑩ 부터 ⑯ 까지 생략</p>	<p>부칙 <제274호, 2008. 1. 2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8호, 2008. 6.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호, 2008. 9.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증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p> <p>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p> <p>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818호, 2008. 6.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p> <p>부칙 <제21014호, 2008. 9.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도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p>	<p>3월 말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402호, 2011. 3. 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술인력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 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p> <p>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29호, 2007. 8.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52호, 2008. 3.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p> <p>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p> <p>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p> <p>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38호, 2011.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1호, 2013. 2. 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2호, 2013. 10.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154호, 2010. 3.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냉·온수기 설치·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p>	<p>3의2의 개정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동계측기의 교정 및 오차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간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6호, 2014. 7. 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78호, 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6호, 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5호, 2016. 1. 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p> <p>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p> <p>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p> <p>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⑯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p> <p>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p> <p>⑰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27호, 2009. 12. 30.></p> <p>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715호, 2011. 3.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3호, 2017. 6. 1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 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p> <p>제4조(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시료채취 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1463호, 2012. 6. 1.></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663호, 2013. 3.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수기 설치·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p> <p>부칙 <제23932호, 2012. 7. 4.></p> <p>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807호, 2013. 10.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496호, 2014. 7. 21.></p>	<p>부칙 <제712호, 2017.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19호, 2017. 11.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7항제3호,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물관리법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하위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33호, 2017. 12.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산가스 주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거목4)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부터 <71>까지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압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5784호, 2014.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p>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12318호, 2014. 1.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129호, 2016. 5.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88호, 2018. 1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원의 위촉과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수기품질심의회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p>
<p>부칙 <제13164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601호, 2015. 12. 22.></p>	<p>부칙 <제28364호, 2017. 10. 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84호, 2018. 1. 1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453호, 2021. 2. 17.> (국세징수법 시행령)</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p> <p>제3조(품질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실내공기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p> <p>⑥부터 ⑫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p> <p>⑦부터 ⑯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1호, 2019. 8. 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㉞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p>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㉖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652호, 2018. 6. 1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079호, 201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40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8항·제9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정수</p>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p>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먹는샘물등·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493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4932

[별표 1] <개정 2013.10.22>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가. 검사기관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180,000	100 이하
220,000	100 초과 120 이하
260,000	120 초과 140 이하
300,000	140 초과 200 이하
340,000	200 초과 280 이하
380,000	280 초과 380 이하
420,000	380 초과 500 이하
460,000	500 초과 680 이하
500,000	680 초과 840 이하
540,000	840 초과 1,020 이하
580,000	1,020 초과 1,220 이하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620,000	1,220 초과 1,440 이하
660,000	1,440 초과 1,680 이하
700,000	1,680 초과 1,940 이하
740,000	1,940 초과 2,220 이하
780,000	2,220 초과 2,520 이하
820,000	2,520 초과 2,840 이하
860,000	2,840 초과 3,180 이하
900,000	3,180 초과 3,540 이하
940,000	3,540 초과 3,920 이하
980,000	3,920 초과 4,320 이하
1,020,000	4,320 초과 4,740 이하
1,060,000	4,740 초과 5,000 이하
1,100,000	5,000 초과

나. 먹는물관련영업자

기준금액(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20,0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00,00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80,000	120 초과 20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60,000	200 초과 34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440,000	340 초과 54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520,000	540 초과 80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600,000	800 초과 1,12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680,000	1,120 초과 1,50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760,000	1,500 초과 1,94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840,000	1,940 초과 2,44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920,000	2,440 초과 3,00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1,000,000	3,000 초과 3,62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1,080,000	3,620 초과 4,30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160,000	4,300 초과 5,04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0,000	5,040 초과 5,84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320,000	5,840 초과 6,70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400,000	6,700 초과 7,62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480,000	7,620 초과 8,60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1,560,000	8,600 초과 9,64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1,640,000	9,640 초과 10,74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1,720,000	10,740 초과 11,9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1,800,000	11,900 초과 13,1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1,880,000	13,120 초과 14,40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1,960,000	14,400 초과 15,74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2,040,000	15,740 초과 18,60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2,120,000	18,600 초과 20,0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2,200,000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

[별표 2]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공통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3) 정수기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50	230	300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2호	150	230	300

0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호	50	70	100
2) 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2호	50	70	100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다.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1호	50	70	100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0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라. 환경영양조사 대행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50	230	300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2호의2	50	70	100

마.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4호	50	70	100

사.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5호	50	70	100

아.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6호	50	70	100

자. 검사기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2)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8호	80	90	100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7호	50	70	100

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제9호	50	70	10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4939
[별표 1의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4946
[별표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4947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4948
[별표 3의2]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4952
[별표 4]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4953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4955
[별표 6]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4956
[별표 7]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4956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4959
[별표 8의2]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4959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4968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1. 샘플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p>(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가)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p> <p>(나) 우물 및 샘 현황</p> <p>(다) 수원 및 하천 현황</p> <p>(라) 잠재오염원</p> <p>(마)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p> <p>(바)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p> <p>(2)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廣域分水嶺)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지하수 유동(流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p> <p>(나)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p> <p>(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p> <p>(라)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p> <p>(마)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p>

조사항목	조사방법
	<p>(3)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유동경로의 발달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p> <p>(가)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자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와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p> <p>(나) 전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p> <p>(4)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3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2개 이상, 하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상류구간에 설치되는 관측정중 1개는 다른 1개보다 더 먼거리에 설치한다.</p> <p>(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에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유입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광역관측정을 양수정 상류에 관측정보다 더 먼거리에 1개 이상 설치한다.</p> <p>(다) 관측정의 깊이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땅파기) 깊이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p> <p>(라)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발시 추가 개발된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위 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의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5)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p> <p>(나)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p> <p>(6) (1)부터 (5)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p> <p>(가) 양수시험</p> <p>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p> <p>②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양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降下)를 측정한다.</p> <p>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환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험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p> <p>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하면서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고,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 등을 구한다.</p> <p>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p> <p>⑥ 시험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현장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산소(Do)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水理干涉) 현상을 규명한다.</p> <p>⑦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나) 수위회복시험</p> <p>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하여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p> <p>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결과와 비교한다.</p> <p>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p> <p>(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p> <p>(2) (1)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p> <p>다) 환경지질학적 피해</p> <p>(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침하·경사면안정파괴·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p> <p>(2) 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가) 기존 자료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p> <p>(나)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軟弱帶) 파악</p> <p>(다) 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長期水位)·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p> <p>(라) 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p> <p>(마) 중금속 오염도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적 분석</p> <p>라) 수질</p> <p>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생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가)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p> <p>(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샘물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샘플을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샘플을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샘플을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p> <p>(다)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샘물용, 상수도 등 생활용수용, 농업용 및 공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p> <p>(라)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p>

비고 : 취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법으로 샘플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방법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한다.

1. 가)(2)의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지하수 유동(流動)과 용천수 용출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 나.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 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용천수 산출상태의 관계
 - 라.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 마. 지하수의 함양지역과 용천수가 용출되는 배출지역까지의 유출경로 파악
2. 가)의 (3),(4),(5),(6)을 생략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용천수 산출특성은 가)의 (1),(2)의 조사결과와 다음 각 목의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
 - 가. 용천수의 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6개월 이상 수량을 측정하며, 매회 측정시 3회 이상 측정한다.
 - 나. 수량 측정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산소(Do) 등 현장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용천수의 수질변화유무를 파악한다.
 - 다. 자동계측기를 이용하여 용천수위를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한다.
 - 라. 조사지역의 강우량 분석 및 강우강도와 용천수 용출량과의 상관성을 평가한다.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마. 조사지역의 수리상수 자료와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한다.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용천수의 용출량의 균일성과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3. 나)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용천수의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5년 이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 나. 가.의 영향범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4. 다)(2)의 (나),(다)를 생략하여 조사한다.

2) 평가기준

- 가)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 나)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 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 3) 조사서의 작성
-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다)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나.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 가) 허가받은 1일 채수한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경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 등의 피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라)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증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casing; 굴착면 보호관)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 바)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사)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아)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2)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가목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가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1)의 가)부터 마)까지의 관련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부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측정시간 간격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1분 초과 ~ 10분 이하	1분 간격	10
10분 초과 ~ 20분 이하	2분 간격	5
20분 초과 ~ 60분 이하	5분 간격	8
60분 초과 ~ 100분 이하	10분 간격	4
100분 초과 ~ 180분 이하	20분 간격	4
180분 초과 ~ 300분 이하	30분 간격	4
300분 초과 ~ 600분 이하	60분 간격	5
600분 초과 ~ 780분 이하	90분 간격	2
780분 초과 ~ 1020분 이하	120분 간격	2
1020분 초과 ~ 1560분 이하	180분 간격	3
1560분 초과 ~ 2520분 이하	240분 간격	4
2520분 초과 ~ 4320분	300분 간격	6

2. 염지하수 개발

가.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 (나) 우물 및 샘 현황 (다) 수원 및 하천 현황 (라) 잠재오염원 (마)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바)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 (2)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조사항목	조사방법
	<p>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지하수 유동(流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p> <p>(나)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p> <p>(다)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p> <p>(라)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p> <p>(마)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p> <p>(바) 해안으로부터 지하수의 광역분수경까지 2개 이상의 지질단면도를 작성하고 담수와 염수 경계대(transition zone) 표시</p> <p>(3)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유동경로의 발달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으로 한다.</p> <p>(가)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나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p> <p>(나) 전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하여 염수층 부존상태를 파악한다.</p> <p>(4)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2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을 중심으로 해안 방향으로 1개 이상, 해안 반대방향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수위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나) 관측정의 깊이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 깊이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p> <p>(다) 최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발시 추가 개발된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 위 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이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p> <p>(5)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 위치를 확인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p> <p>(나)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p> <p>(다) 고조(high tide)와 저조(low tide)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의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조석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p> <p>(라) 풍수기와 갈수기를 포함한 최소 2회 이상 전기전도도 및 수온 검층을 통해 강우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확인한다.</p> <p>(6) 염지하수 대수층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수위와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p> <p>(가) 조석 및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 확인을 위해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수위 및 전기전도도, 수온 변화를 관측하고 분석한다.</p> <p>(나) 자동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시 전기전도도와 온도 센서는 담수대에 1개 이상, 염수대에 1개 이상 설치하여 깊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p> <p>(7) (1)부터 (6)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p> <p>(가) 양수시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는 염지하수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및 담수와 염수 경계대의 변화를 측정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p>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되,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p> <p>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선정된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며,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을 구한다.</p> <p>⑤ 지하수 함양량 산정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p> <p>⑥ 장기양수시험 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이용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을 결정하고,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현장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한다.</p> <p>⑦ 모든 양수정에 대한 동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p> <p>⑧ 담수와 염수 경계대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각각 1개 이상의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한다.</p> <p>⑨ 양수시험을 통하여 대수층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고 많은 양을 양수하더라도 수위강하가 작은 경우, 대상지역 대수층의 투수성이 매우 양호하여 수위강하가 작거나 빨리 안정화되어 양수시험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조석반응법을 이용한 방법 및 비양수량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대수층의 수리상수를 산정할 수 있다.</p> <p>⑩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p> <p>(나) 수위회복시험</p> <p>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 및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p> <p>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p>	<p>(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한 포획구간을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p> <p>(2) 적정채수량 조사시에는 양수에 따른 담수와 염수 경계면의 수질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담수와 염수 점시대(혼합대)의 두께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두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채수량을 산정한다.</p> <p>(3) 모델링은 담수와 염수의 밀도 차이를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밀도류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모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p> <p>(2) (1)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족보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p>
<p>다) 환경지질학적 피해</p>	<p>(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침하 등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p> <p>(2)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인근 샘의 유출량 및 수질변화 등을 평가하고, 주변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p> <p>(3)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담수와 염수 상호작용의 수리동력학적 균형이 깨져 해수침투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p> <p>(4) 염지하수 양수후 배출수 등에 따른 주변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출수의 수질을 파악하고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6개월 이상 현장수질 및 주성분원소등 수질을 파악하고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유무를 확인하고,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p>
<p>라) 수질</p>	<p>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샘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p>

조사항목	조사방법
	<p>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염지하수 방사는 수질기준 항목은 분기 1회씩 2회 이상 실시한다.</p> <p>(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염지하수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염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염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p> <p>(다)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염지하수용 등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p> <p>(라)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p>

비고 : 해수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해수와 관련된 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을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1호의 샘플 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 등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 가)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 나)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 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3) 조사서의 작성

-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 다)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나.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 가) 허가받은 1일 채수량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등 재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 라)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 마)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증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 바)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범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사)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 아) 염지하수 이용 후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과 배출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현장수질, 주성분원소 분석, 염도를 포함한 토양분석에 대한 최근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자) 배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수의 수질을 최근 1년 이상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 차)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2)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가목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1)의 가)부터 마)까지의 관련자료도 같음할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14.7.2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샘플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
 - 다. 양수정(揚水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 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 경우
 - 라.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
 - 마.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경우
 - 바. 강수량, 기온, 일조량,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 사.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 수리상수,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아.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자.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 우물 및 샘 현황, 수원 및 하천 현황

-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누락한 경우
- 다. 포획기간 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별표 2] <개정 2011.3.2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비고

1.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층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250mm의 내부 케이싱을 설치한다.
- (2) 이때 최초 지층 굴착 구경은 최초 그라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케이싱 구경보다 최소한 100mm 이상 크게 굴착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 실시

- (1) 상부구간 착정 종료 후 상부 오염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케이싱과 착정경 사이의 공간(Annular space)에 착정공저부에서부터 역순환식 압력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 (2) 이때 그라우팅은 주입제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하며 그라우팅 주입제는 체적상으로 3퍼센트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급결제(急結劑)를 사용할 수 있다.
- (3) 그라우팅 실시 후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할 수 없다.

다) 취수정 형성

- (1) 그라우팅이 완전 굳은 후 적정구경(150~250mm)으로 하부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공내 TV-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TV-카메라 검층결과는 비디오표로 촬영하여야 한다.
- (3) 공내검층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중 모터펌프 설치와 공내 수위관측공 설치가 가능한 적정구径의 우물자재(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수중 모터 펌프 보호에 충분한 깊이까지 설치한 후 공내의 세척을 실시한다.

2) 채수 및 계량시설

- 가) 양수 모터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나) 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수정 보호시설

- 가) 취수정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양수장(Pump-house)에 자물쇠가 달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취수정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외부 케이싱의 상반부는 양수장의 바닥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수정 자재 등

취수공을 굴착한 후에 공내에 설치할 정호자재는 모두 KS 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는 수질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감시정의 설치와 관리

가) 감시정의 위치

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정의 위치·설계구조와 취수정의 상하류 경사구간이 결정되면 그 상류경사구간에 2개공의 상류경사 감시정과 그 하류경사구간에 최소 1개공 이상의 하류경사 감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염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따라 상·하류를 정하여 감시정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감시정의 설치

(1) 상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주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상류에 설치한다.

(나) 상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상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하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이나 그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에 설치한다.

(나) 하류경사 감시정의 굴착깊이는 취수정의 최하부 깊이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하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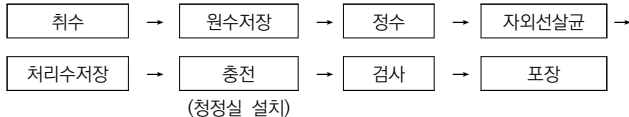
다) 연속자동계측기 설치 및 관리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전기전도도·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별표 1 제1호(가목1)의 비고를 적용하여 시험정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한 경우에는 취수정을 설치해서는 아니되고, 감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수량 자동 계량시설 및 보호시설과 용천수의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1) 표준제조공정(다만, 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균·소독시설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처리수 저장조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Clean Room)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1) 염지하수를 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 배수관은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파랑, 조류와 같은 해양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지하수 배출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

(3) 염지하수 배출수에 농축수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바) 설비·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KS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염지하수를 취수할 경우에 그 재질은 에스티에스(STS) 316급 또는 같은 등급 이상의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 먹는샘물등의 생산 배관·자재는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진 설비 및 배관은 내부세척(CIP, 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의 시설

(1)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수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원료·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샘물등과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4) 작업장 중 출입구·원수처리장·제조공장·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비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실 및 장비

1) 검사실

- 가)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장비: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가)부터 차)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먹는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고,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사)까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가) 가스스크로마토그래피(GC)
- 나) 광전분광광도계
- 다)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 라) 퍼지&트랩장치
- 마)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 바) 섬광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 사) 베타계수기(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 아) 수도이온농도측정기(pH미터)
- 자) 콜로니 카운터
- 차) 클린벤치(무균작업실형태)
- 카) 정제수 제조장치
- 타) 고압멸균기
- 파) 저울
- 하) 건조기
- 거) 부란기
- 너) 삭제 <2017. 11. 20.>

- 더) 가열판
- 러) 탁도계
- 머) 교반기
- 버) 피펫 세척기(1회용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 항온수욕조(恒溫水浴槽)
- 어) 잔류염소 비색계
- 저) 국소배기장치(흡후드)
- 처) 염분계(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한다)
- 커)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조차

2.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제조공정상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응집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반응기·분쇄기(고체만 해당한다)·여과기
- 2) 살균·소독제
가) 고도표백분: 혼합기·타정기·반응기·석회유탱크·석회유필터·원심분리기·진조기·집진기·분리탑
나) 액화염소: 전해조·염소가스분리기·진조탑·염소가스압축기·염소가스냉동기
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반응기·냉동기
라) 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이산화염소발생장치·반응기
마) 오존: 오존발생장치
바) 과산화수소: 원료저장탱크·가열기·반응기·여과기·압축기·액분리기·순수저장탱크·농축기
- 3) 부식억제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용광로·성형기·건조시설

4) 그 밖의 제제

- 가) 수산화칼슘(소석회): 분쇄기·혼합기·반응기·분급기
- 나) 활성탄: 탄화로·활성로·분쇄기·혼합기·선별기·포장기·집진기
- 다) 황산구리: 반응기·농축기·여과기·냉각기·탈수기·포장기
- 라) 수산화나트륨: 전해조·농축조
- 마) 제오라이트: 분쇄기·건조기·입도분리기·약품처리조·세척조
- 바) 일라이트: 분쇄기·건조기·송풍기·분급기·포장기
- 사) 황산: 원료저장탱크·연소로·축매탑·황산흡수탑·저장조·중화처리조
- 아) 안정화이산화연소: 원료저장탱크·반응기
- 자) 이산화탄소: 원료저장탱크·압축기·냉각기·수분분리기·건조기·정제탑·응축기·액분리기·저장탱크
- 차) 과망간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가열기·여과기·반응기·농축기
- 카) 티오황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반응기·농축기·탈수기(고체만 해당한다)

나. 검사시설

- 1)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AA, ICP 등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3.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장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사무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나. 먹는샘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정수기 제조업 시설기준

- 가. 검사실
-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검사장비
- 유리잔류염소·색도·탁도·클로로포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의2] <개정 2019. 12. 20.>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자동계측기 설치기준

가. 자동계측기는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분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pH
허용오차 범위	±0.5% F.S	±2% R.D	±2% F.S	±0.25℃	±0.2

나.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깊이는 감시정의 굴착깊이와 자연수위, 수위센서의 측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취수정의 최대 수위강하량(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설치하여 센서가 항상 지하수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기준

가.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1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측정·기록·저장하여야 한다.

1) 수위는 지반고(GI)를 기준으로 지하수면까지 측정하고, 수량은 적산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항목별 측정단위는 아래를 적용한다.

구분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pH
단위	m	m ³ /h	μS/cm	℃	-

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는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 자동계측기의 측정항목별 센서, 연결케이블 등 자동계측기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9. 12. 20.>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서류검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일]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性狀)·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 1)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 3) 수출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사대상의 수거

가.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표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 2) 먹는샘물·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나.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7. 12. 29.>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공장의 부지를 포함한다)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로서 샘물등을 이용하여 음료류를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삭제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나. 삭제 <2015.12.22.>

다.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4.7.22.>

사. 삭제 <2014.7.22.>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삭제 <2014.7.22.>

차. 삭제 <2014.7.22.>

카. 삭제 <2015.12.22.>

타. 삭제 <2015.12.22.>

파.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3)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먹는샘물등에 음료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생산 품목을 전환할 때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생산 및 작업일지는 설비 및 배관에 대한 세척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 배합 및 병입 공정설비는 음료류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등에 섞이지 않도록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음료류 제조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삭제 <2015.12.22.>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라. 삭제 <2015.12.22.>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가. 수도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아. 삭제 <2015.12.22.>

5. 삭제 <2014.7.22>

[별표 6] <개정 2010.3.23>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1. 먹는샘물·먹는 염지하수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2. 샘물·염지하수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형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매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비고

1. 샘물·염지하수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샘물·염지하수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3. 염지하수의 방사능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1.3.23>

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인 경우: 생산량 3천대 단위로 실시
 - 나.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3.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유입수를 조절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
 - 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톨루엔, 세제, 카바릴,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4.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별표 8] <개정 2019. 8. 2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 학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자 2명	가. 시설: 실험실 1)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 및 원생동물실험실(전처리실, 현미경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바이러스실험실(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만 해당한다)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따른 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에어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명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정제수제조장치 1대 4) 건조기(Dry oven) 1대 5) 항온건조기 1대 6) 항온수욕조 2대 7) 전기회화로 1대 8) 흡후드(Hume hood) 1대 9) 진탕기(Shaker) 1대 10) 가열판(Hot plate) 2대 11)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3대 12) 회전증발농축기 1대 13) 고압멸균기(Auto clave) 1대 14) 배양기(Incubator) 2대
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관련 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상(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자 1명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배양기(BOD incubator) 1대
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16) 무균작업대(Clean bench) 1대
마.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7) 광학현미경 1대
바.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8)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대장균 항목을 효소발색법으로 검사하거나 녹농균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19) 여과장치세트(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세포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유전자 분석 경력이 6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20) 여과펌프(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2명 이상[2]	21)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22) 잔류염소측정기 1대
	23) 탁도계 1대
	24) 퍼지-트랩장치 1대
	25) 광전분광광도계 1대
	26)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NPD, FID) 2대
	27)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29)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3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31) 바이러스 시료채취기(조절기, 여과기, 배출기, 수소이온농도(pH) 및 잔류염소조정수입기, 전여과기 등)
	32) 이산화탄소(CO2) 배양기 2대
	33) 양수펌프 1대
	34) 도립현미경 1대
	35) 세포 및 바이러스용 무균작업대 각1대
	36)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7) 현장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8) 현장용 온도계 1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의 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39) 멸균용 건조기(Hot Air Oven) 1대
사.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40) 온도기록계 1대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41) 고속원심분리기 1대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3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42) 유전자증폭기(PCR) 1대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경험자도 할 수 있다.	43) 전기영동장치 1대
	44)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치 1대
	45) 미량원심분리기 1대
	46) 전자레인지 1대
	47) 냉동고(Deep Freezer ; -70℃) 1대
	48) 팔 달린 교반기(Wrist Shaker) 1대
	49) 흡입장치 1대
	50) 볼텍스믹서(Vortex Mixer) 1대
	51) 회전혼합기(rotating mixer) 1대
	52) 리튼시험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3) 미세원심분리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4) 정량펌프 1대
	55) 형광 미분간섭대비(DIC) 현미경 1대
	56) 교반기 1대
	57)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58) 삼광계수기
	59) 베타계수기
	60)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2. 수처리계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p>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자 1명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p>	<p>3) 건조기(Dry oven) 1대 4) 항온건조기 1대 5) 항온수욕조 6) 표준망체(KS 규격품) 7) 이산화탄소 정량장치 8) 전기회화로 1대 9) 훔후드(Hume hood) 1대 10) 진탕기(Shaker) 1대 11) 가열판(Hot plate) 1대 12)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4) 광전분광광도계 1대 15)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2대 16)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17)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ICP)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p>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p>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p>	<p>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나. 정수성능검사시설 및 장비 1)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2) 배관라인 3) 압력계(원수탱크별 각 1조 이상) 4)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5)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6) 펌프(원수탱크별 1조)</p>

비고

-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부터 59)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의 먹는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 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31)부터 46)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목41) 및 47)부터 56)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자동전기영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제1호 시설 및 장비란 나목 중 43), 44) 및 46)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과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염지하수의 방사능 수질기준 항목을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제1호 시설 및 장비란 나목57)부터 59)까지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호의 기술인력란 중 마목의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마목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여서는 아니된다.
2.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검사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3.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채취(바이어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가. 도서(島嶼)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
 - 나. 민간인통계선 이북(以北)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4.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해당 각 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료의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한 용기의 종류, 채취용량 및 채취한 사람
 - 나. 검사기록부: 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분석한 사람
5.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정수기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마.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법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법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법게 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0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 마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6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법 제48조제1항제4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법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조사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3				
가) 조사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조사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4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5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실적 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나. 삭제 <2014.7.22>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3조 제6항제1호의2	지정취소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지정된 검사기관(합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별표 8의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정해진 검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그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먹는물관리법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	법 제48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2) 삭제 (2014.7.22)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4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9)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 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등의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8) 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 삭제 <2015.12.22.>					
(11) 삭제 <2015.12.22.>					
(12)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한 경우	허가취소				
(13) 오존처리나 기타 화학적처리를 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4) 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용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삭제 <2015.12.22.>					
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삭제 <2015.12.22.>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수도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삭제 <2015.12.22.>					
10)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된 사항 또는 법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6) 체형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1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5호	10일	20일	1개월	폐쇄	
1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 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7)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8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 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 11호	경고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샘 물등 및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제 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제11호				
가)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일반세균이 먹는샘물등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 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에 적합한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48조 제1항제11 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 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 으로 판명된 경우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 입판매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보 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 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 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 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의 경우					
(1)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12호	1개월	2개월	6개월	폐쇄
(2)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5조, 법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4)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5)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3항	경고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비고

1. 라목3), 라목9)가(2)·(4)·(5)·(11), 라목9)나(2)·(3), 라목9)다(1)·(3)·(4), 라목9)라(2)·(7), 라목15), 라목16) 및 라목22)나(4)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라목21)가) 및 나)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소정의 취소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라목21)다)·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라목22)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10] <개정 2012.6.15>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종별	근거조문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생물등의 개발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법 제9조	50,000원	45,000원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50,000원	45,000원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변경등록	법 제15조	30,000원	27,000원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법 제21조제1항	50,000원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법 제21조제1항	30,000원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법 제21조제2항	30,000원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제2항	20,000원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법 제21조제3항	50,000원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법 제21조제3항	30,000원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법 제21조제4항	30,000원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	20,000원	-
12.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법 제21조제5항	30,000원	27,000원
13.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 신고	법 제21조제5항	20,000원	18,000원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4973
제2조(수질기준)	4973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4973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4973
제5조(건강진단)	4974
제6조(수질검사결과에 보고)	4974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4975
제8조 삭제	4975
부칙	497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7.12.26	환경부령 제262호
	2008. 2. 4	환경부령 제276호
	2009. 9. 4	환경부령 제347호
	2010. 8. 4	환경부령 제377호
	2011. 2. 1	환경부령 제395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39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속보도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23	환경부령 제621호
	2016.10.31	환경부령 제67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12.26	환경부령 제79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하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도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기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급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 나.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 다.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도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우려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 제6조(수질검사결과와 보고)**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보고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

제8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262호, 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같은 표 제3호더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다목·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 : 1mg/ℓ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 2008.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2.1>

부칙 <제347호, 2009.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0.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 2011. 2. 1.>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15.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플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샘플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플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유효기간 종료일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샘플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샘플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플 개발허가 또는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중으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플 개발허가 또는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샘플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플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7호, 2016. 10. 3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시설용량이 50,000톤/일 미만인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92호, 2018. 12. 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4979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4981

[별표 1] (개정 2019. 12. 20.)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플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붕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하. 우라늄은 30 μ g/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급수인구(명)	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개)
5,000 미만	1
5,000 이상 - 50,000 미만	급수인구 5,000명당 1
50,000 이상 - 100,000 미만	급수인구 7,000명당 1 + 2
100,000 이상 - 500,000 미만	급수인구 8,000명당 1 + 4
500,000 이상 - 1,000,000 미만	급수인구 15,000명당 1 + 33
1,000,000 이상	급수인구 30,000명당 1 + 66

비고 :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제7편
물통합

08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996	제1조(목적) 4996	제1조(목적) 4996
제2조(책무) 4996		
제3조(정의) 4997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 4997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4998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4999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4999	
제3조(정의) 5001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5001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5005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5006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5006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5006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5007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5008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5009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5009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5010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5011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5011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5011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5012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5013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5015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5016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5016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501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019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5020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5021 제9조(주민지원사업) 5021 제10조(재원 등) 5022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5023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5024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5024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5024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5026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5027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5028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5028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5030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5017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5020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5020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5021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5022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5022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5023 제21조 삭제 5023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5023 제23조(비용부담기준) 5023 제24조(위생안전기준) 5024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5025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5027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5028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5029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5030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5030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5031	제2조의2(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5017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5018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019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5026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5027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5028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5031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5031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5032	제24조의10(자료 제출) 5031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5032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5032	
	제25조 삭제 5032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5033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5033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5033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5035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5033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5035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5034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5035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5035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5035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5036	제27조(인가신청) 5036	제7조 삭제 5035
제18조(시설 기준 등) 5037	제28조(인가의 고시) 5037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5036
	제29조(시설기준) 5037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5038	제30조 삭제 5038	제9조(시설기준) 5038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5038	제31조(수질검사) 5038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5038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5038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5038	제10조 삭제 5038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503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5039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5042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5042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5041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5044	제34조의2(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5044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5044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504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5045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5046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5046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5047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5047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5047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5048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5049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5050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5051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5051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5052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5052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5053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5053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5054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5055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5055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5055	
	제44조 삭제 5056	
	제45조 삭제 5056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056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5057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5056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5057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5058		
제26조(수질기준) 5058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보고) 5059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5059		제17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5059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5060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5060	제17조의3(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5060
제28조(정수처리기준) 5061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5060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5060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5063	제48조 삭제 5061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5061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5064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5064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5063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5064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5064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5065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5065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5065	제20조(수질검사기관) 5066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5066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5066
제32조(건강진단) 5067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5066
제33조(위생상의 조치) 5067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5067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5068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5068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5069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기록·보관) 5069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5069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5069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5071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5071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5072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072
제36조(교육) 5073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5073	
제36조(교육) 5074		제24조(긴급정지) 5075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5075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5075
제38조(공급규정) 5075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5075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507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급수 의무) 5076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5076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5076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5076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5077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5077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5077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5077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5077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5078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5078		
제45조(소화전) 5079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079		
제47조(마을상수도) 5081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5081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5082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5082		
제50조(준용 규정) 5083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5083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5083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5083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5083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5083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5083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5084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5084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508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5084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5085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5086	제60조(업무 등) 5086	
제57조(입원과 선출 방법 등) 5086		
제58조(감독) 5086	제61조(협회의 감독) 5086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5086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5087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5087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5087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5087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088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감독) 5088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5088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5088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5091		
제64조(개선 명령 등) 5094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5095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5095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5096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5096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5096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5096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5096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5096		
제71조(원인자부담금) 5097	제65조(원인자부담금) 5097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5098		
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5098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5098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5102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5102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5103 제75조(국고 보조 등) 5103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물민에 대한 지원) 5103 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5104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5104 제79조(청분) 5108 제79조(청분) 5108 제80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09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5098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5103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5104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07 제68조(규제의 재검토) 5107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5098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5099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5099 제30조(자체기술진단) 5101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5101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5101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5102 제32조(규제의 재검토) 5107
제9장 별칙		
제81조(별칙) 5109 제82조(별칙) 5109 제83조(별칙) 5109 제83조(별칙) 5111 제84조(별칙) 5113 제84조(별칙) 5113 제85조(별칙) 5114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86조(양벌규정) 5115		
제87조(과태료) 5115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115	
제87조(과태료) 5118		
부칙 5122	부칙 5122	부칙 5122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정 2007. 4.11 법률 제8370호 개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2.27 법률 제8805호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물이용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2010. 5.25 법률 제10317호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6. 8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6호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11.14 법률 제11085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12.30 법률 제12141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24 법률 제12518호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2. 3 법률 제13166호 2015.12. 1 법률 제13529호 2016. 1.27 법률 제13878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12.12 법률 제15193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82호 2019.11.26 법률 제16607호 2020. 3.31 법률 제1717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물환경용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p>	<p>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3호 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8. 1. 3 대통령령 제20521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 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2008. 6.20 대통령령 제20846호 2008.12. 3 대통령령 제21148호 (잠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임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9호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6호 2012. 1.26 대통령령 제23567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4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 (건축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5.31 대통령령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4.15 대통령령 제25309호 2014. 6.30 대통령령 제25430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정 2007. 9.11 환경부령 제244호 개정 2007.12.26 환경부령 제262호 (먼저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8. 6.27 환경부령 제291호 2010.11.29 환경부령 제386호 2011. 5.31 환경부령 제416호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12. 1.27 환경부령 제445호 2012. 5.17 환경부령 제456호 2012. 6.29 환경부령 제462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1.29 환경부령 제5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7. 1 환경부령 제561호 2014.12. 1 환경부령 제579호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5 환경부령 제596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6. 3. 3 환경부령 제642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1.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18. 6.27 환경부령 제768호 2019. 6.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p>	<p>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p> <p>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신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6. 7.12 대통령령 제27335호</p> <p>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7. 4.11 대통령령 제27985호</p> <p>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7. 8.16 대통령령 제28243호 (사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출판정보전법 시행령)</p> <p>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8. 6.12 대통령령 제28965호</p> <p>2018.12.11 대통령령 제28352호</p> <p>2019. 6.18 대통령령 제29874호</p> <p>2019.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 8.11 대통령령 제30929호</p> <p>2020. 9.29 대통령령 제31075호</p> <p>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11.24. 대통령령 제31185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020. 5.27 환경부령 제870호</p> <p>2020.11.27 환경부령 제893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도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도물에 대한 인식과 응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5. 26.)</p> <p>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p>	<p>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p>「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본조신설 2012. 5. 14.]</p> <p>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p>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p> <p>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p> <p>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p> <p>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p> <p>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p> <p>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p>	<p>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p> <p>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飲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p> <p>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 500미터 미만인 것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p>[전문개정 2014. 6. 30.]</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콤포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p> <p>15. 삭제 (2010. 5. 25.)</p> <p>16. 삭제 (2010. 6. 8.)</p> <p>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p> <p>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p> <p>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p> <p>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p> <p>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는 공사를 말한다.</p> <p>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p> <p>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p> <p>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p>29.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p> <p>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p> <p>31.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p> <p>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p> <p>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p>		<p>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p> <p>[제목개정 2012. 1. 27.]</p> <p>[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p> <p>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p> <p>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p> <p>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p> <p>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p> <p>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p> <p>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p> <p>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p> <p>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p> <p>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과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p> <p>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p> <p>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p> <p>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p> <p>15. 삭제 (2010. 5. 25.)</p> <p>16. 삭제 (2010. 6. 8.)</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p> <p>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p> <p>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p> <p>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p> <p>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p> <p>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p> <p>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p> <p>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p>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p>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p> <p>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p> <p>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p> <p>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p> <p>[시행일 : 2021. 4. 1.] 제3조</p> <p>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2018. 6. 8.)</p> <p>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p> <p>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p>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p>	<p>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p> <p>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증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삭제 <2011. 6. 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p>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증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0. 6. 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p>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p> <p>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p>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2012. 5.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p> <p>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p> <p>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⑧ 삭제 <2018. 6. 8.></p> <p>⑨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p>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계획 11. 삭제 <2010. 6. 8.> 	<p>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p> <p>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p>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p>	<p>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수도사업 	<p>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제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p> <p>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p> <p>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p> <p>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p>	<p>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p>	<p>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④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⑥ 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11. 26.]</p> <p>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4. 3., 2010. 11. 26.,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행(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p> <p>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p>	<p>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p> <p>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p> <p>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3. 5. 31.)</p> <p>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4. 11. 28., 2017. 4. 11., 2020. 11. 2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p> <p>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p> <p>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p>	<p>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p> <p>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p> <p>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p> <p>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p> <p>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p> <p>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p> <p>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騒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p> <p>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p> <p>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p> <p>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호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p> <p>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p> <p>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p> <p>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p> <p>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p> <p>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p> <p>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p>	<p>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 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 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p> <p>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p>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p> <p>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p> <p>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p> <p>[본조신설 2010. 11. 26.]</p>	<p>제2조(취수시설의 설치·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p> <p>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p>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허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p>	<p>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p> <p>[중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p> <p>제2조의2(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p> <p>1.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p> <p>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p> <p>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30.> [본조신설 2010. 5. 25.]</p>	<p>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문개정 2014. 11. 28.]</p>	<p>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17., 2019. 6. 25.>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수·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p>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p>		<p>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이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p>[전문개정 2014. 12. 1.] [제목개정 2020. 11. 27.]</p> <p>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②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p>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장·군수·구청장</p> <p>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p> <p>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p>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p> <p>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p> <p>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1조 삭제 <2012. 1. 26.></p> <p>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일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p> <p>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p> <p>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p>	<p>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1. 26.></p> <p>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11. 26.]</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p> <p>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9. 11. 26.></p> <p>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p> <p>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19. 11. 26.></p> <p>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p>	<p>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0. 11. 26.]</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p>[전문개정 2010. 5. 25.]</p> <p>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p>[본조신설 2010. 5. 25.]</p>		<p>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p> <p>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p> <p>2. 상호</p> <p>3. 대표자</p> <p>4. 기술인력</p>	<p>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실험실 평면도 1부</p> <p>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p> <p>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중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5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중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p>	<p>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4.]</p> <p>[중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p> <p>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24.></p> <p>[본조신설 2016. 7. 12.]</p> <p>[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p>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p>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p>[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상표·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p>	<p>으로 본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p>②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6. 7. 12.] [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p> <p>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의6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p>	<p>2. 제품등의 제조·수입·공급·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0. 11. 24.)]</p> <p>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③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8. 6. 12.] [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0. 11. 24.)]</p> <p>제25조 삭제 (2020. 11. 2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p> <p>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p> <p>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p> <p>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p>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 11. 24.></p> <p>[본조신설 2014. 6. 30.]</p>	<p>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제2의5와 같다. <개정 2020. 11. 27.></p> <p>[본조신설 2019. 6. 25.]</p> <p>[제3조의3에서 이동 <2020. 11. 27.>]</p> <p>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p>		<p>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p> <p>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호 나. 대표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 이 없는 경우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7. 28.]</p>	<p>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1. 26.]</p>	<p>다. 사업장 소재지</p> <p>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p> <p>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p> <p>〈개정 2019. 6. 25., 2020. 11. 27.〉</p> <p>[본조신설 2014. 7. 1.]</p> <p>제7조 삭제 〈2011. 6. 9.〉</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일반수도사업</p> <p>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2018. 6. 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27조(인가신청) ①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6., 2012. 1. 26., 2013. 3. 23., 2018. 6. 8.></p> <p>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p>③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p>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7. 1.></p> <p>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인가신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p> <p>④ 삭제 <2018. 6. 8.></p> <p>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p> <p>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삭제 <2010. 5. 25.></p>	<p>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p> <p>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p> <p>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29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추는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추는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추는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는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p> <p>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p>	<p>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p> <p>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p> <p>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쉘 열려가 없어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삭제 (2010. 11. 26.)</p> <p>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8. 6. 8.>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p>	<p>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p> <p>제10조 삭제 (2010. 11. 29.)</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p> <p>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p> <p>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p>	<p>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p> <p>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p> <p>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p> <p>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p>	<p>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p>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p> <p>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1. 급수설비의 검사 예정일</p> <p>2. 급수설비의 검사 내용</p> <p>3. 준비서류 등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p> <p>[본조신설 2014. 7. 1.]</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p> <p>②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8. 16.></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p> <p>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p> <p>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p> <p>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p> <p>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p> <p>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p> <p>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③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써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p>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p> <p>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p>	<p>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6. 30.></p>	<p>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돛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p> <p>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p>[시행일 : 2021. 4. 1.] 제21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제목개정 2020. 3. 31.]</p> <p>[시행일 : 2021. 4. 1.] 제21조의2</p> <p>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4조의2(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p>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1. 2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광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시행일 : 2021. 4. 1.] 제21조의3</p> <p>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1. 4. 1.] 제21조의4</p> <p>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시행일 : 2021. 4. 1.] 제21조의5</p> <p>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p> <p>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p>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11. 14.></p>	<p>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점검·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p>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p> <p>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④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p> <p>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 5. 25.></p> <p>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p>	<p>2. 복합위탁</p> <p>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 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p> <p>④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1. 26.,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p> <p>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p> <p>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2020. 11. 24.></p> <p>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p> <p>⑤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p>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권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삭제 <2010. 11. 26.></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 삭제 <2010. 11. 26.></p> <p>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p>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0. 11. 26.]</p> <p>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1. 11. 14.]</p> <p>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9. 11. 2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파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1. 3.></p> <p>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p> <p>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 1.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p>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1. 3.></p> <p>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p> <p>⑥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 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2012. 5. 17., 2018. 6. 27.></p> <p>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p> <p>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29.></p> <p>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 11. 29., 2012. 5. 17., 2018. 6.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 3.></p> <p>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p>	<p>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p> <p>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6. 27., 2010. 11. 29.></p> <p>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7.></p> <p>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 6. 27.></p> <p>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6. 1. 27.]</p> <p>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제4호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p>제44조 삭제 (2010. 11. 26.) 제45조 삭제 (2010. 11. 26.)</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p>		<p>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5조의2</p> <p>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5조의3</p> <p>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물질</p> <p>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p> <p>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p> <p>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p> <p>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30.></p> <p>④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30.></p> <p>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p> <p>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p> <p>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6. 30.></p> <p>[제목개정 2014. 6. 30.]</p>	<p>제17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수도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도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p> <p>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사고의 대응·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도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p>[본조신설 2020. 11. 24.]</p> <p>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후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p> <p>제17조의3(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p> <p>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1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p> <p>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p> <p>[제목개정 2011. 11. 14.]</p> <p>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정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8.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11.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5. 14.]</p> <p>제48조 삭제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산기의 이용이나 전단지 등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p>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17.></p> <p>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 2019. 6.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p>불활성화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פור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이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1., 2019. 6. 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p> <p>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p> <p>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p>		<p>가장 가까운 분기시설</p> <p>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p> <p>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p> <p>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 6. 25.></p> <p>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p> <p>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p> <p>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p> <p>[본조신설 2012. 5. 17.]</p> <p>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11. 14.]</p> <p>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p> <p>⑤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p>	<p>수도법 시행령</p> <p>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p>수도법 시행규칙</p> <p>기·항목·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p> <p>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p>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면접·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p>[본조신설 2020. 9. 29.] [중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p> <p>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p> <p>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0. 11. 26.]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p>	<p>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p> <p>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p> <p>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도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도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도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도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p>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원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p>	<p>할 것 [본조신설 2012. 5. 17.]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p>	<p>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1.]</p> <p>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p>	<p>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p> <p>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p> <p>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p> <p>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p> <p>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17.]</p> <p>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7.]</p> <p>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p> <p>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p> <p>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p> <p>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p> <p>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p>	<p>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p> <p>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p> <p>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p> <p>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p>	<p>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들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p> <p>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p> <p>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p> <p>②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p> <p>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p> <p>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④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계사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9. 그 밖에 안전한 수도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p> <p>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p> <p>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 시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전문개정 2016. 7. 12.]</p>	<p>⑤소유자들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p> <p>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p> <p>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11. 27.></p> <p>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2. 시설 및 장비명세서</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p> <p>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p> <p>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p>		<p>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7.,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청소감독원 <p>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본조신설 2012. 5. 17.]</p> <p>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p>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26., 2017. 4. 11.,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p>[본조신설 2012. 5. 1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일반수도사업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p>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4. 1.) 제36조</p>	<p>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p> <p>④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⑤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교육대상 및 교육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p>⑥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p> <p>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p>	<p>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도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p>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과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2012. 5. 17.,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철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p>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p> <p>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p>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p> <p>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p> <p>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의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p>	<p>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p>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p> <p>[본조신설 2010. 11. 26.]</p> <p>제53조의3(수도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도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p>[본조신설 2014. 6. 30.]</p>	<p>계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p> <p>[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 7. 1.>]</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p> <p>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p> <p>④ 삭제 (2011. 7. 28.)</p> <p>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p>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p> <p>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2013. 3. 23., 2018. 6. 8.)</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입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p>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p> <p>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p>	<p>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3. 삭제 <2010. 11. 26.>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7. 28., 2011. 11. 14., 2014. 1. 14., 2014. 6.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3. 삭제 <2010. 4. 15.></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p> <p>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p> <p>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p> <p>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p> <p>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p> <p>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p> <p>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 <p>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p> <p>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p> <p>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p> <p>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p> <p>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물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 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업용수도사업</p> <p>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1. 8. 4.></p> <p>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p> <p>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전문개정 2011. 7. 28.]</p>		<p>[본조신설 2012. 5. 1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4. 7. 1.>]</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전용수도</p> <p>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p>	<p>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p> <p>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p> <p>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p> <p>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p>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p> <p>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13. 12. 30.></p> <p>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p> <p>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p>	<p>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본조신설 2008. 6. 20.]</p> <p>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p> <p>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p> <p>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p> <p>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회 회원이 된다.</p> <p>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p> <p>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59조(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p>	<p>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 <2017. 4. 11.>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p>제61조(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p> <p>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p> <p>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p> <p>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12.]</p> <p>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p>	<p>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p> <p>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2에 따른다.</p> <p>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1.]</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나 이전하여야 한다.</p> <p>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p> <p>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감독</p> <p>제62조(지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p>	<p>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5. 1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p>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p> <p>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p> <p>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p> <p>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개정 2011. 7.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도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p>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도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합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p> <p>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p> <p>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p> <p>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1. 4. 1.] 제63조</p> <p>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있다.</p> <p>②인기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인기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도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도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p> <p>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기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p> <p>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기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의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기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5. 25.)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 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p> <p>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p> <p>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p> <p>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p>	<p>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p>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용자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p>	<p>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p> <p>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p> <p>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p>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p> <p>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도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p> <p>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p>	<p>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p> <p>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p> <p>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p> <p>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p> <p>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p>	<p>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다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1. 24.]</p>	<p>다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p>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p>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p>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p>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p> <p>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술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8. 6.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5. 17., 2019. 6. 25.,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 [중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19. 11. 26.)]</p> <p>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p>		<p>[본조신설 2014. 7. 1.]</p> <p>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p>[본조신설 2020. 11. 2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12. 30.] [제74조의2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p> <p>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p>	<p>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p> <p>[전문개정 2018. 6. 12.]</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에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p> <p>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p> <p>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p>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26., 2012. 1. 26., 2012. 5. 14., 2016. 7. 12., 2018. 6. 12.,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3의2.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의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4의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군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외한다.</p> <p>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p> <p>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 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p> <p>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p> <p>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p> <p>6.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p> <p>7.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변경인가의 고시</p> <p>9. 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10.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p> <p>11. 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p> <p>③ 삭제 <2020. 11. 24.> ④ 삭제 <2020. 11.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실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운영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운영 7.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8.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 및 연구 9.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10.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p>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6. 20., 2010. 11. 26., 2020. 8. 11.> [제목개정 2020. 8. 11.]</p> <p>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p>[전문개정 2020. 11. 24.]</p> <p>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0. 11. 24.> 3의2. 제25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p>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2제1항·제4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31조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장비와 기술인력: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30.]</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p>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p>[시행일 : 2021. 4. 1.] 제79조</p>	<p>등록기준: 2014년 7월 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삭제 (2017. 12. 12.) 5. 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25.,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p>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p> <p>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p> <p>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p> <p>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p> <p>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p> <p>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p> <p>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p> <p>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p> <p>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p> <p>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p> <p>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p> <p>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p> <p>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p> <p>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p> <p>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p> <p>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p> <p>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p> <p>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p> <p>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p> <p>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p> <p>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p> <p>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p> <p>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p> <p>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p> <p>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p> <p>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시행일 : 2021. 4. 1.] 제83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삭제 <2011. 7. 28.>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p>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삭제 <2011. 7. 28.>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1. 4. 1.] 제84조</p> <p>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2. 삭제 <2011. 7. 28.>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삭제 <2010. 5. 25.> 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p> <p>10. 삭제 (2010. 5. 25.)</p> <p>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p> <p>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p> <p>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p> <p>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p> <p>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p> <p>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p> <p>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p>	<p>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12. 5. 1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p> <p>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p> <p>1. 삭제 (2016. 1. 27.)</p> <p>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p> <p>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p> <p>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p> <p>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p> <p>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p> <p>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p> <p>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p> <p>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삭제 (2010. 6. 8.) 3의2. 삭제 (2011. 7. 28.) 3의3. 삭제 (2011. 7. 28.) 3의4. 삭제 (2011. 7. 28.)</p> <p>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p> <p>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p> <p>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p> <p>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p> <p>나. 저수조청소업자</p> <p>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p> <p>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p> <p>⑥ 삭제 <2010. 5. 25.></p> <p>⑦ 삭제 <2010. 5. 25.></p> <p>[법률 제8370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p> <p>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2. 12.)</p> <p>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p> <p>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p> <p>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p> <p>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p> <p>1. 삭제 <2016. 1. 27.></p> <p>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p> <p>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치자</p> <p>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p> <p>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p> <p>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p> <p>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p> <p>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p> <p>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3. 삭제 (2010. 6. 8.) 3의2. 삭제 (2011. 7. 28.) 3의3. 삭제 (2011. 7. 28.) 3의4. 삭제 (2011. 7. 28.)</p> <p>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p> <p>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p> <p>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p> <p>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p> <p>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p> <p>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p> <p>⑥ 삭제 (2010. 5. 25.) ⑦ 삭제 (2010. 5. 25.)</p> <p>[법률 제8370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 4. 1.] 제87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 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p> <p>제3조(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43호, 2007. 9.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p> <p>제3조(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호, 2007. 9.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제2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p> <p>제6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9조(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인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p> <p>제11조(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p>	<p>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521호, 2008. 1. 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p>	<p>부칙 〈제262호, 2007. 12. 2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제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 : 1mg/ℓ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한다. ②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제12조(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13조(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p> <p>제15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1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p> <p>제1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p>	<p>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p> <p>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⑯ 까지 생략</p> <p>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1호, 2008. 6. 27.></p> <p>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86호, 2010. 11.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16호, 2011.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p> <p>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p> <p>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p> <p>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p> <p>⑥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p>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p>⑭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846호, 2008. 6. 20.></p> <p>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148호, 2008. 12. 3.> (집시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p> <p>부칙 <제417호, 2011. 6.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삭제한다.</p> <p>② 생략</p> <p>부칙 <제445호, 2012. 1. 27.></p> <p>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56호, 2012. 5.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p> <p>㉗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p> <p>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㉘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p> <p>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p>	<p>제3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을 각각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p> <p>⑩ 부터 ⑭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부터 <175> 까지 생략</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p>	<p>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p> <p>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p> <p>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p> <p>부칙 <제462호, 2012. 6. 2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p> <p>부칙 <제543호, 2014. 1.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p> <p>㉑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㉒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p> <p>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p> <p>㉓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p>	<p>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㉑ 부터 ㉒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29호, 2009. 11.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p> <p>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㉒ 부터 ㉓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03호, 2010. 1.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1호, 2014. 7.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급수설비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급수설비의 검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79호, 2014. 12. 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p> <p>㉔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p> <p>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p> <p>㉖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농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㉗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㉘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㉙무역거재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p> <p>㉚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㉕ 부터 ㉘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506호, 2010.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제30조, 제48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용부담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원수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적용한다.</p> <p>제4조(운영 중인 취수시설 등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로</p>	<p>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p> <p>㉙부터 ㉚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96호, 2015. 3. 25.></p> <p>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42호, 2016. 3. 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㉑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p> <p>㉒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p> <p>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p> <p>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p> <p>㉖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㉗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p>	<p>서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㉒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광역상수원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㉓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p> <p>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개발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1.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p> <p>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⑩부터 ㉑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7호, 2018. 1.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p> <p>㉞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p> <p>㉟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p> <p>㊱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p> <p>㊲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㊳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p> <p>㊴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㊵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p>	<p>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이라 한다) 외의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p> <p>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p> <p>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p> <p>2.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p> <p>3.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p> <p>[본조신설 2014.4.15]</p> <p>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p> <p>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14.4.15]</p> <p>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p>	<p>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p> <p>부칙 (제768호, 2018. 6.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소감독원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13호, 2019. 6.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70호, 2020. 5.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절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p> <p>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p> <p>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 제4항”으로 한다.</p> <p>㉕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67호, 2011.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p> <p>②부터 ④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⑨부터 ⑯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3호, 2020. 11. 27.)</p> <p>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㉞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㉟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㊱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㊲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p> <p>㊳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㊴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p> <p>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p> <p>⑤부터 ⑦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23416호, 2011. 12. 2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557호, 2012. 1. 26.></p> <p>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784호, 2012. 5. 14.></p> <p>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p> <p>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p> <p>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p> <p>㉔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㉖주한미군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㉗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p>	<p>“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⑩부터 ⑲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020호, 2012.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⑦부터 ⑫까지 생략</p> <p>부칙 (제24229호, 2012. 12. 12.)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소”를 “갯생 보호시설”로 한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p> <p>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p> <p>㉕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3조제19호”로 한다.</p> <p>㉖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p> <p>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5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p> <p>(52) 친환경성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p> <p>(5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5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55)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p>	<p>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㉒부터 ㉓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4560호, 2013. 5. 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p> <p>(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p> <p>(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p> <p>(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⑤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309호, 2014. 4.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p> <p>부칙 (제25430호, 2014. 6. 30.)</p> <p>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p> <p>〈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p> <p>〈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p> <p>〈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p> <p>〈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p> <p>〈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5785호, 2014.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335호, 2016. 7. 1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805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p>	<p>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7985호, 2017. 4.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243호, 2017. 8. 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471호, 2017. 12. 12.></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⑯ 수도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⑰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p> <p><508> 수도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p> <p>②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㉒부터 ㉔까지 생략</p> <p>부칙 <제289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⑦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65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52호, 2018. 12. 11.></p> <p>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874호, 2019. 6. 18.></p> <p>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 <p>㉗ 부터 ㉙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㉛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30929호, 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075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1185호, 2020. 11.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9조제2항에 따른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17호, 2010. 5. 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p> <p>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도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⑮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59호, 2010.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수도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㉔부터 ㉘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976호, 2011. 7.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085호, 2011. 11. 14.></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수도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141호, 2013.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p> <p>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부칙 <제12518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66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29호, 2015. 12. 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8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은 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 호”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 호 및 제8호”로 한다. ⑥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5193호, 2017. 12.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p> <p>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6082호, 2018. 12.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607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p> <p>부칙 <제17178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5157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5157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5159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5160
[별표 1의5] 물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5160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5161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5161
[별표 3의2]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5162
[별표 3의3]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5163
[별표 4] 삭제 <2020. 11. 24.>	516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5164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별표 1의2] <개정 2020. 11. 24.>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mg/L 이하	저.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mg/L 이하
나. 수은	0.0001mg/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mg/L 이하
다. 셀레늄	0.001mg/L 이하	터. 페놀류	0.0005mg/L 이하
라. 납	0.001mg/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마. 비소	0.001mg/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바. 6가 크로뮴 [chromium(6 ⁺)]	0.005mg/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mg/L 이하
사. 시안	0.001mg/L 이하	노.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mg/L 이하
아. 니켈	0.007mg/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mg/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mg/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차. 불소	0.15mg/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	0.0002mg/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타. 1,2-디클로로에탄	0.0004mg/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mg/L 이하
파. 1,1-디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0.01mg/L 이하
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mg/L 이하	조. 아민류	0.01mg/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초. 2,4-톨루엔디아민	0.002mg/L 이하
너. 벤젠	0.001mg/L 이하	코. 2,6-톨루엔디아민	0.001mg/L 이하
더. 아연	0.3mg/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mg/L 이하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러. 철	0.03mg/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mg/L 이하
머. 구리	0.1mg/L 이하	호. 스티렌	0.002mg/L 이하
버. 나트륨	20mg/L 이하	구. 1,2-부타디엔	0.001mg/L 이하
서. 망간	0.03mg/L 이하	누. 1,3-부타디엔	0.001mg/L 이하
여. 염소이온	25mg/L 이하	두. N,N-디메틸아닐린	0.01mg/L 이하
저. 증발잔류물	50mg/L 이하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비고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키징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신설 2020. 11. 24.>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p>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보조연구원급 2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p>
2. 시설 및 장비	<p>가. 시설: 실험실</p> <p>나. 장비</p> <p>1) 일반항목[무게, 온도, 탁도 및 색도(色度)]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p> <p>2) 전처리(前處理)에 필요한 장비</p> <p>3)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양유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p> <p>4) 금속류 등 유해영양유기물질의 측정·분석에 필요한 장비</p>

※ 비고

1. “이화학분야”란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4] <신설 2020. 11. 2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 업무를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검사기록부에 시험·검사의 항목, 일자, 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 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자기테이프·자기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5.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6. 검사기관은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별표 1의5] <개정 2020. 11. 24.>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장비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추 것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4) 누수탐지기(전자식):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다. 기술능력	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추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시설	사무실
나. 기술능력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비고: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등급	응시자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급	응시자격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별표 3의2] <신설 2018. 12. 11.>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text{보상금} = \text{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times (\text{입체이용저해율} + \text{추가보정률}) \times \text{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3] <신설 2020. 11. 2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mm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펄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μ m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상수도 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계측정기	초음파식	1대

08. 수도법 시행령 별표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누수탐지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mm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mm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4] 삭제 <2020. 11. 24.>

[별표 5]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1호	30	5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7조제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1호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2호	200	250	300
마.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2호	300	400	500
사.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7조제2항 제3호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3호	300	300	300
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2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 제4호	300	400	5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2	300	3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3호의3	300	300	300
파.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	100	200	300
하.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2	300	300	300
거.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4호의3	300	300	300
너.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5호	200	250	300
러.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머.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6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서.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8호	50	70	100
어.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6호	200	250	300
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7호	300	300	300

08. 수도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4항 제9호	100	100	100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8호	100	200	300
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 제9호	100	200	300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5169
[별표 2]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5170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5170
[별표 2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5171
[별표 2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5172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5174
[별표 2의6]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5175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5175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5178
[별표 4] 삭제 <2010.11.29.>	5179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5179
[별표 5의2]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5179
[별표 5의3]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5180
[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5181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5181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5182
[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5183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5184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5185

[별표 1] <개정 2020. 5. 27.>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수도꼭지
 -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나. 변기
 -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08.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20. 11. 27.>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제2조의2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인증취소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별표 2의3] <신설 2020. 11. 27.>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계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항온 건조기(Dry Oven) 1대
6. 로터리 증발기(Rotary evaporator) 1대
7. 흡후드(F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상용 온도계(Thermometer) 1대
12.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H meter)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Table top pH meter)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Chlorin colorimeter)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08. 수도권 시행규칙 별표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OES)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비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의4] <신설 2020. 11. 27.>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제3호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			
3) 시료의 시험·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의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고 시험·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6)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2의5] <개정 2020. 11. 27.>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다.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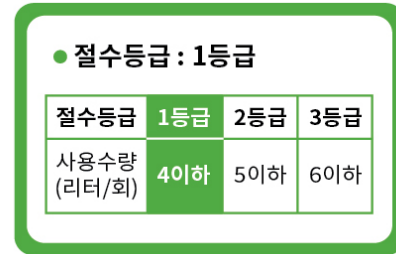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인증 당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다. 표시방법

- 1) 배색 비율은 녹색(C70+M5+Y100+K5)으로 한다.
-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의6] <개정 2020. 11. 27.>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호	등록취소
나. 물질안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2호	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3 제3호	3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 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의3 제4호	등록취소

08.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3] <개정 2018. 1. 17.>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流水)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보(坝)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沙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가목(1) 및 2)의 사항
-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에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08.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제수문(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mm,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cm로 한다.
 -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용량이 5,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압으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지등”이라 한다)와 적절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은 150kPa(1.53kgf/cm²)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cm²)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 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m³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도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도물을 배수할 수 있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도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08.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m³/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시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4] 삭제 <2010.11.29>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5의2] <개정 2019. 6. 25.>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 가. 탁도: 매일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나. 불활성화비

-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 2) 검사 주기
 -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신설 2012.5.17>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병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병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I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항목·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pm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홉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08.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6의2] <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 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별표 7] <개정 2019. 12. 20.>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mg/L 이하 - 납: 0.01mg/L 이하 - 구리: 1mg/L 이하 - 아연: 3mg/L 이하

2. 전문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분류	항목	검사방법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고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p>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어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참고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			

[별표 8] <개정 2020. 11. 27.>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자격요건	인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제7편
물통합

09 상수원 관리규칙

목 차

상수원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조(목적) 5191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5197
제2조(정의) 5191	제18조(표지의 설치) 5197
제3조(수원의 구분) 5191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5197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5197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5191	제21조(지도·점검) 5198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5192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5198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5192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5198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5192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5198
제8조(지적고시 등) 5193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5198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5193	제5장 보칙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5198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5193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5199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5193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5199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5193	제29조(보고) 5199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5194	제30조(협조) 5199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5195	제31조(규제의 재검토) 5199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5196	부칙 5199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5196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5196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5197	

상수원 관리규칙

제정	2007. 9.11	환경부령 제245호
개정	2007.11.12	환경부령 제255호
	2008. 2. 5	환경부령 제277호
	2011. 2.16	환경부령 제398호
	2013. 7.26	환경부령 제514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2017. 7.31	환경부령 제708호
	2018. 8.20	환경부령 제77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아려운 병영양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켜 면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하천수 :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 :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 :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표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나. 심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 : 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1.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상수원 관리규칙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용,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다면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리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

상수원 관리규칙

- 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3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적고시 등)**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6.>
-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급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1. 2. 16.]
-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 가. 원거주민
 -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상수원 관리규칙

사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7. 1.>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垵)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 : 파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상수원 관리규칙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아.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에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나. 유치원, 경로당
 - 다. 마을회관
 -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관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통취급 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2) 마을회관, 경로당
-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행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마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어린이 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상수원 관리규칙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20.)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시·군·구는 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11. 2. 16.]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
 -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상수원 관리규칙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마을하수도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시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명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안내판

가. 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 :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 : 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21조(지도·점검)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 용도지역별·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취수 현황

④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 2. 16.)

1. 하천수 및 호소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상수원 관리규칙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1. 자연마를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 제29조(보고)** ①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상 사본
 3. 공고문 사본
- ②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적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245호, 2007. 9.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 제3조(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상수원 관리규칙

부칙 <제255호, 2007. 11. 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2008.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201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6. 7.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708호, 2017. 7.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18.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상수원 관리규칙 별표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5203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5203
[별표 3] 삭제 <2011.2.16.>	5203
[별표 4] 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5204
[별표 5]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5204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206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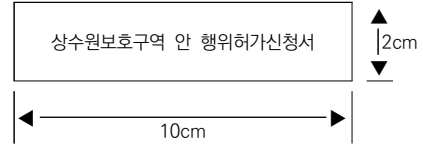
평가인자 (항목)	평점		
	-3	0	+3
수질등급 취수량	상수원수 Ⅰ급 1일 3천 톤 미만	상수원수 Ⅱ급 1일 3천 톤 이상 1만 톤 미만	상수원수 Ⅲ급 1일 1만 톤 이상
취수비율 (호소수의 경우)	01 미만 (0.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5 이상 (0.02 이상)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별표 3] 삭제 <2011.2.16>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1. 오락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2륜차 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방송시설 또는 장비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인원의 확보기준

$$\text{관리인원수} = 1.85 \times \sqrt{A} \times \alpha \times \beta$$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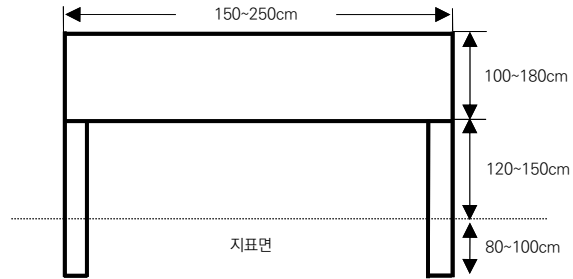
[별표 5] <개정 2020. 12. 1.>

안내판

(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신고 및 문의처)

○○도·시·군·구 ○○○과

전화번호: ○○○-○○○○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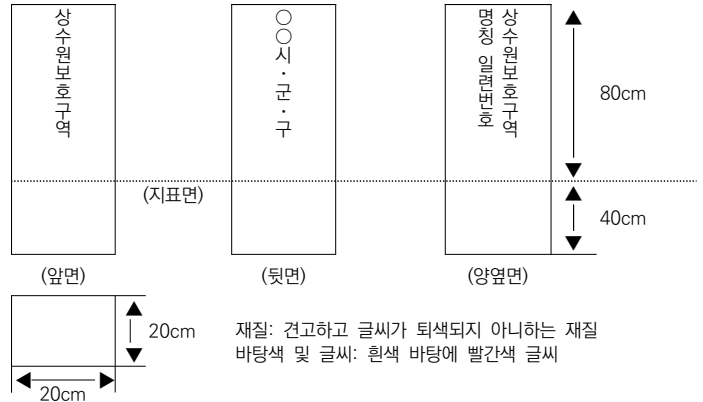
2) 뒷면

<p>알림</p> <p>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p> <p>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p> <p>(금지행위)</p> <p>(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p> <p>(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p> <p>(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p> <p>(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p> <p>(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p> <p>(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p> <p>(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p> <p>(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p> <p>(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p> <p>(3) 토지의 굴착(땅파기)·성토(흙쌓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p> <p>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p>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별표 6] <개정 2013.7.2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관역 및 지방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지하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분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 지류)함유량	
	해수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마을상수도 · 전동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	
	호소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	
	지하수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 지류)함유량	
해수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 지류)함유량		
	2년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비고

1. 채수지점

-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나. 그 밖의 측정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7편
물통합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5211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5211
제3조(학교·연구기관 등의 범위)	5211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5211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5211
제6조(공장심사)	5212
제7조(제품시험)	5212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5212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5212
제10조(인증서의 반납)	5212
제11조 삭제	5212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5212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5212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5212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5213
제12조(인증서 재발급)	5213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5213
제14조 삭제	5213
제15조(수수료)	5213

제3장 삭제 <2020. 11. 27.>

제16조 삭제	5213
---------------	------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산실 2016. 7. 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5213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5213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5213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5214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521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5214
부칙	521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1. 5.25	환경부령 제413호
개정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속번호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 1	환경부령 제562호
	2016. 7.27	환경부령 제670호
	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 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8. 6.12	환경부령 제765호
	2019. 8.28	환경부령 제82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 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8.12	환경부령 제879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

제3조(학교·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9. 12. 20., 2020. 8. 12.>

1. 「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치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1.>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인증심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20. 8. 12.)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계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품시험)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 8. 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전문개정 2018. 6. 12.]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 7. 1., 2020. 8. 12.)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1. 인증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조·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4.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5.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6.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1.)

④ 삭제 (2020. 8. 12.)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11조

[전문 제11조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8. 6. 12.)]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본조신설 2014. 7. 1.]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8. 6. 12., 2020. 8. 12.>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 6. 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12.>

[제록개정 2018. 6. 12.]

[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2.>]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4조 삭제 <2020. 8. 12.>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제3장 삭제 <2020. 11. 27.>

제16조 삭제 <2020. 11. 27.>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신설 2016. 7. 27.>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재제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2014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4. 7. 1.]

부칙 <제413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 인증일부터 2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70호, 2016. 7.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6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19년 7월 13일까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된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2호, 201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 2020.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5219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5219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5220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5221
[별표 5] 삭제 <2020. 11. 27.>	5222

[별표 1] <개정 2014.7.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	인증대상
1. 수도관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가. 밸브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라. 유량계류 마.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상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 그 밖에 음용(飲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14.7.1>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1. 삭제 <2014.7.1>
2. 자재관리
 - 가. 자재표준 등 자재품질 보증에 관한 사내표준의 마련
 - 나. 적정 자재의 사용 여부 및 사내표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실시,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운반 및 보관에 관한 관리
3. 공정관리
 - 가. 회사실정에 맞는 공정별 관리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관리사항을 포함한다)의 마련 및 이행
 - 나. 공정별 작업표준의 제정·준수 및 작업 현장에서의 비치·게시, 작업자의 작업표준 이해 및 실시, 부적합품의 관리상태
 - 다.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 이행, 공정관리자의 공정관리 규정의 마련 및 작업표준 숙지 및 실시
4. 제품의 품질 관리
 - 가. 제품 품질 및 검사방법의 적합성,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의 표시사항 등의 합리적 기준 마련
 - 나. 제품검사의 실시 및 검사기록 보존, 주요 품질항목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통계적 분석의 실시, 통계분석 결과의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
 - 다. 품질시험·검사자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 숙지 상태, 사내표준에 맞는 시험·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5. 제조설비의 관리
 - 가. 사내표준에 따른 제조설비의 보유 및 점검 기록부 비치, 안전수칙(운전 시유의 사항, 인수 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의 일상관리 상태
 - 나. 설비관리에 대한 규정 및 기준(설비관리자,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이상 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 표준과 방법 등)의 설정, 이력·제원카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드, 관리대장의 비치 및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기록
- 다. 제조설비의 점검기준(윤활관리) 설정 여부, 제조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제조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노력

6. 검사설비의 관리

- 가.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설비의 자체 보유,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마련
- 나. 검사설비 설치장소의 적정성, 검사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의 설정
- 다. 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정확도 유지를 위한 소급성 체계 규정

[별표 3] <개정 2020. 11. 27.>

인증표시(제8조 관련)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및 모양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특성으로 인하여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이란 글자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 2)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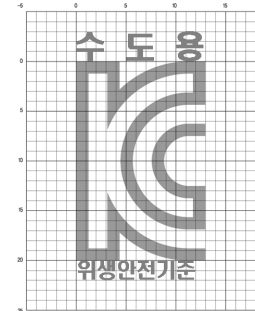


그림 2. 인증표지 비율

2. 표시사항

- 가. 제품에는 제1호에 따른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목의 항목에 공급자·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등의 표면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0. 11. 27.>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 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나. 심사수당

-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품시험 수수료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試片) 제작상태
	표층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색도	10,000
수은	23,000	탁도	10,000
셀레늄	30,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납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니켈	30,000	폼알데하이드	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7,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30,000	스티렌	45,000
플루오린(불소)	2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소듐(나트륨)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망간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15,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증발잔류물	31,000	벤젠	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93,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15,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맛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10,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인증서 재발급 및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가.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나.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5] 삭제 <2020. 11. 27.>

제7편
물통합

11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목 차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5230	제1조(목적) 5230
제2조(법인격) 5230	
제3조(사무소) 5230	
제4조(자본금 및 출자) 5230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5231
제5조(등기) 5231	제3조(설립등기) 5231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231
	제5조(이전등기) 5232
	제6조(변경등기) 5232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232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5232	
제7조 삭제 5232	
제8조(대리인의 선임) 5232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5232
	제8조(등기 신청인) 5233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5233
	제10조(관할 등기소) 5233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5233
제9조(사업) 5233	
	제12조(교육훈련계획) 5234
	제13조(기술지원) 5235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5235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236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5236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5237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5237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238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5238	제18조(준공인가) 5238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2조(손익금의 처리) 5239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5239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5240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5240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5240
	제22조(사채의 응모) 5240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5241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5241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5241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5241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5242
	제28조(사채 원부) 5242
	제29조(채권의 이전) 5242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5242
제14조(차입금) 5243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5243
제15조(사용계약) 5243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5243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5243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5243
제16조의2(비용부담) 524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5244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5244	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5244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244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245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5245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5246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5246	
제21조(인가의 특례) 5247	
제21조의2 삭제 5247	
제22조(저당권의 특례) 5247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5247	

한국수자원공사업	한국수자원공사업 시행령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5247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5248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5248
제26조(「하천법」의 준용)	5248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5248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5248
제28조 삭제	5249
제29조(강제징수)	5249
제30조 삭제	5249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5249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5249
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5250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5250
제35조 삭제	5250
제36조(교부금)	5250
제37조(국고보조)	5251
제38조(감독)	5251
제39조 삭제	5251
제40조(벌칙)	5251
제41조(과태료)	5251
부칙	5251
	제36조(징수 위탁)
	5249
	제37조(협의 등)
	5250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5250
	제39조(국고보조)
	5251
	부칙
	5251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정 1987.12. 4 법률 제3997호 개정 1990. 4. 7 법률 제4232호 1991.12.14 법률 제4429호 (수도법) 1993.12.27 법률 제4630호 1994. 3.24 법률 제4748호 (사법사업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산업임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6.12.30 법률 제5227호 1999. 2. 8 법률 제5893호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911호 (공유수연매립법) 1999. 2. 8 법률 제5914호 (공유수연관리법) 1999. 9. 7 법률 제6021호 (담간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1. 1.16 법률 제6366호 2001.12.31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1 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19 법률 제8256호 2007. 1.26 법률 제8263호 (산지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연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연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 3.28 법률 제9054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3.25 법률 제9544호 2009. 4. 1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채금융공사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연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2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2.12.18 법률 제11593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5.21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12.29 법률 제13691호</p>	<p>제정 1988. 6.17 대통령령 제12464호 개정 1989. 8.18 대통령령 제1278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1990. 9. 4 대통령령 제13097호 1992.12. 9 대통령령 제13771호 (수도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3.22 대통령령 제15314호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담간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001. 4.17 대통령령 제17196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7. 4.20 대통령령 제20020호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7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6.17 대통령령 제24617호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3호</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2017. 1.17 법률 제14549호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 2.21 법률 제15407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20. 3.31 법률 제1718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영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담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⑤ 삭제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다. <개정 2009. 4. 1., 2014. 5. 21.></p> <p>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 및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p> <p>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7조 삭제 (2009. 3. 25.)</p> <p>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p> <p>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③ 공사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p>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p> <p>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p>[전문개정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p> <p>4. 삭제 (2020. 3. 31.)</p> <p>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p> <p>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p> <p>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p> <p>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p> <p>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p> <p>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p> <p>다. 삭제 (2020. 3. 31.)</p> <p>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p> <p>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p> <p>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p> <p>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p> <p>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p> <p>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5. 26.></p> <p>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p>	<p>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⑥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p>	<p>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p>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p>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의 3에서 이동 <2010. 12. 13.>]</p> <p>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0. 12. 13.>]</p> <p>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대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p>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p>② 삭제 <2020. 3. 31.></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④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p>	<p>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p> <p>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p> <p>12. 삭제 (2020. 9. 29.)</p> <p>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p> <p>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은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2020. 12. 31.)</p> <p>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p> <p>2.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p> <p>② 삭제 (2020. 3. 31.)</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일 : 2022. 1. 1.] 제10조</p> <p>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p>	<p>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p> <p>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 12. 13.]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1. 사업의 명칭</p> <p>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p>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4. 이익의 배당</p> <p>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p> <p>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p>	<p>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6.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p>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17., 2018. 6. 8.> [전문개정 2010. 12. 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2조(사채의 응모)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p> <p>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p> <p>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p> <p>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p> <p>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4조(사채 인수기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p> <p>[제목개정 2013. 6. 17.]</p> <p>[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 6. 17.> [전문개정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목개정 2013. 6. 17.]</p> <p>[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p>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p>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29조(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여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p>	<p>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0조에서 이동 <2010. 12. 13.>]</p> <p>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p>	<p>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p> <p>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p>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 12. 13.)]</p> <p>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기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3. 23., 2014. 1. 14., 2015. 12. 29.,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p> <p>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p> <p>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p> <p>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p> <p>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p> <p>17. 삭제 <2020. 3. 31.></p> <p>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p> <p>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p> <p>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② 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p> <p>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1조의2 삭제 <2020. 3. 31.></p> <p>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28조 삭제 <2003. 12. 31.></p> <p>제29조(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0조 삭제 <2003. 12. 31.></p> <p>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5조 삭제 <1996. 12. 30.></p> <p>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7조(협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p>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13.>]</p> <p>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 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0. 12. 13.]</p> <p>[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 12. 13.>]</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p> <p>제3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09. 3. 25.]</p> <p>제39조 삭제 <2009. 3. 25.></p> <p>제40조(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08. 3. 28.]</p> <p>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997호, 1987. 12. 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시장·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시장·군수”으로 한다.</p>	<p>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0. 12. 13.] [제38조에서 이동 <2010. 12. 1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4호, 1988. 6.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②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수자원공사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p> <p>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p> <p>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33조(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p> <p>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을 하여야 한다.</p> <p>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제5조(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p> <p>제6조(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p>	<p>9. 한국수자원공사</p> <p>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p> <p>⑥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p> <p>⑦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p> <p>⑧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한국수자원공사</p> <p>⑨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한국수자원공사</p> <p>⑩국도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카. 한국수자원공사</p> <p>⑪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5. 한국수자원공사</p> <p>⑫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p> <p>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삭제한다.</p> <p>⑭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제9조의2·제19조 내지 제23조의2·제25조 내지 제30조·제31조·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1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p> <p>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관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가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p> <p>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가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산업기지가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가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232호, 1990. 4. 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29호, 1991. 12. 14.>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p> <p>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p> <p>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p> <p>⑮내지 ⑱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0호, 1993. 12. 27.></p> <p>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48호, 1994. 3. 24.> (사방사업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p> <p>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p>	<p>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p> <p>⑯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가발공사는 산업기지가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p> <p>제19조제2항중 “산업기지가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p> <p>⑰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2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p> <p>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감독</p> <p>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산업기지가발공사가 이를 부담한다.</p> <p>제4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기지가발공사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수공급등의 계약과 산업기지가발공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등은 각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요금등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81호, 1989. 8. 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②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p> <p>②내지 ③생략</p> <p>제4조 내지 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97호, 1990. 9.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⑤내지 ⑩생략</p> <p>부칙 <제5111호, 1995. 12.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p> <p>⑥내지 ⑭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5227호, 1996. 12. 30.></p> <p>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93호, 1999. 2. 8.>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②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p> <p>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p> <p>③내지 ⑯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5911호, 1999. 2. 8.></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p> <p>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장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p>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p> <p>②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p> <p>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②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 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14호, 1999. 2. 8.)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⑤내지 ④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21호, 1999. 9.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p> <p>제21조(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p> <p>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p> <p>제34조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 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71호, 1992. 12. 9.) (수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0>생략 <21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2>내지 <327>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외그소속기관직제)</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제45조”로 한다.</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66호, 2001. 1. 16.)</p> <p>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89호, 2001.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3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205)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314호, 1997. 3. 2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756호, 2000. 3. 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96호, 2001. 4. 17.)</p> <p>이 영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p> <p>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77〉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p> <p>〈70〉내지 〈74〉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58호, 2003.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금·사용료 및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p> <p>④ 내지 ⑧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02호, 2007. 4. 2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p> <p>⑲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 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 <87>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56호, 2007. 1. 1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 부터 <138>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215호, 2008. 12. 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②(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p> <p>⑭내지 ⑳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부터 <11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27호, 2010. 12. 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14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617호, 2013. 6. 17.)</p> <p>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㉓생략 ㉔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㉕내지 ㉗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p> <p>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p> <p>〈61〉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p> <p>⑤ 부터 ④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p>	<p>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3호, 2020. 9. 29.〉</p> <p>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54호, 2008. 3. 28.></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544호, 2009. 3. 2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618호, 2009. 4.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다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7>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593호, 2012. 12. 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을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p> <p><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122>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663호, 2014. 5. 21.> (한국산업은행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91호, 2015. 12. 29.></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49호, 2017. 1. 1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407호, 2018. 2. 2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p> <p>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p> <p>⑥부터 ⑩까지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80호, 2020. 3. 3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5273

[별표] <개정 2010.12.13>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공사비	요율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비 고>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한다.
6. 조사, 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12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목 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5281
제2조(가등록)	5281
제3조(예고등록)	528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528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5282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5282
제7조(등록필의 통지)	5282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5282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5282
제10조(등록부의 간인)	5283
제11조(신청서 편철부)	5283
제12조(등록부의 보존)	5283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5283
제14조(등록부의 멸실)	5284
제15조(등록부의 폐쇄)	5284
	제1조(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5282
	제2조(숫자 등의 기재)
	5283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5283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5283
	제5조(등록수수료)
	5284
	제6조(간인)
	5284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5284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2.31.)	
제16조(신청)	5285
제17조(등록신청인)	5285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5285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5285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5285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5286
제22조(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5286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5286
제24조(가등록)	5286
제25조(예고등록)	5286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5287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5287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5288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5288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5288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5288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5288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5288
제34조(신청서의 접수)	5288
제35조(등록의 순서)	5288
제36조(신청의 각하)	5288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5289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9조(등록신청서)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8조(번호의 기재)	5289
제39조(가등록의 기재)	5289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5289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5290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5290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5290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5290
제45조(경정등록)	5290
제46조(회복등록)	5290
제47조(벌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5291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5291
제49조(편철확인증)	5291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5291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5291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5292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9.4.>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5292
제54조(분할)	5292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5293
제56조(분할합병 등록)	5293
제57조(합병 등록)	5293
제58조(합병 등록)	5294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5294
제60조(저당권의 설정·이전 등록)	5294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5294
제62조(공동담보 등)	5295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5295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5295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5295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5295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5295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5295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5296
제70조(가등록의 말소)	5296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5296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5296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5296
제74조(말소의 방법)	5297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5297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5297
제77조(직권말소)	5297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	5297
부칙	5297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5297
	부칙
	5297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정 1979. 4.14 대통령령 제9426호 개정 1988. 6.17 대통령령 제1246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90. 9. 4 대통령령 제130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94. 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처리물위험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7. 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8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4호</p>	<p>제정 1979. 5. 7 건 설 부 령 제222호 개정 1990.11. 2 건 설 부 령 제470호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인처리물위험가석방제한국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청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1.15 국토해양부령 제212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9.></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조(가등락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락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録)의 순위는 가등락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録)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録)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등록공무원등</p> <p>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p> <p>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① 삭제 <2020. 9. 29.>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 9. 29.>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p>	<p>제1조(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순서를 적는다.</p> <p>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된 순서를 적는다.</p> <p>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장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p> <p>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첩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卸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p>[전문개정 2010. 1. 15.]</p> <p>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p> <p>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p> <p>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15.]</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등록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 (개정 2009. 12. 31.)</p> <p>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p> <p>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정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p>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 12. 31.] <p>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p>	<p>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같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7조제3항,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p>	<p>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전문개정 2010. 1. 15.]</p> <p>제9조(등록신청서)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공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장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p>②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 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연월일 8.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09. 12. 31.]</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분(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p>	<p>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힌 시설관리권 또는 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 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8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p> <p>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분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등록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5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6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p>	<p>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p>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7조(별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록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p> <p>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불일치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당사자가 등록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p>	<p>[전문개정 2010. 1. 15.]</p> <p>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첩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입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p> <p>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끼)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 9. 4.></p> <p>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4조(분할)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 또는 저장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장권에 관한 등록 중에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p> <p>⑤ 신청서에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장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장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장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p>③ 신청서에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6조(분할합병 등록)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중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란을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저장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같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p> <p>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7조(합병 등록) ① 갑 시설관리권을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중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갑 시설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8조(합병 등록) ① 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서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란을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저장권에 관한 등록절차</p> <p>제59조(등록신청) ① 저장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저장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0조(저당권의 설정·이전 등록) ① 저장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저장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장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장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장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p>	<p>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장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2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전문개정 2010. 1. 15.]</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p> <p>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저장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장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74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77조(작성말소)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삭제 <2009. 12. 31.></p> <p>제78조 삭제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26호, 1979. 4. 14.></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4호, 1988. 6. 17.>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p>	<p>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1. 15.]</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2호, 1979. 5. 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0호, 1990. 11. 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11호, 2004. 11. 29.></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⑯ 내지 ⑰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97호, 1990. 9. 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장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개정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p>	<p>(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2호, 2010. 1. 1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규칙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부터 <12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신설한다.</p> <p>①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p> <p>② 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p> <p>제19조제1호 및 제5호·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1조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p> <p>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p> <p>제34조제1항·제36조제3호·제37조제1항·제47조제3항·제2절제목·제53조 내지 제58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9>생략</p> <p><90>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 및 제4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p> <p><91> 내지 <20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p> <p>⑤부터 ⑦까지 생략</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생략 <139>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 내지 <241>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20호, 2007. 6. 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및 제71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p> <p>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7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72〉부터 〈13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68호, 200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은 이 영에 따른 수도시설 및 수도시설관리권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p> <p>〈1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106〉부터 〈192〉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p> <p>〈5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p>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p>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6)부터 (14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4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4호, 2020. 9. 29.></p> <p>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312	제1조(목적) 5312	제1조(목적) 5312
제2조(정의) 5312		
제3조(적용 범위) 5313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5313	제2조(적용범위) 5314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5314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5314	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5314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5314	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5315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5315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5316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5315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5316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316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5316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5317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317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5318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5319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5318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5319	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5319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5319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5319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5320		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5320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5321	제7조(수질기준) 5321	제8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5320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53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토지등의 매수) 5321</p> <p>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p> <p>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5324</p> <p>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5326</p> <p>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5327</p> <p>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5329</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5333</p>	<p>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5321</p> <p>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5321</p> <p>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5323</p> <p>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5324</p> <p>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5324</p> <p>제11조(사업장 관할) 5329</p> <p>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5333</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5333</p> <p>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5334</p> <p>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5335</p> <p>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5335</p>	<p>제10조(연평균 수질) 5321</p> <p>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5322</p> <p>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5324</p> <p>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5324</p> <p>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5325</p> <p>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5326</p> <p>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5327</p> <p>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327</p> <p>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327</p> <p>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5328</p> <p>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5329</p> <p>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5329</p> <p>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5329</p> <p>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5330</p> <p>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5331</p> <p>제25조(조치명령 등) 5331</p> <p>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5332</p> <p>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5333</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 5337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5337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5337
제15조(허가 제한) 5338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5337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5339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5339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338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5340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5340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5338
제4장 폐수매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5340		제32조 삭제 5340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5340		제33조 삭제 5340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5341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5341	제34조(관거의 관리) 5340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5340
제21조(주민지원사업) 5341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5342	제36조(수질 유지기간) 5342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5343	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5344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5344	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5344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5346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5345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5346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5346	제38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5347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5347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5346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534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질개선사업) 5348 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5348		제39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5348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5349	제26조(통보 등) 5349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훈별회계의 설치) 5351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5352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5352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352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5352	
	제28조(자료의 제출) 5353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5354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5354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5354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5355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5355	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납입) 5356
 5356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5357	
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5357		
제32조(기금의 재원) 5357		
제33조(기금의 용도) 5357	제35조(기금의 용도) 5358	
	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5359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5359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535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5361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5362		
제8장 보칙		
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5363		
제38조(개선 요청 등) 5363		
제39조(청문) 5364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5364	제37조(권한의 위임) 5364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5365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65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5366	제41조(규제의 재검토) 5366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366		
제9장 벌칙		
제41조(벌칙) 5367		
제42조(양벌규정) 5367		
제43조(과태료) 5367	제38조(과태료의 부과) 5367	
부칙 5368	부칙 5368	부칙 53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9. 2. 8 법률 제5932호 2001. 1.16 법률 제6362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유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81호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매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14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4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5.31 법률 제10335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하수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9호	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7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 7.26 대통령령 제18067호 (건설교통부와고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정보처리기술위원회의설립및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0호 2006.12. 4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합·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8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보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2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환경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5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9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12 대통령령 제27340호	제정 2002. 7.29 환경부령 제124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합·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민환경과확언 시험의료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2호 2010. 1.28 환경부령 제361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규제작성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5. 9 환경부령 제557호 2014. 7.29 환경부령 제571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6 환경부령 제66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 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영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5. 2. 3 법률 제13172호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9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4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 	<p>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7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1호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말한다.</p> <p>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p> <p>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p> <p>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p> <p>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p> <p>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p> <p>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설,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장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p> <p>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물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p>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 및 지류의 경우 	<p>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이란 장흥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p>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가. 제방이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본조신설 2014. 7. 28.] [중선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 7. 28.)]</p>	<p>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 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p>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p>	<p>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4.] [제5조의2에서 이등 <2014. 7. 28.>]</p>	<p>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p>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 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p> <p>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p> <p>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p>	<p>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p> <p>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p> <p>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p>	<p>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p> <p>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1.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p> <p>2. 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말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2020. 12. 1.></p> <p>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p>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p> <p>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p> <p>[본조신설 2014. 7. 29.]</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산물을 있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p> <p>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p>	<p>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p>	<p>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7.>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p> <p>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1. 삭제 <2010. 11. 2.></p> <p>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p> <p>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p> <p>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p> <p>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p>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계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p> <p>④ 삭제 <2014. 7. 28.></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p> <p>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p>[본조신설 2014. 7. 28.]</p>	<p>시되지 아니한 지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가목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p> <p>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p>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p>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p> <p>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제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p>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p>	<p>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p>	<p>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p>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p>[본조신설 2008. 12. 24.]</p>	<p>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p>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 계획</p> <p>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p>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p> <p>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p> <p>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할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p>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별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p>② 별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별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p>	<p>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p> <p>[전문개정 2008. 12. 24.]</p>	<p>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 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p> <p>2. 「하수도법」 제7조</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p> <p>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p> <p>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p> <p>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p> <p>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p>		<p>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p>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p> <p>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29.></p> <p>[전문개정 2010. 1. 28.]</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率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p>	<p>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p>	<p>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p> <p>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p> <p>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p>	<p>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p>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p> <p>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p> <p>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p> <p>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6. 1. 27.]</p> <p>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p>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8조(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통지서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p>[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7. 26.]</p> <p>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5조(허가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p>		<p>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p>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8. 1. 16.></p>	<p>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p>[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p> <p>제18조 삭제 <2017. 11. 28.></p> <p>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p> <p>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p>	<p>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p> <p>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p> <p>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p> <p>[본조신설 2008. 12. 24.]</p>	<p>제32조 삭제 <2018. 1. 17.></p> <p>제33조 삭제 <2018. 1. 17.></p> <p>제34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p>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p> <p>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p>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p>	<p>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p> <p>1.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p> <p>2.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p> <p>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분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p>	<p>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p>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 한 수질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p>[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p>	<p>제36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p> <p>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p> <p>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p> <p>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p> <p>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p> <p>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p> <p>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p>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p>	<p>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p> <p>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p> <p>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24.] [제목개정 2014. 7. 28.]</p> <p>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7. 28.></p> <p>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의 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p>	<p>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p> <p>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p> <p>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p> <p>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의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본조신설 2014. 7. 29.]</p> <p>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p>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p>	<p>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p> <p>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p>	<p>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p>	<p>다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8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p>② 법 제2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년 이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이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될 것 <p>[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p> <p>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5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p>		<p>제39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p>[전문개정 2008. 12.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p> <p>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p>	<p>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08. 12. 24.]</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p> <p>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17. 삭제 (2010. 4.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p> <p>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시·군에 수질개선훈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借入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p>	<p>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p>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p>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공공수역"이란 주암호·동북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 지점·수어호 및 탐진호(제회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p>② 시장·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빛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p> <p>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p> <p>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p> <p>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 나. 냉각수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 	<p>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1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p>합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6. 7. 12.]</p> <p>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08. 12. 24.]</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p> <p>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p> <p>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p> <p>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p> <p>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p> <p>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p> <p>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p> <p>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p> <p>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p> <p>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퇴적물준설사업 4.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운영 5. 비점오염저감사업 6.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8.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0. 환경기초조사사업 11.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2.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 1. 28.)</p> <p>②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것만 해당한다)</p> <p>13.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7. 28.]</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p> <p>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p> <p>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p> <p>3.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p>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p> <p>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목적</p> <p>2. 명칭</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5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2020. 12. 31.></p> <p>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p> <p>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p>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5조</p> <p>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p>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 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4. 삭제 <2018. 1. 23.>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와 제출요구 및 개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p>	<p>등 조치명령</p> <p>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p> <p>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p> <p>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조사</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p> <p>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p>[중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p> <p>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p>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 7. 12.>]</p> <p>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015년 1월 1일 삭제 <2017. 12. 12.>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4년 7월 29일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 <p>[전문개정 2014. 7. 28.]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6. 7. 12.>]</p>	<p>제4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제22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제24조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와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삭제 (2018. 1. 17.) <p>[본조신설 2014. 4. 30.]</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p> <p>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의 임직원</p> <p>[전문개정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1. 28.>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p>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p> <p>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p> <p>2. 삭제 <2017. 11. 28.></p> <p>3. 삭제 <2017. 11. 28.></p> <p>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p> <p>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p> <p>④ 삭제 <2008. 12. 31.></p> <p>⑤ 삭제 <2008. 12. 31.></p> <p>⑥ 삭제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04호, 2002. 1.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p> <p>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p>	<p>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12. 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77호, 2002. 7. 13.></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각호에서 시행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호, 2002. 7.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행</p> <p>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3. 군(광역시외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p> <p>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p> <p>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p> <p>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p>	<p>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p> <p>③(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지체)</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 <p>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⑧내지 ⑯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③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p>	<p>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p> <p>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p> <p>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3. 군(광역시외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p> <p>제4조(최초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면제지역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질이 2회 연속”은 이를 각각 “수질이”로 한다.</p> <p>제5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당해 계획의 제출일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p> <p>제6조(관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거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4호의 비고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31일까지는 “과거 3년간”을 “과거 2년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지체시행규칙)</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동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p>	<p>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p> <p>⑩내지 <7>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067호, 2003. 7. 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p> <p>⑤ 및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515호, 2004. 8. 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⑫내지 ⑳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p> <p>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⑮내지 ㉒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⑯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p> <p>⑬내지 ⑳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⑯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⑬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p> <p>⑩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①내지 ⑳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070호, 2005. 9.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745호, 2006. 12.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p> <p>③내지 ⑤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p> <p>①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⑥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호, 2008. 2. 26.></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내지 ④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2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 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부터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9></p> <p>제3조(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계획기간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61호, 2010. 1.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p> <p>②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② 내지 ⑥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p> <p>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p>	<p>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⑩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⑦ 부터 ⑪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p> <p>(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p> <p>(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7호, 2014. 5. 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71호, 2014. 7. 29.)</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3 및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3호, 2015. 12. 31.)</p> <p>(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7호, 2016. 7. 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 ⑧)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775호,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p>	<p>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1188호, 200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p> <p>⑧내지 ⑩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③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p>	<p>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p> <p>③부터 ⑥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⑭부터 ⑳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3호, 2018. 1. 17.〉</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⑫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㉔내지 ㉖)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②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③내지 ④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p> <p><1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118>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602호, 2010.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과부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p> <p>⑧부터 ⑫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㉔내지 <77>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p> <p>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p> <p>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p> <p>㉘내지 <66>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⑫부터 ⑲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⑤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 생략</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p>	<p>부칙 <제25345호, 2014. 5.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519호, 2014. 7.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340호, 2016. 7. 12.></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한다.</p> <p>부칙 <제27472호, 2016. 8. 31.></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㉘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p> <p>⑭ 부터 ㉓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808호, 2007.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p>	<p>(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69>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⑱부터 ㉘까지 생략</p> <p>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의 연번 140번 다음에 140번의2부터 14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6 382 565 582"> <tr> <td>140의2</td> <td>「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td> <td>건축허가 제한지역</td> </tr> <tr> <td>140의3</td> <td>「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td> <td>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r> <td>140의4</td> <td>「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td> <td>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③ 부터 ③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p>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④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07호, 2018. 1.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71호, 2019. 1. 8.〉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p>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 제한지역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3> 까지 생략 (5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5>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㉞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㉟ 부터 <68> 까지 생략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0〉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생략〉...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p> <p>〈5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p> <p>〈55〉 부터 〈97〉 까지 생략</p> <p>〈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p> <p>〈99〉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276호,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9312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⑯ 부터 ㉑ 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p> <p>㉓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2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p> <p>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p> <p>㉕ 부터 ㉖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부터 ㉢ 까지 생략</p> <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 부터 <52> 까지 생략</p> <p><5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p> <p><54>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중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③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⑥부터 <71>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p> <p><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80>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68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3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p> <p>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⑥부터 ⑧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㉔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83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p> <p>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p> <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부터 <65>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1>까지 생략</p> <p><5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53)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099호, 2017. 11. 28.〉</p> <p>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p> <p>(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69)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	5399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5399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5400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5402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5403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5403

[별표 1] <신설 2014.7.28>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 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 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8. 1. 16.>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19. 7.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 | |
|--|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 ⁻⁶ -할당오염부하량 |
|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 ⁻⁶ |

- 비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BOD	T-P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오·폐수 배출량 규모(m³)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입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예외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사.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아.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 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거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 마. 삭제 <2018. 1. 23.> 바. 삭제 <2018. 1. 23.>	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	400	500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300	400	5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	400	5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5407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5408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5408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5409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5409
[별표 6] 삭제 <2018. 1. 17.>	5410
[별표 7]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5410
[별표 8]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5412
[별표 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5412

[별표 1] <개정 2014.5.9>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또는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의 지역과 영산강·섬진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	범 위
광주광역시	전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악양면·적량면·청암면(중이리·평촌리·명호리·목계리·상이리에 한한다)·하동읍·화개면·횡천면·양보면·진교면(안심리·백년리만 해당한다)·금남면(계천리·덕천리·진정리·대송리만 해당한다)
전라북도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금동·천거동·조산동·금지면·노암동·어현동·신촌동·대강면·대산면·덕과면·도통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갈치동·동충동·보절면·사매면·산동면·송동면·수지면·쌍교동·왕정동·신정동·화정동·용정동·이백면·주생면·주천면·죽항동·향교동·광치동·산곡동·내척동
	정읍시 산내면
	장수군 번암면·산서면·장수읍(대성리·덕산리·식천리·수분리만 해당한다)
	진안군 마령면·백운면·부귀면(세동리·신정리·오룡리만 해당한다)·성수면·진안읍(연장리·가림리·정곡리·군하리만 해당한다)

구 분	범 위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순천시 낙안면(석흘리·평사리·목촌리·금산리만 해당한다)·상사면(도월리·봉래리·응령리·용암리·쌍지리·용계리만 해당한다)·송광면·송주읍·외서면·월등면·주암면·황전면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진상면·진월면·옥곡면·광영동
	목포시 옥암동
	보성군 검백면·노동면·문덕면·미력면·보성읍·북내면·웅치면·울어면
	구례군 간전면·광의면·구례읍·마산면·문척면·산동면(수기리·계천리·원달리·위안리·대평리·내산리·둔사리·시상리·관산리·원촌리·탑정리·외산리·신학리·이평리만 해당한다)·용방면·토지면
	강진군 울천면·병영면·성전면·작천면·군동면(파산리·화산리·용소리·풍동리·장산리·덕천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쌍덕리만 해당한다)
	영암군 군서면·금정면·덕진면·도포면·미암면(두역리·미암리·선황리·채지리만 해당한다)·삼호읍(동호리·산호리·서호리·서창리·망산리·용양리·용당리만 해당한다)·서호면·시종면·신북면·영암읍·화산면
	함평군 나산면·대동면·손불면(동암리·죽장리·대전리·산남리·공산리만 해당한다)·신광면(함정리·원산리·삼덕리·월암리·계천리·백운리·보여리·동정리·복흘리·송사리·가덕리만 해당한다)·엷다면·월야면·학교면·함평읍(기각리·내교리·수호리·자풍리·성남리·대덕리·만흥리·진양리·함평리·옥산리·장교리·장년리만 해당한다)·해보면
	장흥군 부산면·유치면·장흥읍·장동면·장평면
무안군 몽탄면, 무안읍(매곡리·용월리·고철리·성내리·성암리·교촌리·성동리·성남리만 해당한다)·삼향면(용포리·남악리·맥포리만 해당한다)·일로읍	
영광군 군남면(대덕리만 해당한다)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08.12.31>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2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right)$$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a+1)$$

1) a는 1+0.95×(측정횟수-1)의 정수부분, b는 1+0.95×(측정횟수-1)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2) X1, X2, X3, ..., Xa, ..., Xn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3) Xa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4) X(a+1)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0.1.28>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3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text{○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차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해당 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법 제12조 제8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60일	폐쇄명령

위반 사항	해당 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나.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명령		

[별표 6] 삭제 <2018. 1. 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 (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cm²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서는 아니 된다.
 -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검사
 -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2) 유량측량
 -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 3) 수질조사
-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별표 8]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II 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1.1) + (II 지역의 면적 × 1.0)}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I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9]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8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5417
제2조(협의·조정 대상)	5417
제3조(회의)	5417
제4조(자문위원회)	5417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5417
제6조(실무위원회)	5417
제7조(사무국)	5418
제8조(여론의 수집)	5418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5418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5418
제11조(운영 세칙)	5418
부칙	5418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5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림부및농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71호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협의·조정 대상)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광주광역시·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산업계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 1명. 다만, 광주광역시·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수변구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정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서부지방산림청장
 4.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관련 국장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1.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직을 겸한다. <개정 2012. 7. 24.>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 3. 4.]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7575호, 2002. 4. 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을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⑰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⑦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⑥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1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79호, 2012. 7.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부칙 (제27821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편
물통합

15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5432	제1조(목적) 5432	제1조(목적) 5432
제2조(정의) 5432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543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43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43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434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개정 2011. 5. 30.)		
제5조(지하수의 조사) 5434	제2조(지하수의 조사) 5434	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5434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5436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5436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5436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5437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5437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5437	
제5조(지하수의 조사) 5438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5440	제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5440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440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5441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441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5441	제4조(공고사항) 5442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5443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5443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5444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5444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5444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5446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5447	제6조의2(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5446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5447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 5448	
	제10조 삭제 5448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5448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5448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5449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조사방법 등) 5449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5450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5450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5451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5452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 5452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5452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5452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5452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5455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5455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5455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5456		
제9조(준공신고) 5457	제14조(준공신고) 5457	제9조(준공신고) 5457
제9조(준공신고) 5457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5458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5458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5459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5459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5460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5460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5461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461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461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461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462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463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463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463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464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5464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5464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5465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5465	제9조의8(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 .. 5465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 5465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5466		제9조의9(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5466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5466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5467	
	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 5467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5467	제10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5468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5468	제17조 삭제 5469	
	제18조 삭제 5469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469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470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470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개정 2011. 5. 30.)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5471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5471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5473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등) 5473
		제13조(지적고시 등) 5473
		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 5474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5475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5475	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5476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476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476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5477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5477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5478
		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5479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5479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5480	
제15조(원상복구 등) 5480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5480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5480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5481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5482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5482	제20조(원상복구결과와 확인 등) 5482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5483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5483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5484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5484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5485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5485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5486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5487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5487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5488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상태의 조사) 5488	제20조의2 삭제 5488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 5489	제21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5489
		제22조(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통보) 5489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5490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5491		
제18조 삭제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삭제 5492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492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492		
제19조 삭제 5492		
제20조(수질검사 등) 5492	제29조(수질검사 등) 5492	제23조 삭제 5492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5493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5494	
제21조(출입조사 등) 5494		제24조(출입·조사공무원증) 5495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 5. 30.>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5495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5495	제2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5495
	제33조 삭제 5497	제26조 삭제 5497
제23조(결격사유) 5497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5497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5498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5498	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5498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5498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5500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5500	제2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 5500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5501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 5501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5501		제28조의2(지도·감독 등) 5502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 5. 30.)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5502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5502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5503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5504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5505	제30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5505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5505		제30조의2 삭제 5505
		제30조의3 삭제 5505
		제30조의4 삭제 5505
		제30조의5 삭제 5506
		제30조의6 삭제 5506
		제30조의7 삭제 5506
		제30조의8 삭제 5506
		제30조의9 삭제 5506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506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506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5508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5507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 5. 31.)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5508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5509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551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511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512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512		
제6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514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5514	제31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5514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515		제32조(토지출입증) 5515
제32조(손실보상) 5516		제33조(수수료) 5516
제33조(수수료) 5516		제34조(보고·조사 등) 5518
제34조(보고·조사 등) 5517		
제34조의2(교육 등) 5518	제42조(교육 등) 5518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5518		
제35조(청분) 5519	제43조(권한의 위임) 5520	
제36조(권한의 위임) 5520		
제36조의2(대집행) 5520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5521	제35조 삭제 5521
제36조의2(대집행) 5521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521	제36조(규제의 재검토) 5521
제7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37조(벌칙) 5522		
제37조(벌칙) 5523		
제37조의2(벌칙) 5523		
제37조의3(벌칙) 5524		
제37조의3(벌칙) 5525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양벌규정) 5526		
제38조의2 삭제 5526		
제39조(과태료) 552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526	
제39조(과태료) 5527		
제40조(과태료) 5528		
제40조(과태료) 5529		
제40조의2(과태료) 5530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530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530		
부칙 5531	부칙 5531	부칙 5531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정 1993.12.10 법률 제4599호 개정 1997. 1.13 법률 제5296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 1994. 7.23 대통령령 제14340호 개정 1997. 8. 8 대통령령 제1545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전부개정 1997. 8.25 건설교통부령 제117호 1999. 5.14 건설교통부령 제191호 2002. 1. 4 건설교통부령 제306호 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시행규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9. 3.31 법률 제5955호 2001. 1.16 법률 제6368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999. 1.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5.10 대통령령 제16297호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 3.27 대통령령 제17175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12.21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속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5.31 법률 제7569호 2006. 2.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1.12.19 대통령령 제17433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 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 3.24 법률 제7924호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8호 2006. 4.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2007.10.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속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8 법률 제9058호 2009. 5.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0. 3.22 법률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한·검사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5.30 법률 제10763호 2012. 1.17 법률 제11192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08.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7호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4.30 대통령령 제21465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법률 제11803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납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6호 (한국공공기관평가법시행령)	2008. 6.23 국토해양부령 제21호 2010. 1.12 국토해양부령 제210호 2011. 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속을 위한 개별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1. 6 법률 제12990호 2015. 6.22 법률 제13383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재정수법)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6호 (한국공공기관평가법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장비법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2010.12.28 대통령령 제22566호 (광업법시행령)	2012. 2.23 국토해양부령 제444호 2012. 6. 8 국토해양부령 제472호 2012.10.31 국토해양부령 제527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4.18 법률 제14801호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 2.21 법률 제15403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8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0호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6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3.10.31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령을 위한 법률)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1. 7 국토교통부령 제139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020.12. 8 법률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p> <p>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 	<p>2014.11.11 대통령령 제25717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2호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주요도시기급법 시행규칙) 2016. 7. 1 국토교통부령 제328호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9. 6 환경부령 제771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p> <p>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p> <p>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p> <p>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p> <p>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2조의2</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②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지하수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조</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개정 2011. 5. 30.></p> <p>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p>	<p>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p>	<p>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대상이 포함된</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5. 22.></p>	<p>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p>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9. 6.]</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3. 지하수개발·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조사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p>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p>	<p>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p> <p>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p> <p>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p>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p> <p>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p> <p>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p>	<p>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1. 1. 5.></p> <p>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5. 22.></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p>	<p>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5조</p> <p>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② 삭제 <2018. 6. 8.></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18. 6. 8.></p> <p>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산설 2013. 5. 22., 2018. 6. 8.〉</p> <p>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목개정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5조의2</p> <p>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③ 지하수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5조의3</p> <p>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성</p> <p>2. 지하수의 이용실태</p> <p>3. 지하수의 이용계획</p> <p>4. 지하수의 보전계획</p> <p>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p> <p>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삭제 <2018. 6. 8.></p> <p>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p>	<p>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성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p>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p>	<p>제4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9.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23.]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삭제 (2018. 6. 8.)</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p>	<p>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계획 <p>⑦ 삭제 (2018. 6. 8.)</p> <p>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6. 8.]</p> <p>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6. 8.)</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p> <p>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p>	<p>경우만 해당한다)</p> <p>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p>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p>지하수법 시행규칙</p> <p>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p> <p>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p> <p>3. 지하수영향조사서</p>	<p>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p> <p>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p> <p>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p> <p>③ 삭제 (2014. 11. 7.)</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업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업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p>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목개정 2012. 6. 8.]</p> <p>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원상복구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6조의2(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⑤ 삭제 <2011. 5. 30.></p> <p>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p> <p>⑦ 삭제 <2013. 5. 22.></p>	<p>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0조 삭제 (2001. 12. 19.)</p> <p>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2012. 6. 8., 2013.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감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p>② 법 제7조의3제3항과 영 제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1. 5. 30.]</p> <p>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30., 2013. 5.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p>	<p><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p> <p>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③ 삭제 <2008. 6. 23.></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⑤ 삭제 <2013. 10. 31.></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⑤ 삭제 (2011. 5. 30.)</p> <p>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1. 1. 5.)</p> <p>⑦ 삭제 (2013. 5. 22.)</p> <p>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p> <p>[제목개정 2011. 5. 30.]</p> <p>[시행일 : 2022. 1. 6.] 제7조</p> <p>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p>	<p>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p>	<p>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1.] 제7조의2</p> <p>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p>	<p>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1., 2018. 6. 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p>	<p>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p> <p>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p> <p>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p>	<p>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p> <p>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p> <p>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p>	<p>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p> <p>2.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p> <p>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p> <p>2. 원상복구계획서</p> <p>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2018. 9. 6.></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 11. 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p>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3. 10. 30.>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p>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⑥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염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 	<p>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8조</p> <p>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p>	<p>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 5. 10.)</p> <p>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④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 	<p>제9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 5. 14.)</p> <p>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p> <p>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3., 2012. 6. 8.></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3., 2012.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9조</p> <p>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 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 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 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p> <p>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제목개정 1999. 5. 10.]</p>	<p>⑥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3., 2012. 6. 8.></p> <p>[제목개정 1999. 5. 14.]</p> <p>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p>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p>[전문개정 2011. 12. 30.]</p>	<p>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1.></p> <p>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p>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p> <p>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p> <p>[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2</p> <p>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p>		<p>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p> <p>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p>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3</p> <p>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p>	<p>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p>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p>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p>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p>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p>(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p> <p>④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 12. 30.]</p>	<p><개정 2013. 10. 31., 2016. 12. 30.></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p>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p> <p>[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4</p> <p>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p>	<p>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p>	<p>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5</p>	<p>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p>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p>	<p>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 <p>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지하수법, 지하수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1. 17.]</p> <p>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p>	<p>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 변동 실태조사 또는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p>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본조신설 2012. 6. 8.]</p>	<p>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23.]</p> <p>제9조의8(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본조신설 2012. 1. 17.]</p> <p>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9조의8</p> <p>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p>		<p>제9조의9(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본조신설 2012.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p>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p> <p>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증지 또는 수질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p>	<p>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1. 11.></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조사 지하수의 수위·수질 조사 지하수 수위변동에 대한 원인분석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2. 6. 8.]</p> <p>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장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p>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 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p>	<p>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10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완료통보서에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16. 12. 30.> 삭제 <2016. 12. 30.>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p> <p>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7호·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10조</p> <p>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p>	<p>제17조 삭제 <1999. 5. 10.> 제18조 삭제 <1999. 5. 1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3. 5. 22.]</p> <p>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p>		<p>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7.></p> <p>[본조신설 2013. 10. 31.]</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3. 5. 22.] [시행일 : 2022. 1. 6.] 제11조</p> <p>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개정 2011. 5. 30.></p> <p>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p>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1.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p> <p>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p> <p>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p> <p>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족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p> <p>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p> <p>③ 삭제 <2005. 11.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⑧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8. 6. 8.></p> <p>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p>	<p>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0. 30.></p> <p>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1. 12. 19.]</p> <p>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반·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p>	<p>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지정) 요청서에 따른다.</p> <p>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p> <p>제13조(지적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였을 때에는</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p>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p>⑥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⑦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p> <p>⑧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p>	<p>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고시는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같음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전문개정 2011. 5. 30.]</p>	<p>10. 30.)</p> <p>⑨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p> <p>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7. 1. 17.></p> <p>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p> <p>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p> <p>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p>	<p>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별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1.></p> <p>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p> <p>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8. 1. 16.></p>	<p>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이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p>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p> <p>2. 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1부</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내용·허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p> <p>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p> <p>[전문개정 2011. 5. 30.]</p>	<p>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p>	<p>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2018. 6. 8., 2018. 9.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p> <p>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p>	<p>증권 등</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p> <p>3.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p> <p>4.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p> <p>5. 삭제 〈2018. 9. 6.〉</p> <p>6. 삭제 〈2018. 9. 6.〉</p> <p>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에 따라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목이 변경된 경우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퇴매움 비용</p> <p>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p> <p>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퇴매움 비용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골작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p>	<p>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p> <p>⑥ 삭제 <2001. 12. 19.></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p>	<p>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p> <p>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p>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p>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黏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p> <p>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 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 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p>	<p>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 삭제 (1999. 5. 14.)</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③ 제2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제목개정 1999. 5. 14.]</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를 개발·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삭제 <2012. 6. 8.> 3. 삭제 <2012. 6. 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삭제 <2012. 6. 8.> ③ 삭제 <2012. 6. 8.> ④ 삭제 <2012. 6. 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p>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p>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16조</p> <p>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p>	<p>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p> <p>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p>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할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p> <p>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p>	<p>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p>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p> <p>[시행일 : 2022. 1. 6.] 제16조의3</p> <p>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p>	<p>5. 재원조달방법</p> <p>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 대책</p> <p>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측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수위 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수위실태를 종합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0조의2 삭제 <2012.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⑦ 삭제 <2018. 6. 8.></p> <p>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p>	<p>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 등 형태·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③ 법 제1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1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보고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p>제22조(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p> <p>⑩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6. 8.)</p> <p>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 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7. 4. 1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p>		<p>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p> <p>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p> <p>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⑥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6. 8., 2021. 1. 5.></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7. 4. 18.,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7조</p> <p>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 삭제 <2021. 1. 5.>[시행일 : 2022. 1. 6.] 제18조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18조의2</p> <p>제19조 삭제 <2001. 1. 16.>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p>	<p>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 5.></p>	<p>제23조 삭제 <2002. 1. 4.></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12. 30.]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p>	<p>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만 해당한다)</p> <p>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증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p> <p>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p> <p>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p> <p>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p> <p>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p> <p>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 [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 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 5. 30.)</p> <p>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4조(출입·조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3.]</p> <p>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p> <p>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라 한다)과 그 변경</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 	<p>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3.)</p> <p>④ 삭제 (2005. 12. 21.)</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p> <p>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p> <p>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p>	<p>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p> <p>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p> <p>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3조 삭제 <1999. 5. 10.></p> <p>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6조 삭제 <1999. 5. 14.></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p> <p>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양수일</p>	<p>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8. 6. 8.></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p>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1. 5.></p> <p>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 1. 5.></p> <p>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p>		<p>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p>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24조</p> <p>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p>	<p>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p>	<p>제2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취소를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 5. 10.></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p> <p>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 5. 30.></p> <p>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p>	<p>지하수법 시행령</p> <p>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지하수법 시행규칙</p> <p>제28조의2(지도·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p> <p>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p>[전문개정 2011. 12. 30.]</p>	<p>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3.></p> <p>⑤ 삭제 <2005. 12. 21.></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⑦ 제4항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p> <p>[제목개정 1999. 5. 14.]</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0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p>제30조의2 삭제 <2012. 2. 23.> 제30조의3 삭제 <2012. 2. 23.> 제30조의4 삭제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p>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p>	<p>제30조의5 삭제 <2012. 2. 23.> 제30조의6 삭제 <2012. 2. 23.> 제30조의7 삭제 <2012. 2. 23.> 제30조의8 삭제 <2012. 2. 23.> 제30조의9 삭제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p> <p>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p> <p>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5장외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 5. 31.)</p> <p>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p>	<p>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 [전문개정 2001. 12. 19.]</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p> <p>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p>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p> <p>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p>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p>	<p>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p> <p>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약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p>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약한다.</p> <p>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p>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p>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p> <p>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p> <p>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p> <p>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p> <p>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p> <p>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시행일 : 2022. 1. 6.] 제30조의2</p> <p>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p>	<p>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p>② 삭제 (2013. 10. 30.)</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0조의3</p> <p>제6장 보칙 <개정 2011. 5. 30.></p> <p>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정화·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나 죽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p>	<p>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p>	<p>제31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되,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입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에 따른 조사·정화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나 죽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p>		<p>제32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1조</p> <p>제32조(손실보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p>제33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8., 2014. 1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p> <p>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p> <p>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p> <p>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p> <p>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p> <p>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p> <p>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p> <p>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영(零)을 곱하여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6. 7. 1.></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p>	<p>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p>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술 	<p>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조사공무원은 해당 조사를 받을 자가 갖추어 둔 별지 제45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조사 일시·조사 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p>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 2. 23.]</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p> <p>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p> <p>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34조의3</p> <p>제3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p>	<p>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p> <p>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p> <p>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p> <p>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p> <p>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p> <p>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p>	<p>제4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p> <p>〈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증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p>[전문개정 2012. 6. 8.]</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6조의2</p>	<p>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p>[전문개정 2016. 12. 30.]</p> <p>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의 	<p>제35조 삭제 <2016. 12. 30.></p> <p>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3.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 제1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5. 제17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p>[전문개정 2016.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 <개정 2011. 5. 30.></p> <p>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 	<p>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4. 11. 11.]</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7조</p> <p>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p> <p>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p> <p>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p> <p>3.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p> <p>8.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p> <p>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8.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p> <p>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37조의3</p> <p>제38조(양법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8조의2 삭제 (2001. 1. 16.)</p> <p>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p>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전문개정 2011. 12. 30.]</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p> <p>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p> <p>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p> <p>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p> <p>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p> <p>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증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자</p> <p>[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39조</p> <p>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3. 5. 22.)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전문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40조</p> <p>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40조의2</p> <p>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1. 6.] 제41조</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86호, 1997. 1. 1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행보충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지하수법 제10조”를 각각 “지하수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중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6조 및 제1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55호, 1999.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451호, 1997. 8. 8.></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수질감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p> <p>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93호,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호, 1997. 8. 25.></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 및 인정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인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생략·서식39%> 기재사항중 채수계획량·양수능력 등의 기재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1호, 1999. 5. 1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6호, 2002. 1. 4.></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이행보충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예치의무가 발생하는 이행보충금분(다시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충금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p> <p>③(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률 제6368호 지하수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433호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신</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 각종 행위 또는 신고 등 시·도지사에 대한 각종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68호, 2001. 1. 16.></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p> <p>③(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p> <p>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㉔내지 ㉔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297호, 1999. 5. 10.></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512호,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p>	<p>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되, 동 신고서의 기재항목중 좌표·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공사예정업체의 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82호, 2003. 12. 15.> (주택법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11호, 2004. 11. 29.>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82호, 2005. 12. 2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0호, 2006. 8.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1호, 2007. 3. 19.></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4호의 기준단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p> <p>③내지 ⑩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60>내지 <85>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75호, 2001. 3. 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p> <p>⑪및 ⑫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433호, 2001. 12. 1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입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594호, 2004. 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4호, 2007. 10. 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4호, 2007. 12. 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호, 2008. 6. 23.></p> <p>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호, 2010. 1. 1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내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569호, 2005. 5.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를 하고 있거나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또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29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p>	<p>③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9158호, 2005. 11.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p> <p>제5조(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19463호, 2006. 4. 28.></p>	<p>부칙 <제444호, 2012.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72호, 2012. 6. 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 제9조의9,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527호, 2012. 10. 3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 부담금</p> <p>부칙 <제7849호, 20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p> <p>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p> <p>제41조 생략</p> <p>부칙 <제7924호, 2006. 3. 2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③내지 ④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0241호, 2007. 9. 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126>까지 생략</p> <p>부칙 <제32호, 2013. 10. 31.></p> <p>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9호, 2014. 11. 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3호,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p> <p>㉔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 생략</p> <p>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p> <p>㉖ 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p> <p>㉔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㉕ 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p> <p>⑯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한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p>	<p>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 생략</p> <p>부칙 <제328호, 2016. 7. 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82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수신자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⑦ 생략</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5> 까지 생략 <60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4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7>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58호, 2008. 3. 28.></p>	<p>「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1호, 2018. 9.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17호, 2009. 5. 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p> <p>⑯ 및 ⑰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154호, 2010. 3. 22.> (먹는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p>	<p>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p> <p><96> 부터 <138>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877호, 2008. 6. 25.></p> <p>이 영은 2008년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하수”로 한다.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5 까지 생략 ④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7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763호, 2011. 5. 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의2, 제14조제1항, 제38조</p>	<p>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465호, 2009. 4.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0 까지 생략 ④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2 부터 ④6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66호, 2009. 6. 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4항제9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협의에 대한 경과 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의 관리청에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p> <p>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p> <p>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192호, 2012. 1. 1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⑩ 및 ⑪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①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56호, 2010. 12. 28.) (공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1>까지 생략 (63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외2, 제12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03호, 2013. 5.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p> <p>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828호, 2011. 4.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⑩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p> <p><64>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23470호, 2011. 12.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846호, 2012. 6.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준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징수한다”로 한다. 〈65〉부터 〈71〉까지 생략</p> <p>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2990호, 2015. 1. 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농어</p>	<p>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측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업”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p> <p>⑤부터 <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p> <p>⑤부터 <6>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p> <p><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p>	<p>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82>부터 <14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819호, 2013. 10. 30.)</p> <p>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17호, 2014. 11.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로 한다. <7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4801호, 2017. 4. 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지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8521호, 2017. 12.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부칙 <제15403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7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p> <p>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p>	<p>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p> <p>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⑧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232호, 2018. 10. 1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p> <p>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618호, 2020. 12. 8.> (양식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p> <p>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정부조직법)</p>	<p>특급기술인”으로 한다.</p> <p>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0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제6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제7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90조제2항 중 “제5항·제6항·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제6항”으로, “제24조제1항·제3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p>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5553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5554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5555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5556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5557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5558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5559

[별표 1] <개정 2019. 7. 2.>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수문지질 (水文地質) 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p>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p> <p>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p> <p>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p> <p>2) 하천의 현황</p> <p>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p> <p>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p> <p>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p>	<p>·허가신청량이 신규 개발 가능량 이내일 것</p>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p>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p> <p>1) 단계대수성시험</p> <p>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p> <p>2) 연속대수성시험</p>	<p>·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p> <p>·영향 범위 내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p>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p> <p>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p> <p>3) 수위회복시험</p> <p>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치고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p> <p>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p> <p>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p> <p>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p> <p>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p> <p>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p> <p>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p> <p>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p> <p>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p> <p>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p>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분석·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 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비고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 6. 8.>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1. 작성지침

-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작성한다.
-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 가. 서론
 -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 2) 조사 결과의 요약
 - 3) 지하수개발·이용 방안
-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나) 하천의 현황
 -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 다.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별표 3] <개정 2011.12.30>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가.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나.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가.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 나.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 가.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 나. 지하수의 개발·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 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하는 지역
5.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 가.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
 - 나.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
 - 다.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
 - 라.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

15.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마.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

6. 해안염수침입 지역

가.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透水性)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별표 4] <개정 2018. 12. 1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측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측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8. 12. 11.>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지하수·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라.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18. 12. 1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2. 자본금

-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가목의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라. 측정 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21. 1.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고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2호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신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예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제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9조제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9조제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제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4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제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5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제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	20	30
2)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차.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3호의2	50	100	150
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7호	50	100	200

15.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5.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9호	100 500	200 500	400 500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0호	50	100	200
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1호	200	300	400
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10	20	30
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2호	200	300	400
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3호	500	500	500
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6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4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30	50	70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제6조의2 관련)	5563
[별표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5항 관련)	5563
[별표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9조의7관련)	5567
[별표 4]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제9조의8조 관련)	5567
[별표 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제9조의9제1항 관련)	5568

[별표 1] <개정 2012.2.23>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제6조의2 관련)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토출관 안쪽 지름	mm	용도(세부 용도)		
동력장치 (설치 깊이)	(HP m)	양수능력	m ³ /일	
소유자명		시공업체명		
관할 관청(연락처)				
<p>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용·관리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영원한 생명수 - 지하수의 미래는 밝습니다></p>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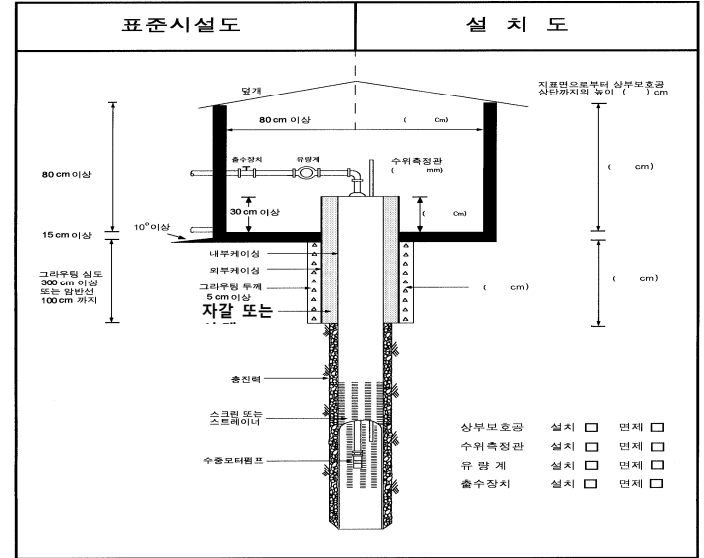
1. 안내문의 크기는 300mm(가로)×200mm(세로) 이상으로 하고, 비·바람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2. 안내문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별표 2] <개정 2012.2.2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5항 관련)

1. 표준도(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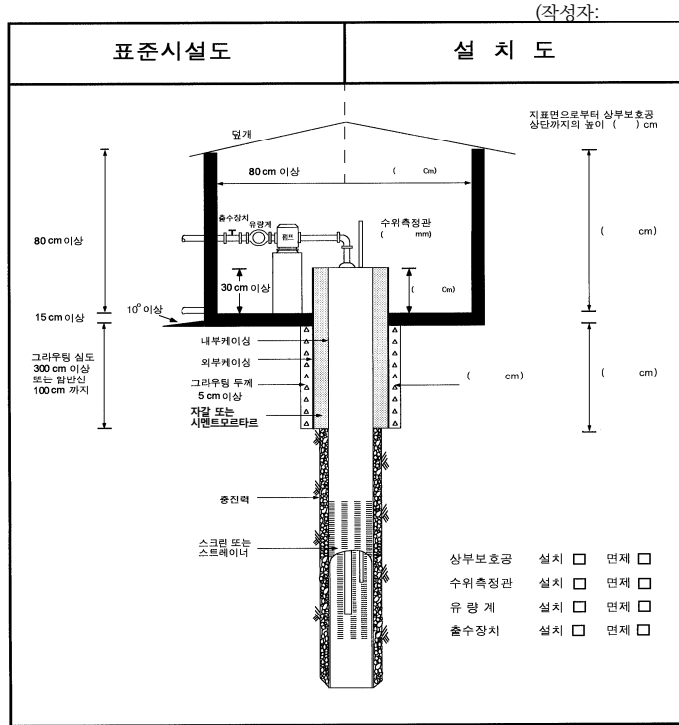
(작성자:)



비고

1. 가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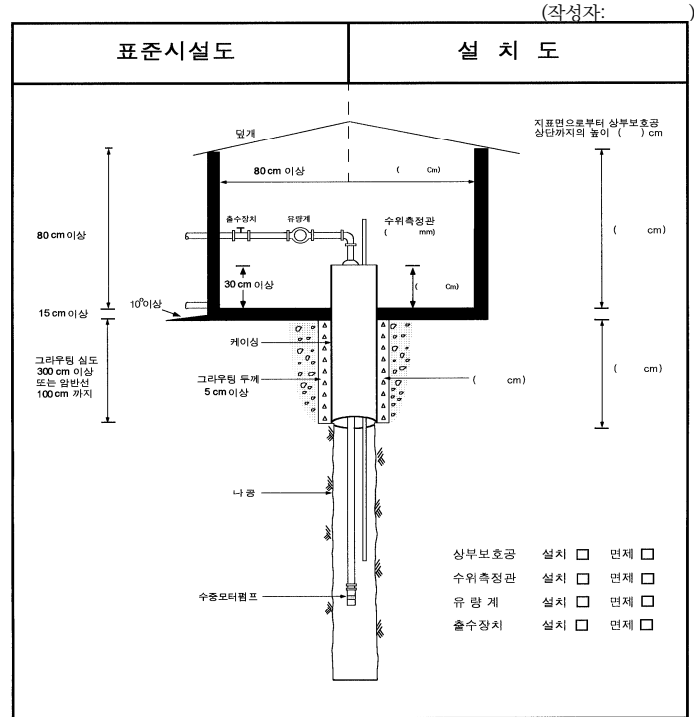
2. 표준도(나형)



비고

1. 나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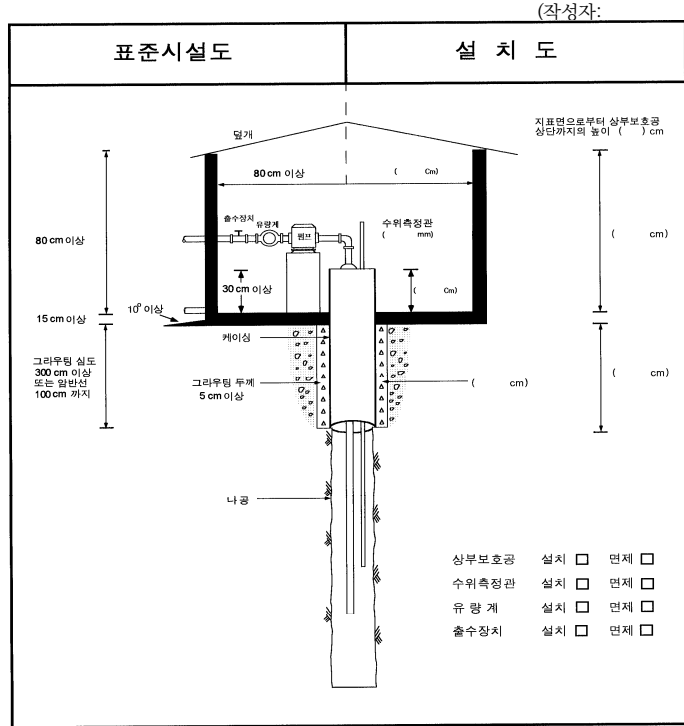
3. 표준도(다형)



비고

1. 다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4. 표준도(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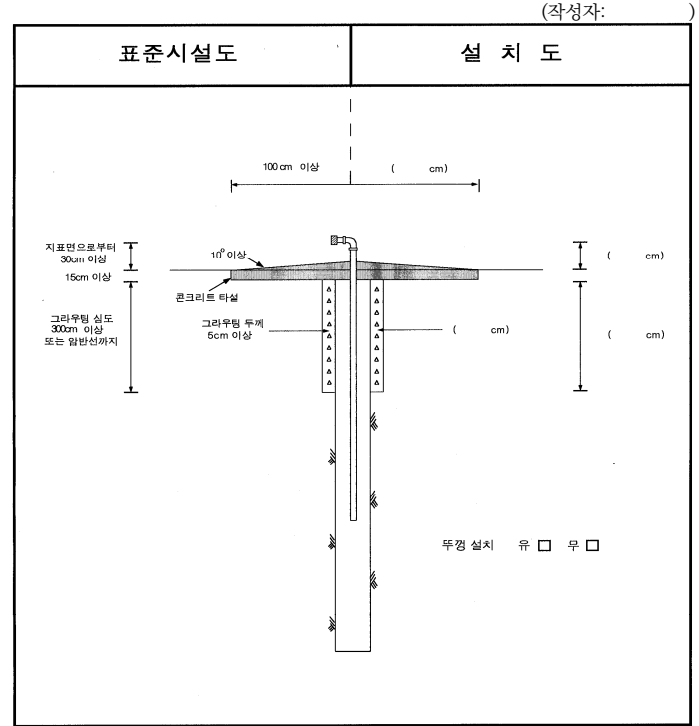


비고

1. 라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1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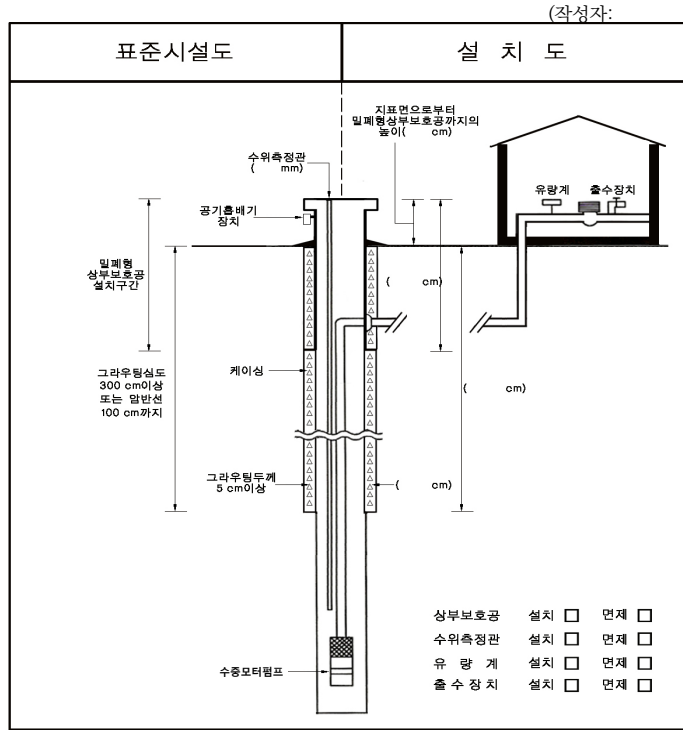
5. 표준도(마형)



비고

1. 마형 표준도는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이다.
2.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출관의 끝부분에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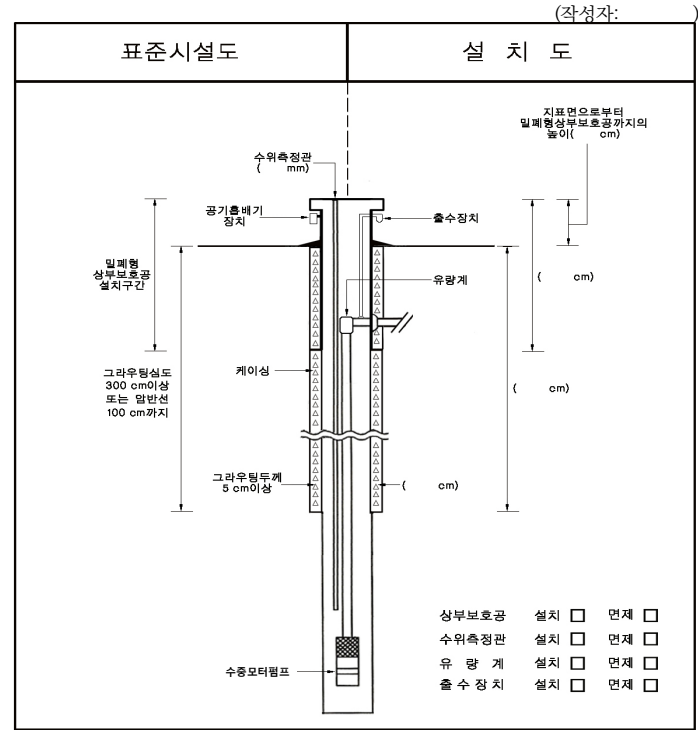
6. 표준도(바형)



비고

1. 바형 표준도는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별도의 인접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인접시설의 설치규격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설치도에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과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4.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표준도(사형)



비고

1. 사형 표준도는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상부보호공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2. 설치도에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과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9조의7 관련)

제9조의7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바.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 나.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할 것

1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신설 2012.6.8>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제9조의8조 관련)

1. 입지 조건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될 것

 - 가. 지하수 함양(涵養)이 쉽고 지형경사가 완만한 지역
 - 나. 대수층 하부에 불투수성 지반이 있고, 차수벽(遮水壁) 등의 설치로 인한 지하수 지류효과가 좋은 지역
 - 다. 차수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상류지역 습지화 및 하류지역 건천화 등의 발생위험이 낮은 지역
2. 시설설치 기준
 - 가. 계획취수량은 수문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적정개발가능량에 손실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나. 취수시설은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수원고갈, 지반침하, 시설물 안전, 생태계 영향, 하천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다. 탁수 등 수질이 불량한 물이 취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라. 취수시설에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것
 - 마. 유공관은 모래나 슬러지에 의한 막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시설관리 기준
 - 가. 지하수 함양시설 또는 지하수담 취수시설 인근과 상하류에 관측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 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하 차수벽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
 - 다. 정기적으로 취수시설을 확인하여 양수량 감소 등 효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라. 주변지역의 잠재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수질을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567

[별표 5] (신설 2012.6.8)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시설의 설치기준(제9조의9제1항 관련)

1. 지중시설

- 가.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지하수를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 다.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은 전 구간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재주입 순환통로 등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비 및 청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2. 상부보호시설

- 가.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의 지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세로(원형인 경우에는 안지름을 말한다) 각 2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상부보호시설의 바닥부가 지표면 아래로 80센티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할 것
- 나. 상부보호시설의 덮개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지형여건상 지표면과 동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상부보호시설은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비고: “지중시설”이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 취수정을 말한다.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5573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5573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5573
제3조(조치명령 등)	5573
제4조 삭제	5573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와 신고)	5573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5573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5574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5574
제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5574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5574
제10조(수질검사대상)	5574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5574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5575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5575
제14조(검사기관)	5575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5575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575
제17조(수수료)	5576
부칙	557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94. 8. 9	총리령	제461호
개정	1997. 9. 3	환경부령	제29호
	2003. 6. 18	환경부령	제140호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10. 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4. 7	환경부령	제284호
	2010. 2. 16	환경부령	제362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9. 24	환경부령	제476호
	2015. 12. 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3. 29	환경부령	제696호
	2018. 8. 6	환경부령	제770호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 8. 6.)]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와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 8. 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6.)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의하며,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계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한다.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특정유해물질이 별표 4 제2호의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 일 것
2. 석유계충탄화소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 기준"이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3. 29.)
- ③ 삭제 (2018. 8. 6.)

제7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본조신설 2018. 8. 6.]

제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5.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목개정 2008. 4. 7.]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4. 7.)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2. 16., 2017. 3. 29., 2018. 8. 6.>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지역이 시장·군수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島嶼)·산간 등의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군수"로,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군수"는 "검사를 받을 자"로 본다. <신설 2018. 8. 6.>

⑤ 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6.>

⑥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9., 2018. 8. 6.>

제14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7.)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검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6.>

③ 시장·군수는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군·구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제16조(지하수정화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정화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삭제 (2006. 7. 4.)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4. 7., 2010. 2. 16.>

③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지하수정화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8. 4. 7.>

④ 삭제 (2008. 4. 7.)

⑤ 영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입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고, 지하수정화업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7. 4.>
 ⑥ 시장·군수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8. 4. 7.>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제17조(수수료) 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만5천원)
 3.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만7천원)
- [전문개정 2008. 4. 7.]

부칙 <제140호, 2003. 6. 1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수질검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⑱내지 ㉔생략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08.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완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조치명령 완료통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2호, 2010.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12.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 2018.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부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5581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2조의2 관련)	5582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6조제1항 관련)	5583
[별표 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5585

[별표 1] <개정 2019. 12. 20.>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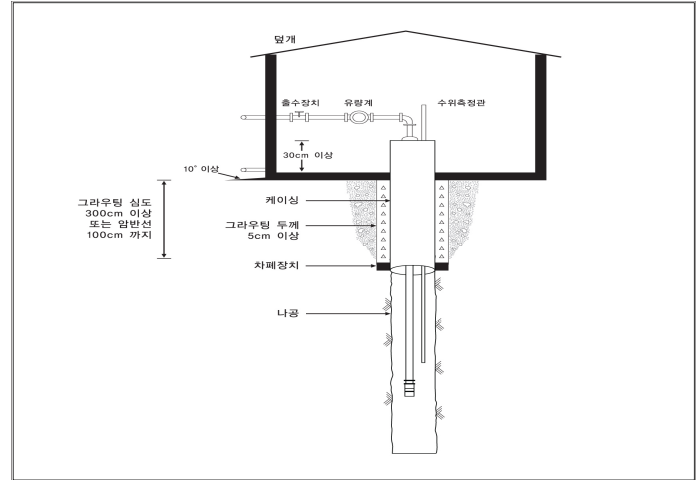
-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땅파기)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c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 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 1)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 2)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c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다.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일반 상부보호공)의 구조도



※ 차폐장치는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 적용

라.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 1)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 가)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시험 결과 5kg/cm²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kg의 하중, 10mm/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2)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kg/cm²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3)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흡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4) 내·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 가. 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해당 건축물 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량·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나)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나.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Γ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가목4) 및 5)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8. 8.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개정 2018.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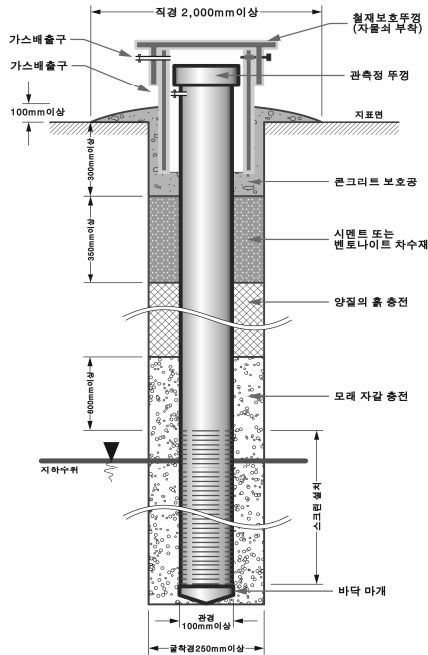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보호공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가 100mm 이상, 반경이 1,0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개 이상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증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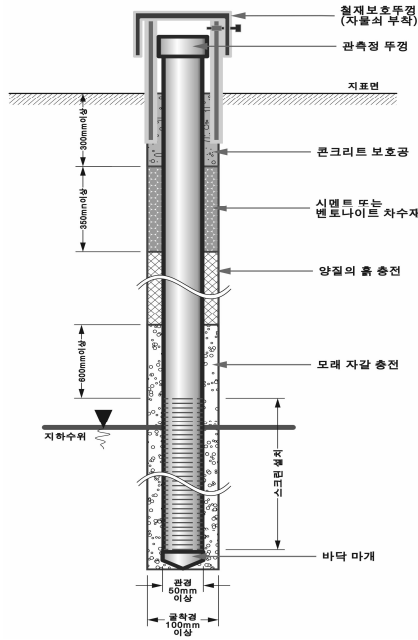
나. 수질측정의 항목·주기 및 방법

-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4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항목
- (2)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 (3) 측정방법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구조도



비고

1. 관측정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측정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개수

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발생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발생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오염발생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항목·주기 및 방법

(1)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2) 측정주기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계속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가)에 따른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측정방법

-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8. 8. 6.>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항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균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어업용수
 -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17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5596	제1조(목적) 5596	제1조(목적) 5596
제2조(정의) 5596	제2조 삭제 5596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5596
	제3조 삭제 5596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596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5597
제3조(적용 제외) 5597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597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5597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5598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5598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5598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598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5598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5600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5599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5600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5600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5601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5602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5602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5602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5602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5602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5603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5603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604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604		
제9조(손실보상) 5605	제5조(손실보상) 5605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5606
		제7조(재결신청서) 5606
제10조 삭제 5607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5607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5608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5608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5613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5613 제10조의7(분담금) 5613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5613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5614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5614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5607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5609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5611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운영) 5612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5614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5614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5615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5616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5618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5619	제7조의2 삭제 5607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5616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5616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5617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5617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5617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5619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 4. 5.>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5615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561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5620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5620
제13조(토양오염검사) 5620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5620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5621
		제13조(누출검사 등) 5622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5623	제14조(검사항목) 5623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5623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5624
		제16조(검사결과와 통보 등) 5624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5625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5625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5625	제8조의3(시정명령 등) 5625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5627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5626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5626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5627
	제9조의2(조치명령 등) 5626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5627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5628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5628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5629	제19조(반출정화대상) 5629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5630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5632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5632
제15조의5(위해성평가) 5632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5632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5635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5636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5636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5636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5636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5638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5638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5638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563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5639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 4. 5.)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5640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5640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5640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5640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5640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5641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5641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5641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5641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5642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5642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5643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5642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5643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5643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5644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5643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5644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5644	
제21조(행위제한) 5644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5645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5645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5644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5645		
제23조 삭제 5646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 3. 28., 2004. 12. 31.)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5646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5646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5646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5647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5647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564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자격사유) 5648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5648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5649		
제23조의5(접입 금지) 5649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5649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5651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5651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5651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5652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자격사유) 5652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5652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5653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5653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5653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5654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5655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5656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5656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5657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5657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5657
제4장 보칙 (개정 2011. 4. 5.)		
제24조(대집행) 5657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5658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5658
제26조(국고보조 등) 5659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5659		제34조(출입 검사 등) 5659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5661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566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566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5661
제26조의5(청문) 5661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5661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5661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5663	제37조(규제의 재검토) 5663
제5장 벌칙 (개정 2011. 4. 5.)		
제28조(벌칙) 5664		
제29조(벌칙) 5664		
제30조(벌칙) 5665		
제31조(양벌규정) 5667		
제32조(과태료) 5667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667	
부칙 5669	부칙 5669	부칙 5669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1995. 1. 5 법률 제490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1999. 2. 8 법률 제5878호 2001. 3.28 법률 제6452호 2002. 1.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p> <p>2002.12.30 법률 제68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3. 5.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2004.12.31 법률 제7291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도·군·구 등에 관한 법률)</p> <p>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17 법률 제8469호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5.25 법률 제10314호 2011. 4. 5 법률 제10551호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전자통신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 6. 1 법률 제11464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3.24 법률 제12522호 2015. 2. 3 법률 제13169호 2015.12. 1 법률 제13533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재정수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2호 2018. 6.12 법률 제15658호 2019.11.26 법률 제16613호</p>	<p>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8호 2001.12.19 대통령령 제17432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시적발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0호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도·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6.16 대통령령 제21542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6호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9호 (국·방·군·사·시·도·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5.31 대통령령 제2456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3.24 대통령령 제26160호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준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2018.11.20 대통령령 제29292호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7.14 대통령령 제30848호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1996. 1. 4 환경부령 제16호 개정 1999. 2.27 환경부령 제70호 2001.12.31 환경부령 제121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 6.30 환경부령 제176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12.30 환경부령 제19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06. 3. 7 환경부령 제200호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도·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1.13 환경부령 제256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7.30 환경부령 제294호 2009. 6.25 환경부령 제333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 3.31 환경부령 제411호 2011.10. 6 환경부령 제427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5.31 환경부령 제509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4 환경부령 제597호 2015.11.30 환경부령 제622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4.28 환경부령 제648호</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p> <p>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p> <p>제2조 삭제 <2001. 12. 19.></p> <p>제3조 삭제 <2001. 12. 19.></p>	<p>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8.11.27 환경부령 제776호</p> <p>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p> <p>2020. 7.14 환경부령 제873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p> <p>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p> <p>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p> <p>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p> <p>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애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p>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p>	<p>[제목개정 2005. 6. 30.]</p> <p>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p> <p>[전문개정 2005. 6. 30.]</p> <p>[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p> <p>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 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p> <p>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p>	<p>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p> <p>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p> <p>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p>		<p>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p> <p>[전문개정 2001. 12. 31.]</p> <p>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반침묵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p> <p>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p> <p>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p> <p>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p> <p>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p> <p>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p> <p>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p> <p>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패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p> <p>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p>		<p>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1. 10. 6.]</p> <p>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 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p> <p>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p> <p>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p>		<p>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p> <p>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p> <p>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본조신설 2011. 4. 5.]</p> <p>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p>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p>		<p>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 10. 6.]</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나무·돌·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p> <p>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p>	<p>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p>	<p>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p>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p>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p>⑤ 삭제 <2001. 12. 19.></p>	<p>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p> <p>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0조 삭제 (2006. 10. 4.)</p> <p>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4. 3. 24.)</p> <p>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p>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p>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중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p>	<p>제7조의2 삭제 (2015. 3. 24.)</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p> <p>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p> <p>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목개정 2014. 3. 24.]</p> <p>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p> <p>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p> <p>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p> <p>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p>	<p>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중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p> <p>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1. 20.></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p> <p>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1. 20.></p> <p>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4. 3. 24.]</p> <p>[2014. 3. 24. 법률 제12522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전문개정함.]</p>	<p>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p> <p>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0조의7(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4.]</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p> <p>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 4. 5.></p> <p>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 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p> <p>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p>	<p>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유리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본조신설 2005. 6. 30.] [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p> <p>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2. 1. 25., 2018. 11. 20.></p>	<p>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p> <p>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6. 4. 28.></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p>	<p>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p> <p>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p>	<p>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6. 30.]</p> <p>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 12. 31., 2005. 6. 30.]</p> <p>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27.]</p> <p>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②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7. 11. 28.></p> <p>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p> <p>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1. 9. 30.></p> <p>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p>	<p>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p> <p>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p> <p>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p> <p>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p> <p>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p> <p>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 12. 19., 2013. 5. 31.></p> <p>[제목개정 2001. 12. 19., 2005. 6. 30.]</p> <p>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5. 31.]</p>	<p>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3. 5.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1.]</p> <p>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9. 30.></p>	<p>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p> <p>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p> <p>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30.></p> <p>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p>	<p>이·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 12. 31.]</p> <p>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30., 2009. 6. 25., 2014. 12. 24.></p> <p>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p> <p>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p> <p>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p> <p>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25.></p> <p>[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8. 7.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p> <p>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p> <p>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p> <p>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p> <p>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p> <p>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p> <p>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p>	<p>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3., 2009. 6. 25.></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받지 아니한다.</p> <p>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 	<p>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6. 3. 7.> [전문개정 2001. 12. 31.]</p> <p>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전문개정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 11. 28.></p> <p>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p>	<p>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 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 11. 20.></p> <p>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p> <p>[본조신설 2005. 6. 30.] [중선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p>	<p>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본조신설 2011. 10. 6.]</p> <p>제16조(검사결과와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p>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p> <p>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p>	<p>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1. 12. 31.]</p> <p>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p> <p>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p>[본조신설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p> <p>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p> <p>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6. 1., 2014. 3. 24.></p> <p>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4. 3. 24.></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p>	<p>11. 20., 2021. 1. 5.)</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8. 11. 20.]</p> <p>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p>④ 삭제 <2004. 12. 31.> ⑤ 삭제 <2004. 12. 31.>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1. 3. 28.] [제목개정 2011. 4. 5.]</p> <p>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p>	<p>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8. 11. 20.> [본조신설 2001. 12. 19.]</p>	<p>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5. 6. 30.]</p> <p>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p> <p>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p>	<p>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p> <p>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p>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p>	<p>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p> <p>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p> <p>[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p> <p>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p>	<p>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p> <p>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 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p>[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15. 3. 24.]</p>	<p>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p>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p> <p>2.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계획이 적정인지 여부</p> <p>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p> <p>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6. 1.)</p> <p>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p> <p>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p> <p>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p> <p>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4. 5.]</p>		<p>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p> <p>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p> <p>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p> <p>[전문개정 2005. 6. 30.]</p> <p>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p> <p>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p> <p>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p> <p>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p>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1. 27.></p> <p>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 11. 27.></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애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4. 3. 24.></p> <p>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p>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8. 11. 27.> [본조신설 2005. 6. 30.]</p> <p>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p>2의2. 불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p>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애의 토지이용 계획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p> <p>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0.></p> <p>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1. 20.></p> <p>[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8. 11. 20.]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p>	<p>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p> <p>4. 토양정밀조사 결과</p> <p>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7.></p> <p>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p> <p>2. 현장조사 방법</p> <p>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p> <p>4. 독성평가 자료</p> <p>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p>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p> <p>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p> <p>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p> <p>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p>⑧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도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p> <p>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p> <p>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p> <p>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도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 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④ 위해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중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1. 10. 6.)]</p> <p>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4. 3. 24.></p> <p>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p>	<p>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 대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1. 9. 30.>]</p>	<p>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p> <p>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본조신설 2011. 10. 6.]</p> <p>[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7로 이동 <2011. 10. 6.>]</p> <p>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1. 27.></p> <p>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p> <p>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p> <p>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p>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 <p>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p>	<p>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p>[본조신설 2011. 9. 30.]</p> <p>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p>	<p>[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p> <p>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08. 7. 30., 2013. 5. 31.></p> <p>[본조신설 2005. 6. 30.]</p> <p>[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 10. 6.>]</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p>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p>	<p>러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p>[본조신설 2011. 9.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p> <p>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 4. 5.)</p> <p>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p>	<p>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p>	<p>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p> <p>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p>	<p>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8. 11. 20.></p> <p>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p> <p>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p>	<p>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 12. 31.)]</p> <p>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 12. 31., 2005. 6. 30.></p> <p>[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회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p>	<p>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산설 2005. 6. 30.]</p> <p>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p>	<p>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5조에서 이등,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등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p>	<p>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05. 6. 30.]</p>	<p>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p> <p>[본조신설 2001. 12. 31.]</p> <p>[제목개정 2005. 6. 30.]</p> <p>[중선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 12. 31.)]</p> <p>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p> <p>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p>	<p>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p> <p>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p> <p>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p>	<p>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8. 11. 27.></p> <p>[전문개정 2008. 7. 30.]</p> <p>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4., 2017. 1. 17.></p> <p>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5.></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11. 28.></p> <p>[제목개정 2011. 4. 5.]</p> <p>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p>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7. 1. 6., 2018. 11. 20.></p>	<p>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 [종전 제23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4. 12. 31.>]</p> <p>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 3. 28., 2004. 12. 31.)</p> <p>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p>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p>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5. 31.></p> <p>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p>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p> <p>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1.></p>	<p>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6. 30.] [중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 6. 30.>]</p> <p>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 9., 2005. 6. 30., 2005. 7. 22., 2008. 10. 8., 2009. 6. 16., 2013. 5. 31., 2018. 11. 20.></p>	<p>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 7.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 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중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 12. 31.>]</p> <p>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지방환경관서 2. 국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p>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p> <p>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p> <p>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p>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09. 6. 16.> [본조신설 2001. 12. 19.]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p>	<p>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11. 10. 6.,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p>[본조신설 2001. 12. 31.]</p> <p>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3. 24.></p> <p>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1. 12. 31.]</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외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p> <p>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p> <p>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p> <p>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p> <p>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p>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p> <p>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p>	<p>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p> <p>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20. 7. 14.]</p>	<p>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p> <p>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p>	<p>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p> <p>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p>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p> <p>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p> <p>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p> <p>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p> <p>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p> <p>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p> <p>③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p> <p>[본조신설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 <개정 2011. 4. 5.></p> <p>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p>		<p>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p> <p>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p> <p>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 6. 30.></p> <p>[본조신설 2005. 6. 30.]</p> <p>[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p> <p>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p> <p>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7.></p> <p>③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30.></p> <p>[본조신설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 4. 5.]</p>		<p>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대책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제목개정 2009. 6. 25.]</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서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9. 11. 26.)</p>		<p>[제28조에서 이동 (2001. 12. 31.)]</p> <p>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p> <p>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1. 26.) [전문개정 2011. 4. 5.]</p> <p>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p>[전문개정 2011. 4. 5.]</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3. 24.></p>	<p>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 12. 19., 2002. 8. 8., 2005. 6. 30., 2011. 9. 30.,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 	<p>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p> <p>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 6. 30.></p> <p>② 삭제 <2009. 6. 25.> [본조신설 2001. 12. 31.] [제32조에서 이동 <2005. 6.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p>	<p>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 5의3. 삭제 (2013. 5. 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p> <p>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p> <p>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p> <p>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p> <p>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p> <p>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p> <p>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p> <p>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p> <p>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p> <p>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p> <p>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협의</p> <p>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p> <p>[재무개정 2013. 5. 31.]</p> <p>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p>	<p>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 <개정 2011. 4. 5.></p> <p>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p> <p>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 	<p>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14년 1월 1일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p>[전문개정 2013. 12. 30.]</p>	<p>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2014년 1월 1일 제2의2. 삭제 <2017. 11. 30.> 제3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제31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주기·시간: 2014년 1월 1일 <p>[전문개정 2014. 4. 30.]</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 자</p> <p>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p> <p>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p> <p>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p> <p>[전문개정 2011. 4. 5.]</p> <p>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4. 5., 2012. 6. 1., 2014. 3. 24.)</p> <p>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p> <p>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p> <p>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p> <p>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p> <p>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p> <p>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p> <p>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p> <p>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p> <p>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p> <p>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p> <p>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p> <p>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4. 12. 31.]</p> <p>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25.]</p> <p>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 	<p>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6. 16.]</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p> <p>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p> <p>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p> <p>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p> <p>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25.]</p> <p>부칙 <제4906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878호, 1999.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452호, 2001.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p>	<p>부칙 <제14848호, 1995. 12. 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05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p> <p>부칙 <제17432호, 2001. 12. 19.></p>	<p>부칙 <제16호, 1996. 1. 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0호, 1999. 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p> <p>부칙 <제121호, 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증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p> <p>제3조(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질설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p>	<p>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18213호, 2004. 1. 9.) (산림청과고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p>	<p>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을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p> <p>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을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오염유발시설”로 한다.</p> <p>부칙 <제6627호, 2002. 1. 26.> (민사집행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⑧내지 (5)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6846호, 2002. 12. 30.>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로 한다.</p> <p>⑧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910호, 2005. 6.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p>	<p>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6호, 2005. 6. 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p> <p>㉞생략</p> <p>부칙 <제6893호, 2003. 5. 29.> (소방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291호, 200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p>	<p>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①생략 ②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p> <p>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p> <p>제3조 생략</p>	<p>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p> <p>부칙 <제190호, 2005. 12. 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200호, 2006. 3. 7.></p> <p>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및공정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p>	<p>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⑦ 생략</p> <p>부칙 <제21542호, 2009. 6.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⑰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6호, 2007. 11.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p> <p>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196호, 2011. 9.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부칙 <제23529호, 2012. 1. 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4호, 2008. 7.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33호, 2009. 6.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⑥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및 ⑪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52호, 2007. 4. 11.></p>	<p>부칙 <제24566호, 2013. 5. 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6160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636호, 2016. 11. 29.></p>	<p>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 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411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③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469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p> <p>부칙 <제2776호, 2017. 1. 6.> (광산안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9292호, 2018. 11.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p>	<p>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27호, 2011. 10. 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09호, 2013. 5.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2 까지 생략 ⑤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⑤4 부터 ⑥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0314호, 2010. 5. 2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0551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11461호, 2012. 6.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p>	<p>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848호, 2020. 7.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78 650 1487 773"> <tr> <td data-bbox="1078 650 1162 773">2. 유해화학물질 의 제조 및 저장 시설</td> <td data-bbox="1162 650 1487 773">「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2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 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 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td> </tr> </table>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97호, 2015. 3.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p>	2. 유해화학물질 의 제조 및 저장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2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 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 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2. 유해화학물질 의 제조 및 저장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2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 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 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464호, 2012. 6.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2호, 2015. 11.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48호, 2016. 4.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⑫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2522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169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533호, 2015. 12. 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776호, 2018. 11. 27.〉</p> <p>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 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 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73호, 2020. 7. 14.〉</p> <p>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p> <p><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56>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02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p> <p>부칙 <제15658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p>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p> <p>부칙 <제16613호, 2019. 11. 2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5685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5689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5690

[별표 1] (개정 2019. 7.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스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동력사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기술인력	해당 분야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 가.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2)부터 5)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검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 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증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고

1.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1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번호	장비명	수량 (단위: 대)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스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1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1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비고

1.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7. 1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자봉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 비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8. 1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의2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마. 법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50	100	200
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4호	50	70	100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	100	150	20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2	100	150	200
자.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확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3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 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의4	100	150	200
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 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6호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7호	100	150	200
하.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8호	150	170	200
거.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1호	50	100	200
러.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1호의2	50	100	200
머.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서.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3호	100	150	2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5695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5695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5696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5697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5698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5698
[별표 6]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5699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5699
[별표 6의3]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5700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5702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5703
[별표 9] 삭제(2005.6.30.)	5703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5703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5704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5705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5705

[별표 1]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18. 11. 2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결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 3]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

- 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요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발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명	세 부 기 준
저장시설 부문	이중벽 탱크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탱크 전용실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넘침(Over Flow) 방지장치	-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탱크 집유통 (集油桶, sump)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누유(漏油)감지 및 경보장치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주유·이송 부문	이중 배관	-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주유기 집유통	-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기 타	유수분리시설	-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상의 구조로 시공

2. 유지·관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운영관리자 지정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정기 점검	탱크부/계측구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수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맨홀부	-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주유기	-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배관이음쇠 (Quick coupling)	-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지 여부) - 배관이음쇠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주입박스	-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유수분리조	-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기름도랑 (trench)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나. 가목에 따른 검사 후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5] <개정 2018. 11. 2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18. 11. 27.>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6의2] <개정 2018. 11. 27.>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9. 12. 20.>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오염토양의 양(㎡)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일/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0 미만	1	3	4	2
1,000 이상~3,000 미만	3	11	14	6
3,000 이상~5,000 미만	4.5	14	17	10
5,000 이상~10,000 미만	6	22	26	18
10,000 이상~20,000 미만	8	34	35	20
20,000 이상~50,000 미만	15	45	58	29
50,000 이상~100,000 미만	28	81	89	58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면적(㎡)	지점수(점)	격자간격(m)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면적(㎡)	지점수(점)	격자간격(m)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비고

- (가) 오염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별표 7]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2	30	180
구리	450	1,500	6,000
비소	75	150	600
수은	12	30	60
납	600	1,200	2,100
6가크롬	15	45	120
아연	900	1,800	5,000
니켈	300	600	1,500
불소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시안	5	5	300
페놀	10	10	50
벤젠	3	3	9
톨루엔	60	60	180
에틸벤젠	150	150	1,020
크실렌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벤조(a)피렌	2	6	21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계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반침묵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8] <신설 2001.12.31>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목적 2. 지정일자 : 년 월 일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소 나. 면적 다. 약도 |
|---|

비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삭제 <2005.6.30>

[별표 10]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구리·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카클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시료채취비	91,900/공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646,000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1,498,000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1,690,000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1,921,000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체적수수료	m ³ 당 22,500

비고

-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1의2] <개정 2016. 12. 30.>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2] <개정 2018.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7)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2항제3호	6개월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지정취소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1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6)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 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5718	제1조(목적) 5718	제1조(목적) 5718
제2조(정의) 5718		
제3조(적용 범위) 5719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5719	제2조(적용범위) 5719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5720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722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572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5721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5722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5722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5721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723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722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5722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5724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5724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5725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5724	제6조(관리카드) 5724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5726	제4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5725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5726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5726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5726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5726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57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5728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5727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5728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5728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5728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5729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5730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5731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5731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5731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5731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5732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5732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732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5732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5733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5733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5735	제6조의4(사업장 관할) 5735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5733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5735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5735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5736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5737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5737	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5737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5738 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5738 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5739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5739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5738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5741
제8조의6(과징금) 5741	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5741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574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허가의 제한) 5743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5743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5743 제7조 삭제 5744 제8조 삭제 5744 제9조 삭제 5744 제10조 삭제 5744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5744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5744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742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5743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5744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5744	제11조(주민지원사업) 5745	제9조(수질 유지기간) 5745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 8. 3.)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5745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5746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5747 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5748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5750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5750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5748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5748 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5750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5750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5751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5751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5751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5751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5751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 8. 3.)	제18조(통보 등) 5753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5752
제13조(수질개선사업) 5752 제1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57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5754 제15조의2 삭제 5756		제13조 삭제 5756 제14조 삭제 5756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5756		제15조(관거의 관리) 5756 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5756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5757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5757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 8. 3.)		
제16조(수질개선훈별회계의 설치 등) 5758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5758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5758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5758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5759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5759	
	제22조(자료의 제출) 5759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5760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5760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5761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5761	
	제26조(강제징수 위탁) 5762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5762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5762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5763
제21조(기금의 재원) 5763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5764	
제22조(기금의 용도) 5763	제28조(기금의 용도) 5764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5765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5765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57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5767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5768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5768 제7장 보칙 (개정 2007. 8. 3.)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5769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5769 제28조(개선 요청 등) 5769 제28조의2(청문) 5770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5770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772 제8장 벌칙 (개정 2007. 8. 3.) 제30조(벌칙) 5773 제31조(양벌규정) 5773 제32조(과태료) 5773 부칙 5775	제30조(권한의 위임) 5770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5771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71 제30조의4(규제의 재검토) 5772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773 부칙 5775	제18조(규제의 재검토) 5772 부칙 577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1999. 2. 8 법률 제5932호 개정 2001. 1. 16 법률 제6362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유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p> <p>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12.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05.12.29 법률 제7781호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매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14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4호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 5.31 법률 제10335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8 법률 제12369호 2015. 2. 3 법률 제13172호</p>	<p>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2호 개정 2009. 5.28 대통령령 제21509호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인입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1. 4. 5 대통령령 제22876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9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4. 5. 9 대통령령 제25346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16호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7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1.23 대통령령 제28604호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3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 7.21 대통령령 제30862호</p>	<p>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72호 개정 2011. 5.31 환경부령 제416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 5. 9 환경부령 제554호 2014. 7.17 환경부령 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14. 7.29 환경부령 제568호 2015. 8. 4 환경부령 제611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6. 7.26 환경부령 제665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환경오염사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8. 1.17 환경부령 제741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2020. 7.17 환경부령 제874호 2020.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p> <p>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89호</p> <p>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p> <p>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p> <p>2017.11.28 법률 제15104호</p> <p>2019.11.26 법률 제16607호 (수도법)</p> <p>2019.11.26 법률 제16615호</p> <p>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령을 위한 법률)</p> <p>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p> <p>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 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p>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개정 2007. 8. 3.)</p> <p>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추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3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p> <p>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p> <p>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p>	<p>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p>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8. 3.]</p> <p>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p>	<p>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p> <p>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p> <p>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② 삭제 (2016. 7. 26.)</p> <p>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p>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p> <p>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p> <p>나. 「공공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p> <p>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p> <p>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p> <p>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p> <p>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p> <p>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p> <p>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p> <p>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p> <p>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p>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p> <p>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p> <p>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p> <p>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p> <p>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p> <p>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 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 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鱗室水中槽)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 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 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목개정 2014. 1. 28.]</p>	<p>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p> <p>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 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 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4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 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서식</p> <p>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p> <p>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이용현황, 권리설 	<p>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제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9.]</p> <p>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p>[본조신설 2014. 7. 29.]</p> <p>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p>	<p>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p> <p>④ 삭제 (2014. 7. 28.)</p> <p>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p>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겨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p> <p>가. 영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나. 영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p> <p>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p> <p>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07. 8. 3.)</p> <p>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p>나. 연결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p> <p>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p>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p>	<p>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p> <p>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p> <p>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p> <p>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광역시·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p>④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p>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 5. 31.]</p>	<p>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p> <p>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본조신설 2011. 5. 30.]</p>	<p>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도에 둔다.</p> <p>② 조사·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2.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 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p>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본조신설 2011. 5. 30.]</p>	<p>[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p>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p> <p>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p> <p>[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p> <p>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p> <p>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p>		<p>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p>[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할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할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p> <p>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승인</p> <p>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⑥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본조신설 2010. 5. 31.]</p>		<p>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p> <p>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p> <p>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p> <p>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 7. 26.></p> <p>③ 지방환경관서의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7. 26.></p> <p>[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29.></p> <p>[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p>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p>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p>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械)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로</p>	<p>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본조신설 2011. 5. 30.] 	<p>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1. 5. 31.] <p>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15., 2014.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 <p>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9.> [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p> <p>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조업정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p> <p>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p> <p>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p>	<p>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p>	<p>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본조신설 2011. 5. 31.]</p> <p>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p> <p>⑥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목개정 2016. 7. 12.]</p> <p>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p> <p>[본조신설 2011. 5. 30.]</p> <p>[제목개정 2016. 7. 12.]</p> <p>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1.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p> <p>2.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 간의 차이를 반영</p>	<p>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p>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폐쇄완료의 이행여부 또는 점검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p> <p>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제6조의6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p> <p>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p>	<p>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p> <p>[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p> <p>③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p> <p>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p> <p>[본조신설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p> <p>제8조의6(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또는 채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5. 30.] [제목개정 2016. 7. 12.]</p> <p>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p>[본조신설 2011. 5. 30.]</p>	<p>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p>[본조신설 2011. 5. 31.] [제목개정 2016. 7. 26.]</p> <p>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0. 5. 31.]</p>		<p>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p> <p>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p> <p>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p> <p>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p> <p>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p> <p>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p> <p>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p> <p>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p> <p>[본조신설 2010. 5. 31.]</p> <p>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p>	<p>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p>	<p>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한 지역 2. 허가제한 대상 3. 허가제한 기간 <p>[본조신설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적 지원의 중단·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p>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1. 7. 21.> [전문개정 2007. 8. 3.]</p> <p>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6. 7. 12.,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본조신설 2011. 5. 30.] <p>제7조 삭제 <2011. 5. 30.> 제8조 삭제 <2011. 5. 30.> 제9조 삭제 <2011. 5. 30.> 제10조 삭제 <2011. 5. 30.></p> <p>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0.,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삭제 <2011. 5. 30.> 4. 삭제 <2011. 5. 30.> <p>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4. 7.</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 8. 3.)</p> <p>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p>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p>[본조신설 2011. 5. 30.]</p> <p>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p>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p>	<p>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 한 수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p>[제목개정 2014. 7. 28.]</p> <p>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p> <p>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p>	<p>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p> <p>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p> <p>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p> <p>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p> <p>7.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p>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p>	<p>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p> <p>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p> <p>3. 교육기자재(教育機資材) 공급 등 육성사업</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p> <p>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p> <p>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p> <p>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p> <p>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p> <p>[전문개정 2007. 8. 3.]</p>	<p>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 5. 9.]</p> <p>[제목개정 2014. 7. 28.]</p> <p>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p> <p>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p> <p>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p> <p>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p> <p>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p>	<p>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p> <p>3. 해당 시·군·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p> <p>[본조신설 2014. 7. 29.]</p> <p>제10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②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9.]</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보하여야 한다.</p> <p>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p> <p>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30.)</p> <p>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p> <p>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p> <p>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재심의 전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p> <p>⑦ 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p>	<p>한다.</p> <p>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p> <p>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8.]</p>	<p>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7. 17.></p> <p>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p>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p> <p>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8. 3.]</p> <p>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7. 8. 3.]</p>	<p>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p>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p> <p>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p> <p>⑤ 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분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8. 4.]</p> <p>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 8. 3.></p> <p>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p>②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p>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전문개정 2007. 8. 3.]</p> <p>제1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p>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p>④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p>	<p>제18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p>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p>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p> <p>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허가</p> <p>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p> <p>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p> <p>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p> <p>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p> <p>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17. 삭제 (2010. 4.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p> <p>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15조의2 삭제 <2017. 11. 28.></p> <p>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7. 8. 3.]</p>		<p>제13조 삭제 <2018. 1. 17.></p> <p>제14조 삭제 <2018. 1. 17.></p> <p>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6. 7. 26.></p> <p>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5. 31.></p> <p>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p> <p>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8. 3.]</p>	<p>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p>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 5. 31.>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1.>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 8. 3.></p> <p>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p> <p>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p>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p>	<p>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 보조·용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p>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p>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p> <p>제22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수(原水)의 취수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는 제21조에 따른 구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2020. 7. 21.>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구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p>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p>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p> <p>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8. 3.]</p>	<p>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9. 5. 28.]</p> <p>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p>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p> <p>①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 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⑤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p>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p> <p>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p> <p>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p> <p>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2. 주민지원사업</p> <p>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p> <p>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p> <p>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p> <p>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p> <p>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p> <p>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매우좋은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p> <p>[본조신설 2011. 5. 30.]</p> <p>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28., 2014. 5. 9., 2018. 1. 16., 2019. 1. 8., 2020.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p> <p>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개선훈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p>	<p>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스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p>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p> <p>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8.></p> <p>[제목개정 2014. 5. 9.]</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설 2014. 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한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따라야 한다.</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⑧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 [시행일 : 2022. 1. 1.] 제24조</p> <p>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p>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③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0. 5. 31.]</p> <p>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p> <p>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 <개정 2007. 8. 3.></p> <p>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p> <p>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8. 3.]</p> <p>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p>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p> <p>제2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p>	<p>제30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8. 1. 23.>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5. 30.,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 2. 삭제 <2016. 7. 12.>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p>3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8조의4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명령 5. 법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6. 법 제8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9.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p> <p>10. 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체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급에의 납입</p> <p>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2.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조사</p> <p>제30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p>[중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p> <p>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6. 7. 12.)]</p> <p>제30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의5 및 별표 2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4년 7월 29일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 <p>[전문개정 2014. 7. 28.] [제30조의3에서 이동 (2016. 7. 12.)]</p>	<p>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임소정원: 2016년 1월 1일 1의2.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와 기록·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삭제 (2018. 1. 17.) <p>[본조신설 2014. 4. 30.]</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6. 1. 27.]</p> <p>제8장 벌칙 <개정 2007. 8. 3.></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31.,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31.,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1의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p>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 5. 30.></p> <p>[본조신설 2011. 4. 5.]</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p> <p>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p> <p>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3.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p> <p>4. 삭제 <2017. 11. 28.></p> <p>5. 삭제 <2017. 11. 28.></p> <p>6. 삭제 <2017. 11. 28.></p> <p>7.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8.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31.></p> <p>④ 삭제 <2008. 12. 31.></p> <p>⑤ 삭제 <2008. 12. 31.></p> <p>[본조신설 2007. 8. 3.]</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32호, 1999. 2. 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07.8.3></p> <p>제3조(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62호, 2001. 1. 16.></p> <p>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82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수립한다.</p> <p>제3조(일시적 전출차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설 운영비용의 지원은 2009년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2009년 1월분부터 부과한다.</p> <p>제6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09호, 2009. 5.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2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되는 해당 계획의 제출일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일로 한다.</p> <p>제3조(관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16호, 2011. 5.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부터 제8조의2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 <p>제2조(기본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6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내지 (74)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016호,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이후 통보되어 2009년 5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물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p> <p>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기간에 관한 특례) 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7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강원도·충청북도 관할 시장·군수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은 제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2〉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876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의 시행성적을 평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49호, 2011. 5.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4호, 2014. 5. 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3호, 2014. 7. 17.〉 (하수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8호, 2014. 7. 29.〉</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1호, 2015. 8. 4.〉</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립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립의 지정해제”로 한다.</p> <p><75>내지 <87>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81호, 2005. 12. 29.></p> <p>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p> <p>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p> <p>⑪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13년 6월 1일 2. 강원도·충청북도: 2020년 6월 1일</p> <p>제2조(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6월 1일을 말한다.</p> <p>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p>	<p>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호, 2016. 7. 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6, 제8조의17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6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p> <p>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52)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p> <p>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⑨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27호, 2014. 1.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부칙 <제25346호, 2014. 5.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⑧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741호, 2018. 1. 17.></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p> <p>⑮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p> <p>⑯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p> <p>⑦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p>	<p>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시적 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516호, 2014. 7.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37호, 2016. 7. 12.></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11,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4호, 2020. 7.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7호,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p> <p>⑫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2)의 기준”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㉞내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내지 <77>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③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③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등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p> <p>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p> <p>(59)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②내지 ⑥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⑦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04호, 2018. 1.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73호, 2019. 1. 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862호, 2020. 7. 2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㉞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14호, 2007. 8.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6 577 565 677"> <tr> <td data-bbox="126 577 196 624">186의2</td> <td data-bbox="196 577 443 62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td> <td data-bbox="443 577 565 624">오염행위 제한지역</td> </tr> <tr> <td data-bbox="126 624 196 677">186의3</td> <td data-bbox="196 624 443 67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td> <td data-bbox="443 624 565 677">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㉟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p>	186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186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86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186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㉔ 및 ㉕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㉖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㉗ 부터 ㉙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1> 까지 생략</p> <p><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14호, 2008. 12. 3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㉔ 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p> <p>〈58〉부터 〈61〉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p> <p>〈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p> <p>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67〉부터 〈75〉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5>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5호, 2010. 5.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 1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시·군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p> <p>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p> <p>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26 832 565 926"> <tr> <td data-bbox="126 832 191 879">213의2</td> <td data-bbox="191 832 457 879">「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td> <td data-bbox="457 832 565 879">건축 등 허가제한지역</td> </tr> <tr> <td data-bbox="126 879 191 926">213의3</td> <td data-bbox="191 879 457 9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td> <td data-bbox="457 879 565 926">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td> </tr> </table> <p>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p>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p> <p>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p> <p><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p> <p><82> 및 <83>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 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2>부터 <710>까지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p> <p><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7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p> <p><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119>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69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가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2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⑦ 및 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p> <p>제4조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89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5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p> <p>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과금·가산금·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p> <p><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63>부터 <65>까지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04호, 2017. 11. 28.></p> <p>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07호, 2019. 11. 26.>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15호, 2019. 11. 26.></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0>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5805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5805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5806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5808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5809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5809

[별표 1] <신설 2014.7.28> [시행일:2016.1.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 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생수 생산업	11202	세병(洗瓶)·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 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8. 1. 16.>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개정 2019. 7.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8조의4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체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 - 6 - 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 - 6

- 비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않은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단가	
	BOD	T-P
2011년	5,800원	25,000원
2012년 이후	5,8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

비고: 연도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la	l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³)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오염총량초과과징금} = (\text{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2) 분뇨 분리 구조로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 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시설에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2) 주민의 건강 진단과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 관련 시설의 설치·구입 또는 운영
-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구입 또는 운영
-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3)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비고
- (1)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2)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 가. 태양열이용시설·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나. 주택개량 등에 드는 자금의 지원
-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라.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 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바. 조림·육림 등 수원(水源)을 함양하기 위한 산림사업 중 산주(山主) 부담분
- 사.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예외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 아.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 자.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 차.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 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나.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다.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개정 2014.7.28>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6.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의2	500	700	1,000
다.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라.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바. 법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	400	500
사.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300	400	500
아. 삭제 (2018. 1. 23.)				
자. 삭제 (2018. 1. 23.)				
차. 삭제 (2018. 1. 23.)				
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7호	300	400	500
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8호	300	400	5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5813
[별표 2]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5814
[별표 3]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5815
[별표 4]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5815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5816
[별표 6]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5816
[별표 7]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5817
[별표 7의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5817
[별표 8] 삭제 <2018. 1. 17.>	5818
[별표 9]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5818

[별표 1] <개정 2014.5.9>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한강 또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한강수계 내의 지역과 한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분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간석1동·간석2동·간석3동·간석4동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시흥시 과림동·목감동
	군포시(대야동· 군포2동은 제외한다)
	의왕시(부곡동은 제외한다)
	용인시 포곡읍·모현면·원삼면 일부(사암리·좌항리·맹리·미평리·가재월리·두창리)·백암면·양지면·중앙동(김량장동·남동)·역삼동(역북동·삼가동)·유림동(유방동·고림동)·동부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구성동(연남동·청덕동)·마북동·보정동·수지구(상현동은 일부 제외한다)
안성시 일죽면·삼죽면(내장리·덕산3리·배태리·용월리·울곡리만 해당한다)·죽산면(당곡리·칠장리·두교리는 제외한다)	
구분	범위

구분	범위
	김포시 김포1동·김포2동·김포3동·고촌면·하성면·대곶면(거물대1리·거물대2리·대능3리·대능4리·대능5리·오니산리·울생2리·울생3리·울생4리·초원지1리·초원지2리·초원지3리만 해당한다)·양촌면(학운1리·학운2리·학운3리·학운4리·학운5리·학운6리·대포2리는 제외한다)·월곶면(개곡1리·개곡2리·개곡3리·개곡4리·용강리·조강1리·조강2리만 해당한다)·통진면(가현3리·가현4리·용정1리·용정2리·용정3리는 제외한다)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강릉시 왕산면(고단리·대기리·송현리만 해당한다)
	고성군 간성읍(흙1리·흙3리만 해당한다)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사조동·화전1동·화전2동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감물면·괴산읍·문광면·불정면·소수면·연풍면·장연면·청천면·칠성면·사리면(수암1리·수암2리·수암3리·이곡1리·이곡2리·이곡3리·이곡4리·화산1리·화산2리·화산3리·화산4리·화산5리만 해당한다)·청안면(문당1리·문당2리·백봉1리·백봉2리·백봉3리·부흥1리·부흥2리·부흥3리·부흥4리·부흥5리·운곡리·장암1리·장암2리·장암3리·장암4리만 해당한다)
	보은군 내북면(대안리·도원리·동산리·법주리·봉황리·성암리·성티리·염둔리·적음리·창리·화전1리·화전2리만 해당한다)·내속리면(갈목리·백현리·북암1리·북암2리·사내1리·사내2리·사내3리·사내4리·사내5리·사내6리·상판리·중판리·하판리만 해당한다)·산외면(봉계1리·봉계2리·아시리·구티리·문암리는 제외한다)
	음성군 감곡면·생곡면·소이면·금양읍(각회1리·각회2리·구계1리·구계2리·금석1리·금석2리·내곡리·내송1리·무곡1리·무곡2리·무곡3리·무곡4리·백

구분	범위
	야1리·백야2리·싸봉2리·육령1리·육령2리·정생1리·정생2리·호산1리·호산2리만 해당한다)·삼성면(능산1리·능산2리·대정1리·대정2리·용대1리·용대2리만 해당한다)·원남면(구안리·상노리·상당2리·상당리·하노1리·하노2리·하노3리·하당1리·하당2리·대야리만 해당한다)·음성읍(갑우리·사정1리·사정2리·석인1리·석인2리·소여1리·소여2리·신천1리·신천2리·신천3리·신천4리·신천5리·용산1리·용산2리·용산3리·용산4리·용산5리·용산6리·읍내1리·읍내2리·읍내3리·읍내4리·읍내5리·읍내6리·읍내7리·읍내8리·평곡1리·평곡2리·평곡3리·평곡4리·평곡5리·한벌1리·한벌2리만 해당한다)
	청원군 미원면·낭성면(갈산리·관정1리·관정2리·귀래리·무성1리·무성2리·문리·삼산1리·삼산2리·이목1리·이목2리·인경리·지산1리·지산2리·지산3리·현암리·호정1리·호정2리만 해당한다)
	청주시 산성동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명전리·석항리 일부·생달리 일부만 해당한다)·가은읍(완장리 일부만 해당한다)
	봉화군 춘양면(우구치리만 해당한다)
	상주시 화북면(은흥리·입석리·중벌리만 해당한다)
	영주시 단산면(마라리만 해당한다)·부석면(남대리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4.5.9>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방법(제8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bigcirc \text{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bigcirc \text{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bigcirc \text{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8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e \text{ (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dots, X_a, \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11.5.31>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8조의11제4항 관련)

-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text{○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실측평균수질}} \times 10^6$$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8조의11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4.7.29>

행정처분기준(제8조의1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조업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해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8조의4의 제6항 또는 제8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나. 가목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기간에 조업을 한 경우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별표 6] <개정 2014.7.29.>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 나. II 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 다. III 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I 지역·II 지역·IV 지역 외의 특별대책 지역): 3
- 라. IV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I 지역의 면적 × 5) + (II 지역의 면적 × 4) + (III 지역의 면적 × 3) + (IV 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가. 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 나. 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3를 곱한 금액
- 다. III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 라. IV 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를 곱한 금액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7] <개정 2014.7.29>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6에 따른 I지역, II지역, III지역, IV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7의2] <신설 2015.8.4.>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사업 부문	대상 사업의 범위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관련 사업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가. 수생태계의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친환경첨단기술 분야 지원 부문	디지털, IT산업 및 정보통신·문화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발전 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관광단지 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 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에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별표 8] 삭제 <2018. 1. 17.>

[별표 9] <개정 2019. 12. 20.>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水密)검사(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의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아니하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도(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도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250	350	500	600	700	800	1000
누수 허용량 (L/m)	0.042	0.058	0.083	0.1	0.117	0.133	0.167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N/cm²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검사

1) 맨눈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한정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Television)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 디스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조사의 실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각종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량계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기준(우기 시는 강우 종료 후 강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19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목 차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5825
제2조(기능)	5825
제2조의2(등기 사항)	5825
제3조(회의)	5825
제3조의2(자문위원회)	5825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5826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5826
제3조의5(협의회 구성 등)	5826
제3조의6(협의회 회의 및 운영)	5826
제4조(실무위원회)	5826
제5조(사무국)	5826
제6조(여론의 수집)	5827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5827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5827
제9조(운영세칙)	5827
부칙	582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2호
 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5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0. 3.28 대통령령 제16763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5. 4.27 대통령령 제18804호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10. 3. 4 대통령령 제22068호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8호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7호
 2017. 1.31 대통령령 제2781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9.)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10. 3. 4.]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1.]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17. 1. 31.>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국장
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군의 시장·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환경부차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본조신설 2011. 7. 1.]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련 상임이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4.]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전문개정 2010. 3. 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4.]

부칙 <제16242호, 1999.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8호, 1999. 5. 2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 소속”을 “한강유역환경청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 2000.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청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 단중 “한강유역환경청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 2005.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㉓내지 ㉕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 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8호, 2011.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7호, 2014.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8호, 2017.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8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831
0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961
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311
04.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6365

제8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839	제1조(목적) 5839	제1조(목적) 5839
제2조(정의) 5840	제2조(사육동물) 5840	제2조(배출시설) 5840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584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5840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5842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5842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5842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 5842
제6조 삭제 5843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 3. 24.>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5843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5843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5843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5845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5845	제3조의4(토지 출입증) 5845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5845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5845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5847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5846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5848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5849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5849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5849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5849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850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5850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5851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5851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5853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58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5854	제10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5854 제11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5854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5854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5854 제10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5854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5855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5855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5855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5856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5856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5856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5856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5856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5857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5857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5859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5858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5858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5859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5859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5860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5860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5861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5861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5862	제13조(액비 살포기준) 5862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5862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5863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5863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5863
제18조(허가취소 등) 5864		제17조(행정처분기준) 5865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5866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5866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5866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5866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5866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5867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5867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5868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58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5868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5869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5869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5869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5869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5870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5871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5872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5872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5873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5873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5874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5874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5875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5875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5875		제25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5876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5876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5876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5877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5878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5878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5878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5879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5879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5878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5878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5878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5879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5880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5881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5882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5882
제31조(결격사유) 5882		제32조(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5882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5883		
제33조(과징금 처분) 5884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5884	제33조 삭제 5884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5885	제2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5885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5885
	제22조 삭제 5885	
		제35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5886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5886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5886
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5887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5888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5888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5888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5888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5888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족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889	제23조의2(가족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5889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5889
제37조의3(가족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5889	제23조의3(가족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5889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5889
제38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5890		제40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5890
		제41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5890
		제42조(교육과정 등) 5891
		제43조(교육계획) 5891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5891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5892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5892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5893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5893		제46조(가족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589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5894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5894
제41조(보고·검사) 5894		제48조(출입·검사 등) 5894
		제49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5895
제42조(국고보조) 5895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5895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5896	제24조(처리실적 보고) 5896	
제45조(수수료) 5896		제50조(수수료) 5896
		제50조의2 삭제 5896
제46조(청문) 5896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5897	제25조(권한의 위임) 5897	
	제26조(업무의 위탁) 5897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897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5899	제51조(규제의 재검토) 5899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5899		
제49조(벌칙) 5900		
제50조(벌칙) 5901		
제51조(벌칙) 5903		
제52조(양벌규정) 5904		
제53조(과태료) 590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905	
부칙 5907	부칙 5907	부칙 590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6. 9.27 법률 제8010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8354호 (축산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2. 4 법률 제10036호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3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30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3.24 법률 제12516호 2015.12. 1 법률 제13526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2018. 3.20 법률 제15510호 2018.10.16 법률 제15829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개정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한식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간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5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3.24 대통령령 제26158호 2016. 5.31 대통령령 제27198호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2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 2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업무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11. 8 환경부령 제383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1.22 환경부령 제432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41호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20 환경부령 제48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 3.25 환경부령 제599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양사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 2 환경부령 제657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5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23 환경부령 제75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0 환경부령 제84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15. 12. 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울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 	<p>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p>	<p>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우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p> <p>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p> <p>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농협조합</p> <p>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p> <p>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p> <p>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p>	<p>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과 수집·운반·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p>	<p>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6조 삭제 (2010. 2. 4.)</p> <p>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 3. 24.)</p> <p>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합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실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p>	<p>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p> <p>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제목개정 2015. 3. 24.]</p> <p>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p> <p>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p> <p>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p> <p>나. 가축분뇨의 발생량</p> <p>다.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p> <p>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p> <p>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p> <p>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합량</p>	<p>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조사 목적 및 내용</p> <p>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p> <p>3. 조사지역·지점 및 조사방법</p> <p>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가족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족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p> <p>가. 「약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약취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가족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족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땀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③ 가족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족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4.]</p>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가족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p> <p>[본조신설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p> <p>③ 해프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p>	<p>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족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p> <p>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p> <p>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p> <p>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p> <p>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족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족분노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족분노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족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족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p>	<p>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p>	<p>1. 가족사육 제한의 목적</p> <p>2. 가족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p> <p>3. 가족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p> <p>4. 그 밖에 가족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 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지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지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 3. 24.></p> <p>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p> <p>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p>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p> <p>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p> <p>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p> <p>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p>	<p>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p> <p>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p> <p>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p> <p>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p> <p>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p>	<p>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p>	<p>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용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용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p> <p>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p>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결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류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류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p>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p>	<p>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10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p>제11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초지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3. 25.)]</p> <p>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3. 25.)]</p> <p>제10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p>[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존·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개정 2015. 3. 24.〉</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체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0. 10. 13., 2012. 7. 20.,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p>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② 자원화시설의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5. 12. 1.]</p> <p>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p>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5. 3. 24.]</p>	<p>제11조의2(가족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6. 6. 2.>]</p> <p>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본조신설 2015. 3. 25.]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 6. 2.>]</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p>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4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p>		<p>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p>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p> <p>⑤ 삭제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p> <p>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p> <p>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액비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족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p>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p>	<p>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퇴비·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 3. 24.] 	<p>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p>[본조신설 2016. 6. 2.] [중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6. 6. 2.)]</p> <p>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p> <p>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p>	<p>다. 제철소 로(爐)</p> <p>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 6. 2.]</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p> <p>②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5. 3. 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6. 6. 2.>]</p> <p>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5.></p> <p>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p>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p> <p>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p>야 한다. <개정 2016. 5. 31.></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체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 3. 2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p> <p>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p> <p>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p> <p>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p> <p>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p> <p>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전문개정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증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증지가 가족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증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p> <p>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족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족분뇨</p>	<p>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p>	<p>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p> <p>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p>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 [본조신설 2014.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p> <p>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p> <p>②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 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p> <p>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3. 25.></p> <p>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p>		<p>6. 연간 관리비 소요예산액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3. 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내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p>		<p>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 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p> <p>[본조신설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p>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p>[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3. 25.>]</p> <p>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p> <p>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3. 25.)</p> <p>[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 3. 25.)]</p> <p>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산하는 행위</p> <p>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처리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p>⑩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p>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행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 [본조신설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p> <p>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p> <p>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p> <p>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p> <p>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p> <p>제25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0., 2015. 3. 25.>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능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족분뇨 반입 금지 등 가족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8조(가족분뇨관련영업) ①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족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p>	<p>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패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족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4.></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p> <p>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3. 25.></p> <p>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6. 12. 30.></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 3. 25.></p> <p>[제목개정 2015. 3. 25.]</p> <p>제30조(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족분뇨시설관리</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p> <p>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경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p> <p>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p> <p>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p>	<p>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p> <p>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p> <p>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p> <p>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p>	<p>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p> <p>2. 기술능력 보유현황</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법인등기부 등본</p> <p>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p>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p> <p>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p> <p>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에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10. 13.)</p> <p>1. 영업소의 명칭 변경</p> <p>2. 운반차량의 변경</p> <p>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p> <p>4. 대표자 변경</p> <p>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p> <p>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4.></p>	<p>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족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족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족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족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에 따라 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입하여야 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1.,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p> <p>14.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철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p> <p>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족분뇨관련 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p>	<p>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24.></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p>	<p>제33조 삭제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3. 24.></p> <p>제22조 삭제 <2015. 3. 24.></p>	<p>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p> <p>⑥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p>		<p>2011. 11. 22., 2015. 3. 25.)</p> <p>제35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p>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속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③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족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p>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 3. 25.></p> <p>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p>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농업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료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p>	<p>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p>	<p>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p>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살포하는 자는 그 가족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는 가족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족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38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족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가족분뇨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p>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40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p>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족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 3. 25.></p> <p>제41조(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20. 2.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p> <p>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p> <p>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p> <p>제42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p>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p> <p>제43조(교육계획)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p>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5. 3. 25.]</p> <p>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사·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p> <p>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p>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족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41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족분뇨관련영업자 		<p>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0.></p> <p>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 6. 2., 2020. 2. 20.></p> <p>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p> <p>제48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족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설계·시공업자</p> <p>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량 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p> <p>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p>제49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p>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p>	<p>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15. 3. 25.></p> <p>제50조의2 삭제 <2011. 12. 30.></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p> <p>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p> <p>3. 제27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p> <p>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p> <p>5.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p> <p>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p> <p>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p> <p>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p> <p>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p> <p>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p> <p>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p> <p>[전문개정 2015. 3. 24.]</p> <p>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가족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p>②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4. 8. 6.] [중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p>	<p>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p>[전문개정 2015. 3. 24.]</p>	<p>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2. 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16. 12. 30.> <p>[전문개정 2015. 3. 25.]</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2.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족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p> <p>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족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p> <p>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p> <p>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6. 제18조에 따른 사용증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p> <p>8. 제27조제5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p> <p>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p> <p>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12.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p> <p>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p> <p>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p> <p>16.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1.></p> <p>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p> <p>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p> <p>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p> <p>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6. 제27조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분뇨관련영업자의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p> <p>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p> <p>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3. 24. 법률 제12516호에 의하여 2010. 9.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p> <p>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p>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전문개정 2015. 3. 24.]</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p> <p>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p> <p>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p> <p>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p> <p>12.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p> <p>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부칙 <제8010호, 2006. 9.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4조(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p> <p>제3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p>	<p>부칙 <제250호, 2007. 10.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등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p> <p>제5조(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족분뇨수집·운반업, 가족분뇨처리업, 가족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족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p>	<p>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p> <p>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p> <p>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p> <p>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p> <p>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p> <p>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p>	<p>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p> <p>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p> <p>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p> <p>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의2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p> <p>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p> <p>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족분뇨관련</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p> <p>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④부담금관리기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p> <p>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p> <p>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p> <p>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p> <p>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p> <p>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p>	<p>영업자</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 부터 ⑫ 까지 생략</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⑥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족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p> <p>⑦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가족분뇨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p> <p>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p> <p>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p> <p>⑨ 도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p> <p>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각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족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p>	<p>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족분뇨공공처리시설</p> <p>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각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분뇨수집·운반업, 가족분뇨처리업 및 가족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p> <p>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p> <p>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족분</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②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383호, 2010. 11. 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p> <p>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p> <p>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354호, 2007. 4. 11.> (축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p>	<p>노배출시설”로 한다.</p> <p>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p> <p>⑥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⑦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p> <p>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p> <p>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p> <p>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p> <p>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p>	<p>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432호, 2011. 11. 2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1호, 2011.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486호, 2012. 11.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부터 ⑧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7> 까지 생략 <278>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p>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p> <p>②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족분뇨”로 한다.</p> <p>②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족분뇨”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mg/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mg/L <p>제4조(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p>②부터 ②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99호, 2015. 3. 25.></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279) 부터 (502) 까지 생략</p> <p>(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물부차관”으로 한다.</p> <p>(504)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② 부터 ㉑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② 부터 ㉑ 까지 생략</p> <p>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젓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p>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18.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젓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p> <p>②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p> <p>⑧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35호, 2010. 2. 4.></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p>	<p>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p> <p>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p> <p>제3조(위탁사용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② 법률 제12516호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8.3.23]</p> <p>[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3.23)]</p> <p>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에서 이동 (2018.3.2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7호, 2016. 6. 2.></p> <p>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5호, 2016.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⑬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③부터 ⑬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3호, 2011. 7. 2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②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20호, 2010. 10. 1.> (자연공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②부터 ④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45호, 2010. 10. 13.></p>	<p>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p> <p>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0호, 2018. 3. 2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49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9호, 2020. 2.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호·제4호 및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기술관리인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4 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4 제2호: 2022년 12월 31일까지</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p> <p>②부터 ⑬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②부터 <71>까지 생략</p> <p>부칙 <제12516호, 2014.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제6호,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 제51조제2호·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중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158호, 2015. 3.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족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족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p>	<p>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과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198호, 2016. 5. 31.></p> <p>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932호, 2017. 3. 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p> <p>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구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족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p>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p>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p>	<p>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p> <p>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포,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간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0조(위탁사용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용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3.20></p> <p>[본조신설 2015.12.1]</p> <p>[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1>]</p> <p>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8.3.20]</p> <p>제11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p> <p>[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2.1>]</p> <p>제12조(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1>]</p> <p>제13조(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p> <p>[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p> <p>제14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p> <p>제1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p> <p>제16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p> <p>제1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2.1>]</p> <p>제1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1>]</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p> <p>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4조의2제1항 중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p> <p>제304조의2제2항 중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6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p> <p>제350조제1항 중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을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1>]</p> <p>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19조에서 이동 <2015.12.1>]</p>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26호, 2015. 1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p> <p>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농업협동조합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⑤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03호, 2017. 11. 28.>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10호, 2018. 3. 20.></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5829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5931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5931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5932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5933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5934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5935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5937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5938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5938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젓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젓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젓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젓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젓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frac{\text{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text{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dots$$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frac{\text{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text{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frac{\text{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text{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dots$$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2.>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속도(씩혀서 익히는 정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젓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젓소	부속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젓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mg/kg 이하
	아연	170mg/kg 이하

비고

부속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별표 4] (신설 2015.3.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text{과징금 금액} = \text{사용중지일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30만원)} \times \text{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1
1,000㎡ 이상 2,000㎡ 미만	0.2
2,000㎡ 이상 3,000㎡ 미만	0.4
3,0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10,000㎡ 미만	1
10,000㎡ 이상	2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1
900㎡ 이상 2,400㎡ 미만	0.2
2,400㎡ 이상 3,600㎡ 미만	0.4
3,6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6,000㎡ 미만	1
6,000㎡ 이상	2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2,500㎡ 이상 7,500㎡ 미만	0.3
7,500㎡ 이상 12,500㎡ 미만	0.6
12,500㎡ 이상	1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715마리 이상	0.3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75마리 이상	0.3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3

[별표 5] <개정 2018. 12. 11.>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압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 측정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 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로 한정한다),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고

-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라.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
 -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 다.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 라.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 마.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 바.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 사. 「하수도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 아.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 차량, 암물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015.3.24.> [시행일:2017.1.1.] 제10호, 제11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5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억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압출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족분뇨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5천만원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족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별표 7] <개정 2018. 12. 1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 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8] <개정 2015.3.24.>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 실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6.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별표 9] <개정 2016. 5. 31.> [시행일:2017.1.1.] 제2호커묵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기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 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 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 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 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 배 이상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 배 미만		50	70	1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 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 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 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 배 이상		300	4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4호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2호	50	70	100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200	300	500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3호				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5호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80	10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8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30	50	7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50	70	100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60	8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50	70	100
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2호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나.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교체 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7호	50	70	100
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머.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법 제53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100	150	200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600	800	1,000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50	70	100
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50	70	100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50	70	100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50	70	100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7호	50	70	100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18호	50	70	1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5945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5945
[별표 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5947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5947
[별표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5948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5949
[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5949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5950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5955
[별표 9]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5956
[별표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5957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5957
[별표 1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5958
[별표 13]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5958
[별표 1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5959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5959

[별표 1] <신설 2015.3.25.>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 가. 조사기관
 -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 다. 오염기준 초과지역 현황
 - 위치, 기준초과 내역, 초과원인 분석, 조치내용 등
 - 라. 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
 - 조사계획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조사지점의 종류, 위치 등 현황, 변경(추가)사유 등
5.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
 - 가. 오염기준 초과지점 특성에 따른 분석
 - 나. 향후 추진방안 등 종합의견
 - 초과원인 분석 내용, 조치내용, 초과지점 관리 향후 관리방안 등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15.3.25.>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를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킵·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퇴비화시설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크름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개정 2015.3.25.>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제9조 관련)

(단위: ㎡/마리)

구분	초지	농경지	
		논	밭·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지역	항목	구분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4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120 이하	200 이하	
	부유물질량(SS, mg/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T-N, mg/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T-P, mg/L)	4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mg/L)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SS, mg/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T-N, mg/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T-P, mg/L)	100 이하	100 이하	

비고

-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러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의2] <개정 2020. 2. 2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	
길이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mm	40 이하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상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수분	%	20 이하	
회분	%	30 이하	
황분	%	2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2 이하
	카드뮴(Cd)		9.0 이하
	납(Pb)		200.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 비고

- 성형제품의 형태는 펠릿으로 제한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습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6] <개정 2020. 2. 2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다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 2) 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기 <개정 2020. 2. 2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1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사용중지 명령 3개월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1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 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2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 명령 3개월	폐쇄명령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3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 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5항제4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 명령 3개월	폐쇄명령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	허가취소			
16) 법 제37조제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37조제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9호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8] <개정 2019. 12. 2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거나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가축분뇨관로는 도기·콘크리트·벽돌, 그 밖에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축분뇨관로의 방향·경사도 또는 단면적이 변화하는 곳, 단층(斷層)이 생기는 곳, 가축분뇨관로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15.3.25.>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면적, 지목(地目), 지역구분 등

나. 입지 여건(방류선, 동력, 용수확보관계 등)

다. 주거지역과의 관계

라. 도시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과의 관계

마.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반거리 등 그 밖의 사항

6.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리방식

나. 처리방식별 대안 비교(3개 방식 이상)

1) 소요 부지 면적

2) 처리방식의 안정성·내구성

3) 운영관리의 난이도

4)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7. 방류지점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지점 및 방류선 현황

나. 시설 설치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상수원·취수장·유원지 등과의 관계

라. 방류지점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확보방안

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9. 소요 재원 확보방안

가. 사업비(시설비·보상비 등)의 계산

나. 자금조달방법

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

11.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농지법」

다. 그 밖의 관련 법규

[별표 10] <개정 2015.3.25.>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아. 퇴비·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1] <개정 2015.12.22.>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삭제 <2015.12.22.>
-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료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5.12.2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12.22.>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설계·시공된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펌프 등 기계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20. 2. 2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공공처리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처리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4] <신설 2015. 3. 25.>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컴퓨터
 - 나. 이동형 통신수단
 -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5] <개정 2015.3.2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0,000원	5,000원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0,000원	15,000원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	14,000원

제8편
물환경

0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978	제1조(목적) 5978	제1조(목적) 5978
제2조(정의) 5978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5978
		제3조(수질오염물질) 5979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5979
		제5조(공공수역) 5979
		제6조(폐수배출시설) 5979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5980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5980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5980
		제8조의3(물놀이행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5981
제3조(책무) 5981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5982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5983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5982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등) 5983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5984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5983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5984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5985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5985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5985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5986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5987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5986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5987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5988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598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5989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5989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5990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5989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5991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5990 제17조(조치명령 등) 5991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5992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5993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5993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5993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5993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5994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5995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5993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5996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5997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5997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5997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5998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5998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5999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5999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5999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000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6000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6001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6002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6003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6004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6004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6005 제10조의3 삭제 6006 제11조 삭제 6006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6006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6007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6007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6007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6009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6009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6010	제16조 삭제 6006 제17조 삭제 6006 제18조 삭제 6006 제19조 삭제 6006 제20조 삭제 6006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6007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6010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6000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6001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6001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6002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6003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6003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6004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6005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6006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6008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6008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600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수질오염방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6010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6010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 6011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6012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 6012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6012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 6012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 6012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 6012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 6013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 6013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 6013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6015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절차 등) … 6014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 6014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 6015
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 6016	제27조(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6016	제29조(낙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6016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 6017	제28조(수질오염경보) …… 6018	제30조(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6016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6018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6018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6018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6019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 6019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 6020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 6022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 6020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 6020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6022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6022		
제2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 6022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6023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6023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6023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6023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 6024 제32조(오염원의 조사) 6025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6025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6025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6025		
제23조(오염원 조사) 6026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6026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6026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6027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6026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6028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6027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6028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6028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6029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6029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6029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6030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6031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측정 및 분석 등) 6031	
제29조 삭제 6032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6032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6032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6033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6033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6033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6033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6034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6034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제32조(배출허용기준) 6035</p> <p>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036</p> <p>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6042</p> <p>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6043</p> <p>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적 및 면적자 준수사항 등) 604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6036</p> <p>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6041</p> <p>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적기준) 604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제34조(배출허용기준) 6035</p> <p>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6036</p> <p>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6036</p> <p>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6038</p> <p>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6038</p> <p>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6039</p> <p>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6040</p> <p>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6041</p> <p>제40조(관계전문기관) 6043</p> <p>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6043</p> <p>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6044</p> <p>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6045</p> <p>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6046</p> <p>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604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6047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6048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6048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6048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6049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6049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6050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6051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6051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6051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6053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6054 제51조(개선명령 등) 6054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6054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6054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6055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6055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6056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검사의 면제) .. 6056	
제38조의7(결격사유) 6056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6056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 6057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6057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6058	제39조(개선기간 등) 6058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6058		
제40조(조업정지명령) 6059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6059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059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6060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배출부과금) 6064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6064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6066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6066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6066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6068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6069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6061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062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6062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6063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6064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6066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6070		
제43조(과징금 처분) 6072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6072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6073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6074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6074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6076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6076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6076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6077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6077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6078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6085</p> <p>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6085</p> <p>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6086</p> <p>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6087</p> <p>제47조(환경기술인) 608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p> <p>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6088</p>	<p>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6078</p> <p>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6079</p> <p>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6080</p> <p>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6081</p> <p>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6082</p> <p>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6083</p> <p>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6083</p> <p>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 6084</p> <p>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608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p> <p>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6088</p>	<p>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6079</p> <p>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6079</p> <p>제59조(개선완료일) 6080</p> <p>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6082</p> <p>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6085</p> <p>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6085</p> <p>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6085</p> <p>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086</p> <p>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6086</p> <p>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6087</p> <p>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6088</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6090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6089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6090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 6091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6091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6091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6093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6092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6092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6094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6092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6096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6096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6094 제66조 삭제 6095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6095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6095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6096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6097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6097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6097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6098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6098		
제49조의6(강제징수) 6099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6099	
제49조의7(보고 등) 609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6100</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6102</p> <p>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610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 7. 30.)</p> <p>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610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6104</p> <p>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6110</p> <p>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6111</p>	<p>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6101</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610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6104</p> <p>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6105</p> <p>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6107</p> <p>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6109</p> <p>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6110</p>	<p>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 6100</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6101</p> <p>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6102</p> <p>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6102</p> <p>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610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6104</p> <p>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6107</p> <p>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6107</p> <p>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 6108</p> <p>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 6109</p> <p>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6109</p> <p>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6110</p> <p>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6111</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6112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6112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 6112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 6111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6112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6114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6114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6114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6116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6116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6115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116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6118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6118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6119 제59조(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6119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6119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6116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 6116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6117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6117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6118
제5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6119	제5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6118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밭고도 및 경사도) 6119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6121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6121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밭고도 및 경사도) 6119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6121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6119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6120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6121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6121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 6121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6123</p> <p>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6126</p> <p>제63조(결격사유) 6128</p> <p>제64조(허가의 취소 등) 6128</p> <p>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6130</p> <p>제66조(과징금 처분) 61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 (개정 2013. 7. 30.)</p> <p>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6131</p> <p>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6132</p> <p>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6135</p>	<p>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61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79조 삭제 6123</p> <p>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61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79조의3(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6131</p>	<p>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 6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6123</p> <p>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6125</p> <p>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6126</p> <p>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6126</p> <p>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6127</p> <p>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61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6131</p> <p>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6132</p> <p>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6133</p> <p>제95조(교육계획) 6133</p> <p>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6134</p> <p>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6134</p> <p>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6134</p> <p>제99조(자료제출협조) 6134</p> <p>제100조(교육경비) 6135</p> <p>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 6135</p> <p>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6136</p> <p>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613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신고포상금) 6137 제69조(국고 보조) 6138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6138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6139 제72조(청분) 6139 제73조(수수료) 6139 제74조(위임 및 위탁) 6141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6137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6138 제81조(권한의 위임) 6141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6147 제83조(보고) 6147 제84조(업무의 위탁) 6147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48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6149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6137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6139 제106조(수수료) 6139 제107조(보고) 6147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6149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150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8장 삭제
제75조(벌칙) 6150 제76조(벌칙) 6151 제77조(벌칙) 6151 제78조(벌칙) 6152 제79조(벌칙) 6153 제80조(벌칙) 6154 제81조(양벌규정) 6154 제82조(과태료) 6154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154	제108조 삭제 6150
부칙 6156	부칙 6156	부칙 6156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2006. 3.31 법률 제7459호 개정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09호 2007. 1.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 5.21 법률 제9697호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3.22 법률 제10152호 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채기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4.28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 8. 4 법률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8호 2013. 3.22 법률 제11670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7.30 법률 제11979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24 법률 제12519호 2015.12. 1 법률 제13530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채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90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2017.12.12 법률 제15194호 2018.10.16 법률 제15832호 2019. 8. 2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11.26 법률 제16605호 2020. 2.18 법률 제17007호 (중양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법률)</p>	<p>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개정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1호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간속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2.18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6.22 대통령령 제22213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 1.17 대통령령 제23520호 2012. 7. 5 대통령령 제23938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5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제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24 대통령령 제25773호 2015. 5.26 대통령령 제26249호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4호 2016. 4.28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9호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서류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6.12 대통령령 제28964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6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6호</p>	<p>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개정 2008. 4. 7 환경부령 제283호 2008.10.29 환경부령 제307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4. 2 환경부령 제366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10. 1 환경부령 제380호 2011. 2. 9 환경부령 제397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1.19 환경부령 제443호 2012. 7. 5 환경부령 제465호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 8. 2 환경부령 제470호 2012.10. 5 환경부령 제309호 (부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9. 5 환경부령 제515호 2013.12.31 환경부령 제533호 2014. 1.29 환경부령 제543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제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14.11.24 환경부령 제577호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제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31 환경부령 제586호 2015. 6.16 환경부령 제600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5.20 환경부령 제652호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2017. 6.26 환경부령 제705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2019.10.17 환경부령 제829호</p>

<p style="text-align: center;">물환경보전법</p>	<p style="text-align: center;">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p>	<p style="text-align: center;">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 style="text-align: center;">2019.12.31. 환경부령 제839호 2020. 2. 3 환경부령 제848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p> <p>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p> <p>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p> <p>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p> <p>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p> <p>11. “폐수무망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p> <p>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p> <p>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p>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坝)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p> <p>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p> <p>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p> <p>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p>		<p>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p> <p>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p> <p>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차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중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p> <p>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p> <p>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p> <p>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p>		<p>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p>[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17.></p> <p>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p> <p>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중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다.</p>	<p>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 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p>	<p>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p>	<p>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 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p>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p> <p>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p>	<p>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p>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p>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제,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p>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가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p>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p>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구역(이하 "총량관리단위구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 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p>	<p>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 당되어 있을 것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같을 것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p>	<p>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p> <p>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p> <p>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p> <p>②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1. 삭제 <2012. 1. 17.></p> <p>2. 삭제 <2012. 1. 17.></p> <p>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p> <p>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p> <p>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p> <p>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p>	<p>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p> <p>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p>	<p>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p>	<p>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p> <p>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p>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p>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p>	<p>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p>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p>	<p>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p>	<p>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p>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p> <p>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p> <p>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p> <p>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p> <p>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합당오염부하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합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p>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p>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 17.></p> <p>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p> <p>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 1. 17.></p> <p>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6.></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16.]</p> <p>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p> <p>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1. 16.></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p>	<p>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p> <p>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p>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p> <p>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p>	<p>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16.></p> <p>[제목개정 2018. 1. 16.]</p> <p>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 16.></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 16.></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6.></p> <p>[제목개정 2018. 1. 1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p>	<p>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p>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7.)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p> <p>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3. 7. 30.]</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 (개정 2013. 7. 30.)</p> <p>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p> <p>② 삭제 (2017. 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p>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2. 27.]</p> <p>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p>		<p>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19. 10. 17.]</p> <p>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p>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p> <p>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p> <p>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1. 17.)]</p> <p>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p>		<p>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③ 삭제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p> <p>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7.] [제9조의2에서 이동 <2017. 1. 17.>]</p> <p>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p> <p>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 17.> 2. 삭제 <2018. 1. 17.> 3. 삭제 <2018. 1. 17.> 4. 삭제 <2018. 1. 17.> 5. 삭제 <2018. 1. 17.> <p>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 17.></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p> <p>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20. 12. 31.></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시행일 : 2022. 1. 1.] 제9조의4</p> <p>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 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p>		<p>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 17.]</p> <p>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p> <p>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10조의3 삭제 <2016. 1. 27.></p> <p>제11조 삭제 <2017. 1. 17.></p> <p>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p>	<p>제16조 삭제 <2017. 1. 17.></p> <p>제17조 삭제 <2017. 1. 17.></p> <p>제18조 삭제 <2017. 1. 17.></p> <p>제19조 삭제 <2017. 1. 17.></p> <p>제20조 삭제 <2017. 1. 17.></p>	<p>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p> <p>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실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목개정 2018. 1. 17.]</p> <p>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p>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p>[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p> <p>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p> <p>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p> <p>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p>		<p>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p> <p>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화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p> <p>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 6. 16.]</p> <p>[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6. 16.>]</p> <p>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3. 22.]</p>		<p>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 6. 16.)]</p> <p>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p>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p> <p>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본조신설 2013. 7. 30.]</p> <p>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鰍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p>	<p>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p>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5. 6. 1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 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p>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p> <p>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방지할 경우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p>	<p>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p> <p>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5. 5. 26.]</p> <p>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p>	<p>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p>	<p>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p>[제목개정 2018. 1. 16.]</p> <p>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9.,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호소(湖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p>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p>[본조신설 2014. 1. 2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p>	<p>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삭제 <2012. 1. 19.> 2. 삭제 <2012. 1. 19.>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p> <p>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본조신설 2013. 7. 30.]</p>	<p>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p>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p>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온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p>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낙시제한구역에서 낙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낙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p>	<p>제27조(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낙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낙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금지구역이나 낙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낙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낙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낙시금지 또는 낙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낙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낙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9.]</p> <p>제29조(낙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 제3항에 따른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p> <p>제30조(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p> <p>② 삭제 <2007. 5. 17.></p> <p>③ 삭제 <2007. 5. 17.></p> <p>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p>		<p>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1. 29., 2020. 11. 27.></p> <p>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p> <p>나. 어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p> <p>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p> <p>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멍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p> <p>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p> <p>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p> <p>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p> <p>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제목개정 2013. 7. 30.]</p> <p>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p> <p>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p>	<p>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p>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16.></p> <p>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p> <p>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p>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p>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면·동 계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1. 19.] [중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0. 3. 22.]</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p>③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6. 22.]</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p>		<p>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본조신설 2014. 12. 31.] <p>[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7. 1. 19.)]</p> <p>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우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p>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12. 31.]</p> <p>[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p> <p>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p>[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 1. 17.>]</p>	<p>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4에서 이동 <2017. 1. 19.>]</p> <p>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p>		<p>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p>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p>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p>		<p>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p> <p>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②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p>	<p>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6.]</p>	<p>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8. 1. 17.]</p> <p>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7.></p> <p>[제목개정 2020. 11. 2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 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시행일 : 2022. 1. 1.] 제22조의3</p> <p>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p>	<p>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p> <p>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p> <p>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본조신설 2018. 1. 16.]</p> <p>[중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18. 1. 16.>]</p>	<p>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p> <p>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본조신설 2018. 1. 17.]</p> <p>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증권역 현황 <p>[본조신설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p>		<p>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증권역에 대한 증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 17.]</p> <p>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 17.]</p> <p>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p>	<p>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p> <p>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p> <p>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p> <p>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p> <p>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p> <p>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수생태계의 복원 목표</p> <p>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p> <p>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p> <p>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p> <p>5. 복원사업의 분야별·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p> <p>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18. 1. 16.)]</p> <p>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 1. 17.></p> <p>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 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8. 1. 16.>]</p> <p>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6.></p> <p>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측정 및 분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소의 생성·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p>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9조 삭제 <2016. 1. 27.></p> <p>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8. 27.]</p> <p>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p> <p>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 현황</p> <p>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p> <p>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p> <p>3. 제3항제4호의 사항</p> <p>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p> <p>나.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p> <p>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8. 1. 1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하역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p> <p>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p>	<p>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p>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 7.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p>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p> <p>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p>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p>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p>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 2014.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이하 “공동방지사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p> <p>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p> <p>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도 같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 10. 15.></p> <p>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p>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p> <p>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p> <p>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p>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p> <p>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p>	<p>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p>		<p>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p> <p>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p> <p>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효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5., 2016. 5. 20.></p> <p>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p> <p>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 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치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 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p>	<p>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2. 7. 20., 2014. 11. 24.,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0. 16.></p> <p>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1.]</p> <p>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35조(방지사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p>	<p>제33조(방지사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p>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p> <p>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5.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다른 폐수와 그 성상(性狀)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p> <p>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p> <p>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p> <p>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20. 11. 27.)</p> <p>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p> <p>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p> <p>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p> <p>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p> <p>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p> <p>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p> <p>⑥ 그 밖에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폐기물해양 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p> <p>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p> <p>제45조(공동방지사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이하 “공동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차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차 대상사업장만 제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양수인</p> <p>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p>[제목개정 2014. 1. 28.]</p>	<p>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9., 2018. 1. 17.></p> <p>[제목개정 2014. 1. 2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 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p> <p>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p>		<p>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 30일 <p>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p>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p>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게 		<p>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p> <p>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p>	<p>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자·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p>	<p>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p> <p>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p>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 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 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단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 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 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 1. 27.,</p>	<p>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 17.)</p> <p>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 28.,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 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 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 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용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 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 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 여야 한다. <p>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 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p> <p>④ 시·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 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p> <p>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p>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동·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 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p> <p>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p> <p>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선정방법·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p> <p>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p> <p>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p> <p>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p> <p>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목개정 2019. 11. 26.]</p> <p>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p>	<p>제36조(측정기기과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5., 2015. 6. 16.,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p>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20. 11. 24.></p> <p>②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p>	<p>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p>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p> <p>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 27.]</p> <p>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p>	<p>제39조(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p> <p>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p> <p>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p> <p>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고</p>	<p>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들의 개선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8.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p> <p>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록 하는 조치</p> <p>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p> <p>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p> <p>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가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p>	<p>2. 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p> <p>3. 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p> <p>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9. 12. 20.></p> <p>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p> <p>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 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1. 19.]</p> <p>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 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 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 3과 같다.</p> <p>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1. 기본배출부과금</p> <p>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p>	<p>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사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 2. 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p> <p>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p> <p>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p>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p> <p>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p>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p> <p>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p>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p>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p> <p>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p> <p>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p>	<p>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p> <p>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p> <p>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3. 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p> <p>[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초과배출부과금</p> <p>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p> <p>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p>	<p>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p> <p>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무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p> <p>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p> <p>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p> <p>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p> <p>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p> <p>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p> <p>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p> <p>⑥ 공동방주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유기물질</p> <p>2. 부유물질</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된 경우</p> <p>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p> <p>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p> <p>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p> <p>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p> <p>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 경우</p> <p>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p>	<p>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4조(위법사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p>	<p>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p>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p> <p>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p> <p>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p> <p>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p> <p>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p> <p>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 배출량을 산정한다.</p> <p>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p> <p>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p> <p>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p> <p>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p> <p>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8.,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p>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p> <p>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p> <p>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p> <p>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p> <p>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 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p> <p>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p>	<p>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제54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 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p>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p>	<p>날을 말한다.</p> <p>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 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p>	<p>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p>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5.></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7. 5.> [제목개정 2012. 7. 5.]</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p>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 16.]</p> <p>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제54조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p> <p>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 1. 29.]</p> <p>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p>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p>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p> <p>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p> <p>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p> <p>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p>	<p>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p> <p>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p> <p>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 1. 27.)</p> <p>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p>	<p>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p> <p>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 28.]</p> <p>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7.)</p> <p>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p>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p>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p> <p>1. 한국환경공단</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p> <p>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목개정 2016. 1. 27.]</p>	<p>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p> <p>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 6. 26., 2010. 2. 18., 2011. 10. 28., 2012. 7. 5., 2017. 1. 17., 2019. 10. 15.)</p> <p>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p> <p>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p> <p>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p> <p>5. 삭제 (2019. 10. 15.)</p> <p>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p> <p>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p> <p>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p> <p>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이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p> <p>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 1. 17.></p> <p>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목개정 2016. 1. 27.]</p> <p>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p>	<p>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28., 2017. 1. 17.></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p>	<p>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p>	<p>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5.]</p>	<p>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p>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p> <p>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p> <p>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p> <p>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6조 삭제 (2017. 1. 19.)</p> <p>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p>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p> <p>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9.]</p> <p>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p>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p>	<p>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 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p>[전문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p> <p>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료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p>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p>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분기별 추진 계획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계획</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9. 10. 17.]</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 1. 19.></p> <p>[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p> <p>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p>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p> <p>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p> <p>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제목개정 2017. 1. 17.]</p>	<p>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p> <p>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 17.]</p> <p>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 7. 30.)</p> <p>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p>	<p>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p> <p>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p> <p>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p>	<p>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p> <p>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p> <p>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할 날부터 60일 이내</p> <p>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p>	<p>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증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p>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p>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6.,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p>30일 이내</p> <p>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p> <p>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설 2019. 12. 31.)</p> <p>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다)</p> <p>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p> <p>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p> <p>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p> <p>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p>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0. 16.></p> <p>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p>	<p>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p> <p>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2019. 12. 31.></p> <p>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p>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p> <p>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 <p>[제목개정 2019. 10. 15.]</p>	<p>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p>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2019. 10. 17.)</p> <p>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 10. 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p>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p>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p>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p> <p>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18. 10. 16.></p> <p>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p>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p>[본조신설 2013. 12. 30.]</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5. 상수원에 증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p>		<p>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2. 3.] [종전 제78조의3은 제78조의6으로 이동 (2020. 2. 3.)]</p> <p>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p>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p>	<p>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2. 3.]</p> <p>[중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 2. 3.>]</p> <p>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2. 3.]</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도별, 소관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도별, 소관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p>	<p>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p> <p>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6.>]</p> <p>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보완·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7. 1. 17.]</p> <p>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p>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p>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3에서 이동 <2020. 2. 3.>]</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5.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p>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p>	<p>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본조신설 2019. 10.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p>[제78조의4에서 이동 <2020. 2. 3.>]</p> <p>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p>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p>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p> <p>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p> <p>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p> <p>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p>		<p>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p>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7. 30.]</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7. 1. 19., 2018. 1. 17.,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p>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3. 7. 30.></p> <p>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p>	<p>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p>	<p>[본조신설 2014. 1. 29.]</p> <p>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 6. 16.></p> <p>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④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2015.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p> <p>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일치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16., 2017. 1. 19.></p> <p>[제목개정 2015. 6. 16.]</p> <p>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⑦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p>	<p>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p>	<p>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 6. 16., 2019. 10. 17.> [제목개정 2015. 6. 16.]</p> <p>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6.></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p> <p>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 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p> <p>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p> <p>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p> <p>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p> <p>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p>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p> <p>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p> <p>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p> <p>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p> <p>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p> <p>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p> <p>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p>	<p>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p>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p>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79조 삭제 (2018. 1. 16.)</p>	<p>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⑤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 10. 17.> [본조신설 2017. 1. 19.]</p> <p>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 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 10. 17.> [본조신설 2017. 1. 1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p> <p>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p>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 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 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p> <p>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p> <p>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p>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27.]</p> <p>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p>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p> <p>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p>		<p>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1. 29., 2019. 12. 31.></p> <p>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 11. 27.></p> <p>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7.></p> <p>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p>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p>		<p>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p> <p>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p>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p>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p>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를 받은 경우</p> <p>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p> <p>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10. 16.,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p>	<p>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p> <p>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 1. 2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2019. 11. 26.></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 <개정 2013. 7. 30.></p> <p>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 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료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79조의3(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p>[본조신설 2019. 10. 15.]</p> <p>[중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9. 10. 15.>]</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도협회</p> <p>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p> <p>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p>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p>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5., 2017. 1. 19.></p> <p>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p>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p> <p>1. 사업자</p>		<p>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9.></p> <p>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p> <p>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p>		<p>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p>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p> <p>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p> <p>6. 제7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p>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p> <p>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p>[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風致地區)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3. 7. 30.]</p>	<p>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p> <p>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3항·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p>	<p>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p>	<p>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p> <p>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5., 2020. 2. 3.,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p> <p>2. 제53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p> <p>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p> <p>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p> <p>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p> <p>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전문개정 2013. 7. 30.]</p>		<p>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p> <p>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p> <p>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p> <p>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p> <p>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p> <p>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p>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2. 3.></p> <p>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3., 2020.</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9. 10. 15.,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 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020. 11. 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p>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p> <p>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p> <p>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p> <p>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p> <p>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p> <p>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p> <p>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의뢰</p> <p>15. 삭제 (2014. 1. 28.)</p> <p>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17.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p> <p>18.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p> <p>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p> <p>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p> <p>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p> <p>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p> <p>23.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p> <p>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p> <p>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p> <p>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p> <p>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p> <p>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p> <p>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p>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p> <p>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p> <p>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p> <p>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p> <p>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p> <p>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p> <p>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p> <p>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p> <p>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p> <p>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p> <p>9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p> <p>10. 삭제 (2019. 10. 15.)</p> <p>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p> <p>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p> <p>1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p> <p>13. 삭제 (2017. 1. 17.)</p> <p>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p> <p>14.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p> <p>14의2.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p> <p>15. 삭제 (2015. 5. 26.)</p> <p>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p> <p>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p> <p>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p> <p>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p> <p>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p> <p>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p> <p>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p> <p>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p> <p>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p> <p>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p> <p>22의2. 법 제5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p> <p>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p> <p>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p> <p>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28., 2018. 1. 16., 2019. 10. 15.,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p> <p>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p> <p>제82조(권하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3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p>	<p>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 19.></p> <p>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15.)</p> <p>④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9. 10. 15.)</p> <p>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중전 제84조의2는 제84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p> <p>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4.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 [제84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p>	<p>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5. 6. 16.,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9. 12. 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 12. 31.) 11.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8장 벌칙 <개정 2013. 7. 30.></p> <p>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p>제8장 벌칙</p>	<p>대상: 2014년 1월 1일</p> <p>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2014년 1월 1일</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6., 2015.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19. 12. 31.>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p>[전문개정 2014. 4. 30.]</p> <p>제8장 삭제 <2013. 9. 5.></p> <p>제108조 삭제 <2013. 9. 5.></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p> <p>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8. 10. 16., 2019. 11. 26.></p> <p>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p> <p>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p> <p>4. 삭제 <2016. 1. 27.></p> <p>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p> <p>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p> <p>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p> <p>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p> <p>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p> <p>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p> <p>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 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p> <p>15.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p> <p>16. 삭제 <2019. 11. 26.></p> <p>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p> <p>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p>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 	<p>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p> <p>[전문개정 2010. 2. 18.]</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p> <p>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p> <p>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p> <p>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p> <p>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p> <p>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3. 삭제 <2017. 1. 17.></p> <p>4. 삭제 <2017. 1. 17.></p> <p>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p> <p>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p>	<p>부칙 <제20428호, 2007. 11.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② 국민입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③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p> <p>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p>	<p>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측정기기의 부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중 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02 381 1029 1016"> <thead> <tr> <th>사업장 구분</th> <th>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th> <th>부착기한</th> </tr> </thead> <tbody> <tr> <td>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 <td>2,000㎥/일 이상 사업장</td> <td>2008년 9월 30일까지</td> </tr> <tr> <td>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 <td>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td> <td>2009년 9월 30일까지</td> </tr> <tr> <td>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td> <td>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td> <td>2010년 9월 30일까지</td> </tr> <tr> <td rowspan="3">공공하수처리시설</td> <td>100,000㎥/일 이상인 시설</td> <td>2008년 5월 19일까지</td> </tr> <tr> <td>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td> <td>2008년 11월 19일까지</td> </tr> <tr> <td>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td> <td>2009년 11월 19일까지</td> </tr> <tr> <td rowspan="2">폐수중말처리시설</td> <td>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td> <td>2008년 5월 19일까지</td> </tr> <tr> <td>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td> <td>2008년 11월 19일까지</td> </tr> </tbody> </table>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착기한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9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10년 9월 3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9년 11월 19일까지	폐수중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p>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된 것”으로 한다.</p> <p>제4조(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p> <p>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p>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부착기한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사업장	200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2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사업장	2009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	200㎥/일 이상 700㎥/일 미만인 사업장	2010년 9월 3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1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2,000㎥/일 이상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9년 11월 19일까지																								
폐수중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	2008년 5월 19일까지																								
	방류량 700㎥/일 이상 처리용량 10,000㎥/일 미만인 시설	2008년 11월 19일까지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⑥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p> <p>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p>	<p>②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9월 30일 <p>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p> <p>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p> <p>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p>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p> <p>⑧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p> <p>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⑪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p> <p>⑫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⑬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p> <p>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p>	<p>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p> <p>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p> <p>㉔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한다.</p> <p>㉖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p> <p>㉗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p> <p>㉙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㉚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㉛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p>	<p>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p> <p>㉞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㉟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p> <p>㊱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㊲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p>	<p>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㊳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p> <p>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p> <p>㊵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㊶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 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②유동단기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p>	<p>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⑩ 하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⑪ 자연해태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p> <p>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⑮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83호, 2008.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7호, 2008. 10.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p> <p>㉔추한미균기질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p> <p>㉖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p> <p>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㉘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p> <p>㉙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p> <p>㉚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㉛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p>	<p>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p> <p>㉞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㉟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p> <p>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p>	<p>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366호, 2010.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㉔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㉕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㉖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㉗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p> <p>㉘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p>	<p>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p> <p>㉙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p> <p>㉚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p> <p>㉛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㉜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⑩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80호, 2010. 10.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p> <p>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761호, 2008. 4. 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2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부칙 <제397호, 2011. 2.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443호, 2012. 1. 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내지 ⑪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09호, 2007. 1.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p> <p>제3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9조·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p>	<p>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제작성·재협의를 대상이 되는 경우</p> <p>⑩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⑦ 부터 ⑯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p>	<p>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5호, 2012. 7. 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0호, 2012. 8. 2.></p> <p>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9호, 2012. 10. 5.> (뉴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뉴시어선업법」”을 “「뉴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p> <p>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p> <p>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p> <p>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p> <p>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60호,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p> <p>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51호, 2010. 2.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인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④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15호, 2013. 9. 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p> <p>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p> <p>⑩내지 ⑰생략</p> <p>제2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p> <p>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p> <p>⑱내지 ⑳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p> <p>㉔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p>	<p>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p> <p>⑨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p>	<p>로 알려져 있다.</p> <p>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3호, 2013. 12. 31.></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3호, 2014. 1.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p> <p>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p> <p>㉔내지 ㉔생략</p> <p>제20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p> <p>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p>	<p>부칙 <제22213호, 2010. 6. 2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⑱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520호, 2012. 1.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m³/일 이상 2,000m³/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p>개정규정도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3호, 2014. 7. 17.> (하수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p> <p>부칙 <제577호, 2014. 11. 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p>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3938호, 2012. 7. 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p>	<p>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⑪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86호, 201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를 삭제한다.</p> <p>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 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p> <p>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 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⑫법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⑪부터 ⑭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5045호, 2013. 12. 30.></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27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p>	<p>설”로 한다.</p> <p>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p> <p>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p> <p>부칙 <제600호, 2015. 6. 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 한다.</p> <p>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52호, 2016. 5.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⑭부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⑯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p> <p>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차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차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⑲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8호, 2017. 1. 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신항행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⑤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⑦연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p>	<p>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p> <p>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p> <p>⑥부터 ⑩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73호, 2014. 11.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 제4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차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p> <p>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249호, 2015. 5. 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p>	<p>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p> <p>㉕유동단기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㉖유동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㉗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제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한다.</p> <p>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부칙 <제26704호, 2015. 12. 10.></p> <p>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113호, 2016. 4.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⑩부터 ⑰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7471호, 2016. 8.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③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㉕전자기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㉖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㉗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㉙주한미군기지가이전에다른평택사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㉚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㉔부터 ㉗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p> <p><64>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489호, 2016. 9. 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칙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 	<p>“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p> <p>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건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p>	<p>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 시자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부칙 <제705호, 2017. 6. 26.></p> <p>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나)(1), 같은 6)다)(1), 같은 6)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㉔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p>	<p>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p>	<p>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p> <p>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p> <p>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p> <p>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p> <p>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0> 까지 생략</p> <p><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p> <p>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p>	<p>다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⑪ 마리아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p>	<p>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p> <p>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p> <p>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p> <p>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512)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p> <p>⑥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한다.</p> <p>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⑯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⑲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㉑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㉒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p> <p>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p> <p>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p> <p>⑩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9697호, 2009. 5. 2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3조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③ 부터 ③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0152호, 2010. 3. 22.></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③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④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⑦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㉞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㉞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p> <p>④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⑧부터 ⑩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616호, 2011. 4.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p> <p>⑤부터 ⑦까지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4 제2호차목(3)·(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p>관”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별표 14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⑩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p>	<p>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1020호, 2011. 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258호, 2012. 2. 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670호, 2013. 3. 22.></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p>	<p>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p> <p>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2호자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p>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p>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자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과금”으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p> <p>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50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p> <p>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p>	<p>한다.</p> <p>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⑫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 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p> <p>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p> <p>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p> <p>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⑮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p> <p>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p> <p>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p>	<p>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1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p> <p>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호의 기관</p> <p>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9호, 2019. 10.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p> <p>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p> <p>㉖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㉗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호각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p>	<p>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각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9호, 2019.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8호, 2020. 2. 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19호, 2014.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76조·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외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추진지원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10호 낙동강수계 물관</p>	<p>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p>	<p>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로 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0호, 2020. 11.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제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p> <p>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 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p> <p>부칙 (제13530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p>	<p>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6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p> <p>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p> <p>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p>	<p>“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p> <p>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㉖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㉗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p> <p>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p> <p>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p>	<p>로 한다.</p> <p>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p> <p>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부칙 <제28964호, 2018. 6. 12.></p> <p>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126호, 2019. 10.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시설"로 한다.</p> <p>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p>	<p>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리시설”로 한다.</p> <p>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⑲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⑳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p>	<p>협·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충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p> <p>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86호, 2020. 11.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p> <p>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p> <p>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 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⑥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90호, 2016. 12.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p> <p>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p> <p>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p> <p>제5조(대권역·중권역·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p> <p>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p> <p>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다.</p> <p>㉞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⑭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⑮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⑯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⑰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p> <p>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⑲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⑳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㉞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p> <p>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p> <p>㉟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㊲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㊳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㉓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㉖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㉗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p> <p>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나. 「물환경보전법」</p> <p>㉓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㉖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p> <p>㉗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㉕ 수도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p> <p>㉖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㉗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㉘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5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p> <p>(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p> <p>(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p> <p>(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p> <p>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p> <p>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p> <p>〈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p> <p>〈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p> <p>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p> <p>〈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p> <p>〈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p> <p>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8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로 한다.</p> <p>〈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5194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832호, 2018. 10. 16.〉</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한다.</p> <p>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p> <p>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p> <p>㉞부터 (61)까지 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16605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17007호, 2020. 2. 18.)</p>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p> <p>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6225
[별표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	6227
[별표 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6227
[별표 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6228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6231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6232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6232
[별표 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6234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6235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6236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6237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6237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6238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6238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6239
[별표 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6240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6240
[별표 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6241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6242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6243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6243

[별표 1] (개정 2021. 3. 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 대상 과징금

비고: 감액 대상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배출이익 = 초과오염배출량 × 연도별 과징금 단가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배출기간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⁶ - 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⁶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지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지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

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과징금 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2011	5,800원

비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과징금 단가에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la	lb	II	III	IV	V	VI
	생물화학 적산소 요구량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10,000 이상	·최초의 위반행위: 1.8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7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6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5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4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3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2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1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

[별표 2] <개정 2020. 11. 2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및 대상 항목

(제28조제2항 관련)

1. 조류경보

구분	대상 항목	발령 대상	발령 주체
가. 상수원 구간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하천·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호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나. 친수 활동 구간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하천·호소 중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호소	

비고: 환경부장관은 조류경보 발령 대상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대상 항목	발령 대상	발령 주체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클로로필-a, 생물감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중 실시간으로 수질오염도가 측정되는 하천·호소	환경부장관

[별표 3] <개정 2015.12.1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

(제28조제3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경보단계	발령·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나. 친수활동 구간

경보단계	발령·해제 기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비고

- 발령주체는 위 가목 및 나목의 발령·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강우 예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조류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남조류 세포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아파니조메논(Aphanizomenon) 및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속(屬) 세포수의 합을 말한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관심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주의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수소이온농도 항목의 경우에는 5 이하 또는 11 이상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수소이온농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기전도도, 총 질소, 총 인, 클로로필-a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경계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심각	경계경보 발령 후 수질 오염사고 전개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
해제	측정항목별 측정값이 관심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비고:

-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등 수질오염감시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그 기준초과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5 이하 또는 11 이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물감시장비 중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9. 7.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 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친수활동 구간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2)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과의 관호는 시·도지사가 조류정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관심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수면관리자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및 수질분석 강화
	유역·지방 환경청장	1)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주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주의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경계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2배 이상 실시 2) 취수장 방제 조치 및 정수 처리 강화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 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보고 3)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지방 환경청장	1) 주의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관계 기관 합동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경계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경계	유역·지방 환경청장	1) 경계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조사대책반 구성·운영 및 사법기관에 합동단속 요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4)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시행 총괄 5) 정수처리 기술 지원
심각	환경부장관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수면관리자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시 지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 횟수를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운영 시 지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시료분석 및 조사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지방 환경청장	1) 심각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요청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시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	1) 오염물질 분석 및 원인 조사 등 기술 자문 2) 정수처리 기술 지원
해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관심 단계 발령기준 이하 시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요청
	유역·지방 환경청장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대상 행위	항목	기준
수영 등 물놀이	대장균	500(개체수/100mL) 이상
어패류 등 섭취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	0.3(mg/kg) 이상

비고: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개정 2019. 7.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대체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20. 11. 24.>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를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부대시설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

		<p>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p> <p>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p>
3. 적산전력계		<p>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p> <p>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p> <p>다.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p>
4. 적산유량계	<p>가. 용수 적산유량계</p> <p>나. 하수·폐수 적산유량계</p>	<p>1)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p> <p>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p> <p>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p> <p>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p> <p>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p> <p>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p> <p>2) 공공폐수처리시설</p> <p>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4)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p>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 각 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사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사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 공동방지사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사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할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 가.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비고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사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0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9. 측정기기 부착의 유예
- 가. 2007년 11월 30일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3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나.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사설로서 2007년 11월 30일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2007년 11월 30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등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할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 라.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0.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등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17. 1. 17.>

측정기기의 부착방법(제35조제2항 관련)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처리용량이 200m³/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같은 성상(性狀)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사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등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개정 2019. 10. 1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제38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p>가. 실험실을 갖출 것</p> <p>나.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항목별로 각각 1대 이상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2. 기술인력	<p>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0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비고

1.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가 같은 목 1)부터 5)까지의 항목 중 둘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위 표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인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인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5.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9]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m ²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 한다.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1] <개정 2017. 1. 17.>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공공배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3. 제1호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사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사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text{폐수배출량} = \text{용수사용량} - (\text{생활용수량} + \text{간접냉각수량} + \text{보일러용수량} + \text{제품함유수량} + \text{공정 중 증발량} + \text{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text{공정 중 발생량}$$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4] <개정 2019. 10. 15.>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할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할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 질소		500
총 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페놀류		150,000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스소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 비고: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0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스소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

[별표 14의2] <개정 2020. 11. 2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징금} = \text{조업정지일수} \times \text{1일당 과징금}$$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text{일일기준초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times 10^{-6}$$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 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별표 16] <개정 2010.2.18>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 부과와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삭제 <2010.2.18.>

2.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별표 17] <개정 2017. 1.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별표 17의2] <개정 2020. 11. 2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text{과징금} = \text{영업정지일수} \times \text{1일당 과징금}$$

비고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7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타.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3	500	7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4	500	700	1,000
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1호				하.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5	500	700	1,000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너.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00	600	1,000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러.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2호	30	60	100	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	60	80	100
아.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3호	60	80	100	버. 법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200	600	1,000	서.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차.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어.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가.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의2	500	700	1,000	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커.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터.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300	500	1,000
퍼.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의2	50	70	100
허.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6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6249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6250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6251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6252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6257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6258
[별표 7] 총량관리 단위구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6259
[별표 8]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6260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6260
[별표 1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6261
[별표 10의2]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6263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6263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6265
[별표 12의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6266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6267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6280
[별표 14] 방지사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6281
[별표 14의2]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6282
[별표 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6283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6284
[별표 16]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6285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6285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6287
[별표 18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6289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6290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6292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6293
[별표 20의2]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6296
[별표 20의3]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6298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6298
[별표 21의2]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6299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6300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6310

[별표 1] <개정 2019. 12. 20.>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 어장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장어양식장 또는 일반양어장 다.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 시설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설구분	대상	규모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6.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7.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8. 거점소독 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20. 11. 27.>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 1. 구리와 그 화합물
- 2. 납과 그 화합물
- 3. 니켈과 그 화합물
- 4. 총 대장균군
- 5. 망간과 그 화합물
- 6. 바륨화합물
- 7. 부유물질
- 8. 삭제 <2019. 10. 17.>
- 9. 비소와 그 화합물
- 10. 산과 알칼리류
- 11. 색소
- 12. 세제류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 14. 수은과 그 화합물
- 15. 시안화합물
- 16. 아연과 그 화합물
- 17. 염소화합물
- 18. 유기물질
- 19. 삭제 <2019. 10. 17.>
-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 21. 인화합물
- 22. 주석과 그 화합물
- 23. 질소화합물
- 24. 철과 그 화합물
-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 26. 크롬과 그 화합물

- 27. 불소화합물
- 28. 페놀류
- 29. 페놀
- 30. 펜타클로로페놀
- 31. 황과 그 화합물
- 32. 유기인 화합물
- 33. 6가크롬 화합물
-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5. 트리클로로에틸렌
-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37. 벤젠
- 38. 사염화탄소
- 39. 디클로로메탄
- 40. 1, 1-디클로로에틸렌
- 41. 1, 2-디클로로에탄
- 42. 클로로포름
-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 44. 1,4-다이옥산
-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46. 염화비닐
- 47. 아크릴로니트릴
- 48. 브로모포름
- 49. 퍼클로레이트
- 50. 아크릴아미드
- 51. 나프탈렌
- 52. 폼알데하이드
-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54. 톨루엔
- 55. 자일렌

- 56. 스티렌
-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58. 안티몬
- 59. 과불화옥탄산(PFOA)
- 60. 과불화옥타술폰산(PFOS)
- 61. 과불화헥사술폰산(PFHxS)

[별표 3]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 1. 구리와 그 화합물
- 2. 납과 그 화합물
- 3. 비소와 그 화합물
- 4. 수은과 그 화합물
- 5. 시안화합물
- 6. 유기인 화합물
- 7. 6가크롬 화합물
-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 트리클로로에틸렌
- 11. 삭제 <2016. 5. 20.>
-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 14. 벤젠
- 15. 사염화탄소
- 16. 디클로로메탄
- 17. 1, 1-디클로로에틸렌
- 18. 1, 2-디클로로에탄
- 19. 클로로포름
- 20. 1,4-다이옥산
-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22. 염화비닐
- 23. 아크릴로니트릴
- 24. 브로모포름
- 25. 아크릴아미드
- 26. 나프탈렌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27. 폼알데하이드
-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29. 페놀
- 30. 펜타클로로페놀
- 31. 스티렌
-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33. 안티몬

[별표 4] <개정 2019. 12. 31.>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

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 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 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 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0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 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1) 설탕 제조시설	1072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 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품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 시설)에 한정한다.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 시설	20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 시설)에 포함한다.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 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17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시설	21	○ 의약품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 제품 제조시설	2042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슘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 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 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시설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사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 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 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洗瓶)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 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명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 번호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가. 스크린
- 나. 분쇄기
- 다. 침사(沈砂)시설
- 라. 우수분리시설
-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바. 혼합시설
-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 자. 부상시설
- 차. 여과시설
- 카. 탈수시설
- 타. 건조시설
- 파. 증류시설
-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가. 화학적 침강시설
- 나. 중화시설
- 다. 흡착시설
- 라. 살균시설
-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 사. 산화시설
- 아. 환원시설
- 자. 침전물 개량시설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둔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별표 6]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7] <개정 2012.1.19>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採水)가 불가능한 특정 기간에는 그 측정 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해당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가. 평균수질 = $e \left(\text{변환평균수질} + \frac{\text{변환분산}}{2} \right)$

나. 변환평균수질 = $\frac{\ln(\text{측정수질}) + \ln(\text{측정수질}) + \dots}{\text{측정횟수}}$

다. 변환분산 = $\frac{\{\ln(\text{측정수질}) - \text{변환평균수질}\}^2 + \dots}{\text{측정횟수} - 1}$

비고 :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 (mg/L)으로 표시한다.

[별표 8] <개정 2019. 12. 2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frac{\text{할당 오염부하량}}{\text{기준배출수질}} \times 10^6$$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배출수질} = e^{(\text{변환평균} + 1.645 \times \text{변환표준편차})}$$

$$\cdot \text{변환평균} = \frac{\ln(\text{배출수수질}) + \ln(\text{배출수수질}) + \dots}{\text{측정횟수}}$$

$$\cdot \text{변환표준편차} = \sqrt{\frac{\{(\ln(\text{배출수수질}) - \text{변환평균})^2 + \dots\}}{\text{측정횟수} - 1}}$$

나.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기준배출수질 = $(1-b) \times X_a + b \times X_{(a+1)}$ 로 산정한다.
- a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정수부분, b는 $1+0.95 \times (\text{측정횟수}-1)$ 의 소수부분을 말한다.
 - $X_1, X_2, X_3, \dots, X_a, \dots, X_n$ 은 배출수 수질을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을 말한다.
 - X_a 는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 $X_{(a+1)}$ 은 측정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서열화한 값 중 (a+1)번째 배출수 수질을 말한다.

비고

1.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2. 기준배출수질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9]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text{추가 지정 배출량(L/일)} = (\text{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times 10^6$$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별표 10] <개정 2019. 10.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누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I 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구 분	범 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 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또는 총인(T-P) 항목의 수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I 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I 지역 및 II 지역을 제외한다)
IV 지역	I 지역, II 지역 및 III 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표 10의2] <개정 2020. 11. 27.>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별표 11] <개정 2019. 12. 31.>

통행제한 도로·구간(제27조제2항 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12.7km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종점: 경기도 하남시 태허정로(팔당댐 앞)	6.7km
	지방도 제342호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광동하수처리장 사거리) ○종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18km
	일반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를 북한강로(금남교차로)	21km
잠실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철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잠실철교 북단	1.3km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1.5km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시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	1.2km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교 남단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교 북단	1.1km
대청호	지방도 제509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상장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회남문의로(문의사거리)	1.8km
	지방도 제604호~ 지방도 제32호	○시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하석로(하석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문의사거리)	11.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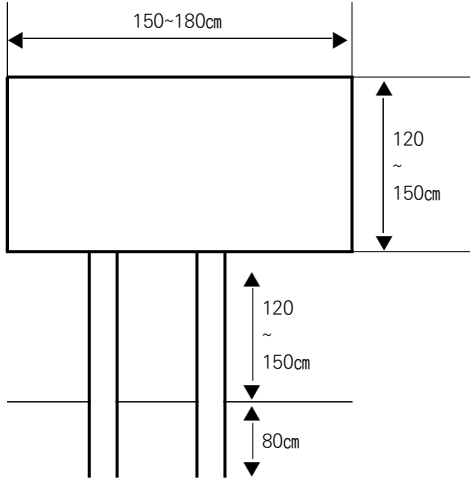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흥사 입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교	9km
	국가지원 지방도 제32호	○시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신탄진동 55)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익면 미천고은로(미천리)	9.6km
	지방도 제629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비룡삼거리) ○종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검문소삼거리)	19km
	지방도 제571호	○시점: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세천삼거리) ○종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18km
보령호	지방도 제617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늑전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km
	시도 제1호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보령호로(화산교삼거리)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늑전교삼거리)	4.3km
	농어촌 도로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로(댐)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도화담삼거리)	10.5km
용담호 (금강)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진용로(용담삼거리)	20.0km
	군도 제22호 (댐 인접)	○시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정주천로(영강교 부근) ○종점: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주용로(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5.5km
주암호	시도 제8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길(광천리 170-2)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25km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복교리 산89-10)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모후로(합수목교삼거리)	5.3km
동북호	군도 제23호~ 농어촌도로 제101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경치리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백아로(구산삼거리)	11.7km
	군도 제4호	○시점: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신기마을 입구) ○종점: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물염로(다곡삼거리)	7.5km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상사호 (이사천)	군도 제1호	○시점: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노동길(지방도 제58호 합류점, 쌍지삼거리) ○종점: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노동길(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9km
회야호	군도 제18호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촌면 대북동천로 (뫼산소류지 입구)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북동천로(회야댐초소 앞)	4.2km
덕동호	지방도 제945호	○시점: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보불로삼거리) ○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장항삼거리)	11.7km
운문댐 (낙동강)	국도 제20호 (댐 관통)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69호 합류점)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12.9km
남강댐 (낙동강)	시도 제7호 (댐 상류)	○시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정곡리 원사) ○종점: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로(금성리 장신)	3.1km
	시도 제18호~ 지방도 제1049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대평로(진주대로삼거리) ○종점: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호반로(삼거리)	18km
밀양댐 (낙동강)	지방도 제1051호 (댐 인접)	○시점: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로(댐관리소 입구)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교점사거리)	8km

[별표 12] <개정 2020. 11. 27.>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나. 낚시제한구역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몽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경찰서장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별표 12의2] <개정 2017. 1. 19.>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5 관련)

1. 설치기준

-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다.
- 사.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아.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자.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2. 운영기준

- 가.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이더라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라.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하여야 한다.
- 마.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하고,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사.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아. 완충저류시설은 연계처리하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19. 10. 17.] 제2호가목1) 비고 제2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목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 함유량	시아놀 유량	크롬함 유량	용해성 철 함유량	아연 함유량	구리 함유량	카드뮴 함유량	수은 함유량	유기인 함유량	비소 함유량	납 함유량	6 가크롬 함유량	용해성 망간 함유량	불소함 유량	P C B 함유량	총 대 장 균 수 (群)	총 대 장 균 수 (mL)	색도 (도)	온도 (℃)	총질소 (mg/L)	총인 (mg/L)	트리 클로로 에틸렌 (mg/L)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mg/L)	음이온 계면 활성제 (mg/L)
		광유류	동식물 유지류																								
		(mg/L)	(mg/L)																								
청 정	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1 이하	0.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3 이하	
가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나	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특례	5.8 ~ 8.6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L)
청정지역	30 이하
가지역	120 이하
나지역	120 이하
특례지역	120 이하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로다이옥신(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C)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지역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폐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f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U)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C)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옥사이드(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U)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온도(°C)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화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사계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염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로리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함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방류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정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정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트다이옥신(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群)(총대장균수)(mf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강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수)(ml)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페놀(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mg/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퍼클로레이트(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mg/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mg/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주석(mg/L)		0.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비고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의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물질명	기준농도(mg/L)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별표 14] <개정 2020. 11. 27.>

방지사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 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차 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차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마.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 <개정 2019. 12. 20.>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사전
		긴급점검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정보 발생	가동중지· 점검중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전	
		·정도검사 기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비고 :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5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의9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5) 법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7호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의9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별표 15] <개정 2019. 12. 3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71조 관련)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법 제38조의5에 따라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는 항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 1. 19.>

[별표 16] <개정 2019. 12. 20.>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2조 관련)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맨홀 또는 오수·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 종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한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관경(관지름)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의 기점·중점·합류점·골목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7]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하여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모래와 돌을 깔아야 한다.
-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용 깻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얇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으로 구성한다.
-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지하 관로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계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별표 18] <개정 2019. 12. 2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 3) 침투시설
-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식생형 시설
-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처리한다.
- 나. 장치형 시설
- 1) 여과형 시설
-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2) 소용돌이형 시설
-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3) 스크린형 시설
-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자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자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별표 18의2] <신설 2020. 2.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검사 항목	세부 항목	검사 기준	검사방법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가. 오염물질 제거원리의 적합성	1) 저류, 침전, 여과, 침투 등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2)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서면검사
	나. 설치 방법의 타당성	1) 강우유출수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의 유입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이 가능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과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나 유량 측정이 가능할 것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가질 것 4) 강우유출수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할 것(비점오염저감시설의 외부에서 우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가. 오염물질 제거효율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량을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산정(침투시설 등 제거효율 실험이 불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할 것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실험
	나. 통수(通水) 능력	오염물질로 인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힘이 발생하는 정도를 손실수두(損失水頭, 물의 흐름에 의해 생긴 에너지, 압력 등의 손실을 물기둥으로 나타낸 값)와 투수속도(透水速度)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검사 항목	세부 항목	검사 기준	검사방법
3.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가.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1) 전력량, 용수 사용량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절할 것 2) 시설 유형별 유지관리 주기가 적절할 것	서면검사
	나. 유지관리 방법의 편의성	1)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에 제시된 유지관리 방법이 적정할 것 2) 시설 내부의 장치, 재료 등의 교체 및 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시설 내부의 슬러지 및 협잡물의 제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	

비고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손실수두는 관로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의 손실수두 및 손실수두 환원 정도를 말한다.
-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투수속도는 시설 표면의 공극(空隙)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유입시키는 시설의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통과유량을 말한다.

[별표 19] <개정 2019. 12. 20.>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 양식어장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어양식장 및 일반 양어장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골프장		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여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 추출물을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 μ 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 추출물질 5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나. 비점오염물질의 흠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거점소독시설	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 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비고

-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산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다목적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 기기 및 기구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다. 저장 시설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 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 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처리 시설	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를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증발농축시설 나) 건조시설 다) 소각시설	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이용 후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또는 허가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p>라) 허가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p> <p>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추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p> <p>3)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증발농축시설</p> <p>(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건조시설</p> <p>(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p> <p>(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소각시설</p> <p>(1)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한다.</p> <p>(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4)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증발농축시설</p> <p>(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축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건조시설</p> <p>(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p> <p>(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소각시설</p> <p>(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p>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p>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 이어야 한다.</p> <p>(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6) 후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p> <p>(3) 삭제 <2014.1.29></p> <p>(4)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p>	<p>(5)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과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p> <p>(6)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기타 부대시설</p> <p>(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2) 처리시설의 잔류물 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5)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6)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7)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p>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p>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p> <p>(3) 삭제 (2014.1.29)</p> <p>(4)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바) 기타 부대시설</p> <p>(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축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p> <p>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p>	

구분	종류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p>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운반 장비</p> <p>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p> <p>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2) 폐수운반 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p> <p>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비고 :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제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기술능력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20의2] <신설 2020. 11. 27.>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의 혼합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위탁자에게 수탁폐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유해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다.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의 혼합비율은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의 비율로 한다.
- 라. 폭발성 가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발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 마. 혼합확인을 하는 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 시 확인사항

-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유해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 및 확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확인사항	확인기준
1) 부식성	수소이온농도	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	가연성가스농도	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	자연발화 여부	5분 이내 자연발화 여부
4) 유해성	황화수소농도	10ppm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 이상
	산소농도	18% 미만 또는 23.5% 이상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할 때 1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가스·연기·악취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확인사항별 확인방법

가. 부식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내부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 용기에서 혼합한다.
- 2) 혼합 직후의 수소이온농도(pH)와 10분간 교반(휘저어 섞음) 후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3)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폭발성 및 유해성

-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밀폐용기에서 혼합한다.
-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스농도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 1) 혼합 직후의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 2) 혼합폐수를 규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ml 용량의 자기(瓷器)로 된 용기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가.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대해서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나. 수탁폐수 중 사진현상 등과 관련된 폐수(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부호

중 P-1부터 P-6까지의 폐수를 말한다. 이하 "사진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진폐수만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폐수처리업자는 혼합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0의3] <신설 2020. 11. 27.>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1. 저장시설

-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을 것
-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처리시설

- 가.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인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라.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바.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별표 21] <개정 2020. 11. 27.>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서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 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제량인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성상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허가를 받은 운반시설로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허가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동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하여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지장하여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1의2] <신설 2019. 10. 17.>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가. 컴퓨터
 - 나. 이동형 통신수단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
3.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인계내역 입력 :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다만,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 나. 인수내역 입력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4. 그 밖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2] <개정 2020. 11. 27.>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1항제7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9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3 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소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 제1항제14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 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사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법 제44조 단서 법 제42조 제1항제6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5호	허가취소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5일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4항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개선명령

- 비고: 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 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 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 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나)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5)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 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 제2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4 제2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3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7)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5)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2조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42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1)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1) 외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4호	사용중지			
		폐쇄명령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다)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다)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5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 제7항	저감시설 설치명령			
		저감시설 개선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7항	경고	사용중지		
		경고	경고	사용중지	
2)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제6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교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본문	허가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가) 허가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1월 이상 실행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허가요건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자) 그 밖의 허가요건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폐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8)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허가취소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3)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 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5) 측정기기(하수·폐수적산유량계)의 고장을 방지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6) 폐수처리업의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7)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4호				
가)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폐수처리업자가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별표 23] <개정 2020. 11. 2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4.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1.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변경 등록,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행정 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9. 수생태계 복원계획(변경계획) 수립·승인 및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20.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제8편
물환경

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317	제1조(목적) 6317	제1조(목적) 6317
제2조(정의) 631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63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319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6319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6320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6319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6321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6321	
제7조 삭제 6322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6321	
	제5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구성) 6322	
	제6조(위원회의 운영) 6323	
	제7조(물 재이용 실무위원회 구성) 6323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6323	
	제9조(운영 세칙) 6323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6323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6323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6323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6326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6326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6325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6326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6327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6327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6328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63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6329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6329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6330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6329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6329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6331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6330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6330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6332	제15조(의견제출 기간) 6332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6330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6334	제16조(설치기준 등) 6332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6335	제17조(수질검사) 6334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6333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6336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6334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6336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6335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6337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6337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6337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6337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6337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6338		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6338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6338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633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연구·개발 촉진 등) 6339 제23조(재정지원 등) 6339 제24조(보고 및 검사) 6339 제25조(청문) 6340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6340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6339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6342 제28조(과태료) 6343	제19조(권한의 위임) 6340 제20조(업무의 위탁) 6342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6342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6343	제20조(규제의 재검토) 6342
부칙 6344	부칙 6344	부칙 6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0. 6. 8 법률 제10359호 개정 2013. 7.16 법률 제11908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3.27 법률 제13260호 2016. 1.27 법률 제13876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12.24 법률 제1608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품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5.22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포럼법 시행령)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9호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4.20 대통령령 제26205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개정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4호 2015. 9. 4 환경부령 제613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4 환경부령 제85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p> <p>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p> <p>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p> <p>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p> <p>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p> <p>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p> <p>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p> <p>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p> <p>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p> <p>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⑥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p> <p>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3. 27.)</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 27., 2017. 1. 17.)</p> <p>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p>	<p>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p> <p>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p> <p>제7조 삭제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 (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p>제5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법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p>	<p>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7조(물 재이용 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 5. 7.></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p>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p>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p>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p>	<p>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p>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p>	<p>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p>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p> <p>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p>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용(飲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p>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p> <p>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p> <p>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p> <p>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p> <p>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p> <p>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p> <p>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p> <p>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p> <p>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p> <p>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p>	<p>〈개정 2015. 9. 4.〉</p> <p>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p> <p>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p> <p>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p> <p>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p> <p>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p> <p>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p> <p>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p> <p>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p> <p>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p> <p>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20. 2. 24.〉</p> <p>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p> <p>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p> <p>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시를 부착할 것</p> <p>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p> <p>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p> <p>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 9.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 세척·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p>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p> <p>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p> <p>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p> <p>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p>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p>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0. 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6.]</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사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p> <p>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사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p> <p>3.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p> <p>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p> <p>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p> <p>6. 사업의 효과 분석서</p> <p>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17.></p> <p>[제목개정 2014. 7. 17.]</p> <p>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승인·해제·심사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p> <p>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p>	<p>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p>5의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 <p>⑥ 삭제 <2018. 6. 8.></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4. 7. 16.]</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면 점유·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p> <p>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p> <p>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유허가</p> <p>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p>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p> <p>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p> <p>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p> <p>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유허가</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p>	<p>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폐수</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②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③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p>	<p>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 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 17., 2018. 1. 16.></p> <p>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p> <p>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p> <p>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14. 5. 22., 2014. 7. 16., 2019. 7. 9.></p> <p>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p> <p>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p> <p>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p> <p>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p> <p>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p>	<p>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p> <p>2.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가 더 드는 경우 [전문개정 2014. 7. 17.]</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p> <p>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제목개정 2013. 7. 16.]</p>	<p>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 협회가 인증한 제품</p> <p>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p> <p>7. 삭제 <2015. 4. 20.></p> <p>8. 삭제 <2011. 11. 23.></p> <p>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p> <p>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p> <p>11.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p> <p>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p> <p>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p> <p>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p> <p>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p>	<p>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 <p>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 7. 17.></p> <p>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p> <p>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p> <p>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17.></p> <p>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6.]</p>		<p>7. 17., 2015. 9.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p>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p>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7., 2020. 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p> <p>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p> <p>③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p>	<p>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p> <p>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p> <p>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p> <p>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p> <p>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p> <p>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6.)</p> <p>[제목개정 2014. 7. 16.]</p>	<p>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7. 17.)</p> <p>②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p> <p>[제목개정 2014. 7. 17.]</p> <p>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실험기기의 변경</p> <p>2. 기술인력의 증가</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p> <p>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할 것</p> <p>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p> <p>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p> <p>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p> <p>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p> <p>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7.></p> <p>[제목개정 2014. 7.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22조(연구·개발 촉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p>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p> <p>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p>		<p>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p> <p>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p>[본조신설 2014. 7. 17.]</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제2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무</p> <p>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p> <p>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p> <p>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6. 삭제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p> <p>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p> <p>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p> <p>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별칙</p> <p>제2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p>	<p>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p> <p>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p> <p>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p> <p>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p> <p>3. 제16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p> <p>4. 제17조에 따른 하·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p> <p>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p> <p>[전문개정 2014. 7.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별칙</p>	<p>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p> <p>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p> <p>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p> <p>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p> <p>[본조신설 2014. 4. 30.]</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3. 7. 16.,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p>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벌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3.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59호, 2010. 6. 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67호, 2011. 6.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17호, 2011. 6.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 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p> <p>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p>	<p>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일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II.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4호, 2014. 7. 17.)</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3호, 2015. 9.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화장실용수 또는 세척·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한다.</p> <p>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p> <p>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p> <p>부칙 〈제11908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p>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⑯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p> <p>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p> <p>④부터 ⑦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배수 재이용사업자: 시·도지사</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p> <p>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⑧부터 ⑯까지 생략</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2호, 2020. 2. 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⑥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p> <p>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p> <p>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⑦부터 ⑫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358호,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3260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76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25479호, 2014. 7.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p> <p>④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80호, 201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205호, 2015. 4. 2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p> <p>③부터 ⑩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⑭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742호, 2019. 5. 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체관”을 “물환경정체국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635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6356

[별표 1] <개정 2019. 7.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 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1) 총대장균군수
 - 2) 결합잔류염소
 - 3) 탁도(NTU)
 - 4) 색계 <2017. 12. 12.>
 -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6) 냄새
 - 7) 색도(도)
 - 8) 총질소(T-N)
 - 9) 총인(T-P)
 - 10) 수소이온농도(pH)
 - 11) 염화물
 - 12) 농업용수 측정항목: 알루미늄(Al), 비소(As), 총붕소(B-total), 카드뮴(Cd), 6가 크로뮴(Cr⁶⁺), 코발트(Co), 구리(Cu), 납(Pb), 리튬(Li), 망간(Mn), 수은(Hg), 니켈(Ni), 셀레늄(Se), 아연(Zn), 시안(CN),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전기전도도

비고

- 1.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2.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

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용량	기술인력
10,000m ³ /일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m ³ /일 이상 50,000m ³ /일 미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50,000m ³ /일 이상 100,000m ³ /일 미만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0m ³ /일 이상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용량	기술인력
	나)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가.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 나.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 다.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5.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4.7.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1호	150	200	300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1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2호	150	200	300
마.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3호	150	200	300
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아.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4호	150	200	300
자.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2호	50	70	100
차.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5호	150	200	300
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6호	150	200	300
타.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파.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7호	150	200	300
하.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거.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8호	150	200	300
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250	350	500
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제3호	50	70	100
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6361
[별표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	6362
[별표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6363

[별표 1] <개정 2018. 1. 17.>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이하	1,000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
결합잔류염소 (mg/L)	0.20이상	-	-	0.1 이상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	-	-	10 이하	-	
총질소 (T-N)(mg/L)	-	-	-	10 이하	20 이하	
총인 (T-P)(mg/L)	-	-	-	0.5 이하	0.5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mgCl/L)	-	-	250 이하	-	-	

비고

-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타 사업장으로 중수도 원수를 이송 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별표 2] <개정 2019. 12. 20.>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제14조 관련)

구분	청소·화장실 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직접 식용	불검출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 이하	1,0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핵산류 염소 (mg/L)	0.2 이상	-	-	0.1 이상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도)	20 이하	-	-	10 이하	-		-		
총질소 (T-N) (mg/L)	-	-	-	10 이하	20 이하		-		
총인 (T-P) (mg/L)	-	-	-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 농도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함

구분	청소·화장실 용수	세척·살수 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염화물 (mgCl/L)	-	-	250 이하	-	-				
전기전도도 (μs/cm)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간접 식용	2000 이하		

비고

1. 농업용수 수질기준 중 직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적용하고, 간접 식용은 농산물을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쳐 먹는 경우에 적용하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위: mg/L)

알루미늄 (Al)	비소 (As)	총붕소 (B-total)	카드뮴 (Cd)	6가크롬 (Cr ⁶⁺)	코발트 (Co)	구리 (Cu)	납 (Pb)
5 이하	0.05 이하	0.75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2 이하	0.1 이하
리튬 (Li)	망간 (Mn)	수은 (Hg)	니켈 (Ni)	셀레늄(Se)	아연 (Zn)	시안 (CN)	폴리클로리네 이터드비페닐 (PCB)
2.5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0.2 이하	0.02 이하	2 이하	불검출	불검출

2.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 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의 경우 알루미늄(Al), 총붕소(B-total),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코발트(Co), 리튬(Li) 항목은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의 금속류-유도결합플라σμα 원자 발광분광법에 준하되, 코발트(Co)는 측정파장 228.616, 정량한계 0.01mg/L, 리튬(Li)는 측정파장 670.784, 정량한계 0.50mg/L로 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여 송수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재처리수의 기준보다 강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4.7.1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9조 제1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시공한 경우	법 제19조 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다.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9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8편
물환경

04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376	제1조(목적) 6376	제1조(목적) 6376
제1조(목적) 6376		
제2조(정의) 637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79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6379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6380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6380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6381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6383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6383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6383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384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384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386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6387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6387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6387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6388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6388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6388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6389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6389	
		제4조(토지 출입증) 6390
제9조(손실보상) 6390	제6조(손실보상) 6390	제5조(재결신청서) 6390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6391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6391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6392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6392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6393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설치기준 등) 6395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6397 제14조(타공사의 시행) 6398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6398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6399 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6399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6401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6402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6405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6407 제19조의3(결격사유) 6409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6395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395 제10조(설치기준 등) 6395 제11조(사용의 공고) 6398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6399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6401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6401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6402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6407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6394 제5조의3(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및 배치) 6396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6396 제7조 삭제 6398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6399 제9조(관리의 범위) 6401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6403 제11조 삭제 6405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6405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6405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 6407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6407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6408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6409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6410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6411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6411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6411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6411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6411	제15조의4(성과평가) 6412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6412		
제20조(기술진단 등) 6413	제16조(기술진단 등) 6413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6413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6414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6414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6415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6414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6414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6415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6416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6416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6416		
제21조 삭제 6416		제15조(사용제한) 6417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6416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6417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6418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6417	제19조(점용허가) 6418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6419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6419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6417		
제24조(점용허가) 6418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6418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6419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p> <p>제26조 삭제 6420</p> <p>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64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8.></p> <p>제21조 삭제 64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9.></p> <p>제18조 삭제 6420</p> <p>제19조 삭제 6420</p> <p>제20조 삭제 6420</p> <p>제21조 삭제 6420</p>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p> <p>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6421</p> <p>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6423</p> <p>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6425</p> <p>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6425</p> <p>제30조(허가의 취소 등) 6426</p> <p>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6427</p> <p>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6427</p> <p>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6428</p> <p>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6428</p>	<p>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6421</p> <p>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64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431</p> <p>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6434</p> <p>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6435</p>	<p>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6422</p> <p>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6422</p> <p>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의 허가) 6425</p> <p>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64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6429</p> <p>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6430</p> <p>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6431</p> <p>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6433</p> <p>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643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429</p> <p>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6434</p> <p>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643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431</p> <p>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6434</p> <p>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643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6429</p> <p>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6430</p> <p>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6431</p> <p>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6433</p> <p>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6434</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6436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6436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6436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6436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6437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6437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6438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6439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6440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6442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6440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6442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6443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6445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6445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6445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6446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의 지역) 6446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6447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6447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6448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6449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6449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6450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6450
제43조(분뇨의 처리) 6448		
제44조(분뇨의 재활용) 6449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6450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6450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6450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6450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6451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6451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6452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6453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6453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결격사유) 6453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6454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455
제50조(과징금) 6455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6456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6455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6456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6455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6456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 6456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6457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6457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6458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6458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6458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6459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6460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6460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6461 제58조(검사방법 등) 6461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6462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6462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6462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6462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6462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6463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6463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6463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6465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465 제65조(시공감독자의 자격) 6465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6465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6466	제3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6466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6465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6467 제58조(비용분담) 6467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6467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6467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6468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6468 제63조(국고보조) 6469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6469 제65조(사용료 등) 6469	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6467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6468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6469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6470 제67조(교육) 6471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6473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474 제69조(보고·검사) 6475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6475 제70조(수수료) 6476	제37조(기술관리인) 6470 제38조(교육) 6471 제39조(교육계획 등) 6472 제40조(보고·검사 등) 6475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6475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6470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6470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6473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6474 제71조(출입·검사 등) 6475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6475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647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6476		
제72조(청문) 6477		
제73조(강제징수 등) 6477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6478	제41조(권한의 위임) 6478	
	제42조(권한의 위탁) 6479	제74조 삭제 6479
		제75조 삭제 6479
	제42조의2(교유식별정보의 처리) 6480	제76조 삭제 6479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6480	
	제42조의4(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 6481	제7장 삭제 (2008. 11. 13.)
제74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481		제77조(규제의 재검토) 6480
제8장 별칙		
제75조(별칙) 6481		
제75조(별칙) 6482		
제76조(별칙) 6482		
제77조(별칙) 6483		
제77조(별칙) 6484		
제78조(별칙) 6486		
제79조(양별규정) 6486		
제80조(과태료) 6486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486	
제80조(과태료) 6489		
부칙 6493	부칙 6493	부칙 6493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정 2006. 9.27 법률 제8014호 개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1. 7 법률 제9334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권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 6. 8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4. 5 법률 제10552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11.14 법률 제11084호 2012. 2. 1 법률 제11264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5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채와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18 법률 제12466호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감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2. 3 법률 제13171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8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10.16 법률 제15843호</p>	<p>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 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산림표준화법 시행령) 2008.11. 5 대통령령 제21105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농국농어촌발전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1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2. 9 대통령령 제22863호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3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4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3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2.20 대통령령 제24242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5.22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간정보 및 교육시설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2.16 대통령령 제26105호 2015. 4.20 대통령령 제26205호 (소자·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	<p>제정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20 환경부령 제282호 2008.11.13 환경부령 제308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4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2.26 환경부령 제363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 2.17 환경부령 제399호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10. 6 환경부령 제425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1.15 환경부령 제494호 2013.11.29 환경부령 제52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3호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5.11. 6 환경부령 제619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에 관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27 환경부령 제660호</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2021. 1. 5 법률 제17852호</p>	<p>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p> <p>2016.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 <p>2016. 9.13 대통령령 제27496호</p> <p>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7. 1.26 대통령령 제27806호 (천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p> <p>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11.17 대통령령 제31162호</p> <p>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각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p> <p>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2020. 2.24 환경부령 제85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개정 2018. 10. 16.,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조</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p> <p>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p> <p>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p> <p>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p> <p>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p> <p>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p>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p>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p>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p>[본조신설 2013. 1.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2. 1. 6.] 제4조의2</p> <p>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p>		<p>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p>② 삭제 <2016. 6. 27.></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변경·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1. 15.]</p> <p>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p> <p>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p> <p>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p> <p>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에 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p> <p>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 5. 26.></p> <p>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에 방에 관한 사항</p> <p>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p> <p>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p> <p>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p> <p>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p> <p>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p> <p>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시행일 : 2022. 1. 6.] 제5조</p> <p>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 수 있다. <개정 2009. 12. 24.></p>	<p>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3. 1. 15., 2014. 7. 17., 2020. 2. 24.></p> <p>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p> <p>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p>하수도법 시행령</p> <p>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 	<p>하수도법 시행규칙</p> <p>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 합류식하수관로·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p>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 합류식하수관로·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p>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4. 7. 17.,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p> <p>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1. 7. 21., 2013. 7. 16.></p> <p>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차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p>	<p>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p> <p>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p> <p>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p> <p>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p> <p>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p> <p>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p> <p>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p> <p>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p> <p>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1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p>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p>	<p>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5.></p> <p>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 10. 24., 2013. 1.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p> <p>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p>	<p>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p> <p>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13. 7. 16.)</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p>른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0조의2</p> <p>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0조의3</p> <p>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p>	<p>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p>	<p>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p>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p>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p>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p> <p>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 7.></p> <p>⑤ 삭제 <2013. 7. 16.></p>	<p>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p> <p>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p> <p>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p> <p>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p> <p>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p> <p>③ 삭제 <2014. 7. 16.></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4. 7. 16.></p>	<p>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⑥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0. 5. 26.></p> <p>⑦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p> <p>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p> <p>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p>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p> <p>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p> <p>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p>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 6. 30.]</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p> <p>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구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구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p> <p>3.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p> <p>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p>	<p>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p>[본조신설 2012. 5. 15.]</p> <p>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3조(경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결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 등(이하</p>	<p>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08. 11. 5., 2011. 2. 9., 2011. 10. 28., 2011. 11. 23., 2012. 12. 20., 2014. 5. 22., 2014. 7. 16., 2016. 9. 13.,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 4. 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 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1. 1. 5.></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p> <p>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p>	<p>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p>	<p>제7조 삭제 <2012. 5.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7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협의·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7., 2009. 6. 9., 2010. 4. 15., 2011. 11. 14., 2013. 7. 16., 2014. 1. 14.,</p>	<p>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2014. 7. 16.></p> <p>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p> <p>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014. 6. 3.,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p> <p>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p> <p>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 <p>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20. 5. 26.></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 5. 26.></p>	<p>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p> <p>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p>	<p>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p> <p>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p> <p>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p> <p>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p> <p>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p>	<p>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p>② 삭제 (2009. 6. 26.)</p> <p>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p>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 부담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p>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 11. 5., 2018. 1. 16.></p>	<p>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15., 2013. 11. 29.,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행위</p>		<p>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p> <p>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p>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2013. 11. 29.></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 11. 29.></p> <p>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p> <p>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④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⑤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목개정 2012. 2. 1.]</p> <p>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p> <p>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p> <p>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p>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5., 2014. 7. 16.></p> <p>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p> <p>[제목개정 2014. 7. 16.]</p>	<p>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14. 7. 17.]</p> <p>제11조 삭제 <2008. 11. 13.></p> <p>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09. 6. 30.,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p>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 6. 30.></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p> <p>③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p> <p>⑤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⑥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p> <p>⑦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목개정 2012. 2. 1.] [시행일 : 2022. 1. 6.] 제19조</p> <p>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p>	<p>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2. 12. 20.]</p>	<p>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5. 11. 6.> 2. 삭제 <2015. 11. 6.>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1. 15.]</p> <p>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15.]</p> <p>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본조신설 2012. 2. 1.]</p>		<p>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p>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1. 15.]</p> <p>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실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1.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무를 한 경우</p> <p>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p>	<p>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p> <p>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p>	<p>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 15.]</p> <p>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본조신설 2012. 2. 1.] [시행일 : 2022. 1. 6.] 제19조의5</p> <p>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2. 20.)</p> <p>[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2. 12. 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p> <p>제15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1. 9. 30.] [제42조의4에서 이동 <2012. 12. 20.>]</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9조의6</p> <p>제20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7. 16.></p>	<p>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p>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15. 2. 16.></p> <p>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 12. 20.></p> <p>[본조신설 2012. 5. 14.]</p>	<p>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p> <p>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p> <p>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 5. 15.]</p> <p>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 7. 17.> 2. 삭제 <2014. 7. 17.>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p> <p>[본조신설 2012. 5.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p> <p>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본조신설 2011. 11. 14.]</p>		<p>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p>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p> <p>[본조신설 2012. 5.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14.]</p> <p>제21조 삭제 <2010. 6. 8.></p> <p>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p>		<p>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5의3과 같다. <개정 2013. 1. 15.> [본조신설 2012. 5. 15.]</p> <p>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4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 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21조</p> <p>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p>	<p>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p>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p>	<p>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p> <p>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p> <p>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p>	<p>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6.></p> <p>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p>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p> <p>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p> <p>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7. 16.></p> <p>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p> <p>2. 시·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p>	<p>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5. 14.></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p> <p>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p>	<p>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5.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p> <p>제26조 삭제 <2010. 6. 8.></p> <p>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검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8.></p> <p>제21조 삭제 <2011. 6. 8.></p> <p>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 6. 9.></p> <p>제18조 삭제 <2011. 6. 9.> 제19조 삭제 <2011. 6. 9.> 제20조 삭제 <2011. 6. 9.> 제21조 삭제 <2011. 6. 9.></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p> <p>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p> <p>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p> <p>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26조</p> <p>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행일 : 2022. 1. 6.]</p> <p>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 6. 8.> [시행일 : 2022. 1. 6.]</p> <p>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p> <p>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p>	<p>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p> <p>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p> <p>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p> <p>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p>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30.></p> <p>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p> <p>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p>		<p>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p> <p>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p> <p>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우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p> <p>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p> <p>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p> <p>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p> <p>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p>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27조</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p>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p>		<p>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p>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검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p>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경우</p> <p>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1. 7.]</p> <p>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09. 1. 7.]</p> <p>[제목개정 2021. 1. 5.]</p> <p>[시행일 : 2022. 1. 6.] 제30조</p> <p>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p> <p>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7.></p> <p>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p>	<p>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p>	<p>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p> <p>② 삭제 (2012. 5. 15.)</p> <p>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시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p>[본조신설 2009. 6.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p> <p>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p>		<p>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7. 17.]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26., 2017. 1. 19.>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p>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 7. 17.> 2. 삭제 <2014. 7. 17.> <p>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p>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p> <p>1. 하수처리구역 밖</p> <p>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p> <p>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p> <p>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p> <p>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p> <p>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p>	<p>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4.></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1. 6., 2020. 2. 24.></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p>	<p>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 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p>	<p>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용을 정할 것 <p>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설비에 전원을 연결 	<p>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우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p>[본조신설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니하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하지 아니한 경우</p> <p>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 7. 16.]</p> <p>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6.></p> <p>1. 하수처리구역 밖</p> <p>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하수처리구역 안</p> <p>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 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9. 1. 7., 2017. 1. 17., 2020. 5. 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 1. 7., 2017. 1. 17.)</p> <p>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p>	<p>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p> <p>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p>	<p>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지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p>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 2014. 7. 17.></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2014. 7. 17.></p> <p>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를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 		<p>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p>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p> <p>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p> <p>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p> <p>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p> <p>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5. 삭제 <2021. 1. 5.>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산설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p>[시행일 : 2022. 1. 6.] 제38조</p> <p>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p>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개정 2020. 5. 26.)</p>		<p>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p> <p>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p> <p>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p> <p>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p> <p>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제외한다)</p> <p>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p> <p>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p> <p>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p> <p>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 7. 17.></p> <p>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p>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p>	<p>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17.)</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p> <p>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9. 12. 20.)</p> <p>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p>	<p>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p> <p>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p> <p>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p>(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분뇨의 처리</p> <p>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p> <p>②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분뇨의 처리</p>	<p>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 7. 17.></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분뇨의 처리</p> <p>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p>		<p>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p>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p>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 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p> <p>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p> <p>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p> <p>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p>	<p>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4. 7. 16.)</p>	<p>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4. 5., 2013. 7. 16.)</p> <p>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p> <p>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p> <p>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p>		<p>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4. 5., 2015. 2. 3., 2017. 1. 17.,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11. 11. 14.>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1. 삭제 (2011. 11. 14.)</p> <p>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세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0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p> <p>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13. 8. 6., 2020.</p>	<p>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0.)</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p> <p>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6. 30.)</p> <p>② 삭제 (2009. 6. 30.)</p> <p>[제목개정 2009. 6. 30.]</p> <p>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p> <p>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3. 24.)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p> <p>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말한다.</p> <p>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p>	<p>「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p> <p>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p>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시행일 : 2022. 1. 6.] 제51조</p> <p>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p>	<p>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p>	<p>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p> <p>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p>		<p>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p>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p>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p>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0. 2. 26., 2011. 10. 6., 2015. 1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검사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재질검사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p>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24.></p> <p>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 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20. 2. 24.]</p> <p>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 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여야 한다.</p> <p>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p> <p>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p>		<p>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p> <p>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즉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제품 외의 제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품을 제조한 경우</p> <p>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4. 삭제 (2011. 11. 14.)</p> <p>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②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p>		<p>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 6. 30.)</p> <p>② 삭제 (2009. 6. 30.)</p> <p>[제목개정 2009. 6. 30.]</p> <p>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p> <p>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용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제3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p> <p>[본조신설 2011. 9. 30.]</p>	<p>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6. 6. 27.></p> <p>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p> <p>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 27.></p> <p>[제목개정 2014. 7. 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비용부담 등</p> <p>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60조(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비용부담 등</p> <p>제34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p> <p>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p>	<p>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p> <p>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p> <p>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p> <p>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p>	<p>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7. 1. 17., 2018. 1.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p>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p>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67조(교육)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②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p>	<p>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2. 9.,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나. 법 제19조의4·제49조·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p> <p>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p> <p>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p>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의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p> <p>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상)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p> <p>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p> <p>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계선</p> <p>나. 배수구역의 경계선</p> <p>다. 하수관로 및 토구(土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구역의 명칭</p> <p>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 시설의 위치나 명칭</p> <p>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p> <p>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p> <p>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p> <p>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p> <p>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p> <p>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p>		<p>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 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 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p> <p>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p>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4.></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4.></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p> <p>제69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분뇨수집·운반업자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7. 처리시설제조업자 8. 처리시설관리업자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p>	<p>제40조(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p>제7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 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 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p>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p>	<p>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p>	<p>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p>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4.]</p>	<p>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p> <p>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p> <p>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p>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21. 1. 5.]</p> <p>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 5. 1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2014. 7. 16.>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삭제 <2014. 7. 16.>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의4.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5.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삭제 <2014. 7. 1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p> <p>7.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p> <p>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p> <p>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p> <p>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한정한다)</p> <p>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p> <p>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p> <p>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p>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 9. 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p>제74조 삭제 <2012. 5. 15.></p> <p>제75조 삭제 <2012. 5. 15.></p> <p>제76조 삭제 <2013. 1. 1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총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p> <p>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삭제 (2008. 11. 13.)</p> <p>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의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7년 1월 1일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④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1. 5.></p> <p>⑤ 삭제 <2011. 11. 14.></p> <p>⑥ 삭제 <2012. 2. 1.></p> <p>⑦ 삭제 <2012. 2. 1.></p> <p>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 	<p>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p> <p>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p> <p>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p> <p>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p> <p>10.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14. 8. 6.>]</p> <p>제42조의4(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4. 8. 6.>]</p>	<p>5.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p> <p>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3. 18.,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p>[시행일 : 2022. 1. 6.] 제75조</p> <p>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2. 2. 1.,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p> <p>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p> <p>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20. 5. 26., 2021. 1. 5.></p> <p>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p> <p>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p> <p>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p> <p>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p> <p>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p> <p>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합부로 버린 자</p> <p>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p> <p>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p> <p>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p> <p>15. 삭제 (2011. 11. 14.)</p> <p>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p> <p>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p> <p>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p> <p>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p> <p>20. 삭제 (2011. 11. 14.)</p> <p>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20. 5. 26., 2021. 1. 5.)</p> <p>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p> <p>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p> <p>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p> <p>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p> <p>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p> <p>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p> <p>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p> <p>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p> <p>15. 삭제 (2011. 11. 14.)</p> <p>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p> <p>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p> <p>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p> <p>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p> <p>20. 삭제 (2011. 11. 14.)</p> <p>[시행일 : 2022. 1. 6.] 제77조</p> <p>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14.]</p> <p>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 1. 7.]</p> <p>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 6. 8.)</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4.></p> <p>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p> <p>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p>	<p>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전문개정 2012. 5. 14.]</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p> <p>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p> <p>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p> <p>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p> <p>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p> <p>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p> <p>28.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p> <p>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p> <p>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p> <p>⑦ 삭제 <2009. 1. 7.></p> <p>⑧ 삭제 <2009. 1. 7.></p> <p>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 6. 8.></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4., 2021. 1. 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p> <p>1. 제4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p> <p>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p> <p>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p> <p>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p> <p>4의2.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p> <p>6. 삭제 (2021. 1. 5.)</p> <p>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p> <p>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p> <p>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p> <p>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p> <p>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p> <p>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p> <p>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p> <p>28.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1. 1. 5.></p> <p>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p> <p>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 7., 2011.</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11. 14., 2013. 7. 16.) ⑦ 삭제 <2009. 1. 7.) ⑧ 삭제 <2009. 1. 7.) [시행일 : 2022. 1. 6.] 제80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p>제5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89호, 2007. 9.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p> <p>제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9호, 2007. 10.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p> <p>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정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8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p> <p>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p> <p>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p> <p>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p> <p>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p> <p>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p> <p>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p> <p>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p> <p>⑦ 향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p> <p>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p> <p>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p> <p>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④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⑩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⑪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p> <p>⑫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p> <p>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분뇨처리시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p> <p>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p> <p>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p> <p>⑥과학관용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p>	<p>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⑭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p> <p>⑮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⑯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⑯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p> <p>⑰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p> <p>⑱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p> <p>⑲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⑮부터 ⑰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부터 ⑫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82호, 2008. 3.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㉔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㉑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p>	<p>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⑯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⑰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544호, 2008. 1. 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p> <p>⑰ 부터 ㉒ 까지 생략</p>	<p>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를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의 정화조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때에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08호, 2008. 11.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4호, 2009. 6. 30.></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26></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63호, 2010. 2. 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㉔농업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㉕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p> <p>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p> <p>㉖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p> <p>㉗검진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1105호, 2008. 11. 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⑰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⑱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399호, 2011. 2.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17호, 2011. 6.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425호, 2011. 10. 6.></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본보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p> <p>㉞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㉟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부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p> <p>㉤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p> <p>㉞부터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1571호, 2009. 6. 26.></p> <p>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p>	<p>4. 「환경기술포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p> <p>⑦ 및 ⑧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455호, 2012. 5. 15.></p> <p>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p> <p>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㉔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p> <p>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㉔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p>	<p>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94호, 2013. 1. 15.>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26호, 2013.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3호, 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 한다. ㉔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㉕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㉖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㉗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21744호, 2009.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p> <p>부칙 〈제619호,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60호, 2016. 6.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조”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p> <p>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p> <p>㉔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p> <p>㉔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420호, 2010. 10. 1.> (자연공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부칙 <제22663호, 2011. 2. 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967호, 2011.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⑫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p> <p>㉔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p> <p>㉕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p> <p>㉖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㉗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p> <p>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p> <p>㉙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를 삭제한다.</p> <p>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p> <p>제21조를 삭제한다.</p> <p>별표 8 II.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193호, 2011. 9.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p> <p>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⑯부터 ⑳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13호, 2011. 1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	<p>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포 제1호나목 II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III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p> <p>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p> <p>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㉕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p> <p>㉖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p> <p>㉗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㉘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㉙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p> <p>㉚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23464호, 2011.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정화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3783호, 2012. 5.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으로 한다.</p> <p>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p> <p>⑦부터 ⑯까지 생략</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1호, 2020. 2.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⑭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p> <p>⑮폐기물관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⑯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p> <p>(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p> <p>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⑰ 및 ⑱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4242호, 2012. 12.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 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 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p>	<p>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358호, 2014. 5.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p> <p>부칙 <제2547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를」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p> <p>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접용 등의 허가</p> <p>⑩내지 ⑭생략</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개정한다.</p> <p>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④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105호, 2015. 2. 1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205호, 2015. 4. 2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p> <p>⑩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 생략 <6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45호, 2016. 8.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생략 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96호, 2016. 9.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투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투경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㉞ 부터 ㉟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㉞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㉟ 부터 ㊱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0> 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3호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3조(정화조 약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약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약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 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9334호, 2009. 1. 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㉒부터 ㉘까지 생략</p> <p>부칙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 style="text-align: center;">(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 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p> <p>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 <p>⑭ 생략</p> <p>제19조 생략</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권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p> <p>1. 「공유수면 권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p>	<p>부칙 <제2995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162호, 202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다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65〉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335호,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생략 <p>부칙 〈제10359호, 2010.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52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45조제5항(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8조제3호, 제8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적용례)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사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11084호, 2011. 11.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1264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5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9>부터 <71>까지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6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1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3제1호, 제20조의3제1호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13888호, 2016. 1.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43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8>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52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p>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으로,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을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으로 한다.</p>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6527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6529
[별표 1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6529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6531
[별표 1의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6531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6532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6533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6534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6535
[별표 6]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6536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6537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6538

[별표 1] <개정 2014.7.16>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 1) 준설차량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3) 연막시험용 배풍기
-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 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가.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시설용량	
	1) 500 m³/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 m³/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구분	기술인력
3) 10,000 m ³ /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12.12.20>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에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별표 1의3] <개정 2020. 11. 1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 1) 유속계
 - 2) 수온 측정기
 -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 4) 용존산소(DO) 측정기
 - 5) 자동시료채수기
 - 6) 디지털압력계
 - 7) 접지저항계
 - 8) 절연저항 측정기
 -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10) 연막시험용배풍기
 - 11) 이동식 유량계
 -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 13)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 14) 부유물질(SS) 실험분석장비
 - 15) 총질소(T-N) 실험분석장비
 - 16) 총인(T-P) 실험분석장비
 - 17) 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
 - 18) 생태독성 실험분석장비
 - 19)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 20)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21) 진동측정분석기
 - 22) 소음측정기
 - 23) 회전계
 - 24)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0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5) 전력품질분석기

26) 유량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환경, 화공, 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또는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2)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또는 생물공학 기사

나)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기사

라)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3)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또는 기계정비 산업기사

다)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라) 토목 산업기사

마) 수질환경 산업기사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2. 하수관로(땀프장은 제외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연막시험용배풍기

11) 이동식 유량계

1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실험분석장비

나. 기술인력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

나) 상하수도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2)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3)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4)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

5)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나목2)와 같은 목 3)의 토목 및 수질환경 자격 종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1의4] <개정 2020. 11. 1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계열사를 포함한다)이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의5] <개정 2021. 1.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0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 10. 우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0. 11. 17.>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흡입식 차량 및 주차공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14.7.1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3호	2,000	5,000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4호	2,000	5,000	10,000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5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	5,000	10,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000	10,000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1,000	3,000	5,000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의4 제2항제3호	2,000	5,000	10,000
6.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4호			
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3,000
나. 그 밖에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	1,500	3,000
7.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500	1,500	3,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1,500	3,000
9.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5호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00	1,500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500	1,500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00	1,500	
10.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6호			3,000
11.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7호	500	1,500	3,000
1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8호	500	1,500	3,000

비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8. 12.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유허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8. 12. 1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계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시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군수(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 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입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7] (개정 2018. 12. 1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0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폐지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20. 11.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최종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방류수수질기준 중 둘 이상의 항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 마.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법 제80조 제2항제1호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호	50	70	100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제1호	30	40	50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5호	50	70	100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3호	50	70	100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제2호	30	40	50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 제3호의2	50	70	100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제3호	30	40	50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80조 제2항제2호	100	150	250	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제4호	30	40	50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7호	50	70	100
						법 제80조 제4항제8호	50	70	100
						법 제80조 제4항제9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0호	100	100	100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1호	100	100	100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3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4호	50	70	100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5호	50	70	100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6호	100	100	100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7호	100	100	100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8호	100	100	100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19호	100	100	100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0호	100	100	100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1호	100	100	100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 제22호	100	100	100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3호	50	70	100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3항제2호	100	200	300

0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4호	50	70	100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5호	50	70	100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제26호	50	70	100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 제27호	50	70	100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 제4항 제28호	100	100	10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6545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6547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6547
[별표 4] 정확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6549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6549
[별표 5의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6550
[별표 5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6551
[별표 6] 삭제 <2014.7.17.>	6552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6552
[별표 8] 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	6553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6554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6554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6556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6556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6558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관련]	6559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6560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6563
[별표 17]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	6564

[별표 1] (개정 2020. 2. 24.)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m ³ 이상	I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II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III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IV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m ³ 미만 50m ³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m ³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m ³ 이상	I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II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III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IV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m ³ 미만 50m ³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m ³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제2호나목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mg/L 이하와 8mg/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ml 이하로 적용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km 이내의 지역
 -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m³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이상일 것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오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I 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 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III 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I 지역 및 II 지역을 제외한다)
IV 지역	I 지역, II 지역 및 III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I 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II 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III·IV 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별표 2] <개정 2020. 2. 24.>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 /L)	부유물질 (SS) (mg /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총질소 (T-N) (mg /L)	총인 (T-P) (mg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 /L)	총유기 탄소량 (TOC) (mg /L)	부유물질 (SS) (mg /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총질소 (T-N) (mg /L)	총인 (T-P) (mg /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별표 3] <개정 2018. 1.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m³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50m³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총인(mg/L)	2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저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mg/L 이하와 8mg/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 (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 (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L이하, 부유물질량 10mg/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허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text{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 \frac{\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text{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times 100$$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text{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frac{\text{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text{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text{희석배율} = \frac{\text{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text{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text{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5]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 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개정 2016. 12. 30.>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19조의4제1항제1호·제 2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법19조의4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5호				
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6호 법19조의4 제2항제1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7호 본문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8호	등록취소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2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5의3] <개정 2015.11.6.>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20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2호	경 고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영 별표 1의4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5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6호	해당 임원 개임 전까지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별표 6] 삭제 <2014.7.17>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우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 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14.7.17>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허가취소			
차. 삭제 <2014.7.17>					
카. 삭제 <2014.7.17>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같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22.>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9. 1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 3)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에 1.5m마다 보강링을 구조물의 본체와 일체형으로 성형하여야 하며, 보강링의 단면은 안전성이 1보다 작고, 허용 좌굴하중이 단위 폭당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4)의 보강링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 및 허용 좌굴하중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외의 재질을 사용하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보강기능이 있어야 하며, 부식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식처리(防蝕處理)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안전성 계산식: $\sigma \div 420\text{kg}/\text{cm}^2 + \sigma_1 \div 700\text{kg}/\text{cm}^2$
 - 나) 허용좌굴하중 계산식: $3EI/r^3$
 - ※ 응력(변형력)(σ) = $\text{Pr} \div A$
 - 굴곡응력(σ_1) = $0.84\text{Pr}^2/\text{bt}^2$

P: 단위 폭당 하중(P = 40.73kg/cm)

r: 반지름

A: 보강링의 단면적

b: 보강링의 너비

t: 보강링의 두께

E: 탄성율(80,000)

I: 보강링의 단면 2차 모멘트($I=bt^3/12$)

나.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3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 2) 영 제24조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 3) 구조물 본체의 직경 또는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 4)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5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다만, 처리대상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총유효용량을 1.0㎡ 이상으로 한다.	
(3) 제1실의 유효용량은 2실형에는 총유효용량의 3분의 2, 3실형 및 4실형에는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碎石層)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濾材)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4) 각 실의 유효수심은 1m 이상 2.7m 이하이어야 하고,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며, 유출관 또는 단층벽 하단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거나, 각 실 간 벽의 같은 깊이에 적당한 수의 폭 3cm의 세로구멍을 6cm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상물이나 스크(scum)의 유출이 방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제1실의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단층벽이나 "T"자형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뚜껑을 두고, "T"자형 관의 지름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6)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가. 재질 및 재질별 제조 가능한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 [$2 \times \text{가로} \times \text{세로} / (\text{가로} + \text{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지름(mm)	두께(mm)
1,500 이하	7 이상
1,500 초과 1,700 이하	8 이상
1,700 초과 2,200 이하	9 이상
2,200 초과 2,700 이하	10 이상
2,700 초과 2,900 이하	11 이상
2,900 초과	12 이상

비고

1. 맨홀부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mm 이하이면 6mm 이상, 1,500mm를 초과하는 것이면 7mm 이상이어야 한다.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은 제58조에 따른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 성적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표시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투경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각각 새겨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몸체의 내외부(내부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맨홀부)에는 보기 쉬운 곳에 내식성 금속재질로 부착하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3. 처리공법:	4. 설계 BOD 유입농도: mg/L		
5. BOD 방류수질: mg/L	6. 처리용량: m ³ /일		
7. 재질: (두께: mm이상)			
8.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관청-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정화조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3. 처리공법:	4. 처리대상 인원: 명용		
5. 재질: (두께: mm 이상)	6.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방법-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별표 13] <개정 2013.1.15>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 1) 검사기간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검사횟수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수질분석

- 1) 시료 채취 :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2) 수질분석 항목
 - 가) 처리시설용량 50m³/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 나) 처리시설용량 50m³/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 3) 수질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수질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마.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가. 시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나. 재질시험방법

-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측면(좌, 우, 앞, 뒤)·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0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 가. 겉모양·두께 및 수밀성 : 전량
 -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물체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

[별표 15]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8)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10) 삭제 (2014.7.17)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법 제5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8)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등록취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2) 삭제 (2014.7.17)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7)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9) 삭제 (2014.7.17)					
10)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5호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16] <개정 2017. 12. 2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자격기준
<p>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p> <p>가.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라.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p> <p>마.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p>

비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30,000원	-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23,000원	-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23,000원	15,000원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23,000원	-

제9편

수자원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6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6665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681
0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709
0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777
06.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6825
0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005
0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7011

제9편
수자원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576	제1조(목적) 6576	제1조(목적) 6576
제2조(정의) 6576		
제3조(적용범위) 6576	제2조(적용 범위) 6577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개정 2011. 5. 30.>	제1절 댐의 건설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6577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6577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6578	
	제5조(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6578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579	
제5조 삭제 6579	제7조 삭제 6579	제2조 삭제 6579
제6조 삭제 6579	제8조 삭제 6579	제3조 삭제 6579
	제9조 삭제 6579	
	제10조 삭제 6579	
	제11조 삭제 6579	
제7조(기본계획) 6579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6579	
제8조(실시계획) 6581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6581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6582		
제9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6584	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6584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6585		
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6587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658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6587 제12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6588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6587 제14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6588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6587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6588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6588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6589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6590		
제2절 댐의 관리 (개정 2011. 5. 30.)	제2절 댐의 관리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6590	제16조(댐관리의 위탁) 6590	
	제17조(댐관리규정) 6591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6591		
제17조(댐관리규정) 6591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6591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6591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6592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6592	
제18조의3(댐의 평가) 6592	제18조의3(댐의 평가 실시) 6592	제6조(경고표지의 설치) 6592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5. 30.)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11. 30.)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6593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6593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6593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6594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6594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6594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6595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6594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6595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6595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6595	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6595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6595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6595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 6597 제23조의3(이의신청) 6598 제24조(담사용권의 설정) 6598 제25조(담사용권의 설정요건) 6599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6599 제27조(담사용권설정의 거부) 6600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6600 제29조(담사용권의 성질) 6600 제30조(담사용권의 처분제한) 6600 제31조(담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6600 제32조(등록) 6601 제33조(납부금) 6602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6602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6602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6603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6604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6604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6596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6598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6602 제27조(상각액) 6602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6603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6604 제29조(담건설자에 대한 담사용권의 설정) 6604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6605 제30조(담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6605	제10조(담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6598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담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5. 30.)</p>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6605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담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11. 30.)</p>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6605 제32조 삭제 660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삭제 6606	
	제34조 삭제 6606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6606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6606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6607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6607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6608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6608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6608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6609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6609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6609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6610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6612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6613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6613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6613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6613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6614	제45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6614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6614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6614		
제4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4장 보칙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6615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6615	제11조 삭제 6615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6616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6616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6617		
제47조(청문) 6617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6617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6617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6618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6620		
	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66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662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 <개정 2011. 5. 30.></p> 제49조(벌칙) 6620 제50조 삭제 6620 제51조(벌칙) 6620 제52조(양벌규정) 6620 제53조(과태료) 6621 부칙 6621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 <신설 2009. 9. 10.></p>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621 부칙 6621	부칙 66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1999. 9. 7 법률 제6021호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7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3. 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4. 1.29 법률 제71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12. 7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2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10.17 법률 제865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9. 4. 1 법률 제9597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2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5.30 법률 제10760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2. 1.17 법률 제11185호 (정부조직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6.12. 2 법률 제14337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1.17 법률 제1454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9. 8.27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 3.31 법률 제17175호</p>	<p>제정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개정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전기사업법시행령) 2001. 7.14 대통령령 제17302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2002. 7.30 대통령령 제17696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 7.30 대통령령 제18504호 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9. 9.10 대통령령 제21724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3호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1호 2012. 6.29 대통령령 제2391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6호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4호</p>	<p>제정 2000. 3.29 건설교통부령 제233호 개정 2002. 8.13 건설교통부령 제325호 2006. 6. 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 4 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성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1.11.30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6. 2 국토교통부령 제426호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p> <p>제1절 댐의 건설 <개정 2011. 5. 30.></p> <p>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p> <p>제1절 댐의 건설</p> <p>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p>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p> <p>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p>	<p>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 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p>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 17., 2018. 6. 8.></p> <p>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p> <p>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p> <p>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5조 삭제 <2005. 12. 7.></p> <p>제6조 삭제 <2005. 12. 7.></p> <p>제7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p>	<p>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p> <p>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p>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p> <p>[본조신설 2017. 6. 2.]</p> <p>제7조 삭제 <2004. 7. 30.></p> <p>제8조 삭제 <2004. 7. 30.></p> <p>제9조 삭제 <2004. 7. 30.></p> <p>제10조 삭제 <2006. 6. 7.></p> <p>제11조 삭제 <2006. 6. 7.></p> <p>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p>	<p>제2조 삭제 <2006. 6. 7.></p> <p>제3조 삭제 <2006. 6. 7.></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 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p>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8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계획도서[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 2016. 12. 27., 2018. 6. 8.></p> <p>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p>	<p>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p> <p>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p> <p>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협의</p> <p>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p> <p>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p> <p>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p>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p> <p>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p> <p>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9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7.]</p>	<p>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2.></p> <p>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 17.></p> <p>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p>	<p>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록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6. 29.]</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p> <p>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7.></p> <p>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17.></p> <p>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p> <p>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p> <p>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평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2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p>	<p>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댐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p>	<p>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2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p> <p>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6. 12. 2.]</p> <p>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p>	<p>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4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p>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곽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p> <p>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p> <p>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p> <p>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p> <p>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p> <p>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p> <p>[본조신설 2017. 6. 2.]</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는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우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共同溝)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절 댐의 관리 <개정 2011. 5. 30.></p> <p>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시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절 댐의 관리</p> <p>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 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청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루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p>	<p>6. 8.)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貯水),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차·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관리 사업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18조의3(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p>	<p>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p>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0.></p> <p>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 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p>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8조의3(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p>제6조(경고표지의 설치)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p> <p>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5. 30.)</p> <p>제19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p>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p> <p>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p>	<p>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p> <p>② 환경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치수(治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1.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p> <p>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p>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11. 30.)</p> <p>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p> <p>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p> <p>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p> <p>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20조(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에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p>	<p>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① 삭제 <2017. 6. 2.></p> <p>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p>	<p>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p>	<p>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목개정 2017. 6. 2.]</p> <p>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p>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p>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p> <p>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p>	<p>경우</p> <p>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 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p>[본조신설 2016. 12. 2.] [중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p> <p>제23조의3(이의신청)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p> <p>[본조신설 2011. 5. 30.]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p> <p>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6. 2.]</p>	<p>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에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p>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채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1.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저수량이 변경된 경우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2조(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 정하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p>	<p>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 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에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p> <p>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p> <p>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에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p> <p>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 12. 2.)</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다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7. 6. 2.]</p> <p>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정목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p>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5. 30.></p> <p>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태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와 저수량</p> <p>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11. 30.></p> <p>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p> <p>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p> <p>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2조 삭제 <2002. 7. 30.></p> <p>제33조 삭제 <2002. 7. 30.></p> <p>제34조 삭제 <2002. 7. 30.></p> <p>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p>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계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p>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p>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물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p>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p>	<p>라 한다)이 부담한다.</p> <p>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부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p>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p> <p>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p>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 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p> <p>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p> <p>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p>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약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11. 10.)</p> <p>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p> <p>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약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 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p>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의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p>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p>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4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담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담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관리청이나 담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담·공업용수담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p>② 담관리청, 담사용권자나 생활용수담·공업용수담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p>	<p>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3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담관리청 또는 담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담관리청이나 담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4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별 제44조에 따른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담관리청이나 담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p>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5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담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늘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p>	<p>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5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p>[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 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청예정자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p>[전문개정 2011. 5. 30.]</p> <p>제4장 보칙 <개정 2011. 5. 30.></p> <p>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 및 떠뱃·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p>제4장 보칙</p> <p>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p> <p>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 2.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그 밖의 처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 관리청”이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p>[전문개정 2011. 11. 30.]</p>	<p>제11조 삭제 (2002. 8. 13.)</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p> <p>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p> <p>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p> <p>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p>	<p>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 5. 30.]</p> <p>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나.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p>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p>	<p>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p> <p>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p> <p>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p> <p>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p> <p>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p> <p>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p> <p>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p> <p>9.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p> <p>10.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p> <p>11.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p> <p>12.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p> <p>13.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p> <p>14.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p> <p>15.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p> <p>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p> <p>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p> <p>18.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p> <p>19.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p> <p>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p> <p>제5장 벌칙 <개정 2011. 5. 30.></p> <p>제4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애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제50조 삭제 <2005. 12. 7.></p> <p>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11. 5. 30.]</p> <p>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본조신설 2011. 11. 30.]</p> <p>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 11. 10.> <p>[본조신설 2014. 12. 9.]</p> <p>제5장 벌칙 <신설 2009. 9. 10.></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4. 12. 31.]</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p> <p>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21호, 1999. 9. 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p>	<p>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756호, 2000. 3.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p> <p>제4조(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호, 2000. 3. 2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25호, 2002. 8.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16호, 2006. 6.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사유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조(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p>	<p>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5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 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 사업 2. 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p> <p>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p> <p>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p> <p>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p>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⑨내지 ⑪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09호, 2011. 11. 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호, 2013. 3. 23.)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p> <p>④부터 <126>까지 생략</p>

<p> </p>	<p> </p>	<p> </p>
<p> </p> <p> 해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유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p> <p>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p> <p> 제7조(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 한다. </p> <p>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p> <p>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p> <p> 제8조(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p> <p> 제9조(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p>	<p>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p> <p>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p> <p>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p> <p>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p> <p>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p> <p>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p> <p> ⑩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p> <p>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p> <p>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p>	<p> </p> <p> 부칙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부칙 (제426호, 2017. 6. 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p> <p> 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p> <p>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다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p> <p>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p> <p>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p> <p>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p> <p>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p> <p> ②부터 ⑦까지 생략 </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10조(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 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p>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p> <p>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p>	<p>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7137호, 2001. 2. 24.> (전기사업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 <p>①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②내지 ⑥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7302호, 2001. 7. 14.>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p> <p>③내지 ⑦생략</p> <p>부칙 <제17696호, 2002. 7. 3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한다.</p> <p>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p> <p>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p> <p>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을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p> <p>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87호, 2001.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7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에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지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5호,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에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p>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배분·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p> <p>⑩내지 ⑳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p> <p>⑲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p> <p>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㉑내지 <85>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p> <p>⑩내지 ㉑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457호, 2004. 6. 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p> <p>④내지 ⑱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504호, 2004. 7. 30.></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담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담부터 적용한다.</p> <p>③(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④내지 <74>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⑫내지 ⑳생략</p> <p>제13조 생략</p>	<p>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03호, 2006. 6.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p> <p>제6조 생략</p> <p>제7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p>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58호, 2004. 1. 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담관리청, 담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 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주변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p> <p>⑭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p> <p>⑮내지 <8>생략</p> <p>제12조 생략</p>	<p>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담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제4호·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⑦ 부터 <138> 까지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15호, 2005. 1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p> <p>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p> <p>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p> <p>제50조를 삭제한다.</p> <p>⑩ 내지 ⑫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p> <p>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p> <p>⑥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724호, 2009. 9. 1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p> <p>⑮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p> <p>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p> <p>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p> <p>⑯내지 ⑵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283호, 2007. 1. 26.>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p> <p>⑥내지 ⑱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p>	<p>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p> <p>④부터 <11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613호, 2011. 1.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3331호, 2011. 11.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3911호, 2012. 6. 29.></p> <p>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⑳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p> <p>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④부터 <146>까지 생략</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8096호, 2017. 6. 2.></p> <p>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6조제6호”로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p> <p>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p> <p>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p> <p>제4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p> <p>㉑내지 ㉒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p> <p>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p> <p>⑭내지 ⑳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p> <p>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54호, 2020. 11. 10.></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㉔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수탁관리지의 하천수 사용허가의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⑬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659호, 2007. 10. 17.></p> <p>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⑨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3> 까지 생략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㉔ 부터 〈99〉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㉓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⑮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597호, 2009. 4. 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p> <p>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p> <p>⑮ 부터 <53> 까지 생략</p> <p>제23조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p> <p>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⑯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④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p> <p>⑤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p> <p>⑭부터 ⑳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p> <p>④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760호, 2011. 5. 30.></p>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p> <p>⑩부터 ⑮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185호, 2012.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담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담부터 적용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인·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㉖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부칙 (제12989호, 2015. 1. 6.) (주택도시보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⑩부터 ㉒까지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4337호, 2016. 12. 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㉞부터 <65>까지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p> <p>㉟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㊱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4544호, 2017. 1.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제</p>		

법안명	법안명	법안명
<p>법안명</p> <p>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p> <p>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법안명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p> <p>⑰부터 <61>까지 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17175호, 2020. 3. 3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6651
[별표 2]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6652
[별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6652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6653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자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6653
[별표 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6654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6655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6656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6657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6657

[별표 1] (개정 2018. 6. 8.)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구분	내용
1. 분리비용 잔여 편익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2. 대체타당 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3. 우선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우선대체타당 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용도에 대해서는 우선지출법을 적용하여 공동시설비를 우선 배분하고, 그 밖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체타당 지출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지출법이 적용되는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1. 대체건설비: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추정비용으로 한다.
2. 타당투자액: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말하며, 연간 등가편익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뺀 금액을 자본화된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분리비용: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 용도를 제외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추정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절감액으로 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에서 특정 용도를 제외할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잔여 공동비용: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 전액을 뺀 비용으로 한다.
5. 전용시설비: 다목적댐의 용도 중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겸하는 다목적댐의 시설(다목적댐의 각 용도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에 배분된 비용을 포함한다.
6. 공동시설비: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1.11.30>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용도별	상각률	비고
1. 발전	2.00퍼센트	내용연수 45년, 잔존가액 10퍼센트
2. 농업용수	1.82퍼센트	내용연수 55년, 잔존가액 0퍼센트
3. 홍수 조절	1.25퍼센트	내용연수 80년, 잔존가액 0퍼센트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2.00퍼센트	내용연수 45년, 잔존가액 10퍼센트

[별표 3]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구분	세부사업내용
1. 생산기반 조성사업	<p>가. 농지 조성·개량, 조림·육림, 임도·농로 건설, 공동 영농·축산·재배시설(공동 기계·자재의 구입 및 제공을 포함한다), 공동 양식·양어장(댐저수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개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p> <p>나.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 창고, 구판장, 소규모 공단 등 상공업 관련 시설</p> <p>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p>
2. 복지문화 시설사업	<p>가. 보건진료소, 공중화장실, 공설묘지,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전기·통신시설, 주택개량 등 의료·복지 관련 시설</p> <p>나. 도서관, 체육시설, 향토자료시설, 자연학습장,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야영장, 공원 등 교육·문화 관련 시설</p>
3. 공공시설 사업	<p>하천정비, 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 도로, 교량, 광장, 주차장,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도선(渡船) 및 선착장시설</p>

[별표 4]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추가금액(원)=200억원×(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 계수+수물 세대수 계수+개발수요 계수)÷4

비고

1. 저수면적 계수

저수면적(km ²)	계수
15 이상	1.5
10 이상 15 미만	1.2
7 이상 10 미만	0.9
5 이상 7 미만	0.6
3 이상 5 미만	0.3
2 이상 3 미만	0.1

2. 총저수용량 계수

총저수용량(백만m ³)	계수
300 이상	1.5
100 이상 300 미만	1.2
70 이상 100 미만	0.9
50 이상 70 미만	0.6
30 이상 50 미만	0.3
20 이상 30 미만	0.1

3. 수물 세대수 계수

수물세대수(세대)	계수
500 이상	0.5
300 이상 500 미만	0.4
150 이상 300 미만	0.3
100 이상 150 미만	0.2
100 미만	0.1

4. 개발수요 계수

개발수요(명/km ²)	계수
130 이상	0.5
100 이상 130 미만	0.4
70 이상 100 미만	0.3
50 이상 70 미만	0.2
50 미만	0.1

※ 위 표 중 개발수요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 속하는 읍·면·동 전체의 인구밀도를 말한다.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자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물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빛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 및 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도지사가 각 시·군·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6653

[별표 6] <개정 2017. 6. 2.>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사업 내용
1. 지역지원사업	<p>가. 소득증대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물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나. 생활기반 조성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p>다.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지원사업	<p>가. 주민생활 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나. 육영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급식비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세부 사업 내용
3. 그 밖의 지원사업	<p>가. 댐저수사 용보 보조사업</p> <p>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p> <p>나. 홍보 및 부대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주민간담회, 댐 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별표 7] (개정 2011.11.30)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기초 지원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연간 발전 용량 (GWH)	금액	용수공급 능력 (억m³/년)	금액	총저수용량 (억m³)	금액
2.5	350 초과	3.0	10 초과	3.0	20 초과	3.0
	200 초과 350 이하	2.0	5 초과 10 이하	2.0	10 초과 20 이하	2.0
	40 초과 200 이하	1.5	1 초과 5 이하	1.5	5 초과 10 이하	1.5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	1.2	0.5 초과 5 이하	1.2
	5 이하	0.9	0.5 이하	0.9	0.5 이하	0.9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10 초과 30 이하	10+10 초과액×0.9
30 초과 50 이하	28+30 초과액×0.7
50 초과 70 이하	42+50 초과액×0.5
70 초과 90 이하	52+70 초과액×0.3
90 초과	58+90 초과액×0.1

나.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댐의 다른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총기본지원금·총지원금 및 총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다목적댐 및 홍수 조절용 댐의 출연금·기본지원금·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2. 생활용수댐 및 농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한 담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담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기초 지원금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생활·공업용수공급능력 (백만m³/년)	금액	총저수용량(백만m³)	금액
50	80 초과	40	150 초과	40
	60 초과 80 이하	30	110 초과 150 이하	30
	40 초과 60 이하	25	70 초과 110 이하	25
	20 초과 40 이하	20	30 초과 70 이하	20
	20 이하	10	30 이하	10

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2) 추가지원금: $(\text{총출연금} \times 0.9 - \text{총기본지원금}) \times ((\text{해당 댐 출연금} \div \text{총출연금}) + (\text{해당 댐 저수면적} \div \text{총저수면적})) \div 2$
-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총기본지원금·총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으로서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댐의 출연금·기본지원금·저수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물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 $\times 1$
 -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 $\times 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 $\times 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 $\times 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 $\times 1$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 $\times 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 $\times 0.5$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 $\times 0.3$
-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9] <개정 2018. 6. 8.>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면허업 및 낚시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4.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5. 식물의 재식(栽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6. 토지의 골착·성토·점도 또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7. 스케이트장의 설치	토지가격의 100분의 5
8. 골재의 채취	해당 시·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41.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0] <개정 2011.11.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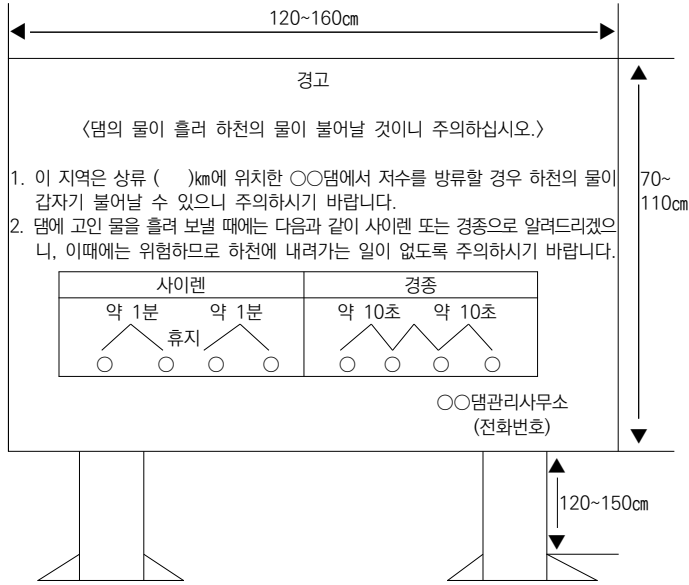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100	150	20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경고 표지(제6조 본문 관련)	6661
[별표 2] 경고 표지(제6조 단서 관련)	6661
[별표 3]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6662

[별표 1] <개정 2011.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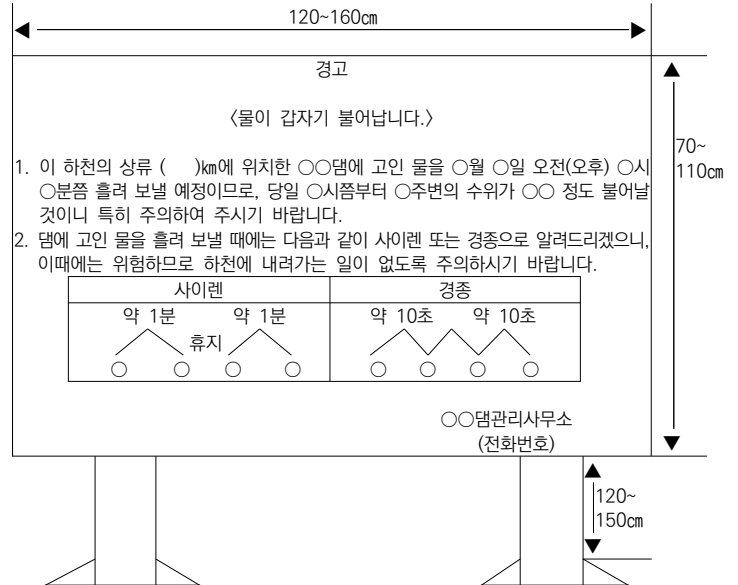
경고 표지(제6조 본문 관련)



주: “경고” 및 “위험”은 붉은 색으로, 그 외의 글자는 검은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2] <개정 2011.11.30>

경고 표지(제6조 단서 관련)



주: “경고” 및 “위험”은 붉은 색으로, 그 외의 글자는 검은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8. 6. 8.)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1. 대체건설비의 산출방법

- 가.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은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장소와 같은 장소나 설치비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다목적댐의 용도 중 발전 용도의 대체건설비를 산출할 때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이 가지는 효과와 같은 효용은 해당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효출력(kw) 및 유효전력량(kwh)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대체건설비의 범위는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및 부대비와 건설기간 중의 이자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간 중의 이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가. 다목적댐의 용도별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1) 홍수 조절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효용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합계액
 - 가) 제방, 호안(護岸), 수제(水制), 그 밖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나) 도로, 교량, 철도, 그 밖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소(減産), 농지의 유실(流失), 가옥의 파손, 그 밖의 자산(가계자산, 사무소, 광공업 및 농업의 상각자산, 재고자산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다)의 피해 방지 또는 감소
 - 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준설(浚渫) 유지비의 감소
 - 마) 홍수 범람 방지로 인한 지가(地價) 상승
 - 2) 관개(灌漑)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 가) 증가된 작물생산량에 표준단가와 순이익률을 각각 곱한 연간 작물수입 증가액
- 나) 댐건설 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뺀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감소액
- 다) 댐건설 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뺀 노동량에 노무비 단가를 곱한 노무비 절감액
- 3) 공업용수·생활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량에 단위당 용수요금을 곱한 금액
- 4)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력량에 해당 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곱한 금액. 다만, 전기요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유효출력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유효전력량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5) 하천유지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의 효과와 같은 수질, 하천생태나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합계액
- 6) 그 밖의 용도의 타당투자액: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영 별표 1 비고 제2호의 자본환원 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text{자본환원 계수} = \frac{i(1+i)^n}{(1+i)^n - 1}$$

(i: 이자율, n: 댐사용권 내용연수)

다.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용도의 효용이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타당투자액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라. 유효출력(kw)과 유효전력량(kwh)에 의한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산출방법

1) kw편익=kwh당 가치×유효출력량(kw)

가) kw당 가치=kwh당 대체화력 건설비×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수력 대 화력의 계수

나) 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은 자본비용비율(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이자와 배당액의 합계액을 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총건설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감가상각비율, 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비율, 운전유지비율(연료비는 운전유지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수력 대 화력의 계수

$$\frac{\text{수력}(1 - \frac{1\text{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frac{\text{발전소 내 소비율}}{\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보수율})}{\text{화력}(1 - \frac{1\text{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사고율}) \times (1 - \frac{\text{발전소 내 소비율}}{\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보수율})}$$

2) kwh편익=kwh당 가치×유효전력량(kwh)

가) kwh당 가치=kwh당 화력의 연료비×수화력 조정 계수

나) 수화력 조정 계수 = $\frac{\text{수력}(1 - \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송전손실률})}{\text{화력}(1 - \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 - \text{송전손실률})}$

제9편
수자원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목 차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0.)	
제1조(목적)	6669
제2조(가등록)	6669
제3조(예고등록)	6669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6669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6670
제6조(편성)	6670
제7조(양식)	6670
제8조(기재방법)	6670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6671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 12. 30.)	
제10조(등록)	6671
제11조(등록신청인)	6671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6671
제13조(등록명인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6671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6672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6672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6672
제17조(등록의 신청)	6672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6673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6673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6670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6670
	제3조(숫자 등의 기재)
	6670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6670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6671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6672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6673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0조(지분의 기재) 6673	
제21조(신청서의 접수) 6673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6673
제22조(등록의 실시) 6673	
제23조(신청의 각하) 6674	
제24조(부기등록) 6674	제9조(부기등록) 6674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6674	
제26조(경정등록) 6675	
제4장 댐사용권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6675	
제28조(직권등록 말소·변경) 6675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6675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6675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6675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6675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6676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6676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6676	
제33조(부기등록) 6676	제13조(가등록) 6676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6676
제6장 삭제 (2009. 12. 30.)	
제34조 삭제 6677	
부칙 6677	부칙 6677

<p style="text-align: center;">담사용권등록령</p>	<p style="text-align: center;">담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p>
<p>제정 1973. 6.30 대통령령 제6744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간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6호 (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2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정 1973. 8.24 건 설 부 령 제133호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 4 호 (정부소지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9.12.31 국토해양부령 제207호 2013. 3.23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0.></p> <p>제1조(목적) 이 영은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담사용권과 담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담사용권과 담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애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담사용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p>	

댜사용권등록령	댜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댜사용권등록부</p> <p>제5조(비치) 댜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6조(편성) 등록부에는 1개의 댜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7조(양식) 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8조(기재방법) ① 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댜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 표시란에는 댜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댜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해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조(댜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댜사용권등록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댜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류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류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댐사용권등록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p>
<p>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 12. 30.></p> <p>제10조(등록)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1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p>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신청서에 가등록명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5조(축탁에 의한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축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축탁하는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축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축탁하는 경우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p>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emark용권등록령</p>	<p style="text-align: center;">emark용권등록령 시행규칙</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동의·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2조(등록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p>	<p>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9. 12. 31.]</p>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3조(신청의 각하)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p>[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4조(부기등록)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p> <p>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p>	<p>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p> <p>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담사용권등록령</p>	<p style="text-align: center;">담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p>
<p>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6조(경정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담사용권</p> <p>제27조(담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담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담진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담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담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분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8조(직권등록 말소·변경)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담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담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29조(담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① 담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담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p>	<p>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2조(담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담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p>

댁사용권등록령	댁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0.]</p>	<p>댁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댁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h3>제5장 저당권</h3>	
<p>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p>	<p>제13조(가등록)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교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p>

<p style="text-align: center;">택시운전면허법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택시운전면허법령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삭제 <2009. 12. 30.></p> <p>제34조 삭제 <2009.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744호, 1973. 6.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83) 택시운전면허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4) 내지 (20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756호, 2000. 3. 13.> (택시운전면허법령의 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택시운전면허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택시법 제26조제3항”을 “택시운전면허법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택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p>	<p>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3호, 1973. 8. 24.></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11호, 2004. 11. 29.> (전자적면허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호, 2009.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시운전면허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p>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 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p> <p>④내지 ⑪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㉟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p> <p>㊸ 부터 <138> 까지 생략</p>	<p>④부터 <12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③부터 ⑦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택시용권등록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택시용권등록령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32호, 2009. 12.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택시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시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댐사용권등록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⑤부터 ⑩까지 생략</p>	

제9편
수자원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685	제1조(목적) 6685	제1조(목적) 6685
제2조(정의) 6685		
제2조(정의) 6686	제2조(물산업의 범위) 668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688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668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689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6689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689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6690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6689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6690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6690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6690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6691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6692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6692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6692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6692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6692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6693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6693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6694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운영) 6694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6694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6694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669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창업 지원) 6696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6696	제13조(창업 지원) 6696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6696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6696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6697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697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6698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6696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6698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6700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6700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6701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 6702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6703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6703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6703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6704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6704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6705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6705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6705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6706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6706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07	제22조(업무의 위탁) 6706	
부칙 6707	부칙 6707	부칙 67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8. 6.12 법률 제15654호 2020. 3.31 법률 제1717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 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8호 2020. 1.29 대통령령 제3037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8.12.13 환경부령 제786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p> <p>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 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p> <p>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 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p>	<p>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사업</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p> <p>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p> <p>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 영업</p> <p>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p> <p>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p> <p>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p> <p>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p> <p>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p> <p>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p> <p>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p> <p>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p> <p>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건설링 등에 관한 사업</p> <p>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p> <p>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p> <p>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p> <p>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p> <p>[시행일 : 2021. 4. 1.] 제2조</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p> <p>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p>	<p>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p> <p>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의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검증·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취지·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p>	<p>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4. 그 밖에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 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 교류·협력 <p>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p>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p>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검증·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p>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p>	<p>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국고 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계약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p> <p>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 2. 기후변화예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 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 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p> <p>7. 물·에너지·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p> <p>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p> <p>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p> <p>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p> <p>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p>	<p>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험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p> <p>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경영 컨설팅 2. 물관리기술 이전 3. 물관리기술·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p> <p>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p>	<p>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p>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p>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p>	<p>야 한다.</p> <p>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한다.</p>	<p>평가는 생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사업실적 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3. 고용 창출 실적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 제품 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p>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 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등의 검증·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구성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구성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5.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⑧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p> <p>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p>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지구로 본다.</p>	<p>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p> <p>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p>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⑩ 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p> <p>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p> <p>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p> <p>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p> <p>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p> <p>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p>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p> <p>2. 물기업 집적의 효과</p> <p>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p> <p>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p> <p>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p> <p>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p>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p>제1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p> <p>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p> <p>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p> <p>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p>		<p>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p> <p>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p> <p>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p> <p>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p>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p> <p>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p>	<p>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증진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종원 2. 협의회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 〈제15654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국물산업협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회의(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p>	<p>위한 검증·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9.]</p> <p>부칙 〈제29348호, 2018. 12. 11.〉</p> <p>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374호, 2020. 1.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86호, 2018. 12. 13.〉</p> <p>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p> <p>제3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76호, 2020. 3. 3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0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715	제1조(목적) 6715	제1조(목적) 6715
제2조(정의) 671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716	제2조(수자원시설) 6716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671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717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6717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6717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6718	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6718	
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6720	제5조(홍수위협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6719	제2조(홍수예보) 6720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6723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6723	제3조(갈수예보) 6721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6726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6724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6724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6727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6725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6728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6726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6729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6727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6728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6730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6727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6733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6729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6729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673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6733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6734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6735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6735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6735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6735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6735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6738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6736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6738	제18조(협의회의 운영) 6737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6739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6738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6740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6738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6740	제21조(공청회) 6739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6741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742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6741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6742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6741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6743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6743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6743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6744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6744	제26조(위원장의 직무) 6744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745	제27조(회의) 6744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74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6746	제29조(전문위원) 6746	
	제30조(간사 및 서기) 6746	
	제31조(회의록) 6746	
	제32조(수당 및 여비) 6747	
	제33조(운영세칙) 6747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6747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6747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6748		제8조(증표) 6748
제3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 6748		
제35조(손실보상) 6749	제35조(재결의 신청) 6749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6749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6749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6750	제37조(권한의 위임) 6750	
	제38조(위탁기관) 6751	
제3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52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6752		
제40조(벌칙) 6752		
제41조(양벌규정) 6753		
제42조(과태료) 6753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753	
부칙 6753	부칙 6753	부칙 675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7. 1.17 법률 제14544호 개정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2019.11.26 법률 제1660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유여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面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p>제정 2017. 7.17 대통령령 제28190호 개정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7. 7.18 국토교통부령 제437호 개정 2018. 6. 8 환 경 부 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말한다.</p> <p>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나. 댐, 보(坝),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p>	<p>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p> <p>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p> <p>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자원 조사 등</p> <p>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자원 조사 등</p> <p>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현황, 지형·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 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5. 26.></p> <p>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p>	<p>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p> <p>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와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 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피해 상황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사 및 분석</p> <p>③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5조(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p>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澇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p>	<p>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2조(홍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변 도로, 철도 및 주요시설의 침수위험 정보 2.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의 예측수위 정보 3.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친수지구의 홍수위험 정보 4. 그 밖에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p>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를 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p> <p>④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구역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p> <p>⑧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지점 중 제3항에 따른 홍수특보 발령을 위한 측정지점(이하 "홍수특보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홍수특보지점별 기준수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⑨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지점의 위치 및 기준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기준수위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3조(갈수예보)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p> <p>②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 지역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홍수통제소장은 수문량(水文量)을 측정하는 지점 중 제1항에 따른 갈수예보 발령을 위한 지점(이하 "갈수예보 지점"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위치 및 갈수예보지점별 계획 수문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홍수통제소장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갈수예보지점의 위치 및 계획수문량을 10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지점별 위치 및 계획수문량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주요 수원(水源)의 고갈 정도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갈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갈수예보</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호수·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p>	<p>를 발령할 수 있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p>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p>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p> <p>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것 <p>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이전 일정 <p>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절한 관리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 구조물 4. 운하 <p>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p>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위·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절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상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p>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배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p> <p>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수문조사시기의 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시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p>	<p>제5조(수문조사시기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시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시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수문조사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시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수문조사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p> <p>⑥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시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p> <p>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6. 8.></p>	<p>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과 그에 따른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 2018. 12. 24.></p> <p>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p>	<p>8. 실시설계도서</p> <p>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p> <p>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p> <p>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p> <p>2. 측정기기·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p> <p>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p> <p>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0.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p> <p>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p> <p>13.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p> <p>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p> <p>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p> <p>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p> <p>20. 「조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치</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 ① 환경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①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홍수통계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홍수통계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p> <p>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수위관측소 현황)</p> <p>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p> <p>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유량관측소 현황)</p> <p>라. 유수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상조서(유수량관측소 현황)</p> <p>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증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p> <p>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概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홍수조절지·저류지·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p> <p>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p> <p>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p> <p>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p>	<p>획"이라 한다)은 공동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8.></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 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본계획의 기본이 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 하였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p>	<p>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6. 8.></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p>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립 2.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정한다.</p> <p>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p>	<p>제21조(공청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판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판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1. 24.></p> <p>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p> <p>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p> <p>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닷물의 민물화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3. 빗물 활용 4.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p>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p> <p>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p> <p>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의 육성</p> <p>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p> <p>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p> <p>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p> <p>2.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p> <p>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국제회의 개최</p> <p>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p> <p>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p> <p>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p>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6. 8.></p> <p>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범·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p> <p>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p>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p>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 관할은 별표 3과 같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29조(전문위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p> <p>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자원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3. 죽목(竹木)·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p>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원증명서에 따른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35조(손실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p>	<p>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p>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p> <p>제3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예보 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범 하류 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시 협의 및 고시 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에 관한 권한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제38조(위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징수 업무</p> <p>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p> <p>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p> <p>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p> <p>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산업화 관련 업무</p> <p>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p> <p>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p> <p>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p> <p>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p> <p>[전문개정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p>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p>	<p>6.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2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44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90호, 2017. 7.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37호, 2017. 7.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한</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천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p> <p>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대로 본다.</p> <p>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으로 본다.</p> <p>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p>	<p>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p> <p>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p> <p>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p> <p>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p>	<p>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의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는 각각 제2조제3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p> <p>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p>	<p>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p> <p>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p> <p>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p> <p>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p> <p>별표 1을 삭제한다.</p> <p>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로 한다.</p> <p>⑥ 및 ⑦ 생략</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p> <p>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p> <p>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p> <p>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p> <p>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31조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p> <p>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p> <p>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p> <p>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87조를 삭제한다.</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p> <p>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 제4항·제6항, 제1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p> <p>부칙 <제16608호, 2019. 11.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6765
[별표 2] 협의회의 관할 구역(제17조제1항 관련)	6765
[별표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	6766
[별표 4] 손실보상업무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6766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6767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1. 유속측정기기	가. 기계식	380,000	
	나. 전자기식	380,000	
2. 강수량측정기기	가. 원통형	1) 실내검정	10,800
		2) 현장검정	63,400
	나. 원통형 외	1) 실내검정	92,100
		2) 현장검정	144,700
	다. 히터 부착형	1) 실내검정	163,500
		2) 현장검정	216,100
3. 증발량측정기기	가. 실내검정	10,800	
	나. 현장검정	63,400	
4. 토양수분량측정기기		278,400	
5.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6. 유사량측정기기		68,800	
7. 수위측정기기	가. 실내검정	517,200	
	나. 현장검정	622,400	
8.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토양수분량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 등)		각 기기 수수료의 합산	

[별표 2] <개정 2018. 6. 8.>

협의회의 관할 구역(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관할 구역
1. 서울지방환경관서	한강 구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하류 구역(북한강 구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구역, 안성천 구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 사이의 한강 서해권 구역
2. 원주지방환경관서	한강 구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상류 구역(북한강 구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구역, 강릉 남대천 구역, 삼척 오십천 구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구역
3. 대전지방환경관서	삼교천 구역, 금강 구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구역
4. 익산지방환경관서	만경강 구역, 동진강 구역, 영산강 구역, 탐진강 구역, 섬진강 구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구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구역, 제주도권 구역
5. 부산지방환경관서	가화천 구역, 서낙동강 구역, 낙동강 구역, 회야강 구역, 태화강 구역, 형산강 구역, 영덕 오십천 구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구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구역

[별표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

(제28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관할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국가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2. 제1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3. 제2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4. 제3분과위원회	삼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5. 제4분과위원회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6. 제5분과위원회	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

[별표 4] <개정 2018. 6. 8.>

손실보상업무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

(제36조제3항 관련)

손실보상금액	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1.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000 이내
4.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3/1,000 이내
5. 100억원 초과	10/1,000 이내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손실보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임·위탁 수수료 요율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수수료 요율 기준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과 위임·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 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30만원	40만원	6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6771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6772
[별표 3]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6773
[별표 4] 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	6774
[별표 5]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	6775

[별표 1]

홍수특보 발령 기준(제2조제3항 관련)

구분	발령 기준
1. 홍수 주의보	가.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주의보 변경발령: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홍수 경보	가. 홍수경보 발령: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2)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3) 1) 및 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나. 홍수경보 변경발령: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해제	가. 홍수주의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나. 홍수경보 해제: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각각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2. 홍수특보지점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한다.

[별표 2]

갈수예보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단계	실시 기준	설정기준
1. 관심	특정지역에 갈수 발생의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의 계획수문량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2. 주의	특정지역이 갈수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의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8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3. 경계	특정지역이 갈수피해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의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나. 심각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증가하여 경계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상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5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4. 심각	갈수의 전개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로서 경계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계속 감소하여 심각단계 설정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갈수예보 지점에서 계획수문량의 100분의 30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수

비고

1. "계획수문량"이란 하천, 댐 등 수자원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기별 최소 양을 말한다.
2. "조정계수"란 유역면적, 하상경사 등을 반영한 특성인자로서 지점의 주변상황 및 수자원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정값을 말한다.
3. "지수"란 갈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 하천 유량, 저수량, 토양수분량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갈수예보지점별로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관심단계가 발령된 갈수예보지점의 수문량이 증가하여 관심단계 설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상회할 경우 또는 갈수예보 (주의·경계·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나 강수 등으로 인한 수문량 증가로 갈수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갈수예보를 해제한다.

[별표 3]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수위측정기기

- 가. 수위측정기기의 구조 및 재질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나. 수위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검정대상기기에서 측정된 값에서 기준기(基準器)에서 측정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허용오차(수위측정기기의 종류별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 가.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3. 유사량 측정기기

- 가. 유사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유사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4. 강수량 측정기기(기계식)

- 가. 수신기(受水器)의 구성,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를 말한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다. 수신기는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라. 수신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마. 수신기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인 측정기기의 검정은 안지름 200mm인 측정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 바. 자기 우량계 및 사이펀식 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사. 자기 우량계의 저수통은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아. 사이펀식 우량계는 사이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여야 한다.
- 자. 우량승(雨量升)의 재료는 유리이거나 내구성이 유리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mm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mm의 눈금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가외 눈금과 수신기의 지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카. 우량승의 눈금 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pm 0.02\text{mm}$ 이내여야 한다.
- 타. 저울형 설량계의 수신구 테두리는 눈(雪)이 잘 달라 붙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mm 이하여야 한다.
-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펜의 배울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강수량 측정기기(전자식)

- 가. 수신기의 구성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다.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않아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라. 수신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증발량 측정기기(소형)

- 가. 재질은 청동이거나 내식성(耐蝕性)이 청동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 나. 테두리는 청동 주물이거나 청동 주물 수준 이상의 두꺼운 판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라. 배수구는 밑 부분에서 6cm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
-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인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증발량 측정기기(대형)

-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滿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내·외면은 회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척(浮尺)은 상하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다. 부척침의 끝부분은 관측하기 쉽게 가능하면 보촉하여야 한다.
-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거나 내식성이 청동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m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의 경우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이내여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증발산량 측정기기

- 가. 증발산량 측정기기는 풍속측정기기, CO2 측정기기 및 H2O 측정기기를 최소한 갖추되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각 기기별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 나. 외부에 설치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외부에 설치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고,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라. 관측장비의 요소별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는 전자식 측기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에 준한다.

9. 토양수분량 측정기기

- 가.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나. 토양수분량 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

[별표 4]

검정증인의 표시(제5조제4항 관련)

- 1.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
 - 가. 검정필증

← 60mm →		↑ 40mm ↓
검정필증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문조사기기번호(일련번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30mm → ← 30mm →		

비고 :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앞면	뒷면		
검정필 봉인			원형지름 6mm	
검정필 고무인			원형지름 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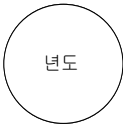


2. 검정이 면제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면제필증

← 60mm →		40mm
검정면제필증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문조사기기번호(일련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30mm → ← 30mm →		

비고 :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앞면	뒷면		
검정면제필봉인			원형지름 6mm	
검정면제필고무인			원형지름 8mm	

[별표 5]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5조제5항 관련)

종류	구분	검정 유효기간(년)
1. 수위측정기기		3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2
3. 유사량측정기기		5
4. 강수량측정기기		3
5. 증발량측정기기		5
6. 증발산량측정기기		5
7. 토양수분량측정기기		5
8. 두 종류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정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후 검정을 하는 중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검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9편
수자원

0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783	제1조(목적) 6783	제1조(목적) 6783
제2조(정의) 678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784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6784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6784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6784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6786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6784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6784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6787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6786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6787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6787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6789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6787	
제9조(행위제한 등) 6790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6789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6792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6790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6790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6793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6793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사업시행자) 6793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6794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6796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6795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6795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6798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6796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6796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6799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679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6802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6803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6803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6803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6803		
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6803		
제20조(준공검사) 6804	제16조(준공검사) 6804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6805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6805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6805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6805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6806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6806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6806
제23조(선수금) 6806	제20조(선수금) 6806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6806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6807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6807	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6808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6808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6808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6808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6809	
제28조(청문) 6809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6809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6810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6810	제24조(적정수익) 6810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6810	제25조(기금의 조성) 6811	
제32조(기금의 조성) 6811	제26조(기금의 용도) 6811	
제33조(기금의 용도) 6811		
제33조(기금의 용도) 6811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6812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6812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68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6812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6812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813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6814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6815		
제6장 보칙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6815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6816		
제41조(권한의 위임) 6816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6816		
제43조(양벌규정) 6816		
제44조(과태료) 6817		
부칙 6817	부칙 6817	부칙 681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정 2010.12.29 법률 제10421호 개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93호 2015. 7.24 법률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6. 1.19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2016. 5.29 법률 제1423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 2. 8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2018. 4.17 법률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11. 4.28 대통령령 제22909호 개정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위험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2011. 4.29 환경부령 제354호 개정 2013. 3.23 환경부령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p>	<p>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하천을 말한다.</p> <p>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p> <p>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p> <p>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p> <p>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p> <p>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p>	<p>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6. 8.></p> <p>⑤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p>	<p>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p> <p>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p> <p>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p> <p>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p> <p>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p> <p>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p> <p>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p> <p>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p>	<p>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p>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를 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조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자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p>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p>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경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⑧ 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⑨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p> <p>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p>	<p>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p>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p>②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기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기기본계획의</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p>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p> <p>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p> <p>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p>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p>④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p> <p>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p>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p>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환경부장관의 검토·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입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p>	<p>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p> <p>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p>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수구역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⑥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p> <p>제14조(토지예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p>	<p>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2. 8., 2018. 4. 17., 2018. 6. 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p> <p>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p> <p>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p> <p>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p> <p>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p> <p>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전용신고</p> <p>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p> <p>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p> <p>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p> <p>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p> <p>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p> <p>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p> <p>2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승인 또는 신고</p> <p>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p> <p>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p> <p>제19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p>	<p>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p>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p>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사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p>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p>	<p>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p> <p>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24조</p> <p>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p> <p>②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p> <p>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p> <p>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p>	<p>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철도·마리나항만, 수도·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방송·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p>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p> <p>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p> <p>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p> <p>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하천관리기금</p> <p>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본다.</p> <p>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 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2.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가-(나+다+라)\} \times \frac{10}{100}$ </div> <p>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p> <p>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비용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p> <p>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p> <p>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시행일 : 2022. 1. 1.] 제33조</p> <p>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산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p> <p>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p>	<p>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0. 5. 26.></p> <p>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 <p>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p> <p>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p> <p>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p> <p>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p> <p>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p> <p>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p> <p>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p> <p>3.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p> <p>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7. 4.]</p> <p>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p>	<p>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본조신설 2015. 12. 31.]</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6.>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p> <p>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부칙 <제10421호, 2010. 12. 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42 735 557 782"> <tr> <td>243</td> <td>「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td> <td>친수구역</td> </tr> </table> <p>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p>부칙 <제22909호, 2011. 4.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711 1027 914"> <tr> <td>18. 친수구역조성사업</td> <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td> <td>「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 </tr> </table> <p>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18.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p>부칙 <제354호, 2011. 4. 29.></p> <p>이 규칙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p>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18.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p>	<table border="1" data-bbox="613 197 1026 413"> <tr> <td data-bbox="613 197 701 413">다. 친수구역조성사업</td> <td data-bbox="701 197 857 413">「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td> <td data-bbox="857 197 1026 413">「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p> <p><76>부터 <85>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23928호, 2012. 7. 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다.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p>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p> <p><111>부터 <126>까지 생략</p> <p>부칙 (제764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다.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993호, 2015. 1. 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433호,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㉓부터 ㉞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⑰ 및 ⑱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⑭ 생략</p>	<p>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부터 <146>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75>부터 <41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p> <p><79>부터 <86>까지 생략</p> <p>제22조 생략</p> <p>부칙 <제14232호,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316호, 2015. 6.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p> <p>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4569호, 20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p> <p>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5607호, 2018. 4.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p> <p>⑩ 및 ⑪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p>	<p>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②부터 ④까지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p> <p><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p> <p><302>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p> <p>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p> <p>⑤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3항 전단·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제9편
수자원

06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6838	제1조(목적) 6838	제1조(목적) 6838
제2조(정의) 6838		
제2조(정의) 6839	제2조(하천시설) 6839	
	제3조 삭제 683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840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6841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6841		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6841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6842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6842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6842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6843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6843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6844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6844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6845		제3조(하천의 고시) 6845
제8조(하천관리청) 6847		
제8조(하천관리청) 6847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6847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6847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6848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6849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6849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685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11조 삭제 6851		제5조 삭제 6851
제12조(홍수관리구역) 6851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6852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6852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6852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6853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6853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6853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6853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6854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6855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6855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6855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개정 2017. 1. 17.>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16조 삭제 6856	제9조 삭제 6856	제9조 삭제 6856
제17조 삭제 6856	제10조 삭제 6856	제10조 삭제 6856
제18조 삭제 6856	제11조 삭제 6856	제11조 삭제 6856
제19조 삭제 6856	제12조 삭제 6856	제12조 삭제 6856
제20조 삭제 6856	제13조 삭제 6856	
제21조 삭제 6856	제14조 삭제 6856	
	제15조 삭제 6856	
	제16조 삭제 6856	
	제17조 삭제 6856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6856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6856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6857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6857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6857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6858		
제23조 삭제 6858	제19조 삭제 6858	
제24조 삭제 6858	제20조 삭제 6858	
	제21조 삭제 685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25조(하천기본계획) 6859	제22조 삭제 6859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6859
제25조(하천기본계획) 6860	제23조 삭제 6859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6861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6859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6860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861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6862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6862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6868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상시설) 6863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6864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6864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6869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6866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6867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6866	제16조(준공인가 신청) 6870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6868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6868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686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0조(공사비의 예치) 6869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6871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6869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6879
제31조 삭제 6872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6870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6872	제33조 삭제 6870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6880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6876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6879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6879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688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6881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 6882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6882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6883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6884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6885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6886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6886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6886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6887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6887	제40조(재결의 신청) 6887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6888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6888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6888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6888	
	제43조(변상금의 징수) 6889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6889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6890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6890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 6890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6891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6891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6891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6892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6892
제40조 삭제 6893	제47조 삭제 6893	제23조 삭제 6893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6893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6893	제24조 삭제 6893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6894		
제42조 삭제 6894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6895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6895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6895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6895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6896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6896	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6896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6897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6897	제51조(납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6897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6898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6898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6898	
제48조(원상회복의무) 6898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6899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6898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7장 삭제 <2018. 6. 8.>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6900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6900	제27조 삭제 6900
		제28조 삭제 6900
		제29조 삭제 6900
		제30조 삭제 6900
		제31조 삭제 6900
		제32조 삭제 6900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6900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6900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6901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6901	
	제56조(하천수의 보전) 6902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6903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6903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6904	
제51조(하천유지유량) 6904		
제51조(하천유지유량) 6904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6905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6905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6905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6905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6906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 6907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6909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 효력 등) 6909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 부담) 6909	제63조(조정협의회 기능) 6907 제64조(간사) 6907 제65조(회의) 6907 제66조(회의록) 6907 제67조(수당 및 여비) 6907 제68조(운영세칙) 6907 제69조(조정신청) 6907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6908 제71조(의견청취 절차) 6908 제72조(비용 부담) 6909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6910 제59조(비용부담 원칙) 6911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6911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6911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6912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6913 제62조(검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 부담) 6913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6914 제64조(비용보조) 6914 제64조(비용보조) 6914 제65조(부담금의 귀속) 6914 제65조(부담금의 귀속) 6915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6915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6910 제74조(시·도의 비용부담) 6912 제75조(시·군·구의 비용부담) 6913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6914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6915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6916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6916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6916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6916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 6916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감독</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감독</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감독</p>
제69조(벌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6917		
제69조(벌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6917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6918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6919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6919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6920		
제72조(하천관리원) 6920		
제72조(하천관리원) 6921		제34조(하천관리원증) 6921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6922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6922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6922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6923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6923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6923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6923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6923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6923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6924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6924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6925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6926	제83조(재결의 신청) 6926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6926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6927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6927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6928	제84조(매수절차) 6928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6928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6929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6930	제86조(매수기한) 6930	
	제87조 삭제 6930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6930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6930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6931	제89조(비율) 6931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6931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6931	
제83조(하천표지) 6932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6932
제83조(하천표지) 6932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6934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6934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6934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6935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6935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6935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6937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6936	제41조 삭제 6936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6937	제93조 삭제 6937	
제87조 삭제 6937	제94조 삭제 6937	
제88조(협회의 설립) 6937	제94조의2 삭제 6937	
제88조(협회의 설립) 6938	제94조의3 삭제 6937	
제89조 삭제 6938	제95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6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7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8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9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100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101조 삭제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104조(협회의 감독) 6937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8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6939		
제91조(청문) 6939		
제91조(청문) 6939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6939	제105조(권한의 위임) 6939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6947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6948	제106조(위탁기관) 6948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949		
	제106조의2 삭제 6949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1장 삭제 (2012. 6. 18.)
제93조(벌칙) 6949		제43조(규제의 재검토) 6949
제94조(벌칙) 6950		
제95조(벌칙) 6950		
제96조(벌칙) 6951		
제97조(양벌규정) 6951		
제98조(과태료) 6951		
제98조(과태료) 6952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952	
부칙 6953	부칙 6953	부칙 6953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제정 1961.12.30 법률 제892호 개정 2007. 4. 6 법률 제8338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3.21 법률 제8974호 (건축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9. 4. 1 법률 제9605호 2009. 6. 9 법률 제9756호 (논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1.17 법률 제11194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31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 2015. 1.28 법률 제13084호 (산업표준화법) 2015. 8.11 법률 제13493호 2015.12.29 법률 제13689호 2016. 1.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908호 2017. 1.17 법률 제1454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21 법률 제14722호 2018. 2.21 법률 제15405호 2018. 6. 8 법률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 6.12 법률 제15684호 2018. 8.14 법률 제15742호 2018.12.24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2 법률 제17732호	제정 1962. 3.22 각령 제548호 개정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2009. 7.27 대통령령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1.16 대통령령 제21824호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논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1호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6호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위험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 재검토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2호 2016. 7.19 대통령령 제27362호 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7.17 대통령령 제2819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9.19 대통령령 제28327호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5호 2020. 1.21 대통령령 제30358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1962. 5.30 경제기획원령 제13호 2008. 4.16 국토해양부 제 6 호 2009. 3.26 국토해양부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11.24 국토해양부 제181호 2011. 4.11 국토해양부 제35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개발의 한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6.18 국토해양부 제475호 2012.10.31 국토해양부 제528호 2013. 3.23 국토교통부 제 1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30 국토교통부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8. 7 국토교통부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국토교통부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6.30 국토교통부 제322호 2016. 8.31 국토교통부 제3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30 국토교통부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7.18 국토교통부 제43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9.21 국토교통부 제449호 2018. 6. 8 국토교통부 제52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 2.12 국토교통부 제583호 2019. 2.22 국토교통부 제597호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p> <p>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p> <p>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p> <p>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7. 삭제 (2017. 1. 17.)</p> <p>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p> <p>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p> <p>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p> <p>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p>	<p>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戕)·수로터널·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p> <p>제3조 삭제 (2017. 7. 17.)</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p> <p>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p> <p>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p> <p>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p> <p>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p> <p>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7. 삭제 (2017. 1. 17.)</p> <p>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2조</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p>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③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④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p>		<p>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2. 6. 18., 2013. 3.</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p> <p>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p> <p>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0. 12. 31.></p> <p>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5조</p> <p>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4조·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8.></p>	<p>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하천의 지정 등</p> <p>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p> <p>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인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 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하천의 지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하천의 지정 등</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p> <p>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p>	<p>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 2. 8.] [중천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결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5조에서 이동 (2019. 2.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4. 1., 2013. 3. 23.)</p> <p>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6. 9.></p> <p>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p> <p>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인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 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p>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p>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하천 라. 삭제 (2018. 8. 14.)</p> <p>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p> <p>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p> <p>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2020. 6. 9.) [시행일 : 2022. 1. 1.] 제7조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시행일 : 2022. 1. 1.] 제8조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p> <p>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9조</p> <p>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p> <p>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p> <p>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p> <p>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p> <p>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p> <p>③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p> <p>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p>	<p>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p> <p>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p>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 		<p>한다.</p> <p>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p> <p>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p> <p>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31.></p> <p>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10조</p> <p>제11조 삭제 <2015. 8. 11.></p> <p>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p>		<p>제5조 삭제 <2016. 6. 3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 지역</p> <p>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p> <p>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7.></p> <p>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p>	<p>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p>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13조</p> <p>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④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p>	<p>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p>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p> <p>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④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0. 6. 9.></p> <p>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시행일 : 2022. 1. 1.] 제14조</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p> <p>③ 삭제 (2017. 1. 17.)</p> <p>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p> <p>③ 삭제 (2017. 1. 17.)</p> <p>[시행일 : 2022. 1. 1.] 제15조</p>		<p>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2018. 6. 8.)</p> <p>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p> <p>가. 제방 및 호안 현황 :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p> <p>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p> <p>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 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p> <p>라. 배수펌프장 현황 : 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p> <p>마. 하구둑 현황 : 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p> <p>2. 하천현황대장조서</p> <p>가. 하천 개황 :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p> <p>나. 측량기준점 현황 :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p> <p>다. 하천수 상황 :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p> <p>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 :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p> <p>마. 삭제 (2016. 6. 3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개정 2017. 1. 17.)</p> <p>제16조 삭제 <2017. 1. 17.> 제17조 삭제 <2017. 1. 17.> 제18조 삭제 <2017. 1. 17.> 제19조 삭제 <2017. 1. 17.> 제20조 삭제 <2017. 1. 17.> 제21조 삭제 <2017. 1. 17.></p> <p>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p> <p>제9조 삭제 <2017. 7. 17.> 제10조 삭제 <2017. 7. 17.> 제11조 삭제 <2017. 7. 17.> 제12조 삭제 <2017. 7. 17.> 제13조 삭제 <2017. 7. 17.> 제14조 삭제 <2017. 7. 17.> 제15조 삭제 <2017. 7. 17.> 제16조 삭제 <2017. 7. 17.> 제17조 삭제 <2017. 7. 17.></p> <p>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의 중단·횡단 등의 측량 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p>	<p>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사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 :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사서(하천개수)</p> <p>④ 삭제 <2017. 7. 18.>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7. 7. 18., 2018. 6.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p> <p>제9조 삭제 <2017. 7. 18.> 제10조 삭제 <2017. 7. 18.> 제11조 삭제 <2017. 7. 18.> 제12조 삭제 <2017. 7. 1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p> <p>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9.]</p> <p>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p>	<p>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p> <p>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19.]</p> <p>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19.]</p> <p>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31.> ③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시행일 : 2022. 1. 1.] 제22조 제23조 삭제 <2017. 1. 17.> 제24조 삭제 <2017. 1. 17.></p>	<p>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7. 19., 2017. 7. 17.> 1. 삭제 <2017. 7. 17.> 2. 삭제 <2017. 7. 17.> 2의2. 삭제 <2017. 7. 17.> 2의3. 삭제 <2017. 7. 17.> 2의4. 삭제 <2017. 7. 17.>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삭제 <2017. 7. 17.> 5. 삭제 <2017. 7. 17.> 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제목개정 2017. 7. 17.] 제19조 삭제 <2017. 7. 17.> 제20조 삭제 <2017. 7. 17.> 제21조 삭제 <2017. 7. 17.></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삭제 <2017. 7. 17.></p> <p>제23조 삭제 <2017. 7. 17.></p> <p>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p> <p>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p>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⑤국도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p> <p>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p> <p>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p> <p>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p>	<p>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p> <p>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p> <p>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p> <p>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6. 9.></p> <p>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p> <p>[시행일 : 2022. 1. 1.] 제25조</p> <p>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p>	<p>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p> <p>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삭제 <2017. 7. 1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19.]</p> <p>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p>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p> <p>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p> <p>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아니한다.</p> <p>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공사에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p>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p>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 <p>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꾀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p>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p> <p>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p> <p>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p>	<p>[본조신설 2012. 4. 10.]</p> <p>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p> <p>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p> <p>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p> <p>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보수</p> <p>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p> <p>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p> <p>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p> <p>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27조</p>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p>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p>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p> <p>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4. 1.,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p> <p>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p>	<p>11. 16., 2013. 3. 23.)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1., 2013. 3. 23., 2020. 12. 31.)</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28조</p> <p>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 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 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p>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p>	<p>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말한다.</p>	<p>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별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별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별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p>③ 하천관리청은 별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별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p>	<p>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만 것을 말한다) <p>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p> <p>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p>	<p>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p>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3조 삭제 (2017. 7. 17.)</p>	<p>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p>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p> <p>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p> <p>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p>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p> <p>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p> <p>6. 준공 사진</p> <p>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4.></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p> <p>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p> <p>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p> <p>[시행일 : 2022. 1. 1.] 제30조</p> <p>제31조 삭제 <2017. 1. 17.></p>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7. 1. 17., 2018. 12. 24.,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p> <p>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p> <p>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p> <p>1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p> <p>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p> <p>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p> <p>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p> <p>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p> <p>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p> <p>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p> <p>2.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p> <p>3. 삭제 <2017. 1. 17.></p> <p>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p> <p>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22.></p>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7. 1. 1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31.></p> <p>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4. 삭제 (2010. 4. 15.)</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p> <p>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p> <p>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p> <p>1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p> <p>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p> <p>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p> <p>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p> <p>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12. 31.></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22.,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제30조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삭제 <2017. 1. 17.> <p>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p> <p>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6. 9., 2020. 12. 22.,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3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의 점용 등</p> <p>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의 점용 등</p> <p>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의 점용 등</p> <p>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점유 2. 하천시설의 점유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p> <p>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p>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p>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p>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p>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p> <p>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별지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p>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몇몇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순위 :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p>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I 급(맹독성) 또는 II 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I 급 또는 II 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p>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4순위 :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24., 2013. 3. 23.>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p> <p>⑥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22.></p> <p>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p> <p>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p>	<p>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2017. 9.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9. 2. 22.]</p> <p>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23., 2018. 2. 21.)</p> <p>⑨ 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p>		<p>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9. 2. 22.></p> <p>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6. 30.></p> <p>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30.></p> <p>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p> <p>⑤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시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18., 2013. 3. 23., 2016. 6. 30.></p> <p>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8., 2016. 6. 30.></p> <p>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시설의 신설·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2. 21., 2020. 12. 22.)</p> <p>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전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p> <p>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p>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p>경우</p> <p>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p> <p>[본조신설 2017. 9. 21.]</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p> <p>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2020. 12. 31.></p> <p>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22.></p> <p>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p> <p>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2020. 12. 31.></p> <p>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2020. 12. 22.,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33조</p>	<p>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p>	<p>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p>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既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8.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양식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p>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출입 제한 2.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p>	<p>수질·수생태계 훼손</p> <p>3.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p> <p>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p> <p>1.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나.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p> <p>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9. 19.></p> <p>⑤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p> <p>[제목개정 2017. 9. 19.]</p> <p>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p>	<p>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7. 9. 21.]</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p> <p>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p> <p>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6. 9.)</p>	<p>2. 손실발생의 사실</p> <p>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p> <p>4. 협의의 경위</p> <p>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p> <p>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p> <p>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6. 6. 28., 2020. 7. 31.)</p> <p>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p>	<p>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p> <p>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p> <p>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p> <p>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p> <p>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p>3. 삭제 (2018. 8. 14.)</p> <p>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6. 9.)</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p> <p>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p> <p>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p> <p>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p> <p>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p>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p> <p>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p>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19.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3. 삭제 (2019. 2. 12.)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p> <p>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15. 8. 11.]</p> <p>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p> <p>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p> <p>2. 하구둑</p> <p>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p> <p>4. 운하</p> <p>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p>	<p>허가 등을 받은 행위</p> <p>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p> <p>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p> <p>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2. 8.></p> <p>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8.></p> <p>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2. 8.></p> <p>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p> <p>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p> <p>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p>	<p>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p> <p>③ 삭제 (2016. 6. 30.)</p> <p>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6. 6. 30.]</p> <p>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p> <p>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p> <p>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p>		<p>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p>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등의 계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p> <p>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p> <p>2. 하구둑</p> <p>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p> <p>4. 운하</p> <p>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p> <p>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p> <p>[제목개정 2018. 8. 14.]</p> <p>[시행일 : 2022. 1. 1.] 제39조</p> <p>제40조 삭제 <2017. 1. 17.></p> <p>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p> <p>②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p>	<p>제47조 삭제 <2017. 7. 17.></p> <p>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류량 2. 방류 시작 시각 3. 방류기간 	<p>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p> <p>다. 수질에 관한 자료</p> <p>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p> <p>마. 댐등의 관리대장</p> <p>[제목개정 2019. 2. 12.]</p> <p>제23조 삭제 <2017. 7. 18.></p> <p>제24조 삭제 <2017. 7. 1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 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p> <p>③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p> <p>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 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p> <p>③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시행일 : 2022. 1. 1.] 제41조</p> <p>제42조 삭제 <2017. 1. 17.></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p> <p>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43조</p> <p>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p> <p>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교통부</p>	<p>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p>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45조</p> <p>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p>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 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p>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6. 12. 30.></p>	<p>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河道) 선형·단면형 및 중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p>	<p>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1. 16.]</p> <p>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 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p>	<p>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p> <p>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 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p> <p>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p> <p>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p> <p>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p> <p>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p> <p>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p>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p> <p>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18. 6. 8.)</p> <p>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p>제7장 삭제 (2018. 6. 8.)</p> <p>제27조 삭제 (2018. 6. 8.)</p> <p>제28조 삭제 (2018. 6. 8.)</p> <p>제29조 삭제 (2018. 6. 8.)</p> <p>제30조 삭제 (2018. 6. 8.)</p> <p>제31조 삭제 (2018. 6. 8.)</p> <p>제32조 삭제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⑦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p> <p>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p> <p>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p>	<p>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p> <p>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p> <p>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p> <p>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본조신설 2016. 6. 2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인에게 통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증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22.></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16., 2013. 3. 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p> <p>④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1. 21.]</p> <p>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1. 16., 2009. 12. 15., 2017. 9. 19.)</p> <p>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p> <p>②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③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p> <p>②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p>	<p>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p> <p>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p> <p>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p>③ 삭제 <2009. 11. 16.></p>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2. 1. 1.] 제51조</p> <p>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②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p>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p>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p> <p>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7. 3. 21., 2018. 6. 8.></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18. 8. 14.></p>	<p>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8. 8. 14.></p> <p>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p>	<p>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p> <p>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p>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p> <p>3. 기득하천사용자</p> <p>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p> <p>③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5. 26.></p> <p>⑤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⑥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p> <p>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8. 6. 8.></p> <p>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p> <p>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예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외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p>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p>	<p>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든 비용</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부담한다.</p> <p>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p> <p>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p>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p> <p>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p> <p>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p> <p>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p> <p>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전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p>	<p>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삭제 <2016. 7. 19.>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23., 2020. 12. 31.)</p> <p>②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60조</p> <p>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p>	<p>제74조(시·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 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려는 시·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3. 23.)</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p> <p>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p> <p>[시행일 : 2022. 1. 1.] 제61조</p> <p>제62조(경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75조(시·군·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4. 10.></p> <p>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p> <p>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제64조(비용보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시행일 : 2022. 1. 1.] 제64조</p> <p>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2009. 11. 16.> <p>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65조</p> <p>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p>	<p>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p> <p>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27.></p>	<p>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시행일 : 2022. 1. 1.] 제68조</p> <p>제9장 감독</p> <p>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p>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p>	<p>제9장 감독</p>	<p>제9장 감독</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8. 6. 8., 2020. 6. 9.,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69조 <p>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8. 8. 14.,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70조</p> <p>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71조</p> <p>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p> <p>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p>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8. 6. 8.></p> <p>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0. 12. 31.></p> <p>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p>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8.</p>		<p>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6. 8.,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72조</p> <p>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닻이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p>	<p>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방·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p> <p>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p>		<p>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p> <p>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75조</p> <p>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p> <p>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6. 9.></p> <p>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p> <p>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8. 11.,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p>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6. 9., 2020. 12. 31.></p> <p>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p> <p>[시행일 : 2022. 1. 1.] 제76조</p> <p>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p>	<p>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제77조(감득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p> <p>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77조</p> <p>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다)</p> <p>4. 삭제 <2017. 1. 17.></p> <p>②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p> <p>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삭제 <2017. 1. 17.> <p>[제목개정 2016. 1. 19.]</p> <p>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p>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19.></p> <p>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p> <p>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p>	<p>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제목개정 2016. 6. 3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p> <p>2. 토지등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p> <p>3. 삭제 (2016. 1. 19.)</p> <p>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p> <p>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p> <p>③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p> <p>[제목개정 2016. 1. 19.]</p>	<p>에는 대상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9.)</p> <p>④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p> <p>⑤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7. 19.)</p> <p>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등: 매수청구 당시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p> <p>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p> <p>[제목개정 2016. 7. 19.]</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6. 1. 19.></p> <p>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p> <p>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 1. 19.></p> <p>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p>	<p>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p> <p>제87조 삭제 (2016. 7. 19.)</p> <p>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 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금액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p> <p>2.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p> <p>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목개정 2016. 1. 19.]</p> <p>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p> <p>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p>	<p>4. 납부기한</p> <p>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p> <p>6. 납부고지사유</p> <p>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p> <p>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p> <p>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 9. 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p>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6. 1. 19., 2017. 1. 17., 2020. 12. 31.></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82조</p> <p>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83조(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시행일 : 2022. 1. 1.] 제83조</p>		<p>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나. 등근기동형 및 사각기동형 하천거리표지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 9. 21.></p> <p>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9. 21.></p> <p>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율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등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p>		<p>아니하는 곳일 것</p> <p>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p> <p>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촉·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⑪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본조신설 2012. 6. 18.]</p> <p>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6. 9.></p> <p>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p> <p>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p> <p>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84조</p> <p>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p>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p>	<p>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p>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p> <p>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1.</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교환 당시의 가격</p> <p>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11., 2016. 6. 30.)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 <p>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6. 8. 31.></p> <p>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p> <p>제41조 삭제 (2016. 6. 3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86조</p> <p>제87조 삭제 <2017. 1. 17.></p> <p>제88조(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사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p>	<p>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p> <p>제93조 삭제 <2017. 7. 17.> 제94조 삭제 <2017. 7. 17.> 제94조의2 삭제 <2017. 7. 17.> 제94조의3 삭제 <2017. 7. 17.> 제95조 삭제 <2017. 7. 17.> 제96조 삭제 <2017. 7. 17.> 제97조 삭제 <2017. 7. 17.> 제98조 삭제 <2017. 7. 17.> 제99조 삭제 <2017. 7. 17.> 제100조 삭제 <2017. 7. 17.> 제101조 삭제 <2017. 7. 17.></p> <p>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회원의 자격 6. 임원 및 직원 7. 총회 및 이사회 8. 재정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p> <p>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8조(협회의 설립) ①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③협회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시행일 : 2022. 1. 1.] 제88조</p> <p>제89조 삭제 <2016. 1. 19.></p> <p>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p> <p>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p> <p>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시행일 : 2022. 1. 1.] 제90조</p> <p>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p> <p>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91조</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p>	<p>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p> <p>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p>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p>	<p>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p> <p>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p> <p>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타. 삭제 (2016. 7. 19.)</p> <p>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거. 삭제 (2016. 7. 19.)</p> <p>니.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2. 안성천·삼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p> <p>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p> <p>다.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p> <p>라.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p> <p>마.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p> <p>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p>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p> <p>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p> <p>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p> <p>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러. 삭제 (2016. 7. 19.)</p> <p>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서. 삭제 (2016. 7. 19.)</p> <p>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2. 4. 10., 2013. 3. 23., 2016. 6. 28., 2016. 7. 19., 2017. 7. 17.></p> <p>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사항만 해당한다)</p> <p>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p> <p>마. 삭제 (2016. 6. 28.)</p> <p>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p> <p>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p> <p>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p> <p>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p> <p>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p> <p>카. 삭제 (2017. 7. 17.)</p> <p>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p> <p>파.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p> <p>하.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p> <p>거.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p> <p>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p> <p>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p> <p>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p> <p>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p> <p>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p> <p>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에 따른 권한</p> <p>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p> <p>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p> <p>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p> <p>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p> <p>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지</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p> <p>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p> <p>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p> <p>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p> <p>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p> <p>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p> <p>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p> <p>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p> <p>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p> <p>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2009. 11. 16.,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17. 7. 17.,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 7. 17.> 6. 삭제 <2017. 7. 17.> 7. 삭제 <2017. 7. 17.> 8. 삭제 <2017. 7. 17.> 9. 삭제 <2017. 7. 17.> 10. 삭제 <2017. 7. 17.> 11. 삭제 <2018. 6. 8.> 12. 삭제 <2018. 6. 8.> 13. 삭제 <2018. 6. 8.> 14. 삭제 <2017. 7. 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 7. 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 7. 17.> 19. 삭제 <2018. 6. 8.>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조정·사용증지 및 같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p> <p>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p> <p>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p> <p>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p> <p>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 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p> <p>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27의2. 삭제 (2017. 7. 17.)</p> <p>28. 삭제 (2016. 7. 19.)</p> <p>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p> <p>31.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p> <p>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③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 17.> 2. 삭제 <2017. 1. 17.>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5. 삭제 <2017. 1. 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7. 삭제 <2017. 1. 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훈련 업무 ④ 삭제 <2016. 1. 19.>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p> <p>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p>	<p>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본조신설 2009. 12. 30.]</p> <p>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 17.) 2. 삭제 (2017. 1. 17.)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5. 삭제 (2017. 1. 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7. 삭제 (2017. 1. 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훈련 업무 <p>④ 삭제 (2016. 1. 19.) [시행일 : 2022. 1. 1.] 제92조</p> <p>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벌칙</p> <p>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6조의2 삭제 (2020. 3. 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벌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삭제 (2012. 6. 18.)</p> <p>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p> <p>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p>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1. 17.)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위반한 자</p> <p>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5. 1. 6., 2018. 2. 21., 2018.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9. 4. 1.>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p>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 1. 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6. 8.> [전문개정 2009. 4. 1.]</p> <p>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p>	<p>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 17.)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삭제 (2017. 1. 17.)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8. 6. 8., 2020. 12. 31.)</p> <p>[전문개정 2009. 4. 1.] [시행일 : 2022. 1. 1.] 제98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8호, 2007. 4. 6.)</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63호, 2008. 4. 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호, 2008. 4. 16.)</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p> <p>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p> <p>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p> <p>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p> <p>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p> <p>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p> <p>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책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p>	<p>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p> <p>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p> <p>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p> <p>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p> <p>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p>	<p>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p> <p>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p> <p>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10호, 2009. 3. 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1호, 2009. 11. 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50호, 2011. 4.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75호, 2012. 6.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 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 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p> <p>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 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로 본다.</p> <p>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p> <p>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p> <p>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p> <p>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도해양 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p> <p>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p> <p>⑥ 지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p> <p>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입야</p> <p>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p> <p>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입야</p> <p>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p> <p>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p> <p>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p>	<p>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7항·제8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표지 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유효기간 연장 등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7항·제8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수문조사시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p> <p>제4조(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표지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는 제38조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로 본다.</p> <p>부칙 (제528호, 2012. 10. 3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호, 2013. 3. 23.)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①(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p> <p>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p> <p>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경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한다.</p> <p>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p> <p>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p> <p>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p> <p>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⑯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p> <p>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p> <p>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단,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단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p> <p><117>부터 <126>까지 생략</p> <p>부칙 <제54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별이의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0호,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p> <p>부칙 <제169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p> <p>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p> <p>⑧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p>	<p>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입야</p> <p>⑩ 하천구역면집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p> <p>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p> <p>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p> <p>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1565호,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p>	<p>부칙 <제322호, 2016. 6.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4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제357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382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칙 <제437호, 2017. 7.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p> <p>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 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p> <p>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p>	<p>…〈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p> <p>⑤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p> <p>〈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p> <p>〈60〉 부터 〈65〉 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744호, 2009. 9.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p> <p>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허가나 수문조 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p> <p>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9호, 2017. 9. 21.〉</p> <p>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0호, 2018. 6. 8.〉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p> <p>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p> <p>제45조제1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p> <p>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p> <p>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p> <p>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①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②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p> <p>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p>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p> <p>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p> <p>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부터 <54>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1824호, 2009. 11.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p> <p>⑤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21931호, 2009.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p> <p>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p> <p>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부칙 <제593호, 2019. 2. 12.></p> <p>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97호, 2019. 2. 22.></p> <p>이 규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⑯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p> <p>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p> <p>⑱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p> <p>⑲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22540호, 2010. 12.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p> <p>부칙 <제22829호, 2011. 4. 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23716호, 2012. 4. 10.></p> <p>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718호, 2012. 4. 10.></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별표 1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별표 1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별표 1 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별표 1 제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별표 1 제10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㉔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p>	<p>(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0>부터 <85>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23928호, 2012. 7. 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㉔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p> <p>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㉔자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p>	<p>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93〉부터 〈146〉까지 생략</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p> <p>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p> <p>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㉞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㉟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㊲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p>	<p>〈37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377〉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282호, 2016. 6.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제105조제3항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납부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금지지역의 공고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7362호, 2016. 7.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청구 대상 토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9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지방하천”으로 한다.</p> <p>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㉖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p> <p>㉗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p> <p><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p> <p><87>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90호, 2017. 7.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p> <p>제3조를 삭제한다.</p> <p>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지수계</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㉞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㉟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㊱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㊲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42 673 565 756"> <tr> <td>182</td> <td>「하천법」제10조</td> <td>하천구역</td> </tr> <tr> <td>183</td> <td>「하천법」제11조</td> <td>하천예정지</td> </tr> <tr> <td>184</td> <td>「하천법」제12조</td> <td>홍수관리구역</td> </tr> </table> <p>㊳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p> <p>㊴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p>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p> <p>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p> <p>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p> <p>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p> <p>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①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②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p> <p>③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④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p>	<p>제105조제2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327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947호, 2018. 6. 8.></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한다)</p> <p>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p> <p>⑮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⑯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⑰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⑱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p> <p>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733호, 2007. 12. 21.〉</p>	<p>(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55조제1항·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⑩ 생략</p> <p>부칙 〈제29515호, 2019. 2.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0358호, 2020. 1.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p> <p>③ 부터 ③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82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p> <p>⑤ 부터 ③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p>	<p>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886호, 2020. 7. 31.> (국유재산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p> <p>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p> <p>부칙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②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자연공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㉔ 부터 ㉔ 까지 생략</p> <p>부칙 <제9605호, 2009. 4. 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㉔ 부터 <53> 까지 생략</p> <p>제23조 생략</p> <p>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56〉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66〉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3> 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부터 <83>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194호, 2012. 1. 17.></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1>까지 생략 <64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제2항, 제86조,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의2,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및 제9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5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p> <p>〈64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931호, 2013. 7. 1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7〉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부칙 〈제12994호, 2015. 1. 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084호, 2015. 1. 28.〉 (산업표준화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13493호, 2015. 8. 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천예정지에 관한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하천예정지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p> <p>부칙 〈제13689호, 2015. 12. 29.〉</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⑦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3808호, 2016. 1. 1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44호, 2017. 1. 1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p> <p>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p> <p>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31조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p> <p>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p> <p>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p> <p>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p> <p>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p> <p>제87조를 삭제한다.</p> <p>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p> <p>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12조 생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722호, 2017. 3.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규모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405호, 2018. 2.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천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24호, 2018. 6. 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p> <p>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p> <p>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p> <p>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84호, 2018. 6. 12.〉</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742호, 2018. 8. 1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라목, 제7조제2항제4호, 제38조제1항제3호, 제7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p> <p>⑨ 생략</p>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453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732호, 2020.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또는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제33조제9항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하천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17. 7. 17>	6987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6987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6988
[별표 3의2]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6989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6990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6990

[별표 1] 삭제 <2017. 7. 17>

[별표 2] <개정 2016. 6. 28.>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1.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범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뚝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2.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뚝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뚝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범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범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뚝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6.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범은 제외한다)의 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뚝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8.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5제1항제4호에 따른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9.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역)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구분	산정기준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광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도석·사력의 채취	가.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도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양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구분	산정기준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3의2] <신설 2020. 1. 21.>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손실보상금액	수수료 요율기준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000 이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1000 이내
100억원 초과	10/1000 이내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

[별표 5]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98조 제3항제1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나. 삭제 <2017. 7. 17.>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3호	30만원	40만원	60만원
라. 삭제 <2017. 7. 17.>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5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축목·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6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98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98조 제3항제7호	50만원	60만원	80만원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삭제 <2017. 7. 18.>	6995
[별표 2] 삭제 <2017. 7. 18.>	6995
[별표 3] 삭제 <2017. 7. 18.>	6995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6995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6996
[별표 5의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6996
[별표 5의3]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6997
[별표 5의4]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7001
[별표 6] 삭제 <2016. 6. 30.>	7003

[별표 1] 삭제 <2017. 7. 18.>

[별표 2] 삭제 <2017. 7. 18.>

[별표 3] 삭제 <2017. 7. 18.>

[별표 4]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모래·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점용목적	첨부서류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별표 5의2] <신설 2017. 9. 21.>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점용(행위)의 목적	제출기간
1. 토지의 점용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20일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60일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20일
7.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20일
8. 식물의 식재	5일
9.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10. 선박의 운항	12일

[별표 5의3] <개정 2017. 9. 21.>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 가. 하천 그림표지
-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 다. 하천명
- 라. 영문 하천명
-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mm × 1,200mm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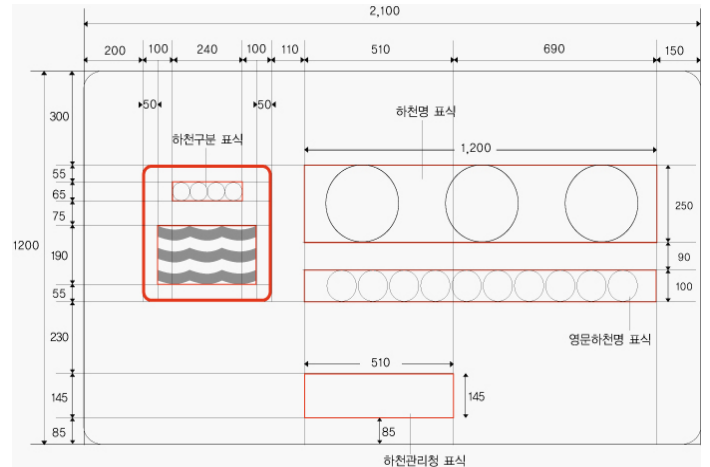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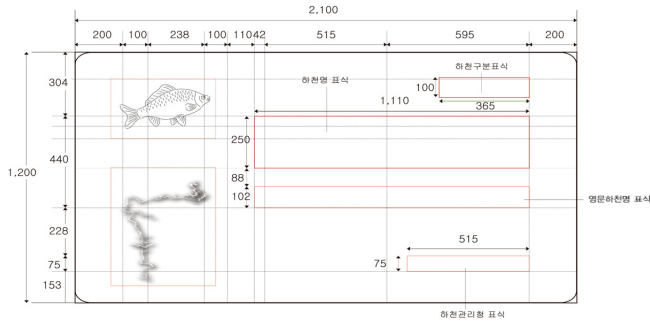
4. 표지 구성(단위: mm)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06.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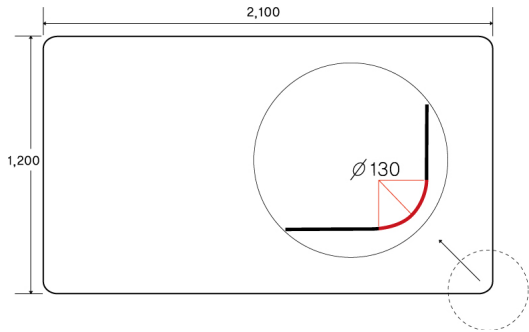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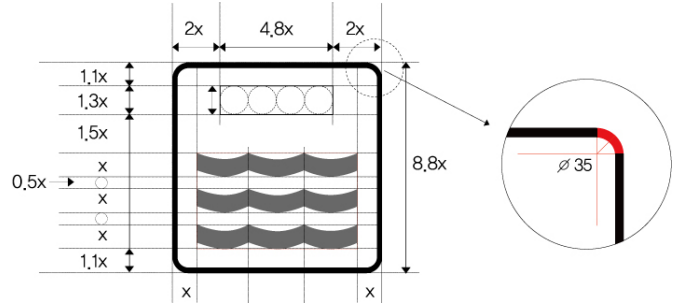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mm)



2) 그림표지 테두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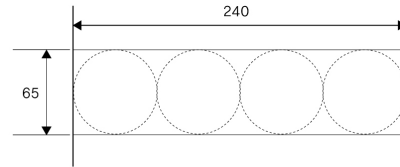
가) 기본규격: X = 50mm

나) 외곽선 굵기: 12mm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산돌고딕 볼드 190 포인트
자폭 100% 자간 0

다) 하천구분 표시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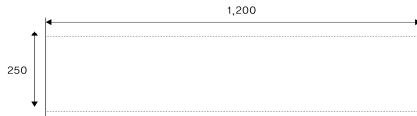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시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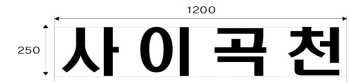
① 2자



② 3자



③ 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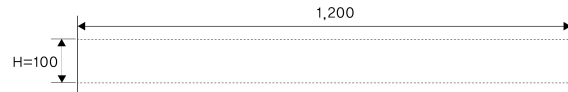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시 부분(단위: mm)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단메트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시 부분(단위: mm,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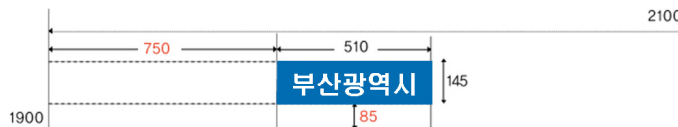
가) 국가하천(예): 국토교통부



06.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시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6. 재질 구성

-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별표 5의4] <개정 2017. 9. 21.>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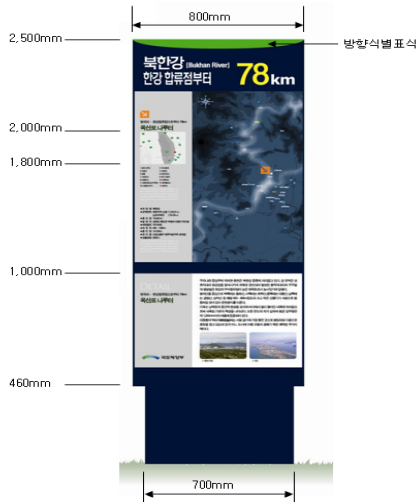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 3) 하천정보
- 4) 안내지도
-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mm × 세로 2,5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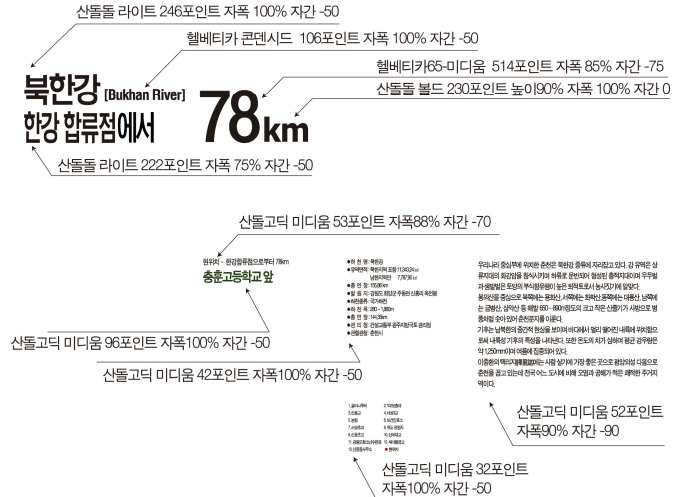


다. 색채

-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 3) 콘크리트 기초

06.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2. 동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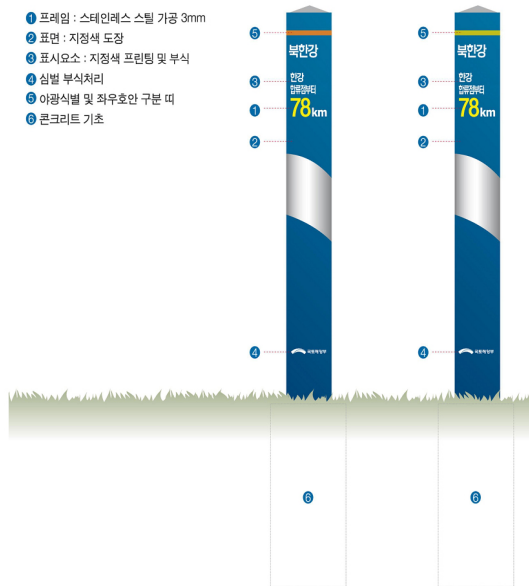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 1) 높이: 1,700mm
- 2) 지름: 200mm

제작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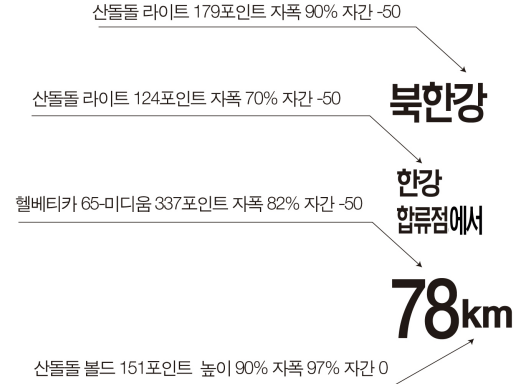
- ① 프레임 : 스테인레스스틸 가공 3mm
- ② 표면 : 지정색 도장
- ③ 표시요소 :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 ④ 심벌 부식처리
- ⑤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 ⑥ 콘크리트 기초



다. 색채

-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mm)
- 2) 표면: 지정색 도장
-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 4) 심벌: 부식처리
-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 6) 콘크리트 기초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 1) 하천명
-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300mm × 300mm × 7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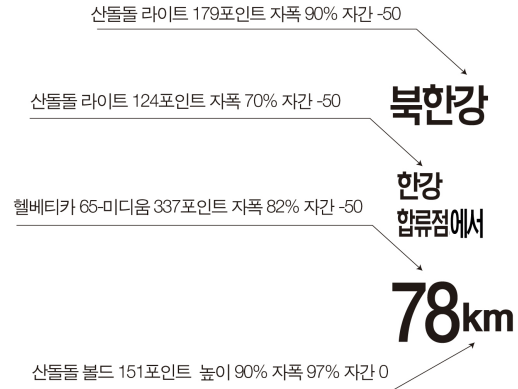
<둔치>

<하천경계지역>

다. 색채

-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 1) 재질: 화강석, 렉산, 야광식별 띠, 유포지에 실사출력
- 2) 마감: 조각, 연마

[별표 6] 삭제 <2016. 6. 30.>

0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7009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7009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7009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7009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7009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7009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7010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7010
제9조(분쟁조정신청)	7010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7010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7010
부칙	7010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6.14 환경부령 제7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리·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용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용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 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간 및 종료 시간
-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서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67호, 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편
수자원

0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015	제1조(목적) 7015	제1조(목적) 7015
제2조(정의) 7015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701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016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7016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7017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7016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7019	제4조(주민의견 수립) 7019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7020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7020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7021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7021	
제8조(행위 등의 제한) 7022	제7조(행위 등의 제한) 7022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7024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7024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7024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7025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7025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7025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7025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7026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7026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7027		제4조(증표) 7027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70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031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031	
제17조(준공검사) 7031	제12조(준공검사) 7031	제5조(준공검사) 7031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7032		
제1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7032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7033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7033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7033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7034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7035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7035	
제5장 보칙		
제24조(지도·감독 등) 7035		
제25조(행정처분) 7035	제15조(행정처분 사유) 7036	
	제16조(행정처분 고시) 7036	제6조(행정처분 기준) 7036
제26조(청문) 7036	제17조(권한의 위임) 7036	
제27조(권한의 위임) 7036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7037		
제29조(벌칙) 7037		
제30조(양벌규정) 703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038	
제31조(과태료) 7038		
부칙 7038	부칙 7038	부칙 703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8. 6.12 법률 제15674호 2020. 1.29 법률 제16902호 (항안법) 2020.12. 8 법률 제1759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9. 6.12 국토교통부령 제625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p> <p>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p> <p>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p> <p>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p> <p>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다.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라.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p>	<p>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p>	<p>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 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p>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p> <p>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 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③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1. 「매진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p>	<p>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p> <p>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p> <p>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p> <p>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국토</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p> <p>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의 시행자</p> <p>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p> <p>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p> <p>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p> <p>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p> <p>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4. 지정 해제의 사유</p> <p>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p>	<p>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p>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p> <p>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 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p>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도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p> <p>6.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p> <p>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p>	<p>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p> <p>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p> <p>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p> <p>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p> <p>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p> <p>제14조(토지예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p>		<p>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다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과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p> <p>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p> <p>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p> <p>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p> <p>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p> <p>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p> <p>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p> <p>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p> <p>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계획의 승인</p> <p>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p> <p>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p> <p>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p>	<p>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개정 2020. 12. 8.)</p> <p>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제1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p>	<p>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5호서식에 따른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p> <p>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p> <p>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p>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기반시설 중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설치비용</p> <p>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p> <p>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p> <p>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p> <p>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p> <p>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양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p> <p>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p>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4조(지도·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p>제25조(행정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p>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p> <p>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p> <p>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p> <p>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p> <p>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p>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6조(행정처분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p>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p>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p>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への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 への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74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54 946 565 99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234</td> <td style="width: 35%;">「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td> <td style="width: 35%;">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td> </tr> </table>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847호, 2019. 6. 11.〉</p> <p>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5호, 2019. 6. 12.〉</p> <p>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2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⑮부터 <56>까지 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599호, 2020. 12. 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704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7044

[별표 1]

유지관리자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 에 따른 실수입액
-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용지 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
 -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예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80만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7047
-----------------------------	------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담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담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제10편 부 록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7051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목 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057	제1조(목적) 7057
제2조(정의) 7057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7059	제2조(온실가스) 7058
제4조(국가의 책무) 7059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060	
제6조(사업자의 책무) 7060	
제7조(국민의 책무) 706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060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7061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7061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7061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706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7062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7061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7063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7062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7063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7062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7063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7063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063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063
제15조(위원회의 기능) 7064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7064
제16조(회의) 7064	제12조(회의) 7064
제17조(분과위원회) 7065	제13조(분과위원회) 7065
제18조 삭제 7065	제14조 삭제 706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7065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065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7065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7066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7066	
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7066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7067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7067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7067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7068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7068	
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7068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7068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제정 지원 및 운영) 7069
제30조(조세 제도 운영) 7069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7069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7070	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7070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7070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7071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7071
제34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7071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7071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7072	제22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7071
제36조(규제의 선진화) 7072	
제37조(국제규범 대응) 7072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7073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7073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074	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707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7074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7074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7075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7075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7075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7076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7076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7078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7078
	제31조(등록부의 관리) 7080
	제32조(검증기관 등) 7080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7081	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7081
	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7081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7081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7081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7082
	제35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7083
	제35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7083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7084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7084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7085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7085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7085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7085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7086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7087	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7087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087	제40조(녹색국도의 관리) 7088
제51조(녹색국도의 관리) 7088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7088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7088
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7088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7089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7089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708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7090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7091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7091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7091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7091	
제7장 보칙	제7장 벌칙
제6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7092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7092	
제62조(국회 보고) 7092	
제6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7092	
제64조(과태료) 7093	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7093
부칙 7093	부칙 709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정 2010. 1.13 법률 제9931호 2011. 4.14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76호 2013. 7.30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6. 3.29 법률 제14122호 (기술보존기금법) 2017. 4.18 법률 제14811호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11.28 법률 제151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8. 3.20 법률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12.31 법률 제161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64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p>제정 2010. 4.13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4.27 대통령령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12.27 대통령령 제24270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 5.24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1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 9.18 대통령령 제291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 3.12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20. 8.26 대통령령 제3097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0 대통령령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p> <p>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p> <p>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p> <p>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p> <p>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p> <p>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p> <p>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p> <p>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p> <p>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p> <p>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p> <p>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p>	<p>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p> <p>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자본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p> <p>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제와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p> <p>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p> <p>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p> <p>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p> <p>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p> <p>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p> <p>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종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p> <p>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p> <p>3. 연차별 추진계획</p> <p>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p> <p>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p> <p>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4.)</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p> <p>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p> <p>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p> <p>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p>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전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8조 삭제 <2013. 3. 23.></p> <p>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p> <p>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둔다.</p> <p>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12. 27.]</p> <p>제14조 삭제 <2013. 3. 23.></p> <p>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12. 27.></p> <p>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p> <p>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p> <p>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p> <p>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p> <p>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p> <p>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p> <p>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p> <p>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2. 자원의 공급 및 관리 3.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7.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p>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p>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③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p>②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 회의·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p>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2.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p>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p> <p>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p> <p>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 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p> <p>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치·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2. 12. 27.></p> <p>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포진원에 위탁한다.</p> <p>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4.></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4.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5.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p>제34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p>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4., 2017. 7. 26.></p> <p>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7. 26.></p> <p>제22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8., 2013. 3. 23., 2016. 11. 29., 2017. 7. 26.,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수 있다.</p> <p>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6조(규제의 선진화) ①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이자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p> <p>제37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p> <p>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p>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p> <p>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증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p>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의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p>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p> <p>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⑥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⑦ 관리업체는 제6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⑧ 정부는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5. 24., 2019. 12. 31.></p> <p>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국의 감축분, 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 5. 24., 2019. 12. 31.></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이행을 위한 법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p> <p>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5. 24., 2017. 12. 29.></p> <p>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p>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p>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⑨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6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권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2016. 5. 24.,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권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권장기관에게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권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p> <p>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권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권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p>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 2017. 12. 29.></p> <p>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 2017. 12. 29.></p> <p>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 2017. 12. 29.></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개선·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신설 2012.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및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2.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p>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한다. <개정 2017. 12. 29.></p> <p>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 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설·증설 미이행, 조직경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p>④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정된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제출한 이행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⑤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한다)을 평가하여 그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⑩ 관리업체는 제9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⑪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6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p>	<p>⑦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p>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센터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이행실적을 제출받으면 이를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p>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7.,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와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제1항에 따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p>	<p>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2. 12. 27.></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7.></p> <p>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p> <p>② 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12. 27.]</p> <p>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①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p> <p>② 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 12. 27.]</p> <p>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제2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p>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명세서의 내용, 보고·관리, 공개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모·수량 및 가동시간</p> <p>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p> <p>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p> <p>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p> <p>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 방법</p> <p>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p> <p>9. 삭제 <2012. 12. 27.></p> <p>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p> <p>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p> <p>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p> <p>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24.></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각각 지명하는 5명 2.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 <p>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5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할 경우 3. 그 밖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5. 24.]</p> <p>제35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6. 5. 24.]</p> <p>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p>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4., 2017. 7. 26., 2017. 12. 29.></p> <p>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 2016.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축산·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p>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4., 2017. 12. 29.></p> <p>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6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절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p> <p>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확보할</p>	<p>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p>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p> <p>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p>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p>	<p>[제목개정 2012. 12.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p> <p>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p> <p>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p>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p>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p>	<p>제40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6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p> <p>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p>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② 정부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증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자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대·구축 <p>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증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p>	<p>2012. 12. 27.,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p>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5. 24.)</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p> <p>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p>	<p>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p> <p>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p> <p>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p> <p>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p> <p>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p> <p>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p> <p>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p> <p>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p> <p>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p> <p>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p> <p>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2013. 3. 23.)</p> <p>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p> <p>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p> <p>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p> <p>4.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5.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6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p> <p>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62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조제7항·제10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2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931호, 2010. 1. 1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영향체제인증의 녹색영향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영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관리업체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첫해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조(녹색성장 국가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 훈령 제239호에 따라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제9조에 따른 녹색성장국가전략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24호, 2010. 4.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p> <p>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p> <p>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p>	<p>제9조의2의 제목 “(환경영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을 “(녹색영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영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영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영영컨설팅”을 “녹색영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영영”을 “녹색영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영영촉진사업”을 “녹색영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영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영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영영체제”를 각각 “녹색영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영영체제인증”을 “녹색영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영영진단지도)”를 “(녹색영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영영”을 “녹색영영”으로, “환경영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영영진단·지도”로, “환경영영진단기관”을 “녹색영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영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영영진단·지도”로, “환경영영진단기관”을 “녹색영영진단기관”으로, “환경영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영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영영진단·지도”를 “녹색영영진단·지도”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⑨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한다.</p> <p>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 의에 관한 사항</p> <p>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p> <p>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p> <p>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p> <p>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를 삭제한다.</p> <p>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p>	<p>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p> <p>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⑧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p> <p>〈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p> <p>〈57〉부터 〈85〉까지 생략</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p> <p>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p> <p>제12조를 삭제한다.</p> <p>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p> <p>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23755호, 2012. 4.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부칙 <제24270호, 2012.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행정기관등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검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24429호, 2013. 3. 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p> <p>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p> <p>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p> <p>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p> <p>제17조의 제목“(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p> <p>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p>	<p>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p> <p>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p> <p>제14조를 삭제한다.</p> <p>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p> <p>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p> <p>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p> <p>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p> <p>㉓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p> <p>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p> <p>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p> <p>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p> <p>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p> <p>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p> <p>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p> <p>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p> <p>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p> <p>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p>	<p>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제4호·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⑤부터 ⑨까지 생략</p> <p>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p> <p>⑱ 생략</p> <p>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p> <p>④0부터 ⑤0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16조의2의 제목 “(환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p> <p>제18조의 제목 “(환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녹색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으로 한다.</p> <p>제19조의 제목 “(환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녹색영에 관한 진단·지도)”로 한다.</p> <p>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p> <p>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영체제”를 각각 “녹색영체제”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영”을 각각 “녹색영”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영체제인증”으로 한다.</p> <p>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p> <p>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p> <p>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99호,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p> <p>〈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p> <p>〈406〉부터 〈41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180호, 2016. 5.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녹색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녹색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녹색인증은 법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받은 녹색인증으로 본다.</p> <p>제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76호, 2013. 3. 2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122호, 2016. 3. 29.> (기술보증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5항·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61호, 2017. 12. 29.></p> <p>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11호, 2017. 4.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01호, 2017. 11.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⑦부터 ⑨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172호, 2018. 9.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2호, 2018. 11.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489호, 2018.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133호, 2018. 12.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46호, 2019. 11. 2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518호, 2019. 2.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303호, 2019. 12.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975호, 2020. 8.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p> <p>⑦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68호, 2020. 11. 20.>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7107
[별표 2]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7107
[별표 3]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7107
[별표 4]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7107
[별표 5]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7107
[별표 6]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7108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7109

[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1.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HFC-32, HFC-41, HFC-43-10mee, HFC-125, HFC-134, HFC-134a, HFC-143, HFC 143a, HFC-152a, HFC-227ea, HFC-236fa, HFC 245ca
2. 과불화탄소(PFCs)	PFC-14, PFC-116, PFC-218, PFC-31-10, PFC-c318, PFC-41-12, PFC-51-14

[별표 2]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 kilotonnes CO₂-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 kilotonnes CO₂-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 kilotonnes CO₂-eq 이상

[별표 3]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5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35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 terajoules 이상

[별표 4]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 kilotonnes CO₂-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 kilotonnes CO₂-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 kilotonnes CO₂-eq 이상

[별표 5]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9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0 terajoules 이상

[별표 6] <개정 2020. 11. 20.>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0.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3.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7.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1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24.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별 물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3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증기종합계획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36.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37.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9.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42.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담건설장기계획
-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45.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 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 47.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4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49.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51.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 52.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53.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56.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59.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별표 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별표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4.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2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1,000만원
6.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편 집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정 미
행정사무관 최 진 호
정 태 균

환 경 법 전 (하)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환 경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 201-6394

인쇄처 :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화 044) 868-9324

비매품